議政白書

第 6 代 前半期



忠 清 北 道 議 會

忠 淸 北 道 民 憲 章

(제정 : 1979. 4. 22)

충청북도는 충의롭고 중후한 전통을 지닌 곳이요, 수려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고장이다.

우리 도민은 진취적인 기상을 길러 모두가 잘사는 복지사회건설을 위하여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첫 째 : 충효와 학문의 전통을 이어받아 의롭고 바르게 산다.

둘 째 : 내 고장을 사랑하고 문화유산을 보전하여 도민의 긍지를 높인다.

셋 째 : 성실하게 일하고 근검 절약하여 생산하는 생활을 한다.

넷 째 : 서로 돕고 아끼며 공익과 봉사를 앞세워 명랑한 사회를 이룩한다.

다섯째 :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풍토를 조성하여 번영된 내일을 개척한다.

(제정 : 1991. 10. 9)

우리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도민의 신뢰를 받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도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부단히 인격과 지성을 함양하여 도덕적 품위를 가지고 공사생활에 사표가 된다.

2. 우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3. 우리는 도민의 수범자로서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한다.

4. 우리는 의정활동의 일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의원상호간 존중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5. 우리는 도민에 대한 책임자로서 모든 공적 · 사적 언행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다.

發　刊　辭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제6대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여러분의 지방자치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가슴깊이 새기면서 1998년 7월 10일 출범한 이래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기치로 하여 임기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IMF구제금융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질서의 재편과 남북공동선언을 통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시대 도래 등 국가적 격동 속에서도 우리의회는 민의에 맞는 정체성 확립은 물론, 도민모두의 권익이 고르게 증진될 수 있도록 맡겨진 소명을 다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성과를 보고 드리는 이 백서가 도민여러분의 기대와 우리 도 지방자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채워지기에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이 기록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의원 27명 모두가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쓴 보고서이오니 도민여러분의 보다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라오며,

도의원 모두는 남은 임기동안 도민의 권익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이오니 도민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2001년 1월

충청북도의회의장 김 진 호

■ 第 6 代 議會 前半期 議長團 ■



의장 金 俊 錫



부의장 權 寧 觀



부의장 朴 鐘 起

■ 第 6 代 議會 前半期 常任委員長 ■



의회운영위원장
張 準 浩



기획경제위원장
韓 賢 泰



교육사회위원장
朴 魯 喆



산업경제위원장
崔 英 洛



관광건설위원장
鄭 泰 禎

■ 第 6 代 忠淸北道議會 議員 ■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金 俊 錫 (42. 11. 8)	청주시 제1선거구 (자유민주연합) [중앙동, 우암동, 내덕1동, 내덕2동, 율량 · 사천동, 오근장동]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북청주 로타리크럽 회장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위원장 ·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운영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
 黃 太 模 (40. 6. 3)	청주시 제2선거구 (한나라당) [성안동, 탑 · 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 · 명암 · 산성동 용암 · 용정 · 방서동]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 졸업(석사) · 청주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金 珍 鎬 (48. 12. 22)	청주시 제3선거구 (무소속) [사직1동, 사직2동, 사창동, 모충동, 산 · 미 · 분 · 장동, 수곡1동, 수곡2동, 성화 · 개신 · 죽림동]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 · 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申 澤 秀 (45. 10. 11)	청주시 제4선거구 (무소속) [운천 · 신봉동, 복대1동, 복대2동, 가경동, 봉명1동, 봉명2 · 송정동, 강서1동, 강서2동]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초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權 寧 觀 (47. 1. 9)	충주시 제1선거구 (무소속) [주덕읍, 살미면, 상모면, 이류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가금면, 성내 · 성남 · 성서동, 충인 · 충의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 · 직동, 단월 · 풍 · 가주동, 용관 · 용두 · 달천동, 봉방동, 칠금 · 금능동]	· 고려대학교 중퇴 · 충주 청년회의소 회장 · 충주시 시정자문위원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반기 부의장
 沈 興 燮 (62. 4. 14)	충주시 제2선거구 (새천년민주당)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교현1동, 교현2동, 용산동, 연수동, 목행 · 용탄동, 종민 · 안림 · 목벌동]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국회의원 비서관 · 밀알라이온스클럽 이사 · 생활체육 충주시협의회 이사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지방의회연구소 연구위원 · 생활체육 충청북도협의회 이사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崔 英 洛 (58. 2. 28)	제천시 제1선거구 (무소속)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명서동, 의림동, 용두동, 청전동, 영천1동, 영천2동]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李 吉 厦 (57. 2. 19)	제천시 제2선거구 (무소속)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중앙동, 남천동, 동현동, 두학동, 화산1동, 화산2동]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한국기독청년협의회(K.E.Y.C) 전국부회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자문위원 · 생명과환경을 위한 모임 운영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申 大 植 (39. 3. 25)	청원군 제1선거구 (무소속)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朴 魯 喆 (48. 11. 3)	청원군 제2선거구 (무소속)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오창면, 북이면, 내수읍]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具 本 善 (49. 3. 25)	보은군 제1선거구 (새천년민주당) [보은읍,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 경기대 중퇴(2년)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의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민선2대 조합장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朴 鍾 起 (39. 11. 29)	보은군 제2선거구 (자유민주연합)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보은군 수한 · 내북 · 삼승 · 탄부면장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보은 JC특우회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전반기 부의장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李 根 成 (49. 9. 26)	옥천군 제1선거구 (자유민주연합) [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 · 옥천 · 영동군 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庾 東 燦 (39. 10. 25)	옥천군 제2선거구 (무소속)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옥천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張 準 浩 (41. 4. 1)	영동군 제1선거구 (무소속) [영동읍,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 충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지전장학회 회장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5대 도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鄭 泰 禎 (46. 4. 29)	영동군 제2선거구 (무소속)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황간농업협동조합 이사 · 한국과수협회 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황간월류라이온스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金 柱 泊 (40. 4. 5)	진천군 제1선거구 (무소속)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金 炯 泰 (37. 2. 13)	진천군 제2선거구 (무소속)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만승면]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진천군 약사회장 · 광혜원 중 · 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金 大 鎬 (52. 2. 21)	괴산군 제1선거구 (무소속)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韓 賢 泰 (58. 9. 25)	괴산군 제2선거구 (무소속) [증평읍, 도안면]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 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金 昭 政 (43. 6. 29)	음성군 제1선거구 (무소속)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국학대학 정치학과 중퇴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 · 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 ·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柳 周 烈 (52. 1. 25)	음성군 제2선거구 (한나라당)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李 光 鍾 (44. 2. 26)	단양군 제1선거구 (무소속) [단양읍,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단양군청 근무 · 신단양지역개발회장 · 도덕성회복운동 중앙위원 및 단양군지부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李 完 永 (53. 5. 13)	단양군 제2선거구 (무소속) [매포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 조선대학교 체육과 졸업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朴 在 秀 (46. 6. 19)	비례대표 (자유민주연합)	· 동국대학교 졸업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회장 · 법무부갱생보호회 청주지구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충북시 · 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吳 長 世 (55. 5. 12)	비례대표 (자유민주연합)	· 경희대 법학과 졸업 · 백산건설 대표 · 금산아스콘 대표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지부 후원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朴 鶴 來 (23. 3. 11)	비례대표 (새천년민주당)	· 청주 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 제2 · 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 · 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第 6 代 道議會 辭退 議員 ■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金 春 植 (58. 9. 2)	청주시 제2선거구 (무소속) [성안동, 탑 · 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 · 명암 · 산성동, 용암 · 용정 · 방서동]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새한국당 흥덕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尹 炳 泰 (51. 5. 20)	충주시 제2선거구 (무소속)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교현1동, 교현2동, 용산동, 연수동, 목행 · 용탄동, 종민 · 안림 · 목벌동]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자민련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議政活動



● 제6대의회 개원에 앞서 열린 의원 및 집행기관 간부와의 상견례 ('98. 7. 4)



● 제6대의회 개원식에서의 의원선서 ('98. 7. 9)



● 제6대의회 개원기념 축하연 ('98. 7. 9)



● 제6대의회 개원기념사진 ('98. 7. 9)

의회운영위원회



●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2000. 5. 15)



●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한 의사일정협의 ('99. 3. 11)

기획행정위원회



●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9. 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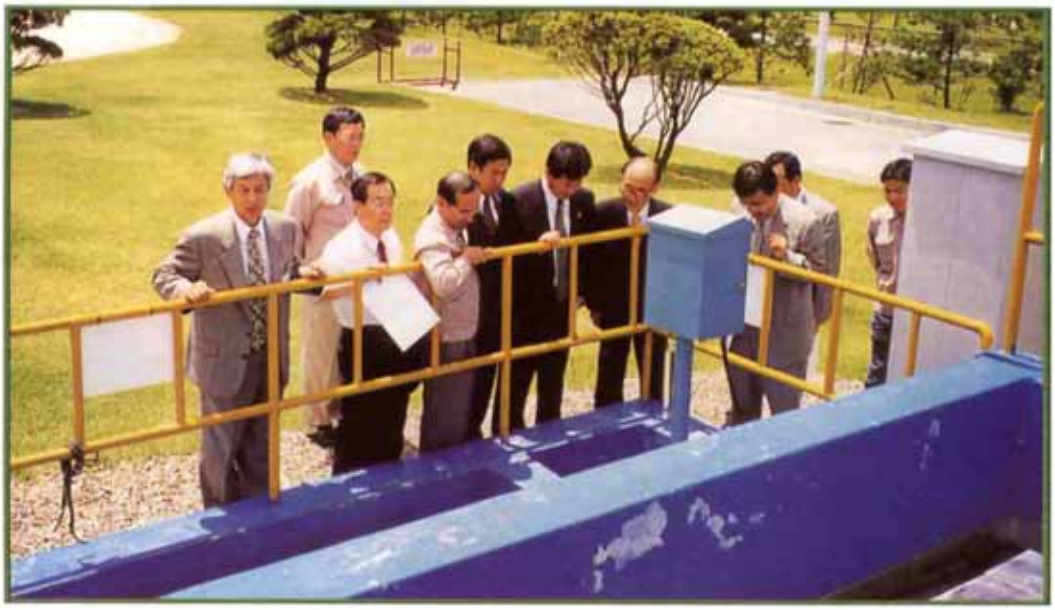


● 충주댐 수난구조선 운영현황 현지확인 (2000. 5. 18)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00. 4. 19)



● 산업체 오·폐수처리시설 현장 확인 ('99. 7. 14)

산업경제위원회



● 농업기술원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99. 5. 13)



● 장미재배단지 현장확인 ('99. 2. 5)

관광건설위원회



● 조례안 심사 (2000. 4. 19)



● 지방도 정비사업 현장 확인 ('99. 9.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99. 7. 14)



● 결산검사위원 간담회 ('98. 7. 14)

윤리특별위원회



●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를 위한 회의 ('98. 10. 27)



● 위원회 운영방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 ('98. 11.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도민부담 경감을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99. 2. 8)



●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 ('99. 12. 27)

기타활동



● 제6대 도의회 원구성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보고 ('98. 7. 18)



● 민선2기 출범후 최초의 도정보고를 하는 이원종 도지사 ('98. 7. 21)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식통장 갖기운동 ('98. 7. 25)



● 도내 산골학교 어린이들의 도의회 견학 ('98. 8. 21)



● 민의에 부응하는 의회운영을 위한 간담회 ('98. 9. 18)



● '98. 화랑훈련을 참관하고 관계관으로부터 보고 청취 ('98. 10. 29)



●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한 의원연찬 모습 ('98. 11. 5)



● 지방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의원 연찬회 ('99. 1. 22)



● 영월댐 건설 반대를 위한 강원도의회와의 공조활동 ('99. 4. 26)



● 제6대 도의회 개원1주년기념 대토론회 ('99. 7. 9)



● 의정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연회 개최 ('99. 8. 23)



● 도정질문과 답변 과정을 방청하고 있는 도민들 ('99. 9. 13)



● 중국 대련시 대표단과의 자치단체간 교류협력방안 협의 ('99. 10. 13)



● 멕시코 꼴리마주 대표단과의 국제교류활동 ('99. 10. 22)



● 민의수렴을 위한 시민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99. 10. 28)



● 충북 천년대종 준공식 ('99. 12. 4)



●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 ('99. 12. 29)



●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를 위한 합동궐기대회 (2000. 1. 5)



● 지방자치역량 배양을 위해 개최한 학생 모의의회 (2000. 3. 23)



● 가축전염병 확산에 따른 대처방안 모색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 (2000. 4. 18)



● 의정활동방향 모색을 위한 의장단 및 사무처간부 연석회의 (2000. 5. 3)



● 지방자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도의회 개원 기념식 (2000. 5. 29)



● 충청북도의회의 변천과정을 사료를 통해 볼 수 있는 의정전시관 개관 (2000. 5. 29)

일 러 두 기

- 이 백서는 제6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1998년 7월 10일~2000년 7월 8일) 동안의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하였음.
- 제1장은 의회개관 편으로 의회연혁, 의회구성, 의회의 지위와 권한, 의회의 운영, 의회사무처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고,
- 제2장은 의정활동 편으로 제149회 임시회부터 제175회 임시회까지 26회에 걸친 회기별 개회배경, 회기, 본회의 활동, 위원회활동 상황을 요약 수록하였으며, 주요안건별 처리결과는 모든 안건에 대해 그 경과 및 결과를 다루었으나 일부 경미한 안건처리 결과는 생략하였음.
- 제3장은 행정사무감사 편으로 '98·'99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개요와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였고,
- 제4장은 청원 및 진정 편으로 청원과 진정에 관한 처리개요, 처리현황, 처리절차, 처리내용을 간략하게 수록 하였으며,
- 부록 편은 역대의원명단,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의정통계 및 자료를 수록하되, 제6대의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회의회수 표기

  제6대의회 전반기 중 1~3대 도의회의 사료발굴 과정에서 1991년 7월 8일 도의회 재 출범 시 적용했던 회수적용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제68회부터 제163회까지의 회수를 한 회씩 늘리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독자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본 백서는 변경이전의 회수로 표기하였음.

目　　次

第 1 章　議會槪觀 ·····11

第 1 節　一般現況 ·····13
1. 議會沿革 ·····13
2. 議會機構 ·····14
3. 議會構成 ·····15

第 2 節　議會의 地位와 權限 ·····18
1. 議會의 地位 ·····18
2. 議會의 權限 ·····19

第 3 節　議會의 運營 ·····28
1. 會　期 ·····28
2. 本會議 ·····28
3. 委員會 ·····30
4. 議案의 處理 ·····31
5. 會議錄 作成 및 發刊 ·····39
6. 會議場 傍聽 ·····42

第 4 節　議會事務處 ·····44
1. 機構 및 定員 ·····44
2. 部署別 機能 ·····45
3. 議會資料室 運營 ·····46
4. 議會施設 ·····47

5. 議會事務處 幹部 名單 ·····49
6. 主要業務 推進狀況 ·····50

第 2 章 議政活動 ·····59

第 1 節 第149回 臨時會 ·····61
1. 開會 背景 ·····61
2. 會 期 ·····61
3. 本會議 活動 ·····61
4. 委員會 活動 ·····63

第 2 節 第150回 臨時會 ·····65
1. 開會 背景 ·····65
2. 會 期 ·····65
3. 本會議 活動 ·····65
4. 委員會 活動 ·····67

第 3 節 第151回 臨時會 ·····77
1. 開會 背景 ·····77
2. 會 期 ·····77
3. 本會議 活動 ·····77
4. 委員會 活動 ·····79

第 4 節 第152回 臨時會 ·····83
1. 開會 背景 ·····83
2. 會 期 ·····83
3. 本會議 活動 ·····83

4. 委員會 活動 ……103

第 5 節　第153回 臨時會 ……110
1. 開會 背景 ……110
2. 會　期 ……110
3. 本會議 活動 ……110
4. 委員會 活動 ……112

第 6 節　第154回 臨時會 ……120
1. 開會 背景 ……120
2. 會　期 ……120
3. 本會議 活動 ……120
4. 委員會 活動 ……122

第 7 節　第155回 定期會 ……127
1. 開會 背景 ……127
2. 會　期 ……127
3. 本會議 活動 ……127
4. 委員會 活動 ……145

第 8 節　第156回 臨時會 ……166
1. 開會 背景 ……166
2. 會　期 ……166
3. 本會議 活動 ……166
4. 委員會 活動 ……168

第 9 節　第157回 臨時會 ……176
1. 開會 背景 ……176

2. 會　期 ……176
3. 本會議 活動 ……176
4. 委員會 活動 ……178

第 10 節　第158回 臨時會 ……183
1. 開會 背景 ……183
2. 會　期 ……183
3. 本會議 活動 ……183
4. 委員會 活動 ……185

第 11 節　第159回 臨時會 ……192
1. 開會 背景 ……192
2. 會　期 ……192
3. 本會議 活動 ……192
4. 委員會 活動 ……194

第 12 節　第160回 臨時會 ……200
1. 開會 背景 ……200
2. 會　期 ……200
3. 本會議 活動 ……200
4. 委員會 活動 ……211

第 13 節　第161回 臨時會 ……220
1. 開會 背景 ……220
2. 會　期 ……220
3. 本會議 活動 ……220
4. 委員會 活動 ……222

第 14 節　第162回 臨時會 ……226
1. 開會 背景 ……226
2. 會　期 ……226
3. 本會議 活動 ……226
4. 委員會 活動 ……230

第 15 節　第163回 臨時會 ……252
1. 開會 背景 ……252
2. 會　期 ……252
3. 本會議 活動 ……252
4. 委員會 活動 ……254

第 16 節　第165回 臨時會 ……258
1. 開會 背景 ……258
2. 會　期 ……258
3. 本會議 活動 ……258
4. 委員會 活動 ……272

第 17 節　第166回 臨時會 ……280
1. 開會 背景 ……280
2. 會　期 ……280
3. 本會議 活動 ……280
4. 委員會 活動 ……282

第 18 節　第167回 臨時會 ……290
1. 開會 背景 ……290
2. 會　期 ……290
3. 本會議 活動 ……290

4. 委員會 活動 ·····292

第 19 節 第168回 定期會 ·····296
1. 開會 背景 ·····296
2. 會 期 ·····296
3. 本會議 活動 ·····296
4. 委員會 活動 ·····312

第 20 節 第169回 臨時會 ·····334
1. 開會 背景 ·····334
2. 會 期 ·····334
3. 本會議 活動 ·····334
4. 委員會 活動 ·····336

第 21 節 第170回 臨時會 ·····343
1. 開會 背景 ·····343
2. 會 期 ·····343
3. 本會議 活動 ·····343
4. 委員會 活動 ·····345

第 22 節 第171回 臨時會 ·····352
1. 開會 背景 ·····352
2. 會 期 ·····352
3. 本會議 活動 ·····352
4. 委員會 活動 ·····354

第 23 節 第172回 臨時會 ·····361
1. 開會 背景 ·····361

2. 會　期 ·····361
3. 本會議 活動 ·····361
4. 委員會 活動 ·····363

第 24 節　第173回 臨時會 ·····373
1. 開會 背景 ·····373
2. 會　期 ·····373
3. 本會議 活動 ·····373
4. 委員會 活動 ·····387

第 25 節　第174回 定例會 ·····395
1. 開會 背景 ·····395
2. 會　期 ·····395
3. 本會議 活動 ·····395
4. 委員會 活動 ·····397

第 26 節　第175回 臨時會 ·····406
1. 開會 背景 ·····406
2. 會　期 ·····406
3. 本會議 活動 ·····406
4. 委員會 活動 ·····408

第 3 章　行政事務監査 ·····411

第 1 節　行政事務監査 槪要 ·····413
1.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413

2. 監査過程 및 節次 ·····415

第 2 節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415
1. 監査의 目的 ·····415
2. 監査期間 ·····415
3. 監査實施 對象機關 ·····415
4. 監査班 編成 ·····416
5. 監査日程 및 場所 ·····417
6. 委員會別 指摘事項 ·····419
7. 主要 指摘內容 ·····419

第 3 節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434
1. 監査의 目的 ·····434
2. 監査期間 ·····434
3. 監査實施 對象機關 ·····434
4. 監査班 編成 ·····435
5. 監査日程 및 場所 ·····436
6. 委員會別 指摘事項 ·····438
7. 主要 指摘內容 ·····438

第 4 章 請願 및 陳情處理 ·····451

第 1 節 請 願 ·····453
1. 處理槪要 ·····453
2. 處理現況 ·····453
3. 處理節次 ·····454
4. 處理內容 ·····455

第 2 節 陳 情 ……457
1. 處理槪要 ……457
2. 處理現況 ……457
3. 處理節次 ……458
4. 處理內容 ……459

附 錄

Ⅰ. 歷代 道議員 名單 ……475

Ⅱ. 議會日誌 ……481

Ⅲ. 演說文集 ……493

Ⅳ. 議政統計 및 資料 ……557

第 1 章　議會槪觀

第 1 節　一般現況
第 2 節　議會의 地位와 權限
第 3 節　議會의 運營
第 4 節　議會事務處

第 1 節 一 般 現 況

1. 議會沿革

1952. 5. 10	제1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28명 당선)
1952. 5. 29	제1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52. 5. 29	충청북도의회 제1대 의장선임(최동선)
1956. 5. 29	제1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56. 8. 13	제2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30명 당선)
1956. 9. 1	제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56. 9. 1	충청북도의회 제2대 의장선임(노의중)
1957. 8. 26	충청북도의회 제3대 의장선임(노의중)
1958. 3. 6	충청북도의회 제4대 의장선임(최동선)
1959. 1. 15	충청북도의회 제5대 의장선임(이기호)
1960. 8. 13	제2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60. 12. 12	제3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26명 당선)
1960. 12. 21	제3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60. 12. 21	충청북도의회 제6대 의장선임(서병주)
1961. 5. 16	제3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91. 6. 20	제4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38명 당선)
1991. 7. 8	제4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91. 7. 8	충청북도의회 제7대 의장선임(한현구)
1993. 7. 1	충청북도의회 제8대 의장선임(조성훈)
1995. 6. 27	제5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40명 당선)
1995. 7. 7	제4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95. 7. 12	제5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95. 7. 12	충청북도의회 제9대 의장선임(차주원)
1997. 1. 9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의장선임(김동진)
1998. 6. 4	제6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27명 당선)
1998. 6. 30	제5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98. 7. 9	제6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98. 7. 9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의장선임(김준석)

2. 議會機構



※ 운영위원회 ( )내서 위원은 2000. 2. 19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사임

3. 議會構成

1) 의 원

제6대 충청북도의회는 24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구의원 24인과 비례대표 3인, 총 2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중요도정을 심의 결정하는 등 법률에 의하여 의원의 신분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2) 의 장·부의장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고 있으며 의장 및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위 원 회

가) 상임위원회

의회는 5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별 소관 집행기관의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직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별 소관부서

위 원 회 별	의원정수	소 관 사 항
의회운영위원회	8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
기획행정위원회	7	○ 비서실, 공보관실, 감사실 ○ 기획조정실 ○ 자치행정국 ○ 소방본부 ○ 증평출장소, ○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
교육사회위원회	6	○ 여성정책관실 ○ 복지환경국 ○ 충북과학대학 ○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산업경제위원회	6	○ 경제통상국 ○ 농정국 ○ 농업기술원
관광건설위원회	7	○ 문화진흥국 ○ 건설교통국

나) 특별위원회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 의결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명 칭	구 성 일 (활동기한)	구 성 위 원	활 동 상 황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98. 9. 18 ('99. 7. 7)	위원장 : 박재수 간 사 : 이완영 위 원 : 김진호, 오장세 박노철, 구본선 유동찬, 김형태 김소정	〈1998년도〉 1. '98년도추경예산안 심사 · 도 청 : 제2회, 제3회 · 교육청 : 제2회,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도, 교육청) 3.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도, 교육청) 4. '99년도예산안심사(도,교육청) 〈1999년도〉 2. '99년도추경예산안심사 · 도 청 : 제1회 · 교육청 : 제1회
	'99. 7. 8 (00. 6.30)	위원장 : 신대식 간 사 : 구본선 위 원 : 김대호, 김주백 신택수, 유주열 이광종, 이근성 이길하, 이완영 한현태	〈1999년도〉 1. '99년도추경예산안심사 · 도 청 : 제2회, 제3회, 제4회 · 교육청 : 제2회, 제3회 2.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도, 교육청) 3.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도, 교육청) 4. 2000년도예산안심사 (도, 교육청) 〈2000년도〉 1. 2000년도추경예산안심사 · 도 청 : 제1회 · 교육청 : 제1회 2.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도, 교육청) 3.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도, 교육청)
윤 리 특별위원회	'98. 9. 30 (2000.6.30)	위원장 : 박종기 간 사 : 신택수 위 원 : 유주열, 박학래 김주백	〈1998년도〉 1. 충청북도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 (1건)
조 례 정 비 특별위원회	'98. 9. 30 ('99.12.31)	위원장 : 박종기 간 사 : 유주열 위 원 : 신대식, 박노철 이길하, 유동찬 김소정	〈1999년도〉 1. 조례정비(60건) · 상반기(44건:개정37,폐지7) · 하반기(16건:개정14,폐지2) 2. 정비촉구 조례(13건) 3. 장기과제 채택(13건) 4. 형태별 정비실적 · 민원처리기간 단축 1건 · 부담경감 7건 · 수혜확대 7건 · 조직개편 10건 · 기 타 35건

第 2 節 議會의 地位와 權限

1. 議會의 地位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 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기관이다.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2. 議會의 權限

1)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도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한다.
조례안은 도의원과 위원회, 도지사·교육감이 제안할 수 있으며 도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한다.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며, 의결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조례안이 의결될 때에는 도지사·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 받은 조례안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그 확정조례는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공포한다.

< 의회 권한의 범위 >

- ○ 의회 권한의 전권기능의 원칙(Prinzip der Allzustandigkeit des Rates)에 의거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관할권 가짐
- ○ 지방의회의 관할 범위는 곧 의결사항의 범위의 문제
- ○ 필요적 의결사항, 조례에 의한 의결사항 및 임의적 의결사항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됨

① 필요적 의결사항 (법정의결사항)

○ 지방의회가 필수적으로 의결해야 할 법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35조 ①항)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조례에 의한 의결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앞서의 법정의결사항 이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35조 ②항)

○ 조례에 의한 의결사항도 반드시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하나, 의결의무가 법률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지는 점에 필요적 의결사항과 차이

③ 임의적 의결사항

○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가 의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방자치 법상의 규정 없음

○ 지방의회는 주민직선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주민 대표기관 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전권기능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임의적 의결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음.

※ 법령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별표 1과 같음

2) 재정에 관한 권한

도의회는 도 및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도민의 부담이 되는 주민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채무부담에 대한 동의 등 재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주요한 권능의 하나이다. 예산안은 도 및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며 의회에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계수를 조정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여 확정된다.

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규모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도지사 및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에 제출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하여 승인한다.

재정에 관한 권한은 다음과 같다.

- ○ 예산의 심의 확정권
- ○ 결산 승인권
- ○ 지방세의 부과 징수조례제정권
- ○ 지방채 발행 동의권
- ○ 예산외의 재정 부담행위 등에 관한 동의권
- ○ 주요재산 등의 취득·설치관리·처분에 관한 조례 제정권
- ○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권 등

3) 도정통제에 관한 권한

도의회는 의회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사무감사나 현안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을 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감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의 보조기관중 부지사,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그 보조기관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을 보고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음은 물론 본회의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교육감, 부지사 또는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도정통제에 관한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대집행기관 견제권

- 동의권
- 보고 및 서류제출 청구권
- 의견 표명권
- 의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권

○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당해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특정사안에 대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4) 의회자율운영에 관한 권한

도의회는 법률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의회의 집회·휴회 및 회기 등의 결정권, 의장단선출 등의 내부조직권, 의사와 내부법률에 관한 규칙제정권, 의사일정의 작성 등 의사에 관한 권한, 내부경호등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 의원의 징계 등 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을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 의회 자율권한 사항은 별표 2 참조

5) 청원수리에 관한 권한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권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청원이 가능하다.

○ 청원수리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이나 징계, 처벌의 요구
-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별표 1〕 법령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결사항(35건)

제 목	근 거	실시기관	비 고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법 제35조	시·도 시·군·구	
② 예산의 심의·확정	〃	〃	
③ 결산의 승인	〃	〃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	
⑤ 기금의 설치 운용	〃	〃	
⑥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	
⑦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	〃	
⑩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	
⑪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⑫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	
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의 조사	법제36조제1항	〃	
⑭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의 의결	법제41조제1항	〃	
⑮ 지방의회의 회기 의결	법제41조제2항	〃	
⑯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 의결	법제49조제1항	〃	
⑰ 폐회중 위원회의 개회	법제53조	〃	
⑱ 지방의회 회의의 비공개 결정	법제57조	〃	

제 목	근 거	실시기관	비 고
⑲ 비밀을 요하는 지방의회 회의록의 비공개 결정	법제64조제4항	시·도 시·군·구	
⑳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 의결	법제72조제1항	〃	
㉑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법제78조	〃	
㉒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의결	법제19조제4항 제98조제2항 제99조 제159조제2항	〃	
㉓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법제115조제1항	〃	
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세입·세출 예산 외의 채무부담원인행위	법제115조제2항	〃	
㉕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부담 행위	법제115조제3항	〃	
㉖ 지방자체단체의 채권에 관한 채무의 면제 또는 효력의 변경	법제115조제5항	〃	
㉗ 회계년도 예산안 의결	법제118조제2항	〃	
㉘ 지방자치단체의 계속비의 의결	법제119조	〃	
㉙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의결	법제121조	〃	
㉚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 일부를 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시 그 규약의 제정	법제141조제2항	〃	
㉛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구성과 규약 제정	법제142조제2항	〃	
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규약 변경, 행정협의회 폐지	법제148조	〃	
㉝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의 설립과 규약 제정	법제149조제1항	〃	
㉞ 지방자치단체의 규약변경과 조합해산	법제154조제1항	〃	
㉟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사무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령제17조의3 제1항	〃	

□ 타법령상 지방의회 의결사항(12건)

제 목	근 거	실시기관	비 고
① 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조상충용	지방재정법 제3조제3항	시·도 시·군·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요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일시 차입금	〃 제11조제1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공사, 공단 또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자	〃 제15조제2항	〃	
④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이용	〃 제38조제1항	〃	
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명시이월	〃 제40조제1항		
⑥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제77조제1항	〃	
⑦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보조 받아야 할 공공시설에 한함)	지방재정법 제109조제1항	〃	·사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함
⑧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시·도	
⑨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안	〃 제9조제2항	〃	
⑩ 교육·학예에 관한 결산	〃 제9조제2항	〃	
⑪ 교육·학예에 관한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제9조제2항	〃	
⑫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세법 제9조의2	시·도 시·군·구	

〔별표 2〕 지방의회 자율권(23건)

제 목	근 거	실시기관	비 고
① 임시회 소집권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시 · 도 시 · 군 · 구	
② 개회, 휴회, 폐회의 의결	〃 제41조제1항	〃	
③ 정기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	〃 제41조제2항	〃	
④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	〃 제42조	〃	
⑤ 지방의회 임시의장의 선출	〃 제46조	〃	
⑥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불신임 결의	〃 제49조	〃	
⑦ 지방의회 위원회의 구성	〃 제50조제1항	〃	
⑧ 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50조제3항	〃	
⑨ 위원회의 개회	〃 제53조	〃	
⑩ 회의의 비공개 의결	〃 제57조	〃	
⑪ 의안의 발의권	〃 제58조	〃	
⑫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 제61조제1항	〃	
⑬ 회의규칙의 제정권	〃 제63조	〃	
⑭ 비밀을 요하는 회의록의 비공개	〃 제64조제4항	〃	
⑮ 청원의 심사 · 처리	〃 제67조제1항 제68조	〃	
⑯ 청원소개의원에 대한 청원의 취지 설명 요구	〃 제67조제2항	〃	
⑰ 지방의회의원의 사직허가	〃 제69조	〃	
⑱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 및 의결	〃 제71조	〃	
⑲ 지방의회의원 자격상실 의결	〃 제72조제1항	〃	
⑳ 방청인의 단속에 관한 회의규칙 제정	〃 제77조제4항	〃	
㉑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권	〃 제78조	〃	
㉒ 타 의원을 모욕한 의원의 징계 요구	〃 제79조제2항	〃	
㉓ 징계에 대한 회의규칙의 제정	〃 제81조	〃	

第 3 節 議會의 運營

1. 會 期

회기란 의회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40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되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2. 本 會 議

도의회의 최종의사결정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 선임 또는 결정』한다고 할 때 이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의미하게 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본회의는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도지사,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최종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표결은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행하며, 일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 도의회의 운영 〉

회 의 종 류

■ **본회의** : 의회의사의 최종결정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

· 정례회 : 매년 2회
※ 1차 : 7월 10일
2차 : 11월 20일

· 임시회 : 필요시(도지사 및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15일 이내

※ 연간 회의 총 일수 :
120일 이내

■ **위원회**

	기 능	소 집
상 임 위원회	소관 의안·청원 등 심사처리	위원장·재적위원 1/3 이상 요구시
특·별 위원회	특정사안의 일시적 처리	위원장·재적위원 1/3 이상 요구시

회 의 진 행

소 집

⬇

개 회

⬇

보 고

⬇ · 안건회부현황등

의사일정 상정

⬇

제 안 설 명
(심사보고)

⬇

질의, 답변, 토론

⬇

표 결 , 의 결

⬇

산 회

3. 委 員 會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5개의 상임위원회를 두되 의장을 제외한 26명의 의원이 각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직하고 있다.

1) 의안의 심사

본회의에 보고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벌인다.

2) 발 언

의안에 대한 발언회수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3) 표 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심사보고서 작성 제출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議案의 處理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모든 사안을 의안이라 하며, 의안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도지사, 교육감,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단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① 제안자의 취지설명

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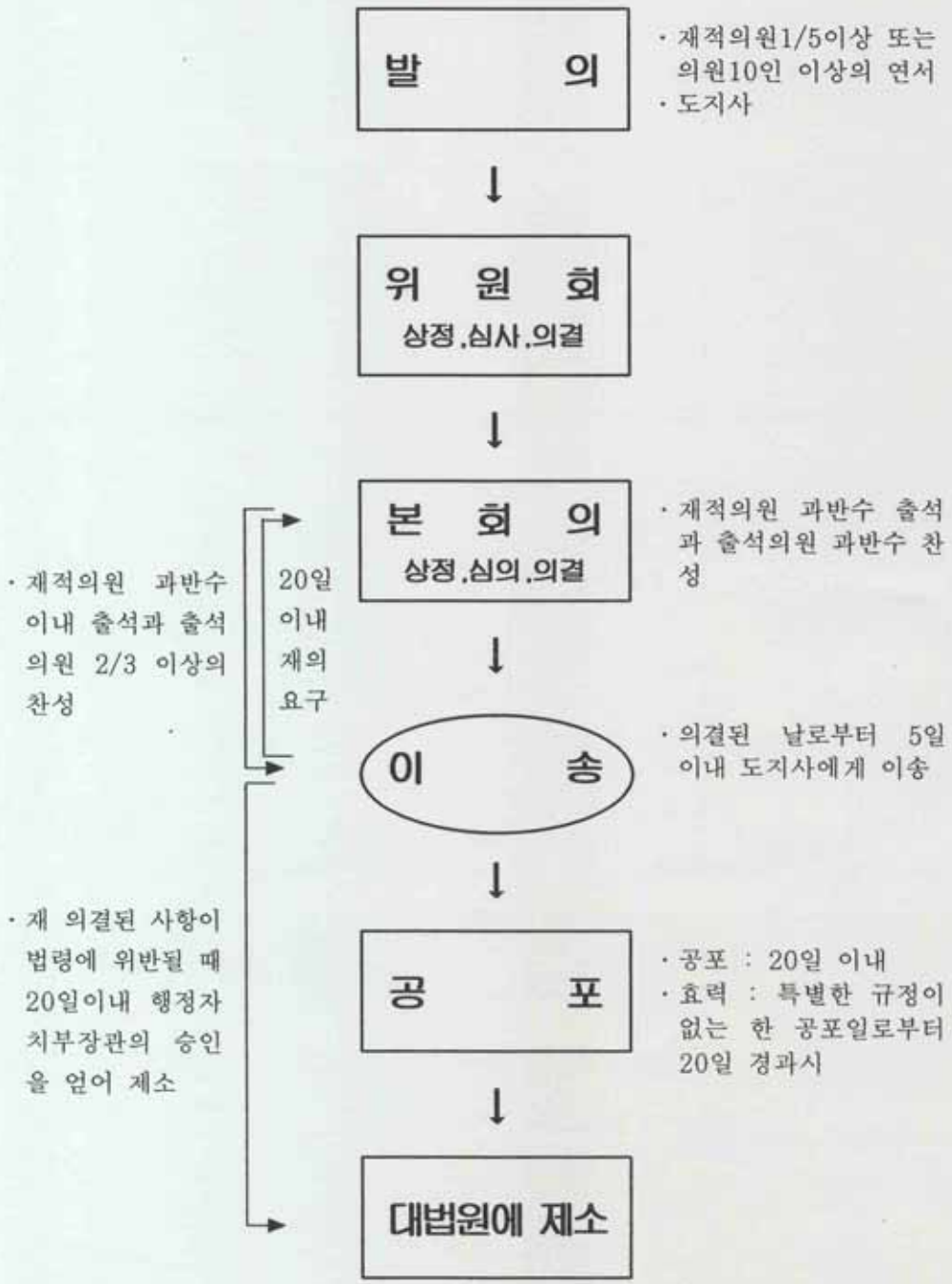
③ 질　　의

④ 토　　론

⑤ 축조심사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다시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1) 조례제정절차


발 의
· 재적의원1/5이상 또는 의원10인 이상의 연서
· 도지사
위 원 회
상정,심사,의결
본 회 의
상정,심의,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재적의원 과반수 이내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20일 이내 재의 요구
이 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도지사에게 이송
· 재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20일이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소
공 포
· 공포 : 20일 이내
· 효력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시
대법원에 제소

2) 의안의 발의 및 의결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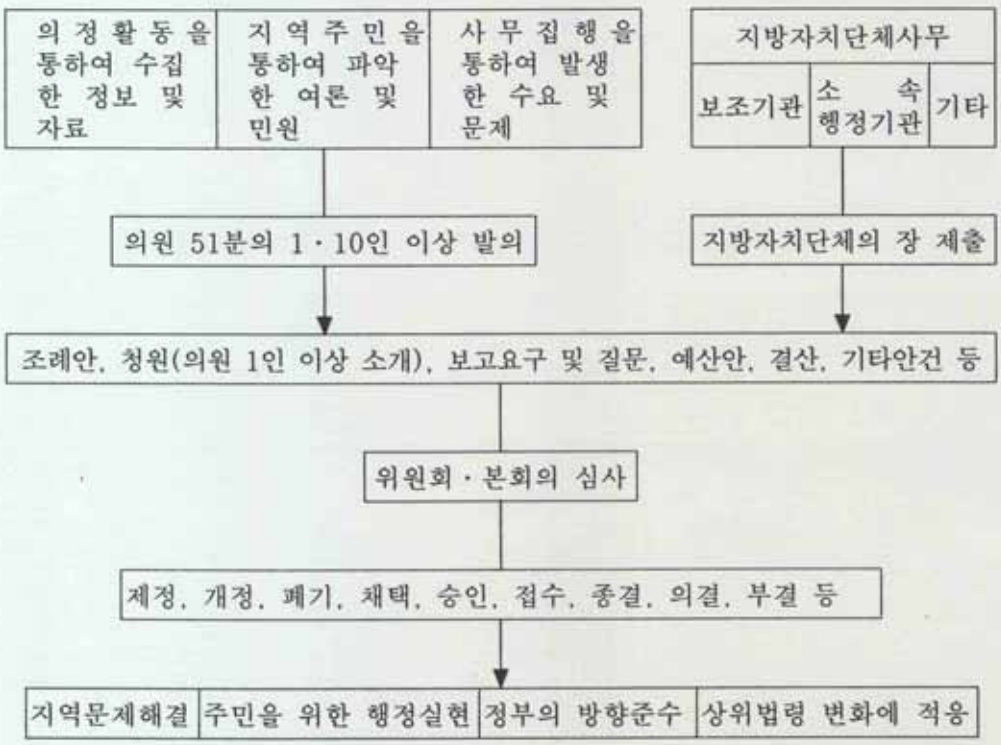
안건 또는 동의	발 의 정 족 수	의 결 정 족 수
· 일반안건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 연서(법5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56조)
· 의장·부의장 선거		〃 (회의규칙 8조)
· 의장·부의장 불신임안	· 재적의원 1/4이상(법49조)	· 재적의원 과반수(법49조)
· 조례안 재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구 (법 19조, 98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법19조, 98조)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재적의원 1/3 이상 연서 (법36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법56조)
· 의원의 자격 심사	· 재적의원 1/4 이상 연서 (법71조)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법72조)
· 의원의 징계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회의규칙 89조) ※ 모욕을 당한 의원 요구	·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법80조)
· 임시회 집회	· 재적의원 1/3 이상(법3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구	· 요구가 있으면 집회
· 회의의 비공개	· 의원 3인 이상(법57조)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법57조)
· 휴회중 회의 재개	· 재적의원 1/3 이상 (회의규칙 16조) ※ 의장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구(회의규칙 16조)	· 요구가 있으면 회의 재개
· 회기중 위원회 개회	· 재적위원 1/3 이상(법53조) ※ 위원장의 필요시 ※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구	· 요구가 있으면 개회
· 위원회 폐기안건의 본회의 부의	· 재적의원 1/3 이상(법61조) ※ 의장의 요구	·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부의

3) 의안(조례안) 심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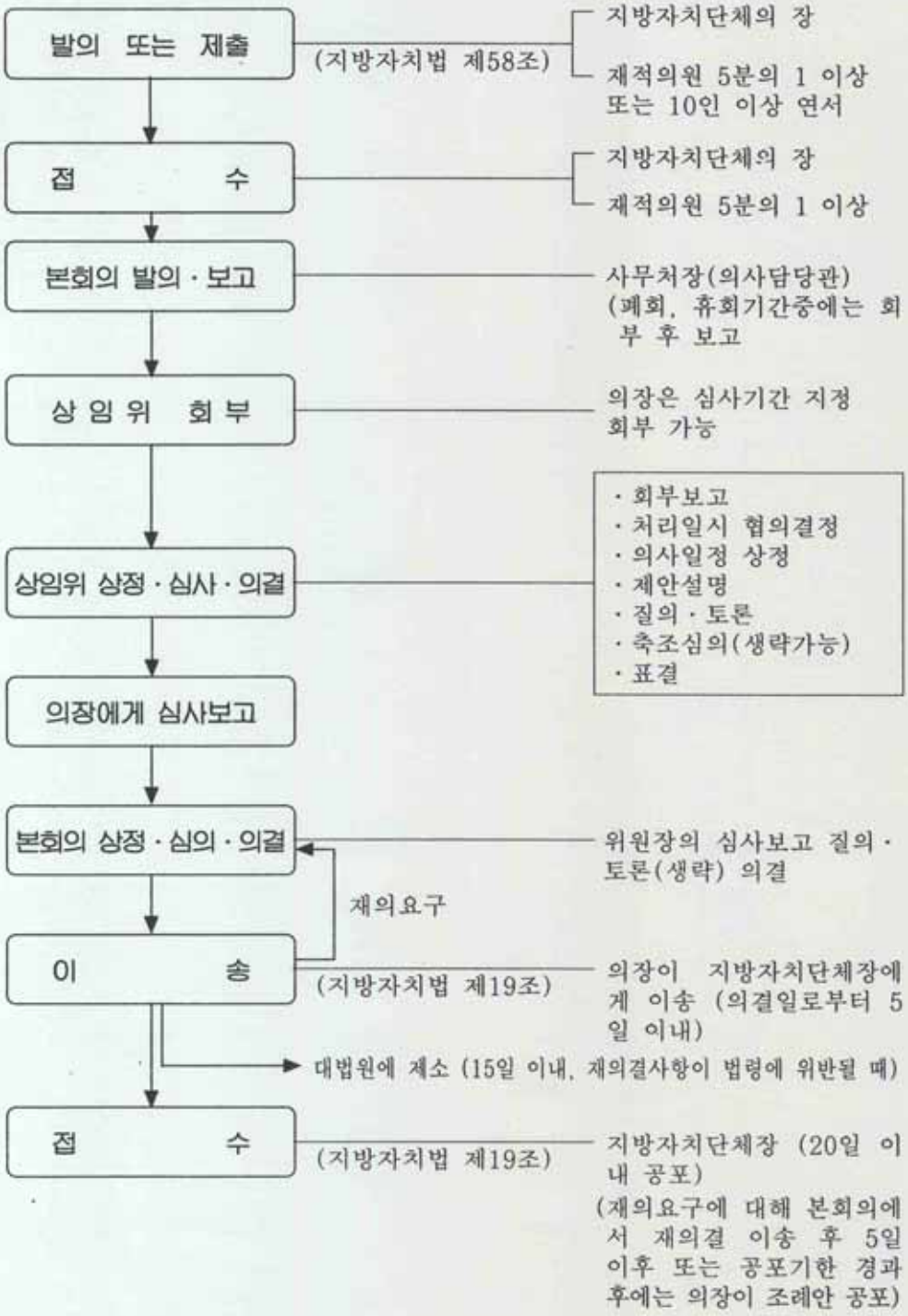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의장, 의원, 위원회) 제출(제의·제안)하여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와 조사를 거쳐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이 보고서 제출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이 의회에 환부되어 본회의의 의제로 상정 처리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또는 통지하여 공포절차를 거치므로 그 조례 등 의안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중 하나가 안건심사로서 안건심사는 의사진행으로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주민들의 민원 및 숙원사업, 의원의 공약사업, 집행기관의 시책사업들을 안건화 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안건심사의 성격·기능·효과



《 의안(조례안) 심의절차 》


발의 또는 제출
(지방자치법 제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 연서
접 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본회의 발의·보고
사무처장(의사담당관)
(폐회, 휴회기간중에는 회부 후 보고
상 임 위 회 부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 회부 가능
상임위 상정·심사·의결
·회부보고
·처리일시 협의결정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질의·토론
·축조심의(생략가능)
·표결
의장에게 심사보고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토론(생략) 의결
재의요구
이 송
(지방자치법 제19조)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 (15일 이내,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접 수
(지방자치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장 (20일 이내 공포)
(재의요구에 대해 본회의에서 재의결 이송 후 5일 이후 또는 공포기한 경과 후에는 의장이 조례안 공포)

4) 예산안과 결산심사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국장의 설명을 들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가) 제출시기

○ 예산안 :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법118조) → 11월11일까지 제출
○ 결산안 : 다음 회계연도 6월말 까지

나) 심사방법

○ 예산안 : ① 관계법령에 의한 "지방의회"의 고유영역
② 집행기관의 심사참여와 긴밀한 협력에 의한 심사
③ 제안설명 또는 시정연설 - 행정사무감사 - 전년도결산 - 위원회심사 - 본회의 의결(12월16일까지 의결)

○ 결산안 : 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관계" 영역
② 예비비지출사항과 병행심사가능
③ 출납정리(2월말까지) - 출납사무완결(3월말까지) - 세입세출결산서작성(5월20일까지) -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회계검사 - 지적사항·시정 및 조치 - 결산서의회 제출(예산안과동시) - 결산심사 - 의결

다) 기능 및 성격

구분	예 산 안	결 산 안
기능	① 지방의회의 사업분석 또는 시책평가능력 ② 사업수준의확정, 예산총액의 결정, 행정에대한통제기능	① 정치기능적, 사후적기능 ② 집행의 책임의 확인,해제기능 ③ 예산집행에 관한 평가기능
성격	① 재정 민주주의 실현 ② 재정규모결정	①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② 예산안심사와 연계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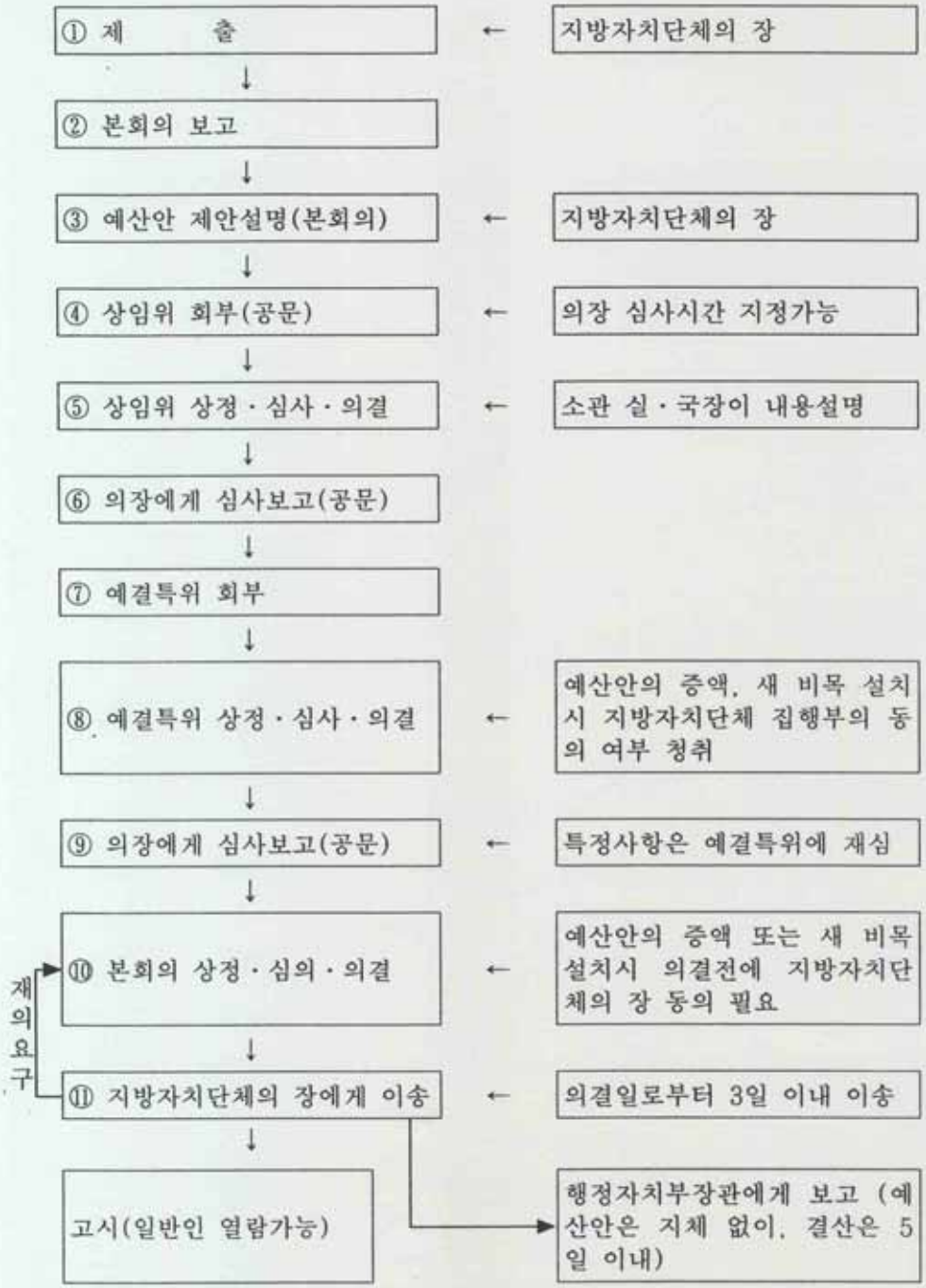
《 예산안 처리절차 》



《 결산승인 절차 》



《 예산안(추경) 및 결산(예비비) 》



※ 예산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설명 시는 「0000년도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으로 상정함 (예산안 자체를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이 아님)

5. 會議錄 作成 및 發刊

1) 회의록 작성

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여 대외적으로는 회의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증거 및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6대의회 들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정전산시스템』을 구축, 기 발행된 4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방대한 분량의 회의록을 관계형데이타베이스 형태로 전산처리 하여 Internet에 게재, 도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활동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감시·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의회의 역사를 보존, 민주적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있다.

회의록은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 하여 의회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작성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본 회 의 >

①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②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③ 의사일정
④ 개회식에 관한 사항
⑤ 출석의원의 성명 수
⑥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⑦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⑧ 의장의 보고, 위원회의 보고 등 제반 보고사항
⑨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⑩ 부의안건과 그 내용

⑪ 의사

⑫ 표결수

⑬ 기명·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위원 서명

⑭ 서면질문과 답변서

⑮ 의원의 발언 보충서

⑯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 원 회 >

①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② 의사일정

③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④ 출석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⑤ 출석한 공무원·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⑥ 심사안건명

⑦ 의사

⑧ 표결수

⑨ 위원장의 보고

⑩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내용

⑪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회의록 발간

회의록은 발간하여 의원 전원에게 배부하며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회의가 끝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대의회 전반기 회의록 발간부수는 총 26회에 2,478부이며 충청북도 산하기관, 시·군 및 시·도의회, 언론기관, 유관기관 등 110개 부서에 배부하다가 인터넷 전자회의록 서비스를 시작하며 회의록 발간부수를 대폭 축소(50부)하여 의회관련 최소필요기관만 배부하여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제를 견고하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3) 인터넷회의록 작성작업 개요

가) Text문서

화 일 분 류
- 본회의 · 상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 특별위원회

⇒

다 단 수 정 작 업
- 2단 문서를 1단 문서화

⇒

태 그 (TAG) 작 업
- 본문정리작업 (표,머릿말,꼬릿말제거)
- 태그부여
  - 구역구분자 - 설명선
  - 안건명 - 시간·상황표기
  - 참조(링크태그)
  - 부 록 - 발언자
  - 매쪽
- 도정질문·답변 태그작성

⇒

Internet 파일명 부여(Text)
- 제169회본회의2차 본문 →169za0002b.txt
- 제169회기획행정위1차 본문 →169kh0001b.txt
- 제169회교육사회위1차 부록 →169ks0001a.in

나). Image문서

책자 회의록 파 본 ⇒ 원문 스캐닝 ⇒ 이 미 지 보 정 ⇒ I m a g e 파일명 부여

⇩

Text 문서 + Image 문서 영구보존CD 기록 및 Internet 등재

6. 會議場 傍聽

의회 본회의 방청은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으로 구분되며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방청권을 교부한다.

본회의장 방청석은 137석으로 한정되어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한다.

위원회의 방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1) 방청의 제한

-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 주기가 있는 자
-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려 는 자
- ○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청과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 또는 반입하는 자
- ○ 회의장 내외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방청인 준수사항

-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마이크 등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
- ○ 모자, 외투, 슬리퍼를 착용하는 행위
- ○ 통신기기를 휴대하여 통화 또는 통신을 하거나 통신기기를 작동케 하는 행위
- ○ 음식물의 섭취, 끽연 및 껌을 씹는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를 읽거나 방송 및 음악청취 행위

○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및 자료를 배포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소란행위 등 기타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연도별 방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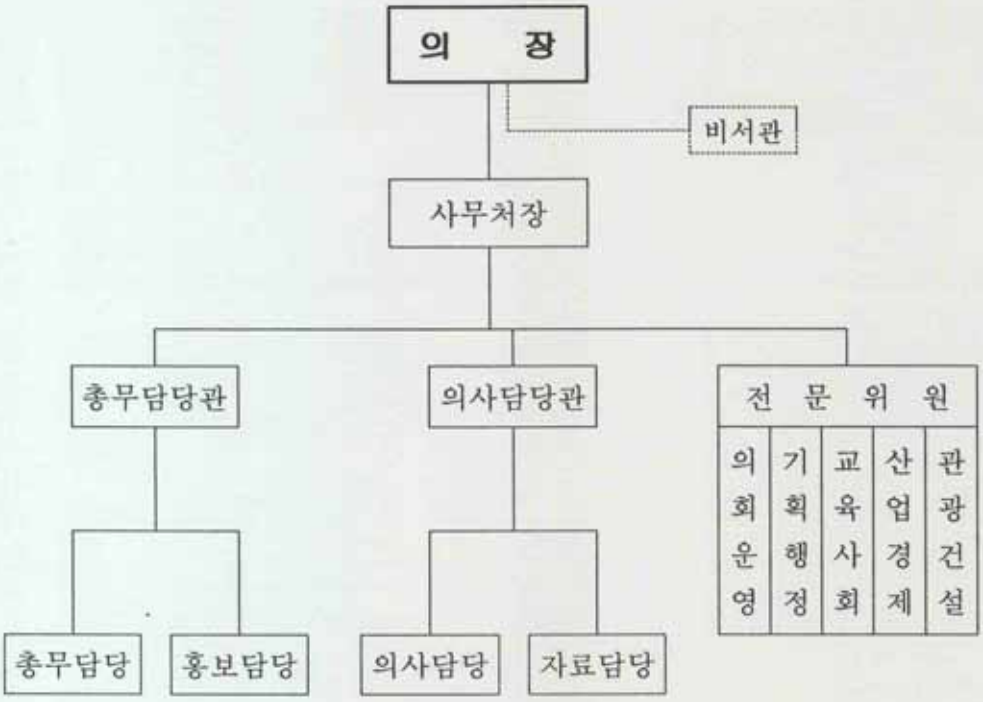
(단위 : 명)

총 계	제4대 의회 ('91. 7~'95. 6)		제5대 의회 ('95. 7~'98. 6)		제6대 의회 ('98.7~ 2000. 6)	비 고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5,164	401	1,102	934	275	2,452	

第 4 節 議會事務處

1. 機構 및 定員

1) 기 구



2) 정 원

구분 / 실별	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행정3급	행별4급	행별5급	행정6급	행별7급	사서7급	소계	7급	8급	9급	10급
계	56	33	1	7	6	10	8	1	23	1	4	9	9
총무담당관실	19	9	1	1	3	2	2	-	10	1	2	3	4
의사담당관실	17		-	1	2	4	1	1	8	-	2	6	-
전문위원실	20	15	-	5	1	4	5	-	5	-	-	-	5

2. 部署別 機能

구 분		분 장 사 무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	○ 기본운영계획 수립, 종합조정 서무, 문서, 보안 ○ 의원등록 및 신분증 발급 ○ 인사, 복무, 포상, 관인 관리 및 보안업무 ○ 의회의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의회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 집행·결산 ○ 청사 및 부대시설, 차량, 물품관리 ○ 처내 타실·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홍보담당	○ 의정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의정홍보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 의정회보 발간 및 홍보 영상물 제작 ○ 의정활동 사진촬영·보관 및 기자재 관리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	○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 각종 의안의 관리(접수, 분류, 회·배부, 이송등) ○ 청원, 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도정질문, 서면질문 관련 업무처리 ○ 실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
	자료담당	○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및 보관관리 ○ 의회사 편찬, 의정자료 발간 및 의회자료실 운영관리 ○ 각종 회의상황 기록정리, 보관 및 회의록 발간·열람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실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일반행정업무

3. 議會資料室 運營

1) 현 황

○ 면 적 : 112.2㎡(33.94평)

○ 집 기

- 서 가 및 책 장 : 30조
- 열 람 테 이 블 : 4조(12인용)
- 도 서 수 납 대 : 1조
- 잡 지 서 가 : 4조
- 전 자 복 사 기 : 1대
- 십 진 분 류 표 : 1조
- 다기능사무기기 : 2대
- 전동제본천공기 : 1대
- 책 수 레 : 2대

○ 전담인력 : 사서 7급 1명

○ 장 서 수 : 총 17,987권 (2000. 6.30현재)

총 류	철 학	종 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 술	어 학	문 학	역 사	기 타 회의록
461	428	102	9,909	56	1,724	282	193	1,848	982	2,002

2) 도서대출운영

이용자별 / 년도별	계	의 원	공 무 원	일 반 인	비 고
1992	321	73(22.7%)	245(76.3%)	3(1.0%)	
1993	460	30(6.5%)	379(82.4%)	51(11.1%)	
1994	1,753	30(1.7%)	1,227(70.0%)	496(28.3%)	
1995	3,364	127(3.8%)	3,184(94.6%)	53(1.6%)	
1996	2,921	68(2.3%)	2,673(91.5%)	180(6.2%)	
1997	4,169	101(2.4%)	3,887(93.2%)	181(4.4%)	
1998	5,878	233(4.0%)	5,535(94.1%)	110(1.9%)	
1999	7,548	742(9.8%)	6,083(80.6%)	723(9.6%)	
2000.1.1 ~ 6.30	3,400	310(9.1%)	2,617(77.6%)	473(13.9%)	

4. 議會施設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건　　평 : 2,222평 (지상7층)
○ 착　　공 : 91. 12. 30
○ 완　　공 : 93. 10. 20
○ 시 설 비 : 3,792백만원
○ 시설배치

층 별	시 설 명	면적(평)	비 고
총 계		1036.4	
2 층	계	124.2	
	관광건설위 전문위원실,	10.4	
	사 무 실,	21.8	
	회 의 실	36	
	의 회 회 의 실	56	
3 층	계	141.4	
	교육사회위 전문위원실,	10.4	
	사 무 실,	21.8	
	회 의 실	36	
	산업경제위 전문위원실,	10.4	
	사 무 실,	32.8	
	회 의 실	30	
4 층	계	124.2	
	기획행정위 전문위원실,	10.4	
	사 무 실,	21.8	
	회 의 실	36	
	특별위원회 사 무 실,	13	
	회 의 실	27	
	사 진 실	8	
	창 고	8	

층 별	시 설 명	면적(평)	비 고
총 계		1036.4	
5 층	계	127.6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실,	10.4	
	사 무 실,	21.8	
	회 의 실	36	
	특별위원회 사 무 실,	10.4	
	회 의 실	49	
6 층	계	353.6	
	본 회 의 장	104	
	의 원 휴 게 실	33.6	
	의 정 전 시 관	13	
	도 청 대 기 실	13.2	
	교 육 청 대 기 실	9.2	
	의 장 실	42.2	
	부 속 실	14.5	
	부 의 장 실 (2)	29	
	사 무 처 장 실	14.5	
	총무담당관 사무실	11.2	
	의사담당관 사무실	11.2	
	총 무 담 당 관 실	29	
	의 사 담 당 관 실	29	
7 층	계	165.4	
	의 회 자 료 실	33.9	
	행 정 자 료 실	58	
	기 자 실	16.8	
	창 고	24.7	
	문 서 고	32	

5. 議會事務處 幹部名單

직 위	직 급	성 명	의회전입일자	비 고
사무처장	지방부이사관	김승기	2000. 3. 4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김영웅	2000. 1. 1	
의사담당관	〃	정노환	2000. 1. 1	
전문위원	지방별정4급 상당	김영만	1998. 9. 11	
〃	지방서기관	김종만	1999. 9. 7	
〃	지방서기관	김동윤	1999. 9. 7	
〃	지방서기관	신익수	1998. 9. 11	
총무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이석진	2000. 1. 12	
홍보담당	〃	송명선	2000. 1. 12	
비서실장	〃	이수연	1999. 9. 15	
의사담당	〃	박웅희	1994. 7. 25	
자료담당	〃	박상용	2000. 1. 12	
의회운영담당	〃	전관주	1999. 9. 15	

6. 主要業務 推進狀況

〔 1998년도 〕

1. 의회운영

○ 임시회 및 정기회 개최

· 정기회 : 1회, 40일

· 임시회 : 6회, 47일

○ 안건처리

· 도정보고 청취 : 2회

· 도정질문 : 2회, 4일, 10명

· 예산·결산 심의 : 3회

· 조례·건의안 : 45건

· 행정사무감사 : 1회

○ 의원연찬회 개최 : 5회

2. 청원·진정 등 민원처리

○ 접수 : 49건

· 해결 28, 불가 14, 자료활용 7

○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대화 : 12회

○ 관련단체와 간담회 : 8회

○ 민원사항 현지확인 : 15회

○ 도·의회간 정례협의의 날 운영 : 12회

3. 의정자료 제공

○ 제5대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 : 600부

○ 의회수첩 제작 : 1,000부

○ 의회자료실 자료확보 : 1,483권

4. 의정 홍보활동

○ 언론매체와의 대담 : 29회

· 방 송 : 11회

· 신 문 : 18회

○ 의정회보 발간 : 매월, 5,500부

5. 주요 건의

○ 수해복구비의 전액 국고보조지원을 위한 건의 ('98. 9. 30)

○ 한국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건의 ('98. 10. 8)

○ 충북은행 독자생존 건의 ('98. 11. 10)

〔 1999년도 〕

1. 의회운영

○ 정기회 : 1회, 40일

○ 임시회 : 11회, 80일

○ 의제중심의 의회운영

· 도정시책보고 청취 : 2회

· 도정질문 : 2회, 8명

· 예산안 승인 : 2회

· 조례·승인안 등 처리 : 139건

○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 도민 불편사항 현지확인 : 46회

- 시정·개선 촉구 : 156건

- 집행기관 통보 : 5건

○ 도민과의 대화

· 시군 기관장과의 간담회 : 9시군, 50명

· 사회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 3회, 54명

· 주민간담회 : 5회, 330명

· 의회 방청인과의 간담회 : 5회, 693명

○ 의원연찬 활동

· 전체의원 : 4회

· 상임위원회 : 4회

2. 「일하는 의회」상 실천

○ 지역 현안문제 해결 선도

· 충북은행 합병 반대운동 (무산)

· 영월댐 건설 반대 공동선언 (관철)

· 영동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입장 표명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 기　간 : 1999년중

· 인　원 : 7명

· 성　과

- 정비대상 검색 : 188건

- 정　비 : 개정 51, 폐지 9

○ 의회발전 대토론회 개최

· 일　시 : '99. 7. 9

· 참　석 : 226명 (시민, 사회단체)

· 내　용 : 도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등 6개분야

· 성　과

- 전국 최초의 토론으로 대외 이미지 제고

- 자유토론으로서 생생한 여론수렴 계기 마련

3. 발전적인 도정수행 선도

○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사후관리

· 사후관리 대상업무 선정·통보 : 2회, 46건

- 행정사무감사 : 33건

- 도정질문 : 13건

· 도정업무보고시 추진상황 보고 : 2회

○ 진정·민원등 사후관리

· 접　수 : 42건

· 처　리 : 38 (처리중 4)

· 처리내용은 민원관련 지역도의원에게 통지

4. 의정업무 보좌기능 강화

○ 전문위원실 인력보강 : 각 상임위원실에 6급 직원 증원

5. 의정사료 발굴 · 활용

○ 목 적

· 묻혀있던 초기 도의회의 역정을 기록을 찾아 조명

· 도의회의 발전사를 체계 있게 정립하여 보존

○ 사료발굴 실적

· 실 적 : 822점

- 회의 · 속기록 : 29회, 46권

- 의정지, 의안, 사업계획서, 의사일정표, 사진첩 등 : 104점

- 당시의 신문보도 : 672건 ('54~'61)

○ 성 과

· 초창기 도의회의 역정을 사료에 근거하여 조명

· 도의회 회수변경 : '61. 4. 27 제68회 긴급임시회 개최사실 발견

- 제4대 최초회의 회수 68회부터 163회까지를 1회씩 늘리어 적용하기로 의결('99. 9. 20)

○ 활용 및 보존

· 회의 · 속기록 보존용 CD제작 : 5질 (책자 3질 포함)

- 회의록 18회, 속기록 23회, 의회사 등 약 6,500쪽

· 신문보도사료집 발간 : 3권

· 사업비 : 7,000천원

6. 의정업무 정보화 추진

○ 목 적

· 의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운영

○ 전산시스템 설치

· H/W 및 주변장치 : 주전산기 및 PC 20대, 프린터 등

· S/W 구입 : 회의록 관리 프로그램 및 전문검색엔진

· 근거리통신망 설치 : 98pot

○ 자료구축

· 4~6대 회의록 전산입력 : 약 100,000쪽

· 의회자료실 소장자료 전산화 : 15,100권

○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 의회안내, 의회소식, 의원소개, 회의록검색 등 메뉴 구축

· 도민발언대 운영 : 사이버공간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 사업비 : 175백만원

7. 주요 건의

○ 진로쿠어스맥주 입찰에 대한 우리의 입장 ('99. 7. 16)

○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를 위한 건의 ('99. 11. 24)

〔 2000년도 〕

1.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회운영

○ 의회운영

· 정 례 회 : 1회, 7일

· 임 시 회 : 5회, 34일

○ 의제중심의 의회운영

· 도정보고 및 질문 : 각1회

· 결산승인 : 1회

· 의원연찬 : 6회

○ 의원 해외연수

· 기　　간 : 2000. 1. 11 ~ 1. 25 (15일)

· 지　　역 : 유럽

· 참　　가 : 7명

○ 해외교류사업 참가

· 유럽 2명, 하얼빈 2명

○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 충주호 수난구조선 운영상황 확인

· 결식아동 중식지원상황 확인

· 농공단지 운영상황 확인

· 수해상습지역 재난대비상황 확인

○ 지역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

·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 촉구대회 개최

- 일　시 : 2000. 1. 5

- 장　소 : 대회의실 및 시내일원

- 참　가 : 도·시·군의회 의원 및 시민단체 등

2.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실현

○ 학생 모의의회 개최

· 일 시 : 2000. 3. 23 14:00~16:00

· 장 소 : 본회의장

· 참 여 : 도내 2개 고교생 200명

· 내 용

- 의회소개 및 모의의회 개최

- 조례안 심사 및 심의·의결과정 실연

· 성 과

- 민주시민역량 함양

-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에 기여

○ 의회운영의 정보화

· 「도민발언대」 개설·운영

- 다양한 도민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

· 「자유토론마당」 개설·운영

-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도민의견을 수렴

○ 의정활동 홍보

· 의정회보 발간·배부 : 6회 (매회 5,500부)

· 제6대 전반기 의정성과 발간 : 100부

3. 충청북도의회 역사찾기 실천

○ 목 적

· 수집한 초창기 도의회의 사료를 통하여 우리의회의 전통과 연혁을 계승하기 위함

○ 개원 제48주년 기념행사

· 일　시 : 2000. 5. 29

· 참　석 : 150명 (전·현직 도의원, 도단위 기관장,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 행사내용 : 기념식, 의정전시관 개관식 등

○ 「충청북도의회사(1~3대)」 발간

· 부　수 : 500부

· 분　량 : 1,028쪽 (화보 42쪽 포함)

· 사업비 : 30백만원

○ 「의정전시관」 설치

· 장　소 : 본회의장 로비

· 규　모 : 43㎡

· 전시물 : 63종, 107점

· 패　널 : 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 충청북도의회의 변천

· 사업비 : 28백만원

4. 주요 건의

○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건의 (2000. 5. 25)

○ 농촌위기 타개를 위한 건의 (2000. 6. 22)

第 2 章　議政活動

第 1 節　第149回 臨時會
第 2 節　第150回 臨時會
第 3 節　第151回 臨時會
第 4 節　第152回 臨時會
第 5 節　第153回 臨時會
第 6 節　第154回 臨時會
第 7 節　第155回 定期會
第 8 節　第156回 臨時會
第 9 節　第157回 臨時會
第 10 節　第158回 臨時會
第 11 節　第159回 臨時會
第 12 節　第160回 臨時會
第 13 節　第161回 臨時會
第 14 節　第162回 臨時會
第 15 節　第163回 臨時會
第 16 節　第165回 臨時會
第 17 節　第166回 臨時會
第 18 節　第167回 臨時會
第 19 節　第168回 定期會
第 20 節　第169回 臨時會
第 21 節　第170回 臨時會
第 22 節　第171回 臨時會
第 23 節　第172回 臨時會
第 24 節　第173回 臨時會
第 25 節　第174回 定例會
第 26 節　第175回 臨時會

第 1 節 第149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49회 임시회는 제6대의회 원구성을 위한 최초집회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98. 7. 1 집회공고 하였고 제6대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상임위원장 선거와 199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7월 9일 9시 30분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8. 7. 9 ~ 7. 11 (3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의장·부의장 선거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상임위원장 선거
○ 1997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진호 의원, 신택수 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5건	-	-	-	-	5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8. 7. 9(목)

○ 의장·부의장 선거
· 의　장 : 김준석
· 부의장 : 권영관, 박종기

□ 제2차 본회의 - '98. 7. 10(금)

○ 제1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8. 7. 9 ~ 7. 11(3일간)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상임위원장 선거

○ 의석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관한 건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8. 7. 9(목) 11:31~11:53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2시간 38분 (53분)	
1차(7. 9)	09:31~10:33	1시간 02분
2차(7. 10)	10:04~11:34	1시간 30분
3차(7. 11)	10:07~10:13	06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률 : 100%)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3	1	2	3
27명	27	27	27	-	-	-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원회	'98. 7.10	1	1. 간사선임의 건 · 옥천 이근성 위원 선임 2. '9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른 추천 협의의 건 · 김대호 , 김소정 의원 추천 결정 3.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98. 8. 25 ~ 9. 2(9일간)
	'98. 7.11	2	1.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안 · 회기 : '98. 7. 21 ~ 7. 25(5일간)
기획내무 위원회	'98. 7.10	1	1. 간사선임의 건 · 괴산 한현태 위원 선임
교육사회 위원회	'98. 7.10	1	1. 간사선임의 건 · 청원 박노철 위원 선임
농업경제 위원회	'98. 7.10	1	1. 간사선임의 건 · 옥천 유동찬 위원 선임
관광건설 위원회	'98. 7.10	1	1. 간사선임의 건 · 음성 김소정 위원 선임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8	8	8				
의회운영 위원회	4	4	4				
기획내무 위원회	1	1	1				
교육사회 위원회	1	1	1				
농업경제 위원회	1	1	1				
관광건설 위원회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49회 임시회 기간을 '98. 7. 9일부터 7. 11일까지 3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일반안건	1	1	1					

第 2 節 第150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50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98. 7. 13 소집공고 하였고 상반기 도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7월 21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8. 7. 21 ~ 7. 25 (5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6건

○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 회의록 서명의원 : 이길하 의원, 신대식 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8건	6	-	-	-	2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8. 7. 21(화)

○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8. 7. 21~ 7. 25(5일간)

○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 제2차 본회의 - '98. 7. 25(토)

○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 관한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8. 7. 21(화) 14:02~14:10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시간 11분 (36분)	
1차(7. 21)	14:10~15:09	1시간
2차(7. 25)	11:02~11:13	11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8.1%)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27명	27	26	-	1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98. 7.25	1	1.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1998. 8.25~8.29(5일간) 2.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처
기획내무위원회	'98. 7.21	1	1.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공보관실, 감사실
	'98. 7.22	2	1.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 · 기획관리실,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98. 7.23	3	1.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 ·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98. 7.24	4	1.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 · 내무국, 증평출장소
교육사회위원회	'98. 7.22	1	1.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교육청 2.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7.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 7.23	2	1.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 ·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98. 7.24	3	1.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 · 사회복지국, 옥천전문대학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농업경제 위 원 회	'98. 7.22	1	1.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농정국
	'98. 7.23	2	1.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 · 공업경제국
	'98. 7.24	3	1.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 · 농촌진흥원
관광건설 위 원 회	'98. 7.22	1	1.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문화관광국
	'98. 7.23	2	1.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 · 건설교통국
	'98. 7.24	3	1.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 · 개발사업소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2	12	12				
의회운영 위 원 회	2	2	2				
기획내무 위 원 회	1	1	1				
교육사회 위 원 회	7	7	7				
농업경제 위 원 회	1	1	1				
관광건설 위 원 회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50회 임시회 기간을 '98. 7. 21일부터 7. 25일까지 5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업무보고 주요내용

〔 **의회사무처 소관** 〕

○ 의회운영
○ 의안의 철저한 관리
○ 청원·진정 등 민원처리
○ 의정자료 및 회의 기록관리
○ 의정홍보활동 강화
○ 의정능력 배양 및 직원 사기진작
○ 경제 살리기의 선도적 실천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일반안건	1	1	1					

□ 기획내무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공보관실 소관** 〕

○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홍보
○ 친근감 있는 「새충북」 발간

○ 유선방송을 통한 도정홍보 극대화
○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홍보
○ 언론보도 분석 결과의 도정 반영
○ 오보 대응체제 구축

〔 감사실 소관 〕

○ 정기 행정감사의 강화
○ 공직기강 확립과 사기진작
○ 진정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
○ 「현장행정」 지원을 위한 특별감사
○ 일상감사의 정착화
○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내실화

〔 기획관리실 소관 〕

○ 21C충북발전계획 수립
○ 지역현안 및 주요 국책사업 관리
○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 행정규제 정비 추진
○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
○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혁신
○ 현장 위주 확인평가 강화
○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
○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 개선
○ 국제교류의 내실 있는 추진
○ 국제통상 활동 강화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98하반기 재정운용
○ '99지역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
○ 전국 자치복권 운영
○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
○ 지방재정 및 투·융자사업 투자심사
○ 법무행정의 내실화 추진

○ 행정소송의 신속·공정한 수행
○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충북지역 생산품 유통시스템 구축
○ 도정의 전산화 추진
○ 지리정보시스템 추진
○ 통계조사업무 추진

〔 증평출장소 소관 〕

○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
○ 성숙한 자치발전 기반조성
○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 활기찬 지역 개발 촉진
○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건설
○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함
○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함
○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
○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함
○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교육사회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보건환경국 소관 〕

○ 보건의료시혜 및 위생기능 확대
○ 환경보전 기반확립
○ 물관리 행정의 강화
○ 환경분쟁의 효율적 대처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 전염병 및 신종질환의 발생과 확산예방
○ 식품·의약품의 안정성 확보
○ 환경측정망의 내실 운영
○ 배출시설의 환경오염도 검사 강화
○ 상수도 및 먹는물 등 정밀검사
○ 시험·검사 기술수준의 향상
○ 창의적 조사·연구로 선제행정 추진

〔 사회복지국 소관 〕

○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가정복지사업
○ 여성복지사업
○ 여성회관운영

〔 교육청 소관 〕

○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 질 높은 교육으로 경쟁력 신장
○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

〔 도립 옥천전문대학 〕

○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교육
○ 우수학생 유치로 명문대학 육성
○ 지역에 봉사하는 프로그램 운영
○ 장학제도 운영
○ 산학협동 추진
○ 대학시설·장비 확보 추진
○ 현안사항(2건)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 조사연구사업
○ 보건분야 검사사업
○ 환경분야 검사사업

〔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

○ 새교육시설을 최대 활용한 「열린교육」 운영
○ 봉사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
○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는 「질높은 교육」 운영
○ 「전산교육, 외국어교육의 내실화」 도모
○ 이론과 실무를 겸한 「교과서적인 교재」 편찬
○ 공정·객관적인 교육평가 및 관리

〔 도민교육원 소관 〕

○ 도민교육 전과정에 의식교육 실시
○ 「강의와 현장이 연계」 된 교육운영
○ 「우수강사진 확보」로 교육의 질 향상
○ 「분임토의」의 발전적 운영
○ 알찬 교육교재 발간
○ 교육이수자의 지속관리 및 성과평가

⊙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

○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을 위한 선거사무종사자, 투·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에게는 1일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3항"을 "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4항"으로 함

○ "국내 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교육법 제158조"를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으로 함

○ 특별장학생에 대한 공납금의 면제범위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로 함

○ 특별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중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교육법시행령 제71조 및 제112조의8 제3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 제73조, 제81조 및 제92조"로 함

○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 제1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 조례안 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주요골자** 〕

○ "괴산학생야영장"과 "음성학생야영장"을 폐지

○ "음성학생야영장조촌분원"을 "음성학생야영장"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6	6	6					
조례안	6	6	6					

□ 농업경제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농정국 소관** 〕

○ 식량작물의 안정생산

○ 농업생산기반 조성

○ 지역농업을 이끌 전문농업인 육성

○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수출촉진

○ 농산물유통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 내수면어업 육성

○ 농촌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원 개발

○ 산림자원 및「생명의 숲」조성

○ 현안사항(3건)

〔 공업경제국 소관 〕

○ 지역경제의 안정적 관리
○ 기업하기 좋은 충북만들기
○ 기술·품질우위의 기업 육성

〔 농촌진흥원 소관 〕

○ 주요농작물 품종 갱신
○ 식량작물 생산성향상 기술개발
○ 에너지 절감 및 품질향상 연구
○ 수출 유망작목 육성 및 경쟁력 제고
○ 농업 환경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
○ 농산물가공 및 버섯 재배기술 연구
○ 농업여건을 감안한 경영효율성 제고
○ 농촌지도사업 적극 추진

□ 관광건설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문화관광국 소관 〕

○ 격조높은 문화예술의 창달
○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 충북 체육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
○ 건전한 청소년지도 및 육성
○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산업 개발

〔 건설교통국 소관 〕

○ 합리적 토지이용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국토보전
○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정착
○ 효율과 안전이 극대화된 도로망 구축
○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주거문화 향상
○ 주민 편익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 개발사업소 소관 〕

○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第 3 節 第151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51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98. 7. 28 소집공고 하였고 수해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8월 25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8. 8. 25 ~ 8. 29 (5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7건

○ 수해상황 보고

※ 회의록 서명의원 : 박노철 의원, 구본선 의원

2) 의안처리현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9건	7	-	-	-	2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8. 8. 25(화)

○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8. 8. 25~ 8. 29(5일간)

○ 수해상황 보고

□ 제2차 본회의 - '98. 8. 29(토)

○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원안가결)

○ 5분 자유발언

· 농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

- 사이판 한인봉제공장 취업사업의 심도 있는 추진 촉구

· 농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

- IMF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 촉구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8. 8. 25(화) 14:00~14:09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56분 (28분)	
1차(8. 25)	14:09~14:26	17분
2차(8. 29)	11:03~11:42	39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0.7%)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27명	24	25	3	2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98. 8.28	1	1.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1998. 9.18~9.30(13일간)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기획내무 위 원 회	'98. 8.25	1	1.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98. 8.26	2	1.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계속)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계속)
	'98. 8.27	3	1.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계속)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계속)
농업경제 위 원 회	'98. 8.26	1	1.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관광건설 위 원 회	'98. 8.27	1	1.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 수해상황 및 복구계획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0	10	8	2			
의회운영 위 원 회	2	2	2				
기획내무 위 원 회	6	6	4	2			
농업경제 위 원 회	1	1	1				
관광건설 위 원 회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51회 임시회 기간을 '98. 8. 25일부터 8. 29일까지 5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일반안건	1	1	1					

□ 기획내무위원회

⊙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규제·통제부서 기구조정

· 국단위 조직인「감사실」을 과단위 조직인「감사관」으로 축소

·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지, 「자치행정국」으로 업무이관

○ 유사 중복기능인「사회복지국」과「보건환경국」을 통합, 「복지환경국」으로 개편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정원조정(감축) : 317명(국가직 7명 별도)

· 일반행정 부문 237명 · 의회행정 부문 7명

· 소방행정 부문 73명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1 가구당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율 폐지

· 그동안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2배)하던 것을 ⇒ 일반세율로 완화하여 과세토록 함

※ 자동차 취득시 현행 지방세법상 일반세율

· 취 득 세 : 1000분의 20

· 등 록 세 : 1000분의 50 (단 경자동차는 1000분의 20)

☞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제132조의2 제3항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자치단체장 여비지급 기준 명시

· 도지사 : 특호 라목(차관급상당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여행하는 경우 운임(국외여비 제외),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제22조의 2를 신설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사업 중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규정을 신설

○ 제6조 제1항 내용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현행 관사사용 대상공무원을 도지사, 부지사, 실국원장 등 소속 공무원에서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으로 변경함

○ 현재 관사의 구분은 1급·2급·3급·4급 관사로 구분하던 것을 4급 관사를 폐지하고 1급·2급·3급 관사로 변경정비

○ 기존에 우리도가 부담하던 1급 내지 3급 관사에 관한 보일러 운영비를 1급 내지 2급으로 변경코자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6	6	4	2				
조례안	6	6	4	2				

□ 농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第 4 節 第152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52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98. 8. 31 집회공고 하고 충청북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9월 18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8. 9. 18 ~ 9. 30 (13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3건
○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 도정질문 : 9. 28 ~ 9. 29(2일간), 4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명)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인)
※ 5분 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구본선 의원)
- 수해복구공사는 개량복구로 완벽한 공사요망
※ 회의록 서명의원 : 이근성 의원, 유동찬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11건	3	1	2	1	4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8. 9. 18(금)

○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8. 9. 18 ~ 9. 30(13일간)
○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가결)
· 위원장 : 박재수 의원 · 간 사 : 이완영 의원
· 위 원 : 김진호, 오장세, 박노철, 구본선, 유동찬, 김형태, 김소정 의원
※ 존속기간 : 의결일로부터('98. 9.18) ~ '99.6.30까지
○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제2차 본회의 - '98. 9. 28(월)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기획내무위원회 신대식 의원

질문요지 1

○ 어음부도율, 실업률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은?
○ 충북경제회생을 위한 기본시각과 방향이 정립된 21C 비젼은?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최우선과제를 두고 충북발전 기본계획인 CHANGE 21 계획 수립 중
○ 지역자본 육성, 개성 있는 관광산업 등의 육성으로 21C 우뚝설 희망찬 충북건설에 최선 노력

질문요지 2

○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인지?
○ 직불합의 대상과 합의사항 및 직불실적은?
○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군까지 확산시킬 대책은?
○ 불공정 하도급관행에 대한 대책은?

【 답변 :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
○ 우리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임
○ 직불 합의업체는 23개업체이며 직불은 4건에 10억 6,500만원임
○ 5개시·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도 입안중에 있음
○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하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센터 운영, 합동지도 단속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질문요지 3

○ 입주업체의 기술개발 촉진 지원금 신설 및 신용대출 방안?
○ 판매경쟁력 증대를 위한 홍보대책 및 도민한마음운동 전개 방안은?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자금 계속 지원
○ 관계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 제도적 장치 마련
○ 산하기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국제통상센터 및 명예대사를 통한 수출지원

질문요지 4

○ 농산물의 부문별 영향분석과 소득원별 IMF 대응전략은?

【 답변 : 농정국장 박경국 】

○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유통비 절감노력과 도매시장 중심의 물류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도·농간의 직거래 활성화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고급육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
○ 농가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 등에 주력
○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업용 자재의 절감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노력 지속적 추진
○ 열린 농정협의회 설치로 농업인의 의견을 농정에 반영

기획내무위원회 박재수 의원

질문요지 1

○ 청주·청원 통합당위성에 대한 의견은?
○ 반대주민 설득 등 통합을 강력 추진 할 용의는?
○ 통합에 부정적인 공무원을 통합의 전도사로 탈바꿈 시킬 용의는 있는지?
○ 민간 주도의 청주·청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행정구역 통합문제는 충북 전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생활권, 지역개발, 주민화합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하는 복합적인 문제임.

○ 주민의사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폭 넓게 고려한 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질문요지 2

○ 증평출장소 존치문제 등 2차 조직개편 내용은?

【 답변 :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

○ 증평출장소 존치문제는
- 우리도의 감축비율인 11.8%인 2담당관, 2과, 27명 우선감축
- 차후 행정자치부 최종 방침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직개편

○ 2차 조직개편은 2000년까지 20%내외 추가 감축할 계획으로
- 환경시설분야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 공무원교육기관의 정비와
- 읍·면·동의 기능전환(가칭"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질문요지 3

○ 금년도 지방세 및 국가지원 재정의 감소예상액 분석현황은?

○ 충청북도 문화상제도를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 :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

○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감액편성으로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채 발행 및 일시차입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및 경상경비의 절감 등 초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음.

○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문화상 부활문제를 결정할 계획임.

질문요지 4

○ 공공근로사업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로 사업을 보완하고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실효성 제고

○ 지역특성에 맞고 공공서비스 기능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특색사업 중점발굴 추진계획임.

질문요지 5

○ 청주 대성아파트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대성아파트 주민 및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께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검토여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 '93. 7. 1 대한건축사회 충청북도건축사회의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판정

○ 풍수해대책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퇴거조치 명령

○ '96년 이후 16차례에 걸쳐 이주와 재건축 추진촉구

○ '98. 7. 8 옹벽 위 누수 및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포장(384㎡) 완료

○ '98, 7~8월 2회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보 및 기둥 33개소에 H빔과 철 파이프로 보강조치

질문요지 6

○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며 도민에게 꿈과 희망, 자신감을 부여하고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 실현의지 확산을 위한 문화·관광이벤트 추진내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 답변 :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

○ 지역특성에 부합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다각적으로 구상·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모든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축제
- 지역의 경제적 이익창출과 실익을 찾는 경제적인 이벤트 개최
-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 연도별 사업구상(안)

- 제1차년도(1999년) : 도지사가 출연하는 관광홍보 CF 외 6개 사업
- 제2차년도(2000년) : 청주국제인쇄문화축제외 6개사업
- 제3차년도(2001년) : 밀레니엄 터널 조성사업 외 5개사업

질문요지 7

○ 청주예술의전당운영비 50%지원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이유?
○ 올해 부터라도 지원할 용의 및 지원규모
○ 청주시립예술단에 대한 도비지원 용의 및 지원규모는?

【 답변 :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

○ 청주예술의전당 개관당시 청주시 연간 운영비가 매년 20억원이 소요될 것을 예상 운영비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개관초기 어려움을 감안 10억원을 지원

- '96년 8억원, '97년 3억원, '98년(금년)에 2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음.

○ 시립예술단에 대한 도비지원은 시립교향악단에 '95년도 1억 7천만원, '96년도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96년도 이후 도비 지원실적 없음.

○ 문화예술진흥사업이 도비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으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도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갈 사항임.

□ 제3차 본회의 - '98. 9. 29(화)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이근성 의원

질문요지 1

○ 팔당호 대책시안 등 댐주변 주민에게 희생 및 규제가 우선되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우리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민 재산권행사와 지역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보안림 지정이라든지 호소 수질보전구역 지정 등은 수질개선 종합대책에서 제외되거나 보완되도록 노력중임.

○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비의 지원확대 등 상수원 수질보전과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질문요지 2

○ 21C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은?

○ 옥천공고 폐교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도립 전문대 병설고를 설립할 용의는?

【 답변 :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

○ 대학 학생수를 2,000명 내로 증원, 대학 자생력을 높이고 시설과 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육성.

○ 공업계고교 신설은 학생수 감소추세에 있어 불합리하며 교육부로부터 내실화를 위한 신설, 증설이 억제토록 지시되어 어려운 실정임.

질문요지 3

○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책은?

○ 보건지소 및 진료소 통폐합 문제

【 답변 :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

○ 전염병 발생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등 전염병관리 체계를 확립 전염병 발생에 적극 대처토록 노력

○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통폐합된 곳은 없고 정원만 감축

○ 현 근무요원 자연감소시 까지는 연체제로 운영하고 2차조직 개편시 다시 존치토록 노력

질문요지 4

○ 전국체전 상위권 진입을 위한 대책은?

○ 재정자립도 및 체육시설이 빈약한 시·군의 도민체전 행사 유치를 위한 대비책은?

○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은?

【 답변 :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

○ 충북 체육이 전국체전에서 높은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지역 여건상 실업팀육성을 위한 기업 및 자치단체 재정력이 취약한 실정임.

○ 건전 여가활동과 다목적 생활체육 활동 공간확충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시·군단위 1운동장 1체육관 확보에 두고 추진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종목선정, 시·군의 164개소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어린이체육교실 등 8개사업 추진

질문요지 5

○ 학교급식 전면확대에 따른 대처방안, 급식위생관리 방안 및 결식아동 대책과 현황은?

○ 학교체육 및 엘리트 체육인육성 예산지원 부족에 따른 대처 방안은?

○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은?

【 답변 : 교육감 김영세 】

○ 중학교는 2002년까지 고등학교는 내년 상반기까지 급식시설 완료 및 실직자 자녀 중식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외부단체 지원요청

○ 학교운동부 육성현황은 총 272개교이며, 지원금액은 총 6억 3,683만원이고, 앞으로 육성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질문요지 6

○ 학생 자원봉사 활동의 보완대책은?

【 답변 :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

○ 학생 봉사활동의 사전사후지도 철저
○ 교원연수 및 학부모 홍보
○ 지역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학생 봉사활동 터전 확보

농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

질문요지 1

○ 권역별 대학 및 지역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및 우대방안은?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충북대학교 및 건국대학교에 여성농업인을 뽑도록 주선
○ 농업관련 대학이 없는 지역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사정에 맞도록 검토 추진
○ 공무원교육원에 다양한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열린농정협의회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질문요지 2

○ 도정의 경영화를 위한 전담팀 구성용의 및 공약할 의향은?

【 답변 :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

○ 금번 1차 조직개편시 발생한 잉여인력을 실업대책 및 당면 현안사업 분야에 새로운 팀조직으로 투입 운영할 계획이며
○ 실국별로 TASK PORCE를 구성, 도정경영화 및 행정규제개혁 등 주요시책을 능동적으로 전담토록 추진하고 있음.

질문요지 3

○ 지역특화산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와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대응책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 답변 :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

○ 우리도의 계획반영사항은

- 안중~삼척간, 당진~울진간, 보령~영덕간 3개의 동서축 지속적 추진 등

○ 충북개발연구원과 협조, 지역대응논리 확립과 충북CHANGE21을 보완, 확정하여 지역발전 인프라를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임.

질문요지 4

○ 충북개발연구원의 농업부문 전문연구원 확보문제

【 답변 :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

○ 연구원의 재정여건상 연구원 증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구원 증가보다는 관련 분야의 교수나 외부연구원 적극 활용

○ 차기년도 연구계획 수립시 농정분야 과제를 외부 전문가 또는 교수, 도 담당공무원과 팀을 구성, 연구실시

질문요지 5

○ 제2차 조직개편시 특별행정기관을 도로 이관할 방안은?

【 답변 :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

○ 도내에는 18개 특별행정기관 사무소가 있음.

○ 정부조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도와 협의한 사항은 없음.

○ 정부의 방침이 시달되거나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인력과 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검토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음.

질문요지 6

○ 실업율 증가에 대비한 도의 대책은?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실업대책 운영체계를 중앙과 협의 강화, 확대할 계획임.

○ 생산성을 높이고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특색사업을 지속발굴, 실직자 일자리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질문요지 7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날 유치 추진의지와 전망은?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성 부족과 기간시설비 중복투자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입지 재선정 불가피.

○ 건교부 입지선정 재검토시 적극대처하고 유망후보지 물색 대응

질문요지 8

○ 지역산업의 입지요건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대책은?

○ 특화산업 유치를 위한 입주지원 대책은?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각계 전문가 의견을 결집, 지역특성과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미래동향을 종합하여 특화산업 선정계획

○ 오창산업단지 내 외국 전용공단 등 설치 검토

질문요지 9

○ 산업평화정착에 효과가 의문인 근로자 해외연수

○ 산,학,관 콘소시엄을 통한 벤쳐, 주요기업 기술인력 지원

○ 재래시장 현대화,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실적

○ 해외시장 개척단사업의 성과와 중단이유는?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근로자 연수 민간이양 문제는 노동단체와 협조개선

○ 산·학·관 컨소시엄은 전문대학까지 확대, 벤처,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에 노력

○ 지역 유통업체의 종래 경영방식 탈피에 행·재정지원 확대

○ 해외시장 개척은 장기적 안목으로 사전 시장조사 등으로 성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추진

질문요지 10

○ 해외 우수인력의 도내 유치 및 도내인력의 해외송출

○ 해외자본 유치방안 및 역외 자금유출 방지방안은?

○ 신용평가기관의 설립의향 및 무역투자공사가 담을 내용은?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명예대사나 해외 취업기관과 협조, 해외취업 증대계획

○ 합작투자, 자본참여 등을 유도하는 외국투자 적극 유치

○ 지역 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은 저냥적 추진

○ 무역투자공사 설립은 충북경제포럼에서 협의 추진계획

질문요지 11

○ 제1차 농발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은?

○ 제2차 농발계획 수립시 담고자 하는 도의 특수정책 및 입안 개요는?

【 답변 : 농정국장 박경국 】

○ 제1차 농어촌발전계획 추진성과로는 품목별 규모화된 전문농업경영체 증가, 기계화영농확대, 첨단기술실용화와 고품질농산물생산, 유통구조개선, 수출품목과 물량을 확대하였고

○ 문제점으로는 자본집약적으로 치중하여 외형은 성장하였으나 내실을 다지는데 다소 부실하여 2차 농발계획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제2차 농발계획에 담고자하는 특수시책으로 열린농정협의회를 결성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발전 장기구상을 정립하고

○ 민선2기 출범후 새로운 시책으로 지역 농업개발 기본계획수립, 종자은행설치 및 야생초화류 시범단지조성, 지역농산물 판매와 관광을 연계한 그린투어계획, 농특산물 수출진흥대책, 농업분야 향토지적재산권 등을 수립한 바 있음.

질문요지 12

○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도의 대책은?

【 답변 : 농정국장 박경국 】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재해지원 확대를 건의하여

- 지원대상 소유경지 2헥타 미만에서 5헥타 미만으로
- 농경지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보조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건의하여 받아들여져 추가로 431농가 1억 5,5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음.

○ 국지적인 농업재해 발생시에도 시·군별로 피해면적이 서리, 우박 30ha이상 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일정기준 이하의 피해시에도 도 재정여건상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해바람.

○ 야생조류 피해 방지대책은 내년도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대상중에 피해방지 효과가 가장 높은 방조망 설치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농림부와 협조추진 하겠음.

질문요지 13

○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응책과 경북 풍기 인삼이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른 도의 대책은?

【 답변 : 농정국장 박경국 】

○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에 따른 도내 관련시설의 존치 및 농가보호대책으로 관계기관을 방문 선별처리를 호소

○ 우리도는 증평지역에 인삼전문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인삼가공공장을 건설

질문요지 14

○ 수출전용 농업단지 육성 및 수출농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등 정책은?

【 답변 : 농정국장 박경국 】

○ 농특산물 수출진흥계획을 수립중임

○ 수출 전진기지 마련을 위한 과실 농업단지에 '96년부터 31억 5천만원 투자하였음

○ 수출농업자금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중점지원중이며

○ 수출전업농에는 도단위 기금, 정책자금 우선지원 계획임.

질문요지 15

○ 각종 공단, 주택단지로 전용된 농지현황은?

○ 시기별, 지구별로 전용농지에 투자된 농지개량사업비는?

○ 임도로 인한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복구비는?

【 답변 : 농정국장 박경국 】

○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382건에 226ha의 농지가 전용 농지개량사업 시행농지 0.3ha 2,824㎡가 농공단지 조성부지

○ '85년, 영동군 용산면 미전지구로 투자비용은 160만원

○ 앞으로 우량농지가 타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억제추진

○ 임도로 인한 산사태 피해복구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복구중임.

질문요지 16

○ 지역명품화 사업은 안정적 판로확보와 인재양성, 땅가꾸기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품목육성에만 치중하는 단기대책 뿐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답변 : 농정국장 박경국 】

○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역별 지대별 특성에 맞는 주산단지조성 및 농업전문 경영인을 육성중 임

○ 직접지불제와 명품, 명소화로 안정판매 확보

질문요지 17

○ 지방공사사무소 이전, LG반도체 합병, 농산물검사소 충북사무소 폐쇄, 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 농어촌진흥공사 등이 미치는 영향은?

【 답변 : 농정국장 박경국 】

○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피해보다 관계기관의 축소로 지역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도에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질문요지 18

○ 소득개발기금 조성목표 달성을 위해 Matching Fund 방식과 이자차액 방식을 도입하여 시·군을 관리할 의향은?

【 답변 : 농정국장 박경국 】

○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6%와 융자금상환 및 운영수익금 등

○ 지금까지 기금조성액 210억원(농협출연금 3,000만원)

○ 기금배정기준 : 시·군경지면적, 농민수, 농가수 등

○ 이자차액 지원 축산농가에 농, 축협 상호금융자금 255억원 긴급융자 이자차액 15억원을 도비에서 지원

○ 본 기금에서 이자지원은 다소 어려운 실정

○ Matching Fund은 사업별로 투자되고 있음. 소득개발기금을 이 방식에 의해 조성하는 것은 시.군재정의 열악성과, 자치단체의 이해관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추진

○ 따라서 토탈개념에 의한 Matching Fund 방식보다 품목별, 사업별로 Matching Fund방식을 적극 활용

질문요지 19

○ 충북산 소의 차별화 전략은?

【 답변 : 농정국장 박경국 】

○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도 측수시책 추진

- 1등급쇠고기 출현율 : 현재 7.3% → (2001) 40%이상

○ 한우 고급육 특화단지 육성 : 현재 6개소→(2002) 12개소

○ 양질의 저가 사료개발 보급

○ 전통 한우 증식분양으로 단지육성

질문요지 20

○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현황은?

○ 개인택시 면허 발급요건 및 양도 양수제도 개선현황은?

○ 지입제 척결 및 법인택시 구조조정 대책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노사협의 지도

- 설문조사결과 사업자의 88%, 종사자의 69% 반대

○ 경영투명성 제고와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 조기정착 추진

○ 택시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기 건의 조치함.

질문요지 21

○ 수해상습지 원상복구에 따른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대책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관련규정 제7조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금년에는 중앙대해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의로 반복 피해발생 지구인 보은 외속리 삼가천외 18개소에 555억 9천 9백만원을 투입 개량복구를 추진

질문요지 22

○ 제천지역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왕암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 제천시에서 공장유치 기획단을 구성 활동전개

○ 단지내 토지 이용계획을 일부조정 유통업무시설과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하여 복합기능 부여 분양촉진

○ 분양가인하 등 입주기업의 비용부담 절감을 위해 진입도로, 용수인입, 하수처리시설 등 간선시설 국고205억원 조기지원

질문요지 23

○ 지역의 핵심산업단지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의지와 전망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 청주, 충주, 제천을 연결하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 청주, 청원지역은 정보전자, 정보통신, 정밀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오송 및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유치
- 괴산, 음성, 충주지역은 섬유, 음식료, 화학, 신소재, 관학, 전자제품 등을 유치하기 위해 음성금왕단지 17만평, 맹동단지 13만평을 조성하고 괴산단지 10만평은 '97. 5월 공사중단된 실정이나 사업 재착수 되도록 적극지원 그리고 충주 첨단산업단지는 사업규모 등을 재검토 지속 추진

질문요지 24

○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추진의지와 전망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 오송보건의료산업단지는

- '99년 하반기 편입토지보상과 2000년 상반기에는 단지조성공사가 착수되도록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의 추진
- 보건복지부 산하 이전 대상기관인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가칭) 등의 이전 계획의 가시화 노력

○ 오창과학산업단지는

- '96. 12. 31일 단지조성공사, 중부고속도로 오창IC, 공항연결도로를 착수하여 중부고속도로 오창IC와 연결도로는 98년 12월 개통 추진
- 산업용지가 80만평중 39만평이 분양되어 분양율이 49%로 부진하나 교통망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게 형성되어 개발잠재력을 갖춘 조건을 적극활용 지속적인 홍보로 공장의 조기입주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대책 강구

질문요지 25

○ 운수회사의 적자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버스제 시행방안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 공영버스의 운영은 재정상 또는 경영기술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 상당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질문요지 26

○ 국제관광마케팅, 관광인력육성 테마관광을 위한 중소기업자본 참여방안 등은?

【 답변 :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

○ 관광지별 특징 있는 관광개발과 새로운 관광이벤트 구상,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강화, 관광전문인력 육성 등 관광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질문요지 27

○ 고유종자, 유전자 등 동식물 자원 보존 대책은?
○ 농업벤처사업 육성방안은?
○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은?
○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농업기술원의 대책은?

【 답변 : 농업기술원 시험국장 정인명 】

○ 국내외 유망 유전자원 수집 특성검정 : 1,509종
○ 첨단농업기술의 농업접목을 통한 실용화 연구
- 무병종묘 대량증식 기술 개발
- 주변 산업기술을 활용한 시설 자동화시스템,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절감 등 실용화 연구
○ 고추역병, 탄저병, 사과갈반병, 흑반병, 반점낙엽병 등 방제대책 추진
○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 상당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제4차 본회의 - '98. 9. 30(수)

○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수해복구비의전액국고보조지원을위한건의안
○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위원장 : 박종기 의원 · 간 사 : 신택수 의원
· 위 원 : 유주열, 박학래, 김주백 의원

※ 존속기간 : 의결일로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 5분 자유발언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8. 9. 18(금) 14:00~14:08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1시간 57분(2시간 59분)	
1차(9.18)	14:09~14:53	44분
2차(9.28)	11:01~15:50	4시간 49분
3차(9.29)	11:03~16:50	5시간 47분
4차(9.30)	11:01~11:38	37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89.8%)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27명	25	24	24	24	2	3	3	3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98. 9.18	1	1.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 · 회기 : '98. 9.19~9.30(13일간)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 도정질문일자 조정관련 - 9.20~9.22→9.28~9.29까지로 변경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8. 9.29	2	1.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98. 10. 8~10. 20(13일간) 2.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기획내무위원회	'98. 9.19	1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8. 9.22	2	1.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치행정국 나. 기획조정실 다. 공보관실 라. 감사관실 마. 공무원교육원
	'98. 9.24	3	1.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증평출장소 나. 소방본부
교육사회위원회	'98. 9.22	1	1.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옥천전문대학 라.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경제위원회	'98. 9.22	1	1.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98. 9.24	2	1.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농업기술원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관광건설 위 원 회	'98. 9.19	1	1.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 조례안
	'98. 9.22	2	1.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문화진흥국
	'98. 9.24	3	1.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건설교통국, 충북개발사업소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8. 9.28	4	1. 수해복구비의 전액국고보조지원건의안 채택의 건
예산결산 특 위	'98. 9.18	1	1. 위원장 선임의 건 ※ 박재수 의원을 선임 2. 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 이완영 의원 선임
	'98. 9.25	2	1.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6	16	13	2			
의회운영 위 원 회	6	6	5	1			
기획내무 위 원 회	2	2	2				
교육사회 위 원 회	1	1	1				
농업경제 위 원 회	1	1	1				
관광건설 위 원 회	3	3	2	1			
예산결산 특 위	3	3	2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52회 임시회 기간을 '98. 9. 18일부터 9. 30일까지 13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주요골자** 〕

○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함

· 출석공무원의 범위

-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 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

· 출석장소 : 본회의장

· 출석일시 : '98. 9. 28 ~ 9. 29 (2일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 **주요골자** 〕

○ 지역 및 상임위원회 안배

○ 위원총수 : 10명

○ 존속기간 : 의결일로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 위원선임 : 의장단에 위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

〔 **주요골자** 〕

○ 위원회 구성 및 총수

· 위원수 : 5명

· 구 성 : 부의장 1명, 각 상임위원회 1명(의회운영위원회 제외)

○ 존속기간 : 의결일로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 위원선임 : 의장에 위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
- 기획내무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농업경제위원회 → 산업경제위원회

○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변경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6	6	6					
조 례 안	1	1	1					
결 의 안	2	2	2					
일반안건	3	3	3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조정
- 국가직 → 지방직 : 14명(농업기술원)
- 지방직 → 국가직 : 1명(경제통상국장)
- 정원변동
  - 지방공무원 : 2,442명 → 2,455명(13명 증)

※ 국가공무원 : 22명 → 9명(13명 감)

○ 정원관리 분야의 자구수정에 따른 정비
- 일반행정부문 : 1,524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537명
- 의회행정부문 : 5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7명
- 소방행정부문 : 820명 →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 820명
- 교육행정부문 : 41명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1명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 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지정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확대

○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함

○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조문 신설

○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함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주요골자

·①안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7조 제5항중 자연재해업무 담당 계장을 자연재해 업무담당으로 계장을 삭제함

⊙ 수해복구비의 전액 국고보조 지원을 위한 건의

〔 **제안이유** 〕

○ 보은군의 경우 '80년, '87년, '97년, '98년도에 수해를 입은 상습 수해지역으로 전국 222개 시군구중 재정력 지수가 0.12로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이번 수해로 인해 지방비의 감소가 예산되는 바,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과중하며

○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규모 재해 또는 누적되는 재해의 발생으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는 재해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재해복구비용중의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지원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바 보은군의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여야 타당함

〔 **수 신 처** 〕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건설부장관, 산림청장**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1	1				
조 례 안	1	1		1				
건 의 안	1	1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 주요내용 〕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수 정 내 역		의결된 예산(안)
		증	감	
합 계	**1,146,981,392**	**57,000**	**57,000**	**1,146,981,392**
일 반 회 계	**902,749,834**	**57,000**	**57,000**	**902,749,834**
의회운영위원회	3,260,621		2,000	3,258,621
기획행정위원회	203,030,366	57,000	55,000	203,032,366
교육사회위원회	145,558,223			145,558,223
산업경제위원회	221,735,299			221,735,299
관광건설위원회	329,165,325			329,165,325
특 별 회 계	**244,231,558**			**244,231,558**
공영개발사업	79,082,061			79,082,061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	1,984,304			1,984,304
의료보호기금운영	30,635,556			30,635,556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2,164,084			2,164,084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1조1469억8,139만2천원중 5,7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 리 내 용					비고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예 산 안	1	1		1				

第 5 節 第153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53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9월 29일 집회공고 하였고, 1997년도 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기 위하여 10월 8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8. 10. 8 ~ 10. 20(13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도, 교육청)
○ 19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교육청)
○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충청북도의회 의원(이길하)징계의 건
-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결정
※ 5분 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 읍면동의 기능전환 기본계획 관련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주백 의원, 김형태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산·결산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8건	-	4	-	1	3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8. 10. 8(목)**
○ 청가허가(김대호 의원)

○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8. 10. 8~10. 20(13일간)

○ 한국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건의안(원안가결)

□ 제2차 본회의 - '98. 10. 20(월)

○ 1997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원안가결)

○ 1997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원안가결)

○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의원(이길하) 징계의 건 -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 5분 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 관련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8. 10. 8(목) 14:00~14:09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41분(20.5분)	
1차(10. 8)	14:10~14:22	12분
2차(10.20)	11:01~11:30	29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87%)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차	2차	1차	2차
27명	24명	23명	3	4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98.10. 9	1	1.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8.10.20	2	1.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1998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기획내무위원회	'98.10. 9	1	1. 199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8.10.12	2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2.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교육사회위원회	'98.10.12	1	1.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8.10.13	2	1.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8.10.14	3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농업경제위원회	'98.10. 8	1	1. 한국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
	'98.10. 9	2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2.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98.10.12	3	1. 1997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관광건설위원회	'98.10.12	1	1. 1997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가. 문화진흥국
	'98.10.13	2	1. 1997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98.10.14	3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 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의 건
윤리특위	'98.10.20	1	1. 충청북도의회 의원(이길하) 징계요구의 건 ※ 일부비공개
	'98.10.27 (폐회중)	2	1. 충청북도의회 의원(이길하) 징계요구의 건(계속) ※ 일부비공개
	'98.11. 2 (폐회중)	3	1. 충청북도의회 의원(이길하) 징계요구의 건(계속) ※ 일부비공개 ※ 출석정지 30일로 결정
예산결산특위	'98.10.17	1	1.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8.10.19	2	1.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안건처리상황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결과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7	27	25	2			
의회운영위원회	5	5	5				
기획내무위원회	4	4	3	1			
교육사회위원회	5	5	5				
농업경제위원회	4	4	3	1			
관광건설위원회	4	4	4				
예산결산특위	4	4	4				
윤리특위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53회 임시회 기간을 '98. 10. 8일부터 10. 20일까지 13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1998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주요골자** 〕

○ 감사기간 : 1998. 11. 21 ~ 11. 30(10일간)

○ 감사방법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

○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된 기관 및 사무

○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2					
일반안건	1	1	1					
승인	1	1	1					

□ 산업경제위원회

⊙ 한국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건의

〔 **제안이유** 〕

○ 한국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지방재정, 담배경작농 등에 손실이 우려되어 청주, 충주, 옥천창의 존치를 요망

〔 **건의기관** 〕 **국회의장, 재정경제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건의	1	1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

〔 주요내용 〕

○ 결산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계	1,136,512,144	1,154,971,040	937,294,234	217,676,806
일반회계	873,264,379	879,632,924	799,545,949	80,086,975
특별회계	263,247,765	275,338,116	137,748,285	137,589,831
공영개발사업	80,589,143	80,029,835	20,391,941	59,637,894
지역개발기금	129,941,392	142,514,544	81,990,919	60,523,625
의료보호기금	25,111,261	25,128,209	24,925,396	202,813
농어촌소득개발기금	7,828,876	7,868,902	7,828,000	40,902
대청호대책	2,097,093	2,097,100	2,097,093	7
증평공업단지조성	17,680,000	17,699,526	514,936	17,184,590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36,512,144**	**1,176,953,557**	**1,154,971,040**	**1,200,648**	**20,781,869**
일 반 회 계	**873,264,379**	**898,486,793**	**879,632,924**	**1,200,648**	**17,653,221**
특 별 회 계	**263,247,765**	**278,466,764**	**275,338,116**	**0**	**3,128,648**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10,530,535	225,673,027	222,544,379	0	3,128,648
· 공영개발 사 업	80,589,143	83,158,483	80,029,835		3,128,648
· 지역개발 기 금	129,941,392	142,514,544	142,514,544		
기 타 특 별 회 계	52,717,230	52,993,737	52,993,737	0	0
· 의료보호 기 금	25,111,261	25,128,209	25,128,209	0	0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7,828,876	7,868,902	7,868,902	0	0
· 대청호대책	2,097,093	2,097,100	2,097,100	0	0
· 중평공업 단지조성	17,680,000	17,699,526	17,699,526	0	0

○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136,512,144	91,371,385	937,294,234	92,704,593	106,513,317
일 반 회 계	873,264,379	843,480,282	799,545,949	58,393,789	14,324,641
특 별 회 계	263,247,765	137,891,103	137,748,285	33,310,804	92,188,67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10,530,535	102,502,921	102,382,860	16,145,740	92,001,935
· 공영개발 사 업	80,589,143	20,512,002	20,391,941	16,145,740	44,051,462
· 지역개발 기 금	129,941,392	81,990,919	81,990,919	0	47,950,473
의 료 보 호 기 금	25,111,261	24,925,396	24,925,396	0	185,865
농어촌소득 개 발 기 금	7,828,876	7,828,000	7,828,000	0	876
대청호대책	2,097,093	2,097,093	2,097,093	0	0
중 평 공 업 단 지 조 성	17,680,000	537,693	537,693	17,165,064	0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1997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승인

〔 주요내용 〕

○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단위 : 천원)

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 지출사유
세항	세세항	사업명				
일반회계 (10건)			1,794,551	1,764,356	30,193	
본청 (8건)			1,765,551	1,735,358	30,193	
법무관리	경상적 경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위탁수수료	5,500	5,500		'93.1.3 발생한 청주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및 상고심에 응소하기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 위탁수수료
공무원교육원 서무관리	자체사업	공무원교육원 수해복구	19,652	18,875	777	'97.7.17 집중호우시 절개지 산사태로 파손된 공무원교육원 대강당 수해복구비
지역개발	자체사업	위험교량개축	150,000	150,000		괴산 청안 부흥3리(분저울) 소교량 교각 침하, 난간파손, 철근노출 등 붕괴위험성이 있어 긴급개축
농산관리	자체사업	벼 병충해 긴급 방제	256,550	256,550		벼 병충해방제 총동원령 및 이삭도열병발생경보 발령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도로건설	자체사업	도로부지 관련 부당이득반환	34,849	32,503	2,346	국가지원 지방도 제52호선인 만승 - 생극간 도로편입용지 점유사용(2필지 605㎡)에 따른 소유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반환금
재해대책	자체사업	재해위험하천 보수	800,000	797,558	2,442	장마대비 수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지구 하천 10개소에 대한 사전정비
		재해위험수리 시설보강	280,000	280,000		장마대비 수해가 우려되는 수리시설물 2개소에 대한 사전 장비보강
		수해복구실시 설계용역	214,000	190,578	23,422	'97.8.3~8.5 도내 일원의 집중호우로 하천 및 도로피해에 대한 복구공사의 조속한 발주로 명년도 우기이전에 조기완공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 지출사유
세항	세세항	사업명				
도로관리사업소운영	경상적경비	지방도수로원퇴직금	50,500	3,974	1,206	지방도 수로원 퇴직(15명)에 따른 부족분
증평출장소 (2건)			29,000	28,998	2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손해배상청구소송배상금	20,000	20,000		'95.2.9 증평출장소 취수장 주변 잡초 소각중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인근 묘목밭 소실사건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판결배상금 지급
농산관리	자체사업	벼 병충해 긴급 방제	9,000	8,998	2	벼 병충해방제 총동원령 및 이삭도열병 발생경보 발령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 지출사유
세항	세세항	사업명				
재고자산	용지조성사업비	가경 2,3지구 미분양용지 감정평가	26,000	24,360	1,640	청주 가경 2,3지구 미분양용지(33필지 36,272㎡) 분양을 위한 재감정평가 수수료

⊙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

〔 주요내용 〕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징수액
합 계	**746,264,275**	**776,663,449**	**776,635,301**	**25,669**	**2,47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3,864,114	463,864,112	463,864,112		
지방교육양여금	165,464,918	147,267,648	147,267,648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2,461,000	32,461,000	32,461,000		
국고지원금	6,073,983	6,070,501	6,070,501		
법정전입금	4,168,632	5,445,914	5,445,914		
비법정전입금	1,195,984	1,180,697	1,180,697		
지원금	3,127	2,210	2,210		
재산수입	5,790,647	6,540,948	6,538,469		2,479
입학금 및 수수료수입	36,801,356	37,194,767	37,169,098	25,669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391,754	406,944	406,944		
잡수입	6,414,544	6,936,429	6,936,429		
이월금	23,134,214	68,792,279	68,792,279		
지방교부세	1	0	0		
주민부담금	500,001	500,000	500,000		

○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불용율%)
합 계	**791,922,340**	**687,534,626**	**59,935,086**	**44,452,628**
교육위원회	735,367	687,750	0	47,617(6.5%)
교육행정비	476,881,494	460,522,575	35,000	16,323,919(3.4%)
교육사업비	5,558,270	4,772,420	0	785,850(14.1%)
학 교 비	72,335,298	66,214,393	1,373,510	4,747,395(6.6%)
사학지원비	49,332,165	46,505,930	79,460	2,026,775(4.1%)
시 설 비	177,429,267	108,779,235	57,727,116	10,922,916(6.2%)
제지출경비	52,326	52,323	0	3
예 비 비	9,598,153	0	0	9,598,153(100%)

⊙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

(단위 : 천원)

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지 출 사 유
세항	세세항	목				
계			**87,000**	**87,000**	**0**	
행정관리 담당관실 운 영 비	기 관 운 영 비	배상금	20,000	20,000	0	충주교현초등학교학생 성폭행사건 손해배상 합의배상금
			67,000	67,000	0	옥천청산초등학교 과학실험실 학생 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배상금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	4	2	2				
결 산 안	2	2		2				
승 인 안	2	2	2					

第 6 節 第154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54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98. 10. 20 집회공고 하였고, 충청북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보고 청취와 건의안·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3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8. 11. 3 ~ 11. 10 (8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7건
○ 충북은행 독자생존건의안
○ 충청북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보고
※ 충청북도의회 의원(이길하)징계의 건
- 출석정지 30일로 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 김대호 의원, 한현태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11건	7	-	-	1	3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8. 11. 3(화)
○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회 기 : 1998. 11. 3 ~ 11. 10(8일간)
○ 충청북도의회 의원(이길하) 징계의 건
※ 출석정지 30일로 의결

□ **제2차 본회의 - '98. 11. 10(화)**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충북은행독자생존건의안(원안가결)

○ 충청북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8. 11. 3(화) 11:03~11:11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72분(36분)	
1차(11. 3)	11:11~11:45	34분
2차(11.10)	11:02~11:40	38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88.9%)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차	2차	1차	2차
27명	23명	25명	4	2

4. 委員會 活動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98.11. 3	1	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 비서실 소관 → "기획행정위원회에 추가"로 수정
	'98.11.10	2	1.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98. 11. 20~12. 29(40일간)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기획행정 위 원 회	'98. 11. 4	1	1.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제2의건국범추진위원회조례안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11. 9	2	1. 현황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교육사회 위 원 회	'98.11. 6	1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안
산업경제 위 원 회	'98.11. 5	1	1.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9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8.11.10	2	1. 충북은행 독자생존건의안 채택의 건
관광건설 위 원 회	'98. 11. 4	1	1.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3	13	8	3		2	
의회운영 위 원 회	3	3	2	1			
기획행정 위 원 회	5	5	4	1			
교육사회 위 원 회	1	1	1				
산업경제 위 원 회	3	3	1			2	
관광건설 위 원 회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54회 임시회 기간을 '98. 11. 3일부터 11. 10일까지 8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비서실을 삽입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2					
조 례 안	1	1	1					
일반안건	1	1	1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정년연장 조항 삭제

○ 휴직에 따른 직권면직 규정 보완

○ 휴직기간 및 효력에 관한 규정 신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휴직에 따른 직권면직 규정 보완

○ 휴직기간 및 효력에 관한 규정 신설

○ 근무 상한연령 단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 **주요골자** 〕

○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과 제2의 건국을 위한 지방적 실천을 위한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함

○ 위원장 1인과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되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도에 두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명칭을 "충청북도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로 수정함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세 감면범위 확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 받은 임대주택용 부동산의 경우 현재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에서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

○ 기타 조문의 보완·정리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	4	3	1				
조 례 안	4	4	3	1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 **주요골자** 〕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

○ 각종 검사·시험의뢰시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 징수방법, 시험성적서교부방법 등 명시

○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 산업경제위원회

⊙ 충북은행 독자생존 건의

〔 **주요내용** 〕

○ 충북은행이 시중은행에 흡수 합병되는 것을 방지하고 독자생존할 수 있도록 건의

○ 지역산업자금 조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충북은행의 존치 건의

〔 **심사결과** 〕 **원안채택**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건 의 안	1	1	1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과징금의 징수·독촉 및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용

○ 운영기금의 적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

○ 비수익 노선의 선정 및 보상방법 등 명시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주요골자

안 제2조중 "10일 이내의"를 "10일 이내로"로

안 제7조 제2항중 "운수사업자가"를 "운송사업자가"로 함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第 7 節 第155回 定期會

1. 開會背景

제155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98. 11. 10 집회공고 하였고, 1999년도 도 및 교육청의 예산안과 1998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도, 교육청), 도정질문 등을 위하여 1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8. 11. 20 ~ 12. 29 (40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15건
○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도정질문('98. 12. 1 ~ 12. 2, 4명)
○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소정 의원, 유주열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34건	15	4	-	-	15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8. 11. 20(금)

○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8. 11. 20~12. 29(40일간)
○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제안설명 포함)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 연설(제안설명 포함)
○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가결)

□ 제2차 본회의 - '98. 12. 1(화)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질문요지 1

○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등은 법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정용 지하수 등은 평생 수질검사 한번 받지 못하고 음용수로 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은?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도내 지하수개잘 이용현황은 총 7만 7,542개의 지하수공이 개발 이용되고 있고 생활용수 61%, 농업용수 37% 그리고 공업용수 및 기타용수가 2%활용
○ 수질검사 전문기관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제천시 상수도사업소 등 2개소가 있음
○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공동우물이나 간이상수도, 학교우물 등은 시·군보건소에서 매분기마다 간이수질검사 실시

질문요지 2

○ 청주시에서는 82년부터 지북정수장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어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유해성 논란이 있는 불소화사업을 청주시를 선택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는바 이는 청주시민에 대한 특혜 내지 시험인지?
○ 특혜라면 나머지 시·군은 무엇이며 특혜가 아니라면 임상시험의 대상인지?
○ 상수도 적자에도 불구하고 1년에 1억8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불소화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 불소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으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

【 답변 :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

○ '98년 서울특별시에서 대학교수, 의사, 언론인 등이 참석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바 있음.

○ 전국적으로 '81년도 경남 진해를 시작으로 현재 37개 정수장에서 2000년까지 85개 정수장으로 확대시행 예정.

○ 한국구강보건협회 수돗물 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의 연구결과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최선의 대안을 마련 추진하겠음.

질문요지 3

○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으로 임대아파트 부도시 전세금 전체를 떼이거나 전액 반환이 불가능한 현실임

○ 법원의 입찰경매에도 임차인들이 일관된 신청을 할 수 없고 각 세대별로 낙찰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임차인이 입찰에 응한다 하더라도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문제점 등이 있는데 이의 해결방안 및 대책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 시공중 부도난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환불받도록 하겠으며

○ 입주완료후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채권자 및 입주민의 협의하에 분양전환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까지 임대보증금 반환 및 분양전환 추진실적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신청중에 있는 세대가 503세대, 입주완료후 분양전환을 받았거나 추진중인 세대가 1,722세대 임.

질문요지 4

○ 기 추진한바 있는 도농통합 농촌지역 주민들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나 새로운 민원은 무엇인지?

○ 세제, 교육, 금융,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 답변 :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

○ 도농통합 후 농촌지역주민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거나 민원사항은 많지 않았음.

○ '94년도 주민의견조사 결과 청주시에서는 76.5가 찬성, 청원군에서는 65.7%가 반대하여 무산된 사안으로

○ 청주시와 청원군주민의 의경과 개발잠재력, 의견합의 등 통합분위기 성숙후 신중처리 계획임.

질문요지 5

○ 내국세 수입 급감으로 교육재정 지출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 이러한 재정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96년부터 99년까지 해마다 50억원씩 투자하기로 한 교단선진화사업을 축소 등 재검토할 용의는?

【 답변 : 교육감 김영세 】

○ 교단선진화의 입체적 추진으로 교사의 선진화, 학생의 선진화 등 가시화적인 효과와 교원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

○ 4개년 계획중 초등학교 영어교육용 기자재, 실습용 및 교육용 컴퓨터보급은 교육부 지원액의 중단 때문임.

질문요지 6

○ 종전의 기부금과 학교발전기금의 용도 차이는 무엇이며 기탁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 운용방안 및 개선방안은?

【 답변 : 교육청 관리국장 조신행 】

○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부금품에 한하여 접수하고 용도에 제한없이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발전기금은 자발적인 기부금품은 물론 학교내외의 조직,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갹출하는 금품과 학부모가 아닌 개인, 조직, 단체를 대상으로 모금하는 금품.

○ 학부모간 과영경쟁으로 인한 위화감조성, 강요, 유도, 권유 등의 부작용이 문제

○ 교원복지, 교실환경정리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금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

질문요지 1

○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의 운영실태 및 이의 활용방안은?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93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219억 3,200만원 이며 그중 도비출연금이 96%인 211억 5,200만원이며 나머지는 이자수입과 농협에서 출연한 3,000만원임.

○ 현재까지 융자지원한 금액은 총 302억 8,400만원으로 302억 5천 9백만원이며 2,500만원이 보조지원 되었음.

○ 앞으로 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농어민이 없도록 각종 홍보물, 지역언론매체, 농업관련 자생조직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음.

질문요지 2

○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도의 조치는 무엇인지?

○ 중소기업육성과 구조조정을 돕기 위하여는 각종 중소기업관련 기금의 금고를 농협에 두는 것 보다 시중은행으로 옮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관련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으며 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운영하겠음.

○ '97년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기금을 일원화하라는 지침에 따라 도 금고인 농협으로 이관하였음.

질문요지 3

○ 다른 시·도에서 설립운영중인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우리도 추진경위와 향후 자본조달방안 및 참여업체 등을 밝혀 주시고 설립후 자본금 손실 등에 따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98년 10월 행정자치부와 관련 중앙부처, 그리고 전국 8개 자치단체를 다녀본 결과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자금염출에 대하여는 도에서 110억원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관련 단체 하여금 종합적으로 출연해서 동참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임.

○ '99년 1월 창립총회, 2월달까지 설립등기를 마쳐야 2000년도 국가지원금 50억원, 그 이듬해 지원금 5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

○ '99년 5월 업무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는 신용보증 배수를 2배수 이내로 하여 위험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음.

질문요지 4

○ 150만 인구를 갖고 있는 충청북도에만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타 지역에서 민원을 보는 등 주민은 물론 수출업체가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으며

○ 이의 해소대책으로 출장소라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과 대책은 무엇인지?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금년 7월 청주출입국관리소의 발족을 목표로 예산확보 및 후속조치를 취하였으나 IMF이후 유보상태에 있음.

○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강력한 요청으로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질문요지 5

○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청은 물론 시·군까지 대도시 소재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상례화 되었음.

○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 및 조치계획은?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제조업체 총람 2,000부 제작 배부

○ 제조업체 상호 정보교환 및 제품구매 촉진 지원

○ 중소기업 제품 전시 및 판매장 개설운영

○ 200개 업체의 생산제품에 대한 충북지역생산유통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 중소기업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청풍명월 내고장 장터, 바이어 초청 무역박람회 개최 등 추진

질문요지 6

○ 도내 37개 농공단지별 운영실태를 조사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농공단지 조성시 융자된 자금의 상환연기 등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은?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농공단지 현황은 총 37개 단지에 144만4천평으로 36개 단지는 조성완료 되었고 1개단지 4만평은 현재 조성중에 있음.

○ 조성완료된 36개 단지에 320개 업체가 입주, 가동율은 65%인 209개가 되며 24개 업체는 공장건축 및 입주중에 있고 문제가 되는 87개가 폐업이나 휴업중에 있음.

○ 국비융자조건을 8.5%에서 6.5%로, 상환기간도 5년거치 5년균분 상환을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조정하였음.

○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부도업체의 경매상황관리를 위한 휴폐업 업체의 카드화, 은행 담보재산에 대한 처분기간 법제화 건의, 휴폐업 업체의 신청방안 강구 등을 추진

질문요지 7

○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의 주요 문화축제를 선정 행사경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바 우리도의 대상사업은 무엇인지?

【 답변 :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

○ 전국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5대 문화관광축제에 8,000만원, 10대 문화관광축제에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충주전통무술축제와 영동난계국악축제에 각각 2,400만원씩을 지원 받은바 있음.

질문요지 8

○ 교사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원이 부족한 사태발생이 우려되는바 중등교원 자격자를 일정교육 이수 후 초등교원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 : 교육감 김영세 】

○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예체능교과와 외국어, 과학분야에 교과 전담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중.

질문요지 9

○ 시범학교 운영은 많은 과제부여와 참관수업 등으로 교사 및 학생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등 교육행정 당국의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기자재가 미확보 되는 등 우리 교육현실에 비추어 부적정한 제도로 판단되는바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시범수업 등에 의한 교사의 부재에 따른 학교수업 차질 방지 대책은?

【 답변 : 교육청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

○ 여건이 나쁜 대규모학교 등에 장학력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해 대규모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적절한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내년도에는 지정을 확대하지 않고 영역별, 지역별 협동운영방안의 모색과 보고, 행사도 가급적 오후에 하는 방안을 채택, 폭넓게 시범운영 결과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 경주하겠음.

□ 제3차 본회의 - '98. 12. 2(수)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질문요지 1

○ 도세 징수교부금이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50%,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30%만을 교부받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50%, 자립도가 높은 시는 30%를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교부금을 활용하여 시·군간의 재정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지난 10월 행정자치부에 강력 건의하였음.

○ 행정자치부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 개정을 검토중에 있음.

질문요지 2

○ 지방정부의 기능확대와 규제완화 정책, 권한이양 등으로 재정부담이 증폭될 전망인데 특단의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탈루세원·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액의 일소, 법인에 대한 조사강화 등 지방세정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경상적경비의 20%삭감을 추진하고 보다 많은 정부예산이 우리도에 투입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음.

질문요지 3

○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혁신적인 종합교통행정으로 전환 대중교통 이용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용의는?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 대중교통 활성화대책 수립 추진중

- 기계식 신호기 397개소에 대하여는 전자식으로 교체하고 133개소의 전자식 신호기는 교통량에 따라 자동 감응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교통섬, 좌회전 능률차선, 유턴차선 확대실시 등 추진

○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 이면도로 주거지 주차허가제 확대실시 추진
- 민자유치를 통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지하를 활용한 노 외주차장 확충사업 추진

○ 대중교통서비스 보증제, 교통불편신고 보상제 등 새로운 시책 추진

질문요지 4

○ 택시 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하여 사업주, 기사 모두 부정적인 시각임.

○ 회사택시 증차시 지입제라는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정치 못하고 묵인하는 실정임.

○ 택시요금 조정시 농촌지역요금 할증율을 시장, 군수 재량에 의하도록 하여 시·군간에 요금격차가 현저하고 요금인상이 과다하여 불만요인이 되고 있음.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 농촌지역 택시 복합할증요금은 시·군마다 기본요금과 요율이 다른 것이 사실임.

○ 시장·군수가 택시요금 할증률을 정하도록 관계법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임.

질문요지 5

○ 노사분규 시 운행중단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 개인택시 면허의 매매가 허용되어 면허대수 감소요인이 없는 반면 증차시 기존사업자가 반발하는 등 면허대상자의 불평요인이 되고 있는데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 자가용자동차 10부제의 제도적 장치 마련
○ 택시 10부제의 군단위 실시 및 시·군 간 영업구역 마찰을 해소할 개선방안은?
○ 교통신호등 설치시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설치관리 예산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자가용 영업행위의 문제점 개선방안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중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의 개정을 건의
○ 건설교통부에서 택시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현행 법령하에서 시·군간 사업구역 조정은 어려우나 귀로영업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법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과 홍보강화로 많은 도민이 참여토록 지속적 추진
○ 교통신호기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관리 하도록 되어있어 설치비는 시장군수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동법 제3조의 2항에 따라 도비보조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음.
○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예방에 노력하겠음.

질문요지 6

○ 고등학교 전면 급식실시에 따른 부작용의 개선방안은?
○ 음성중학교 진입로 사고위험지역의 개선을 위한 향후 조치계획은?

【 답변 : 교육감 김영세 】

○ 학교시설과 구조 등을 감안 운반급식을 하거나 학교별로 조립식 식당건축도 가능토록 하여 급식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

○ 음성군에서 용지보상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음서경찰서에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음.

○ 학생들의 통학시 교통사고위험이 없도록 통학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음.

질문요지 7

○ 일선학교의 예산지원 미비, 체육특기생 육성지원에 소극적 및 체육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답변 :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민병구 】

○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훈련비 및 출전경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에서 요청하고 있으며

○ 학교운영비에서 기본적인 육성비확보

○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시 우선지원

○ 체육영재교육을 위한 훈련비, 노후장비교체비 등의 예산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 체육회의 보다 많은 지원 건의

질문요지 8

○ 교직원의 원거리 통근으로 방과후 생활지도가 소홀함.
교직원들의 자녀는 농촌학교를 외면한 채 학부모들에게만 농촌학교 진학을 권장하여 설득력을 잃고 있음.

【 답변 :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민병구 】

○ 가급적 교사들이 학교소재지에 거주토록 권장 및 교원들의 사명감 고취에 노력

○ 교외 생활지도위원 구성 운영

○ 거주지 서택이나 자녀의 진학문제에 대하여는 인위적, 강제적인 제한에 한계가 있음.

질문요지 9

○ 1회용, 일과성 교자재의 사장 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은?

【 답변 :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민병구 】

○ 효율적인 학습환경조성을 위하여 보통교실, 특별교실, 체육장 시설 및 교과별로 필요한 교자재를 종목, 규격, 수량 등에 대한 교구설비 기준령 제정운영

○ 교단선진화에 따른 기존교구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되어 교육정보화 환경조성과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

질문요지 10

○ 학교시설의 과다 신·증설 문제?

【 답변 : 교육청 관리국장 조신행 】

○ 총 보유교실수 13,987실 중 증설을 요구하는 교실은 1,479실이며, 요 개축 교실이 966실로 총 보유교실의 6.9%임.

○ 학교시설 신설시에는 학생장기수용계획을 증·개축시에는 보유현황 및 건물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 투자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

질문요지 1

○ 도정의 목표에 대한 각계각층 인지도를 측정한 후 도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용의는?

○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후속 Master Plan 개발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도정소개 책자를 비롯한 홍보물과 함께 광범위한 CIP사업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도민과의 대화, 각종교육,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활용 도민의 이해 및 참여 증진

○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도민협의체를 광범위하게 구성하되 새로운 조직의 조직은 검토 추진

질문요지 2

○ 충청북도에는 7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96년부터 98년 9월까지 활동횟수는 773건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음

○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합 및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할 용의는?

○ 존치가 불가피한 위원회 구성시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 답변 :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

○ 법령에 의해 설치된 61개 위원회에 대하여는 중앙에 개선 건의하고 조례와 규칙으로 설치된 13개 위원회는 운영실적에 따라 폐지 또는 통폐합 추진

질문요지 3

○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5급이상 간부현황은?

○ 컴맹 직원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 공무원을 정보 정예요원화 시킬 용의는?

【 답변 :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

○ 도 자체로 전자문서유통시스템반, 파워포인트반 등 총 48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교육원을 이용 한 컴퓨터교육 확대 실시

질문요지 4

○ 국유재산 매각권한을 일정부분 시·군에 재 위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 권한위임이 불가능하다면 민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청을 받도록 개선할 용의는?

【 답변 : 정무부지사 조영창 】

○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중 일부를 시·군에 재위임 처리하기 위하여는 재정경제부의 승인사항으로 재위임 처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건의하겠음.

○ 보전 부적합재산의 매각 등 총괄적 변경사항을 제외한 시지역 300㎡, 군지역 700㎡이하인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처리 하겠음.

질문요지 5

○ '98년 10월말 현재 중소기업 지원예산 배정대비 은행대출 실적은?

○ '97년부터 98년 10월말까지 창업, 구조조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운영상태를 파악해 보았는지와 정상 가동업체 및 부도업체 현황은?

○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홍보, 판로개척, 경영지도, 정보수집제공 등을 위한 다목적 중소기업 종합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용의는?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1,250억원으로 구조조정자금은 250억원이고 경영안정자금이 1,000억원 으로

○ 구조조정자금은 98년 10월말 현재 53개 업체에 245억원을 지원결정 하였으나 대출액은 32개 업체에 96억원 임

○ 경영자금은 1,000억원으로 945개 업체에 953억원을 지원결정하고 10월말 현재 464개 업체에 432억원이 대출되었음.

○ 중소기업지원센터가 2000년에 완공되면 중소기업제품의 홍보판매를 입체적 판매, 전시, 상담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질문요지 6

○ 소방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켜 나갈 용의는?
○ 소방대원중 119구조대 근무요원이 일반직보다 수당이 적게 책정된 이유 및 이를 현실화 시켜줄 용의는?
○ 화재진압용 헬기 구입비 반납경위와 향후 헬기구입 계획은?
○ 소방출장소별 지원예산이 시단위 출장소는 도비지원을 하고 있으나 군단위는 군비로 충당하고 이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단위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관리 또한 소홀 해 지고 있는바 형평에 맞게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줄 용의는?

【 답변 : 소방본부장 양희중 】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확대는 긴축예산 편성으로 당분간 확대 지급은 어려운 실정 임.
○ 군헬기 8대와 경찰헬기 1대 등과 응원협정을 맺고 대형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나 소방헬기는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에 꼭 필요한 장비로 판단되나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구입토록 노력하겠음.
○ 의용소방대 운영예산을 전액 도비에서 부담함은 도 재정여건상 어려운 상황임.

□ 제4차 본회의 - '98. 12. 16(수)

○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수정가결)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수정가결)
○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1998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19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가결)
○ 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제5차 본회의 - '98. 12. 26(토)

○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원안가결)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원안가결)

□ 제6차 본회의 - '98. 12. 29(화)

○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1998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8. 11. 20(금) 11:00~11:09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2시간 2분(2시간)	
1차(11.20)	11:09~12:29	1시간 20분
2차(12. 1)	11:02~15:21	4시간 19분
3차(12. 2)	11:01~15:08	4시간 7분
4차(12.16)	11:01~12:23	1시간 22분
5차(12.26)	11:01~11:25	24분
6차(12.29)	11:02~11:32	30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4.4%)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3	4	5	6	1	2	3	4	5	6
27명	25	25	24	25	27	27	2	2	3	2	-	-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98.12. 8	1	1.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 가. 의회사무처 소관
	'98.12.21	2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개정의 건
	'98.12.26	3	1. 제15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99. 1. 19~1. 23(5일간)
기획행정위원회	'98. 12. 3	1	1.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치행정국
	'98. 12. 4	2	1.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공보관실 나. 증평출장소
	'98. 12. 5	3	1.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감사관실
	'98. 12. 7	4	1.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소방본부 나. 기획조정실
	'98. 12. 8	5	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99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다. 기획조정실 라. 증평출장소 ※ 가, 나, 다, 라 : 수정가결 ※ 기타부서 : 원안가결
	'98.12.17	6	1.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치행정국
	'98.12.18	7	1.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치행정국
	'98.12.19	8	1.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증평출장소
	'98.12.21	9	1.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 운영에관한조례안
	'98.12.24	10	1.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교육사회위원회	'98.12. 3	1	1.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98.12. 4	2	1.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옥천전문대학 나. 공무원교육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98.12. 7	3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98.12.10	4	1.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만 수정가결 2.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8.12.11	5	1.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9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8.12.11	6	1.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8.12.15	7	1. 꽃동네 지원예산 전액 국비지원건의안 채택의 건
	'98.12.17	8	1.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98.12.18	9	1.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 도청소관 : 원안가결
	'98.12.21	10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산업경제 위원회	'98.12. 3	1	1. 1998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제통상국
	'98.12. 4	2	1. 1998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농정국
	'98.12. 7	3	1. 1998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농업기술원
	'98.12. 8	4	1.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가. 경제통상국(수정가결) 나. 농정국(수정가결) 다. 농업기술원(원안가결)
	'98.12.15	5	1. '99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 '99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3.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98.12.17	6	1.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제통상국
	'98.12.18	7	1.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농정국
	'98.12.21	8	1.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 2.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8.12.26	9	1.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 (계속)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관광건설위원회	'98.12. 3	1	1.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 가. 문화진흥국
	'98.12. 4	2	1.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건설교통국
	'98.12. 7	3	1.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8.12.14	4	1. 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12.18	5	1.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건설교통국 나. 문화진흥국
	'98.12.21	6	1.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문화진흥국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98.12. 9	1	1.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종합심사 가. 기획행정위원회
	'98.12.10	2	1.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종합심사(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98.12.11	3	1.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종합심사(계속) 가. 관광건설위원회 나. 의회운영위원회
	'98.12.12	4	1.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 2.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예결위 전체위원이 참여하기로 함.
	'98.12.15	5	1. 199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종합심사(계속) 2.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계속)
	'98.12.24	6	1.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2.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3.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2	42	27	15			
의회운영위원회	4	4	3	1			⊙
기획행정위원회	10	10	7	3			
교육사회위원회	13	13	10	3			
산업경제위원회	7	7	3	4			
관광건설위원회	4	4	3	1			
예산결산특위	4	4	1	3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를 1998. 11. 20일부터 12. 29일까지 40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주요골자** 〕

○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함

○ 출석일시 : '98. 12. 1 ~ 12. 2(2일간)

○ 출석범위

· 도지사, 교육감

·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 본부장, 중평출장소장, 충북개발사업소장 이상 간부공무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 주요골자 〕

○ 도의회의원 배지모형도 및 규격에 관한 사항중 바탕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일반안건	3	3	3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율을 아래와 같이 인하함

· 상·하수도 및 댐주변 사업 : 연리 7% → 6.5%

· 여타사업 : 연리 8% → 7.5%

○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자구수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 주요골자 〕

○ 발행주체 :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

○ 판매지역 : 전국

○ 발행규모 : 2,500억원

· 즉석식 500억(1~2월)

· 추첨식 1,000억(매주)

· 전자식 1,000억(매주)

○발행기간 : '99. 1. 1 ~ 12. 31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현행 위임조례의 관장부서 재분류 및 부서명칭 변경

○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근거 일치 및 조문정비

○ 수산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산시설관리 감독자의 의무·처분의 제한 등 7개사무 위임

○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개최 등 3개사무 민간위탁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감면세목 확대

·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 면허세를 추가하여 면제토록 함

○ 일부 감면내용 정리

· 승용자동차 → 자동차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특례적법
  · 공유재산 사용시 사용료 감면
  · 공유재산 매수시 매수금액 감면
○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확대
○ 공유재산(건물)사용자 산출방식 개선
○ 공유재산(잡종재산)매각면적의 기준확대
○ 청사 설계시 사무실의 칸막이 설치에 대한 규정 신설
○ 관사 사용료 면제대상 확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
○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
○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둠
○ 위·수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하되 1회의 협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함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출장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위원회 결정사항중 관계법령의 개폐 또는 유사위원회 기능의 통합에 따라 항목은 추가·삭제하고 별표로 분리된 위원회 기능을 본문의 결정사항에 포함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소멸·중복기능 삭제

- 10억원 이상 소요예산 사업의 투자결정기능 삭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중복)
- 유통산업 근대화시책 심의기능 삭제(관련법령 폐지)
- 화전정리 심의기능 삭제(기능소멸, 법령폐지 계류중)

·신규기능 추가

- 행정규제 심사기능 추가(현행 규제기본법 신설)
- 민원조정기능 추가(민원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른 기능이관)
- 공무원국외훈련심의기능 추가
- 보안심사 및 공무원국외여행 심사기능 추가

○ 자구의 일부수정

·기획관리실→기획조정실, 업무담당사무관→기획담당사무관, 도조정위원회→도정조정위원회

○ 간사장과 간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간사로 통일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8	8	8					
조례안	6	6	6					
승인안	1	1	1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 **주요골자** 〕

○ 본청과 직속기관별로 각각 운영되었던 기구설치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함

○ 본청의 과, 담당관, 직속기관의 부·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

○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함

○ 본청의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을 교육국으로 통합하고 관리국은 기획관리국으로 개편함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을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으로 통합

○ 충청북도단재교육원의 명칭을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으로 변경

○ 통합조례 제정으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외 7건의 조례를 폐지함

○ 충북수영장, 청주수영장, 충주수영장은 설치조례 폐지후 관리권의 인접 학교장에게 이관

○ 기구의 명칭변경, 계단위 조직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조례의 자구정리와 기타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 **주요골자** 〕

○ 교육위원회 의사국 및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28명으로 함

○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정원감축에 따른 과원발생 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기관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운영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기관별 사용료 및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이용자의 제한규정을 정함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상근거 마련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공동실습소에서 실습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실습소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용자가 변상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변상하도록 하고

· 또한 공동실습소에서 실습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것도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은 삭제

○ 수정 주요골자

· 안 제39조 제1항중 "과실로"를 "중대한 과실로"로 하고, 동조 제12항을 삭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조례제정 목적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를 삽입함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계조직의 폐지로 현행 의사계와 의안계를 폐지하고 의사과의 분장사무를 신설

○ 지방공무원 감축 추진계획에 의거 의사국의 정수를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

○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제명변경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시설명칭변경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

○ 위치를 복지시설별로 지정

· 복지관은 충주시 호암동 산55-24번지에, 체육관은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5번지에 둔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 **주요골자** 〕

○ 재산의 취득(기부채납) :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 건립부지 기부채납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

· 규　　모 : 답 3,779㎡

· 시　　기 : '98 하반기

· 재산가액 : 1,100백만원

○ 치매요양병원 건립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

· 규　　모 : 3,302㎡(1,000평, 지상4층 지하1층)

· 병상규모 : 90병상

· 재산가액 : 2,93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 수 탁 자 :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 최 정 봉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법령위반 및 불합리한 사항의 보완

· "기금은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로 함

○ 행정조직개편에 의한 명칭변경
- "여성복지과장"을 "여성정책담당사무관"으로 함
- "사회복지국장"을 "여성정책관"으로 함
- "생활지도계장"을 여성정책담당사무관"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꽃동네」 지원예산 전액 국비지원건의

〔 **주요골자** 〕

○ 전국에서 무연고·무의탁 소외계층 2천여명이 입소하여 보호받고 있고

○ 충청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보다 무려 15%인 1,115억원이나 감액되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하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므로

○ 꽃동네의 특수성과 충청북도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꽃동네 지원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심사결과** 〕 **원안채택**

〔 **건의기관** 〕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 예산청장**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8	8	7	1				
조례안	6	6	5	1				
기타안	2	2	2					

□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농촌진흥법에 적합하도록 하여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여성농업인연합회를 관련단체로 포함시킴

○ 기금의 예치관리를 도금고로 일원화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결산보고서를 도의회 심의 의결토록 개정
○ 제1차 조직개편으로 조성된 기구 및 직위를 새로운 조직에 맞도록 함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와 불일치하여 일치시키고자 함
○ 수정주요골자
· 제14조 제3항중 "다음 회계연도"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로 한다

⊙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을 위원장과 물가담당국장을 제외한 5명을 위촉직으로 조정하고
○ 정부가 결정하는 의보수가와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상수도료 등을 도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심의대상중 인상조정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 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9공유재산관리계획

〔 주요골자 〕

○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7-1) 및 1999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의 수량 450,000㎡, 금액 400,000천원을 수량 1,079,787㎡(8필지) 중에서 금액 390,000천원 범위에서 매입하고자 함
○ 위 치 :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산49-1외 7필중 390,000천원 범위에서 매입하고자 함
· 재산의 표시 및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 추전가액 등은 별지와 같음

○ 규 모 : 총면적 933ha, '99년도 매입 50ha(추정)

○ 시 기 : '99상반기

○ 취득가액 : 총 8,400,000천원, '99년도 390,000천원(추정)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1	2				
조례안	2	2	1	1				
승인안	1	1		1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청람재를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운영위탁

○ 청람재의 위치(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6번지)를 명시

○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의 출연과 보조범위를 도지사에서 시장군수까지로 확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 주요내용 〕

○ 교육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99 예산(안) 조정내역		
		요구액	증	감
합 계	636,620,456	636,620,456	1,130,000	1,130,000
교육위원회	684,909	684,909		
본 청	512,828,853	513,958,853		1,130,000
청주교육청	40,785,131	40,785,131		
충주교육청	18,437,921	18,437,921		
제천교육청	8,442,431	8,442,431		
청원교육청	12,288,949	12,288,949		
보은교육청	4,588,160	4,588,160		
옥천교육청	4,091,598	4,091,598		
영동교육청	6,879,720	6,879,720		
진천교육청	4,210,994	4,210,994		
괴산교육청	7,350,485	7,350,485		
음성교육청	6,645,753	6,645,753		
단양교육청	3,414,750	3,414,750		
예 비 비	5,970,802	4,840,802	1,130,000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요구액 6,366억2,045만6천원중 11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수정의결

⊙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 및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

〔 주요내용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역	
		계	증	감
합 계	**639,343,690**	**639,343,690**	**8,285,116**	**8,285,116**
기획행정위원회	**173,487,466**	**171,522,850**	**8,285,116**	**6,320,500**
공 보 관 실	647,094	677,094	-	30,000
감 사 관 실	143,672	143,672	-	-
기 획 조 정 실	49,528,794	49,965,878	8,285,116	5,722,200
자 치 행 정 국	74,643,471	75,110,371	-	466,900
소 방 본 부	24,668,276	24,668,276	-	-
증 평 출 장 소	23,856,159	23,957,559	-	101,400
교육사회위원회	**132,584,949**	**133,132,765**	-	**547,816**
여 성 정 책 관 실	1,301,705	1,301,705	-	-
복 지 환 경 국	126,231,381	126,779,197	-	547,816
옥 천 전 문 대	500,000	500,000	-	-
지방공무원교육원	2,467,804	2,467,804	-	-
보건환경연구원	2,084,059	2,084,059	-	-
산업경제위원회	**180,141,595**	**181,109,395**	-	**967,800**
경 제 통 상 국	46,801,234	47,679,534	-	878,300
농 정 국	122,040,697	122,130,197	-	89,500
농 업 기 술 원	11,299,664	11,299,664	-	-
관광건설위원회	**149,712,044**	**150,080,044**	-	**368,000**
문 화 진 흥 국	18,104,813	18,374,813	-	270,000
건 설 교 통 국	131,607,231	131,705,231	-	98,000
의회운영위원회	**3,417,636**	**3,498,636**	-	**81,000**
의 회 사 무 처	3,417,636	3,498,636	-	81,000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역	
		계	증	감
합 계	**221,055,693**	**239,233,411**	**126,332**	**126,332**
공기업특별회계	**178,988,113**	**196,549,400**	**70,625**	**70,625**
지역개발기금	126,361,966	58,617,763	67,125	67,125
공영개발사업	52,626,147	137,931,637	3,500	3,500
기타특별회계	**42,067,580**	**42,684,011**	**55,707**	**55,707**
도립옥천전문대운영	2,408,649	28,328,242	9,086	9,086
의료보호기금	31,301,990	8,926,291		
농어촌소득개발기금	5,790,181	2,398,102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운영관리	2,422,000	960,000		
증평출장소지방산업 단지조성사업	144,760	2,071,376	46,621	46,621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요구액 8,603억9,938만3천원중 82억9,011만6천원을 삭감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가결

⊙ '9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 주요내용 〕

○ 교육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요구액	증	감
합 계	**740,451,149**	**740,451,149**	-	-
교육위원회	705,717	705,717	-	-
본 청	563,465,863	563,465,863	-	-
청주교육청	54,871,034	54,871,034	-	-
충주교육청	30,628,333	30,628,333	-	-
제천교육청	11,287,394	11,287,394	-	-
청원교육청	15,826,873	15,826,873	-	-
보은교육청	6,448,800	6,448,800	-	-
옥천교육청	5,719,715	5,719,715	-	-
영동교육청	7,841,062	7,841,062	-	-
진천교육청	7,406,936	7,406,936	-	-
괴산교육청	9,624,400	9,624,400	-	-
음성교육청	9,877,327	9,877,327	-	-
단양교육청	5,565,432	5,565,432	-	-
예 비 비	11,182,263	11,182,263	-	-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

〔 주요내용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관별	예산액	제출예산액		수정내역	
		계	'98 제3회	증	감
합 계	**945,438,984**	**945,438,984**	**42,689,150**	-	-
기획행정위원회	**216,756,542**	**216,722,542**	**14,806,998**	-	-
공보관실	419,142	419,142	-	-	-
감사관실	139,696	139,696	-	-	-
기획조정실	44,967,354	44,933,354	1,205,981	39,000	5,000
자치행정국	111,893,876	111,893,876	14,907,013	-	-
소방본부	27,532,061	27,532,061	248,908	-	-
증평출장소	31,804,413	31,804,413	△1,554,904	-	-
교육사회위원회	**153,818,018**	**153,818,018**	**7,142,973**	-	-
여성정책관실	1,357,457	1,357,457	△6,908	-	-
복지환경국	142,884,480	142,884,480	7,149,881	-	-
옥천전문대	4,322,000	4,322,000	-	-	-
지방공무원교육원	3,210,315	3,210,315	-	-	-
보건환경연구원	2,133,766	2,133,766	-	-	-
산업경제위원회	**233,591,334**	**233,591,334**	**11,856,035**	-	-
경제통상국	36,059,900	36,059,900	10,443,502	-	-
농정국	184,870,778	184,870,778	1,409,060	-	-
농업기술원	12,660,656	12,660,656	3,473	-	-
관광건설위원회	**338,014,469**	**338,014,469**	**8,883,144**	-	-
문화진흥국	24,218,716	24,218,716	576,910	-	-
건설교통국	313,795,753	313,829,753	8,306,234	-	34,000
의회운영위원회	**3,258,621**	**3,258,621**	-	-	-
의회사무처	3,258,621	3,258,621	-	-	-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 출 예 산 액		수정내역	
		계	'98 제3회	증	감
합 계	**244,865,365**	**244,865,365**	**633,807**	-	-
공기업특별회계	**200,049,849**	**200,049,849**	**488,526**	-	-
지역개발기금	146,519,262	146,519,262	26,040,000	-	-
공영개발사업	53,530,587	53,530,587	△25,551,474	-	-
기타특별회계	**44,815,516**	**44,815,516**	**145,281**	-	-
도립옥천전문대운영	1,984,304	1,984,304	-	-	-
의료보호기금	30,780,837	30,780,837	145,281	-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8,926,291	8,926,291	-	-	-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운영관리	2,164,084	2,164,084	-	-	-
중평출장소지방산업 단지조성사업	960,000	960,000	-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요구액 1조1,903억434만9천원중 39,000천원 삭감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6	6	2	4				
예산안	6	6	2	4				

第 8 節 第156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56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99. 1. 4 집회공고 하였고, 1999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청취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하여 1월 19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9. 1. 19 ~ 11. 23 (5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1건
○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활동기간 : 의결일로부터 1999. 12. 31까지
※ 회의록 서명의원 : 이광종 의원, 이완영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4건	1	-	1	-	2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9. 1. 19(화)**

○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9. 1. 19 ~ 1. 23(5일간)
○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 **제2차 본회의 - '99. 1. 23(토)**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위원 장 : 박종기의원

· 간 사 : 유주열의원

· 위 원 : 신대식, 박노철, 이길하, 유동찬, 김소정 의원

· 존속기간 : 의결일로부터 1999. 12. 31까지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9. 1. 19(화) 14:00~14:09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시간 26분(43분)	
1차(1. 19)	14:09~15:13	1시간 4분
2차(1. 23)	11:02~11:24	2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4.5%)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27명	27	24	-	3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99. 1.20	1	1.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회기 : '99. 2. 4~2. 8(5일간) 2.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충청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건
기획행정위원회	'99. 1.19	1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99. 1.20	2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기획조정실 나. 소방본부
	'99. 1.21	3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증평출장소 다. 청주·충주의료원 2.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99. 1.19	1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교육청
	'99. 1.20	2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99. 1.21	3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옥천전문대학 나. 공무원교육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산업경제위원회	'99. 1.19	1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99. 1.20	2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경제통상국
	'99. 1.21	3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원
관광건설위원회	'99. 1.20	1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진흥국
	'99. 1.21	2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건설교통국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9	9	8	1			
의회운영위원회	3	3	3				
기획행정위원회	2	2	1	1			
교육사회위원회	2	2	2				
산업경제위원회	1	1	1				
관광건설위원회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56회 임시회 기간을 '99. 1. 19일부터 1. 23일까지 5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

〔 **주요골자** 〕

○ 위원회 구성 및 총수 : 위원 7명

○ 존속기간 : 의결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 위원선임 : 위원선임은 의장단에 위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9업무계획보고 주요내용

〔 **의회사무처 소관** 〕

○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회운영
○ 의정활동 적극 추진
○ 발전적인 도정수행 선도
○ 의정활동 홍보강화
○ 의정지원업무 정보화 추진
○ 의정자료관리 내실 추진
○ 의정지원 능력제고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2					
일반안건	2	2	2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조직개편으로 기구 및 물품관리자의 관직지정을 변경
· 회계과 → 총무과, 회계과장 → 총무과장
○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 조정
· 동일 시도 소요조회 :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 10백만원 미만의 물품 ⇒ 동 취득가격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도의 물품관리조례중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의 일부 조문중 "직할시·도(시·군포함)" ⇒ "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로 자구수정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 '99업무계획보고 주요내용

〔 **공보관실 소관** 〕

○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적극적 도정홍보
○ 능동적 도정홍보활동 전개
○ 도민 여론의 도정반영 촉진
○ 기자실과의 돈독한 유대강화
○ 영상홍보시설 기능강화

〔 **감사관실 소관** 〕

○ 정기 행정감사 강화
○ 민생분야의 감사강화
○ 변화에 대응한 공직자세 확립
○ 진정 및 생활민원의 신속·공정 처리
○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의 내실화

〔 **기획조정실 소관** 〕

○ 도정의 정책기획 기능강화
○ 경영행정체제로의 개편
○ 21C 지식정보화 시대 대응
○ 신뢰받는 열린행정 실현

〔 **소방본부 소관** 〕

○ 소방청사 신축보수
○ 소방장비 현대화 및 조작능력의 향상
○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 소방공무원 친절봉사운동 전개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 화재 피해복구 안내서비스 내실화

○ 재래시장 소방 안전관리 강화
○ 범 도민 소방안전의식 고취
○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행정 강화
○ 구조구급대 서비스 실현
○ 소방정보의 신속한 투입 및 지휘체제 확립

〔 **자치행정국 소관** 〕

○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강화
○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시스템 구축
○ 공직자 친절운동 전개
○ 자치행정의 생산성 향상
○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 실효성 있는 민방위태세 확립

〔 **증평출장소 소관** 〕

○ 신뢰받는 열린행정의 실현
○ 밝고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건설
○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 기업을 도와주는 행정구현
○ 계속 살고 돌아오고 싶은 농촌건설
○ 전국 제일의 인삼타운 조성
○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
○ 지역 문화창달과 체육의 진흥

〔 **청주의료원 소관** 〕

○ 의료장비의 현대화
○ 병원의 개방화
○ 시설방문 진료 및 이동진료
○ 소방공무원 친절봉사운동 전개
○ 친절한 의료원상 확립

〔 **충주의료원 소관** 〕

○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
○ 중환자실 개설 및 병원 환경정비
○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 친절운동 전개

□ 교육사회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교육청 소관** 〕

○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 질 높은 교육으로 경쟁력 신장
○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

〔 **여성정책관실 소관** 〕

○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지속추진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
○ 여성조직의 육성과 자율능력 배양
○ 여성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 합리적 소비문화 조성

〔 **복지환경국 소관** 〕

○ 저소득층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
○ 노인복지 확충
○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 아동의 건전육성 및 안전보육
○ 사회복지시설의 내실운영
○ 민간의 복지참여 확대
○ 도민의 건강증진
○ 청정환경의 보전 및 관리
○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공급

〔 **옥천전문대학 소관** 〕

○ 자립기반 구축
○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확보 추진
○ 21C 대비 전문기술인 양성
○ 창업 동아리 활성화

〔 **공무원교육원 소관** 〕

○ 다양한 전문교육과정 신설
○ 새 시대 공직관 확립을 위한 의식개혁교육 강화
○ 친절봉사교육 실시

○ 시책교육의 강화
○ 21C 정보화 세계화에 대비한 전산 외국어 교육실시
○ 실습 체험위주의 참여교육 운영
○ 교수요원의 자질향상 및 열린교육원 운영
○ 도민교육 훈련계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 보건부문의 시험검사 사업
○ 대기환경 개선 검사사업
○ 수질검사 사업
○ 창의적 조사·연구로 선제행정 추진
○ 산학 공동연구사업

□ 산업경제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농정국 소관 〕

○ 식량작물의 안정생산
○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
○ 지역특화작목 지속적 육성
○ 농산물유통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 축·수산업의 안정적 발전
○ 농촌 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 산림자원 증식 및 임업경영 기반 확충
○ 농정 특수시책

〔 경제통상국 소관 〕

○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경쟁력 강화
○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 미래 선도의 공격적 국제통상 전개
○ 주요 현안사업

〔 농촌진흥원 소관 〕

○ 장려품종 선발시험 실시
○ 청정채소 안전다수 재배기술 개발
○ 시설채소 재배법 및 환경개선

○ 수출유망 과수의 경쟁력 제고
○ 화훼기술 개발 및 조직배양 활용화
○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
○ 선진 농업형 농산물 품질인증제 도입
○ 농작물 병해충 방제체제 확립
○ 지역여건을 감안한 농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 첨단기술 협력 공동연구 체제 강화
○ 쌀의 안전생산기술 보급
○ 환경농업 기술조성 지도
○ 수출지향 화훼산업 육성
○ 가축사육 기반확충 및 경쟁력 강화
○ 새해 영농기술교육 계획

□ 관광건설위원회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문화진흥국 소관 〕

○ 21C 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의 특성개발
○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여건조성
○ 도민의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
○ 국악인구의 저변확대
○ 옛 문화의 발굴계승 문화예술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
○ 건축문화의 새로운 변화 모색
○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 활기 넘치는 충북체육 및 청소년 육성
○ 지역특성에 부합된 관광 개발
○ 화합의 스포츠 문화축제 개최

〔 건설교통국 소관 〕

○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역발전
○ 재해 사전 대비
○ 효율과 안전이 조화된 도로망 구축
○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주거문화 향상
○ 대중교통 기반 구축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적행정 구현
○ 주요 현안사업

第 9 節 第157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57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99. 1. 21 집회공고 되었고,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2월 4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9. 2. 4 ~ 2. 8 (5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4건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진호 의원, 신택수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5건	4	-	-	-	1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9. 2. 4(목)

○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9. 2. 4~2. 8(5일간)

□ 제2차 본회의 - '99. 2. 8(월)

○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수정가결)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9. 2. 4(목) 14:00~14:10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9분	
1차(2. 4)	14:10~14:15	5분
2차(2. 8)	11:01~11:15	14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100%)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27명	27	27	-	-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원회	'99. 2. 8	1	1.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회기 : '99. 3. 11~3. 18(8일간)
기획행정 위원회	'99. 2. 4	1	1.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
교육사회 위원회	'99. 2. 6	1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 위원회	'99. 2. 5	1	1.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 (계속)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5	5	3	2			
의회운영 위원회	1	1	1				
기획행정 위원회	2	2	1	1			
교육사회 위원회	1	1	1				
산업경제 위원회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57회 임시회 기간을 '99. 2. 4일부터 2. 8일까지 5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일반안건	1	1	1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21C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 「충청북도21C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직장협의회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함

○ 법률에서 정한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도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 경직된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직장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도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협의위원 선임에 있어서 일부조문중 "선임되도록 할것"을 "선임되도록 한다"로 하고 "선임할것"을 "선임되도록 한다"로 자구수정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1	1				
조 례 안	2	2	1	1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학교신설 : 6개교(초등 5, 고교 1)

○ 본교폐지 : 10개교(초등)

○ 분교장폐지 : 9분교장(초등)

○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 : 7개교(초등 6, 중 1)

○ 부설고폐지 : 1개교

○ 위치변경 : 10개교(초등 2, 중 1, 고교 7)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

〔 주요골자 〕

○ 법인격 및 명칭을 정함

· 법인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치

· 명 칭 : 재단법인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

○ 조합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조합에서 수행할 사업을 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종합관리, 기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함

○ 조합의 설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건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재산으로 출연된 출연금은 중소기업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고 타용도 사용시 회수토록 규정함

○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을 경우 조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 보증계약을 체결토록 함

○ 매 사업년도에 발생되는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잔여액은 기본재산 확충에 사용토록 함

○ 조합의 경영상황에 관한 평가 및 감사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 해산시 잔여 재산은 충청북도에 귀속토록 함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조합운영방식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조례에 명기하고

· 기본재산은 운영비와 구분하여 계정토록 하여 출연금의 잠식을 방지하도록 함

○ 수정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기업의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조성 운영토록 함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보증방법, 보증제한업종, 보증기관 및 보증료, 위약금, 보증채무이행, 구상권 행사 등을 기재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 운영토록 함

· 신용조사를 기업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시장여건, 금융기관과의 거래 상황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토록 함

· 신용정보를 종합관리 하도록 함

·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방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에 대하여 도지사가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건 의 안	1	1		1				

第 10 節 第158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58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99. 2. 18 집회공고 하였고,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3월 11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9. 3. 11 ~ 3. 18 (8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8건

○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5분 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윤병태의원)

- 충북대종설치장소의 재검토 관련

※ 회의록 서명의원 : 이길하 의원, 신대식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10건	8	-	-	-	2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9. 3. 11(목)

○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9. 3. 11~3. 18(8일간)

○ 5분 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윤병태 의원)

- 충북대종 설치장소의 재검토

□ 제2차 본회의 - '99. 3. 18(목)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9. 3. 11(목) 14:00~14:08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43분(21.5분)	
1차(3.11)	14:09~14:29	20분
2차(3.18)	11:02~11:25	23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4.5%)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27명	26	25	1	2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99. 3.18	1	1.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회기 : '99. 4. 8~4. 17(10일간)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행정 위 원 회	'99. 3.12	1	1.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
	'99. 3.15	2	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9. 3.16	3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교육사회 위 원 회	'99. 3.17	1	1.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산업경제 위 원 회	'99. 3.12	1	1.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 2.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 ※ 계속 심사하기로 함
	'99. 3.17	2	1.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계속)
관광건설 위 원 회	'99. 3.12	1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2	11	8	3		1	
의회운영 위 원 회	2	2	2				
기획행정 위 원 회	5	5	5				
교육사회 위 원 회	1	1	1				
산업경제 위 원 회	2	2		2			
관광건설 위 원 회	2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58회 임시회 기간을 '99. 3. 11일부터 3. 18일까지 8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제12조의 2(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조문신설

-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2					
일반안건	1	1	1					
조례안	1	1	1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위원회 구성시

· 공무원수를 총위원회수 1/3 이내로 제한

○ 간사의 직위를 격상

· 주무담당 → 주무과장

○ 위원회기능 및 위원회 개최 조항에 "주요사업투자 심사"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조례 제명의 개정(도기 외에 문장, 휘장 등을 규정)

○ 도기 교체에 따른 조문의 문구수정 및「별표」도안의 제정

○ 도기의 모양, 규격, 문장, 휘장 등에 관하여 명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조정

·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을 750/1000으로 중과세 하던 것을 ⇒ 500/1000으로 함

○ 1가구당 1대 초과 차량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규제 삭제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 중과하는 것을 삭제함

○ 자동차의 저당권 설정 등록시 등록세율 조정

· 자동차를 저당권 설정등록시 등록세율을 채권금액의 10/1000 내지 30/1000으로 각각 차등 적용하던 것을 ⇒ 20/1000의 세율로 단일화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일부 신설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 감면규정 신설
○ 1가구당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규정 폐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 보완
○ 1가구 1주택 판단시 호주 승계예정자의 범위 보완
○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	4	4					
조 례 안	4	4	4					

□ 교육사회위원회

⊙ 지역보건의료계획

〔 주요골자 〕

○ 시행기간 : '99~2002년(4개년)
○ 주요내용
·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연도별 추진계획
· 보건소 육성지원(시설확충 및 장비보강)
· 도 특수사업 추진 : 6건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승 인 안	1	1	1					

□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

〔 주요골자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

○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검사 시험의뢰서와 검체소요량을 제출하여야 하며, 축산위생연구소장은 검사 시험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 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는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축산물검사수수료및검사의기준」을 적용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축검사수수료를 조정하고 원유공영검사 수수료의 징수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토록 함

○ 충청북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수행상 의뢰한 경우와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함

○ 검사결과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 교부한 검사·시험성적서를 반환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검사·시험 등을 위한 현지출장여비 징수는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임

· 용어와 명칭을 법령에 사용하는 어휘로 하여야 함

○ 수정 주요골자

· 검사·시험 등을 위한 현지 출장여비 징수를 규정한 제5조중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함

· "관공서"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함

· 구두점 및 중간점 사용을 바로 함

⊙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

〔 주요골자 〕

○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공동출자방식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업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둠

○ 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는 국제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와 민간전문가,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자치단체지원기준, 규모 등을 따로 정하도록 함

○ 수정주요골자

· 생략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2				
조 례 안	2	2		2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의 산출기준 근거조항 마련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산출

○ 용어의 정비

· 현장조사 및 시험 →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

· 시험의뢰자는 시험결과 →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자는 성과표

· 공용조사 및 시험 →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험과 검사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일부 조항중 민원인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행정 편의 주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아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수정주요골자

· 안 제3조(징수방법) 제1항중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함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1		1		1		
조 례 안	2	1		1		1		

第 11 節 第159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59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99. 3. 18 집회공고 하였고, 도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4월 8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9. 4. 8 ~ 4. 17 (10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5건
○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 영월댐 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 채택의 건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 보고
※ 회의록 서명의원 : 박노철 의원, 구본선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11건	5	1	-	-	5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9. 4. 8(목)

○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9. 4. 8~4. 17(10일간)
○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제2차 본회의 - '99. 4. 17(토)**

○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원안가결)

○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원안가결)

○ 「영월댐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 채택의 건(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활용에 관한 규정(안) 보고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9. 4. 8(목) 14:00~14:09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59분(29.5분)	
1차(4. 8)	14:09~14:26	17분
2차(4.17)	11:02~11:44	4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4.5%)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27명	24	27	3	-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99. 4. 8	1	1.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회기 : '99. 5. 10~5. 21(12일간) 2.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개정의 건 3. 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 규정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99. 4.14	1	1.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교육사회위원회	'99. 4. 9	1	1.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9. 4.14	2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9. 4.15	3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 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9. 4. 17	4	1. 영월댐 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 채택의 건
산업경제위원회	'99. 4. 9	1	1.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 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 관리조례안
	'99. 4.13	2	1.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신용보증조합, 사이판해외취업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준호 의원 발의) · 대상 : 행정부지사, 경제통상국장, 김재욱 공보관,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 질문요지 : 사이판 해외취업문제
	'99. 4.16	3	1.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충북신용보증조합, 사이판해외취업
관광건설위원회	'99. 4. 9	1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99. 4.15	2	1.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가. 대중교통서비스 보증제도 나. 밀레니엄 사업
예산결산특위	'99. 4.12	1	1.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2.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구성의 건
	'99. 4. 13	2	1.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계속)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7	15	13	2		2	
의회운영위원회	3	3	3				
기획행정위원회	1	1	1				
교육사회위원회	6	5	4	1		1	
산업경제위원회	4	3	3			1	
관광건설위원회	2	2	2				
예산결산특위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59회 임시회 기간을 '99. 4. 8일부터 4.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 **주요골자** 〕

○ 의회기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중 기면의 색을 "하늘색을"에서 "하늘색으로"로 하고 중앙에 무궁화 속의 원내 충청북도 휘장을 "議"자로 변경하고자 함

○ 제6조 제2항 삭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2					
일반안건	2	2	2					

□ 기획행정위원회

⊙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

〔 **제안이유** 〕

○ 협의회 위원의 상임·비상임 구분폐지

○ 자문위원 위촉대상에 지방의회의원 추가

○ 안건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회의참석 근거규정 신설

○ 규약상 구체적인 정기회의 소집시기 조정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실무협의회위원장·간사 등의 직명변경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일반안건	1	1	1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수수료 감면사항 개정

·배출시설물에 대한 정기 환경오염도 검사 ⇒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로 개정

○ 수수료 감면사항 신설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분교장 폐지(2분교장)

·생극초등학교 관성분교장('99. 5. 1)

·생극초등학교 오생분교장('99. 5. 1)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	3	3			1		
조례안	4	3	3			1		

□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1	1			1		
조 례 안	2	1	1			1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관련업무 추가위임
- 점용료징수제한, 변상금징수, 수수료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 도로법 제50조 제5항 삭제에 따른 허가사항 삭제
- 토지형질 변경허가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변경허가
- 죽목의 재식, 벌채 허가

○ 도로법 제35조 삭제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교량, 도선시설, 지하도, 터널, 삭도의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징수

○ 지방도 유지관리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환수
-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

○ 지방도 노선이 변경된 폐도로 부지 용도폐지 권한 위임
- 도유재산(도로) 용도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세입세출예산

〔 주요내용 〕

○ 교육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99 제1회추경 예산(안) 조정내역		
		요구액	증	감
합 계	748,865,181	748,865,181	5,757,280	5,757,280
교육위원회	687,825	687,825		
본 청	577,292,069	580,574,349		3,282,280
청주교육청	57,147,218	59,230,218		2,083,000
충주교육청	21,970,533	22,023,533		53,000
제천교육청	12,381,252	12,431,252		50,000
청원교육청	15,064,926	15,126,926		62,000
보은교육청	5,825,223	5,849,223		24,000
옥천교육청	6,559,245	6,600,245		41,000
영동교육청	9,541,569	9,576,569		35,000
진천교육청	6,504,835	6,535,835		31,000
괴산교육청	9,769,230	9,813,230		44,000
음성교육청	11,581,792	11,612,792		31,000
단양교육청	5,124,275	5,145,275		21,000
예 비 비	9,415,189	3,657,909	5,757,280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요구액 7,488억 6518만1천원 중 57억5,728만원 삭감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예산결산안	1	1		1				

第 12 節 第160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60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99. 4. 12 집회공고 하였고, 도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과 도정질문, 시군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등을 다루기 위하여 5월 10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9. 5. 10 ~ 5. 21 (12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5건
○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 도정질문(5. 11~5. 12, 4명)
○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도, 교육청)
○ 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 이근성 의원, 유동찬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14건	5	1	-	-	8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9. 5. 10(월)**
○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회 기 : 1999. 5. 10~5. 21(12일간)
○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가결)
○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분 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의원)
- 대청호수질보전대책 관련

□ 제2차 본회의 - '99. 5. 11(화)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산업경제위원회 유동찬 의원

질문요지 1

○ 과학영농특화지구의 행·재정적 지원실적과 목표대비 달성도는?
○ '95년 충북대학과 용역을 맺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계획이 '98년 종료되었는데 이에 대한 종합평가와 분석여부 및 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대책
○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CHANGE 21에 반영 되었는지와 CHANGE 21에 남부 3군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계속 관리되는지 여부
○ 과학영농특화지구로서 발전시켜야 할 사업은?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96년부터 '98년까지 총 393억5,500만원 투자계획의 73%인 286억 1,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성과로는 지역특화작목의 차별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해 과수원 689ha조성, 포도 비가림시설 255ha, 시설채소 현대화사업 48ha, 표고버서 및 유통시설 14,000여평 등 농업생산기반확충으로 284여억원의 농가소득 향상
○ CHANGE 21은 현재 세부사업을 구체화하여 머지않은 시간내에 확정단계에 있음.
○ 2단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도 CHANGE 21에 적극반영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질문요지 2

○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과연 필요한지?
○ 장기적으로는 유사단체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단기적으로는 각종 사회단체의 개별사무실을 통합 운영하여 경비절감과 사회적 변화에 동참하도록 할 견해와 대책

【 답변 :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

○ 민간단체의 설립목적과 기능, 특히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연구검토후 지적사항이 반영되도록 관련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 권고하겠음.

○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하여는 사업비 집행의 정산검사 등을 통하여 성과를 예의 분석하고 있음.(자세한 자료 서면제출)

질문요지 3

○ 농공단지의 조성목적 실현보다 전시적 과대 포장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고용기회와 소득에 대하여 평가 해 본적이 있는지?

○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은 무엇이며 책임질 사람은 있는지?

○ 현재 휴폐업중인 81개 업체에 대한 대책과 건축중이거나 준비중인 업체의 입주예정 시기 및 고용대책은?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농촌인력 대도시 유입으로 인한 인력부족과 일부 농공단지의 경우 기업의 건실성 보다 경쟁적인 유치로 폐업업체의 증가 및 주민고용 감소초래

○ 농공단지 고용인원 총 11,016명중 현지주민은 65.6%인 7,232명이며 근로자 연간소득은 약1,493억 6천만원으로 현지인의 연간소득은 992억 8천만원 임.

○ 문제점으로는 휴·폐업업체의 증가, 입주업체의 자금난, 공장용지 임대 제한규정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의 부적정으로 업체의 대체입주 유도, 구조조정자금 지원업체 선정시 가산점 부여, 경영안정자금의 금리인하 및 지원조건 완화, 공장용지 임대면적제한 및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기술인력 확보규정 폐지 추진.

○ 휴·폐업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도세감면조례의 제정, 카드관리화, 홍보활동강화로 입주업체를 유도하고 건축중이거나 입주 준비중인 23개 업체중 13개 업체는 금년 하반기에 가동예정이며 10개 업체는 내년도에 입주할 계획임.

○ 지역 실업문제의 중요성을 감안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등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활동 전개

질문요지 4

○ 우리 도에 가칭 "건설기술지원단"을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면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설계용역비 절감과 인력관리에도 효율성이 기대 되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 한시적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수해복구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기술직공무원을 통합운영 하는 등의 방법은 바람직하나

○ 전담조직의 운영문제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도민의 여론, 상시고용에 따른 업무의 배분문제, 운영비의 과다소요, 엔지니어링업체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책임의식과 전문성의 창출여부, 일반직공무원의 감축문제 등 제반여건 검토후 신중하게 결정하겠음.

관광건설위원회 구본선 의원

질문요지 1

○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및 속리산과 수안보지구의 관광진흥 정책은?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국내 일반여행사 134개소의 업체대표, 중국여행사 12개업체 대표, 중고등학교 교장 특별초청 관광설명회 개최, 충북관광홍보관 설치 운영 등으로 1/4분기 관광객 수가 작년 동기대비 8.3%증가

○ 수안보지구는 수중보설치와 지압산책로, 인공폭포 등 물탄공원 관련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장기적으로 돔온천장 건립과 온천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 관광객이 쉬어가며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속리산지구는 불교를 테마로 한 조각공원 조성과 속리산 레져타운 개발을 비롯해 구병산지구, 신정지구를 개발상호 보완적인 관광개발 추진

○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개최되는 수안보온천제, 전통무술축제, 속리산 전통민속축제, 속리축전, 단풍가요제와 관광객유치를 위한 FAM투어, 국제관광교류전 참가, 관광홍보책자 및 VTR을 제작 관광객유치 세일즈활동 강화.

질문요지 2

○ 위임전결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용의

○ 공무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을 중앙에 건의하였는지?

【 답변 :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

○ 도지사결재사항 총 204건중 40%인 82건은 부지사 또는 실국원장에게 대폭 하향조정하는 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달중 각 부서의 실무협의를 거쳐 전결규정을 개정조치하겠음.

○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조직활성화 방안을 마련 2회에 걸쳐 중앙에 건의하였음.

질문요지 3

○ 보은 삼년산성 문화재의 체계적인 지표 발굴조사·연구·보존·안전진단 등 전반적인 진단의지와 진단결과에 따른 복원공사 및 사적공원 조성사업 추진 의향은?

【 답변 :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

○ 그간 17회에 걸쳐 성곽 366m를 보수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계획 25m가 완료되면 성곽보수는 마무리 됨.

○ 정기적인 보수 정비계획을 수립 복원, 정비, 보수하도록 문화재관리국과 협의중에 있고 내년도에 지표조사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용역비 7천만원을 요청중에 있음.

○ 사적공원화사업은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원형보존, 안전성확보, 정확한 고증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음.

질문요지 4

○ '97, '98년도 시행된 공공사업과 관련한 사업지구, 편입토지 규모, 보상금 등 정확한 토지보상이 이루어 졌는지?
○ 만약 담당자 잘못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미 보상분에 대한 처리대책,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촉구 등 그 처리방향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97년도에 백운~방학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9개구간에 편입된 농경지 462개필지 17만 2,715㎡에 대한 영농보상비 3억 6,499만 2천원중 343필지 13만 9,162㎡에 때해서 2억 7,806만 5,000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지급되지 않은 봉계~장갑간 도로의 영농보상비 8,692만 7천원은 '98년 년말부터 지급토록 조치하였음.
○ 금년도에는 살미~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7개 구간에 편입된 농경지 472필지 24만 8,939㎡에 대한 영농보상비 5억 2,481만 7천원중 300필지 15만 1,198㎡에 대하여 3억 435만 6천원을 지급완료 했고 나머지는 금년도 이월되어 현재까지 계속 지급중에 있음.
○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제3차 본회의 - '99. 5. 12(수)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김형태 의원

질문요지 1

○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 '98년 이후 비리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 향후 공중보건의 부조리 근절 및 제도개선 방안은?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4월말 현재 충청북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215명임.

○ 약품구입 비리에 연루되어 5명이 구속되고 14명이 불구속으로 총 19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비리로 적발되었음.

○ 의약품 구입방법을 품목별 총괄입찰제에서 성분별 단가입찰제로 개선 운영하고 정기·수시 복무지도점검 강화와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음.

질문요지 2

○ 보건소근무 약사 채용시 7급수준으로 의사와 차등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및 석사자격의 공중보건 약사제도를 도입할 의향과 약사 근무수당을 급여제로 개정할 용의는?

○ 법률상 300인 이상 고용업체는 노인의 경우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 일반노인의 간병료를 의료보험 처리하거나 공공근로자가 간병토록하여 입원환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과 노인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와 요양병원 수용능력을 배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도의 사업계획과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 답변 :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

○ 시·군의 보건직 결원시 약무직으로 충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토록 하고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방안을 관계부처에 계속 촉구하겠음.

○ 의료업무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19개 분야의 다른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

○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금년부터 시·군보건소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 51명을 배치하고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불능환자 등을 방문간호 서비스를 하고 있음.

○ IMF경제한파로 고령자 의무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경기회복이 되면 고령자가 되도록 많이 취업되도록 지도권장 하겠음.

○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이 보다 많이 확충되도록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음

○ 지금까지 마을별 경로잔치, 도지사기차지 게이트볼대회, 3대동거가족 걷기대회, 3대가족 화목한마당 등을 성대하게 치루었고 특수시책으로 1기업 1노인회 결연사업, 탁노소운영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소요예산 5,300만원은 제1회추경예산에 확보하는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문요지 3

○ 앞으로 있을 2차 구조조정에서 소방인력을 감축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안?

○ 농촌 소방대기소의 노후차량 교체 및 특별근무수당 지급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 규모가 적거나 서로 인접한 소방대기소의 통합운영 대책은?

【 답변 : 소방본부장 양희중 】

○ 소방인력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 2차 구조조정시 소방공무원 제외를 건의하였으며 도 관련부서에서도 중앙에 수차 건의한바 있음.

○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은 46대로 금년도에 8대, 2000년도에 8대를 우선보강하고 나머지 30대는 소방장비보강 5개년계획에 의하여 2003년까지 대폐차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 소방공무원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지급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설은 불가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75시간까지 확대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이 있을 때에는 대기소 등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음.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질문요지 1

○ 21C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지식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북의 지식기술 보유 및 활용실태와 중앙계획과 연계한 충북의 육성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 답변 : 행정부지사 한대수 】

○ '98년 12월말 현재 산업재산권 등록건수가 1만 503건으로 전국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LG정보통신 등 6개 정보통신업체의 유치는 물론 건국대의 생의학연구 등 32개의 이공계대학 부설연구소와 75개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신소재, 생명공학 등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식기술 보유실태는 미흡한 실정임.

○ 충북개발연구원에 21세기 충북의 과학기술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용역주어 현재 연구중에 있음.

질문요지 2

○ 오창첨단산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의 육성방안과 관련 생명공학, 항공기 등 첨단상업의 유치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소를 우리 도에 유치할 구체적인 방안

○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고급기술 정보를 획득 활용하기 위해 서울의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간 컨소시엄 운영이 필요한데 현재의 산·학·연 컨소시엄운영을 전국단위로 확대할 용의는?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국제규모의 정보통신 박람회개최를 구상중에 있음.

○ 지금까지 운영중인 지역컨소시엄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주관 추진한 전국컨소시엄사업도 도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음.

질문요지 3

○ 새로운 환경보전시책의 보급확산을 위해 그동안 노력한 대표적 사례
○ 충청북도 환경보전정책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과 대책

【 답변 :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

○ 수자원절약, 자가용 카풀제, 기업인의 조림목화 및 공장주변 하천정화, 식단제 개선, 자원아껴쓰기, 토양오염방지, 환경기초시설 확충,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자원절약형 제품의 개발, 환경보전 교육 및 프로그램개발, 가로수 정비, 청정연료 보급확대, 철저한 지하수 폐공관리, 중고상품 상설시장설치, 자연환경보전 적극참여 우수기업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등 임.

○ 환경정책의 목표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보전, 맑은공기 및 토양환경보전,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으로 정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추진하겠음.

질문요지 4

○ 서해수련원 시설에 막대한 투자재원 및 운영비, 인건비소요와 중앙지원 불투명에 따른 대책과
○ 타 시·도 시설을 하계기간만 임차 사용하거나 건립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

【 답변 : 교육감 김영세 】

○ 수련원건립에 필요한 총 소요액 135억원 중에서 100억원정도는 국고지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며 수련원 관리를 위한 인력은 증원하지 않고 학생야영장 인원을 재배치할 계획임.

○ 타 시·도 시설의 임차사용은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이용신청이 집중될 경우 수용능력의 한계가 있어 불가능함.

○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서해수련원의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됨.

□ 제8차 본회의 - '99. 5. 21(금)

○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공입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 수강료징수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원안가결)
○ 1998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 1999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원안가결)
○ 시·군간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찬성의견으로 채택)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9. 5. 10(월) 14:02~14:10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0시간 30분(2시간 38분)	
1차(5.10)	14:10~14:38	28분
2차(5.11)	11:01~15:52	4시간 51분
3차(5.12)	11:02~15:34	4시간 32분
4차(5.21)	11:01~11:40	39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4.5%)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3	4	1	2	3	4
27명	27	25	26	24	-	2	1	3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99. 5.10	1	1. 제1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99. 6. 14~6. 19(6일간) 2.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9. 5.13	2	1.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9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른 추천 협의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99. 5.13	1	1.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2. '9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99. 5.14	2	1.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라. 소방본부
	'99. 5.17	3	1.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기획조정실 다. 증평출장소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교육사회위원회	'99. 5.13	1	1.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옥천전문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 가, 나, 다, 라 마(원안가결)
	'99. 5.14	2	1.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99. 5.17	3	1.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산업경제위원회	'99. 5.13	1	1.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농정국
	'99. 5.14	2	1.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경제통상국
	'99. 5.17	3	1.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농업기술원 ※ 계수조정 : 농업기술원만 원안가결
관광건설위원회	'99. 5.13	1	1.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문화진흥국
	'99. 5.14	2	1.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건설교통국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 건설교통국(원안가결)
예산결산특위	'99. 5.18	1	1.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2.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구성의 건 ※ 예결위원 전체위원이 참여하기로 함.
	'99. 5.20	2	1.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계속)

2) 안건처리상황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결과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7	17	10	7			
의회운영위원회	5	5	5				
기획행정위원회	4	4	2	2			
교육사회위원회	5	5	3	2			
산업경제위원회	1	1		1			
관광건설위원회	1	1		1			
예산결산특위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60회 임시회 기간을 '99. 5. 10일부터 5. 21일까지 12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 **주요골자** 〕

○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함

· 출석장소 : 본회의장

· 출석일시 : '97. 5. 11 ~ 5. 12 (2일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

〔 **주요골자** 〕

○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용어정비

○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별표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일반안건	3	3	3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책인 만큼 참여대상자의 범위를 도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도민의 자녀로 한정함

○ 근로활동 운영시기는 재학생들의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으로 함

○ 근로활동 신청은 희망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제반서류의 확인이 용이한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함

○ 근로활동에 참여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함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중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가 일부 현실에 부적합한 내용이 있어 이를 현실적·합리적으로 바로잡아 조례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함

○ 주요골자

· 조례(안) 제3조(대상자) 제2항중 "고등학생은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를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 주요골자 〕 국공유재산의 상호교환

○ 재산의 처분 :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처분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49-3

· 규　　모 : 대지 4,705㎡, 건물 4,243.42(24개동)㎡, 수목 1,092주

· 시　　기 : '99 상반기

· 감정가액 : 2,131,415천원

○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 일부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08-4
- 규　　모 : 13,294㎡(체육용지)
- 시　　기 : '99 상반기
- 감정가액 : 3,722,320천원

○ 재산의 취득 : 도립 옥천전문대학 부지 일부
- 위　　치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80-1
- 규　　모 : 9,793.2㎡(학교용지)
- 시　　기 : '99 상반기
- 감정가액 : 1,958,640천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주요골자** 〕

○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일부 →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편입

〔 **심사결과** 〕　**찬성의견**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2	1				
조례안	1	1		1				
일반안건	2	2	2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 주요골자 〕

○ 보수교육대상자 수강료
○ 수강료는 당해 개강일 5일전까지 납부
○ 과오납 및 개강하기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료 미반환
○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강허가 취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직장협의회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이 5급이하인 기관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통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함
○ 법률에서 정한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토록 하고 설립사실 통보서를 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봄
○ 협의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도록 함
○ 협의회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사명령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일자로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봄
○ 협의회원은 대표자를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직종별, 직급별, 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도록 함
○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협의회의 운영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 확대
○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인하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특례인정
○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산출방식 개선
○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규정
○ 청사관리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관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안 제45조 중 "교육감, 부교육감, 청·소의 장 및 소속공무원"을 "교육감소속공무원"으로 함
 · 조례 제46조 제3호 중 "1급 및 2급이외의 관사"를 "시설관리사, 거주관사, 기타관리사 등"으로 함
 · 조례안 제5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청·소의 장, 시설관리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공동숙사 및 면 이하 지역 근무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	4	3	1				
조례안	4	4	3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9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

〔 주요골자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역	
		계	증	감
합 계	**691,209,955**	**691,209,955**	**1,241,235**	**1,231,245**
기획행정위원회	**193,592,929**	**192,688,389**	**1,231,245**	**336,695**
공 보 관 실	693,500	725,195	-	31,695
감 사 관 실	141,300	141,300	-	-
기 획 조 정 실	49,358,989	48,372,754	1,241,235	255,000
자 치 행 정 국	87,469,743	87,517,743	-	48,000
소 방 본 부	27,920,658	27,920,658	-	-
증 평 출 장 소	28,008,739	28,010,739	-	2,000
교육사회위원회	**142,441,446**	**142,460,186**	-	**18,740**
여 성 정 책 관 실	1,299,677	1,299,677	-	-
복 지 환 경 국	135,843,678	135,843,678	-	-
옥 천 전 문 대	764,840	764,840	-	-
지방공무원교육원	2,438,367	2,438,367	-	-
보건환경연구원	2,094,884	2,113,624	-	18,740
산업경제위원회	**191,650,029**	**192,333,829**	-	**683,800**
경 제 통 상 국	50,526,539	51,126,539	-	600,000
농 정 국	129,873,524	129,957,324	-	83,800
농 업 기 술 원	11,249,966	11,249,966	-	-
관광건설위원회	**160,142,115**	**160,342,115**	-	**200,000**
문 화 진 흥 국	20,294,396	20,494,396	-	200,000
건 설 교 통 국	139,847,719	139,847,719	-	-
의회운영위원회	**3,383,436**	**3,385,436**	-	**2,000**
의 회 사 무 처	3,383,436	3,385,436	-	2,000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역	
		계	증	감
합 계	**228,540,639**	**228,540,639**	-	-
공기업특별회계	**178,453,855**	**178,453,855**	-	-
지역개발기금	126,361,966	126,361,966	-	-
공영개발사업	52,091,889	52,091,889	-	-
기타특별회계	**50,086,784**	**50,086,784**	-	-
도립옥천전문대운영	2,679,511	2,679,511	-	-
의료보호기금	35,200,103	35,200,103	-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8,033,625	8,033,625	-	-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운영관리	2,150,232	2,150,232	-	-
증평출장소지방산업 단지조성사업	2,023,313	2,023,313	-	-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1999년도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요구액 9,197억5,059만4천원중 12억4,123만 5천원을 삭감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가결

第 13 節 第161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61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99. 5. 14 집회공고 하였고,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6월 14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9. 6. 14 ~ 6. 19 (6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3건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영태 의원, 김대호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4건	3	-	-	-	1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9. 6. 14(월)

○ 제1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9. 6. 14~6. 19(6일간)

□ 제2차 본회의 - '99. 6. 19(토)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원안가결)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9. 6. 14(월) 14:01~14:10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8분(9분)	
1차(6.14)	14:11~14:15	4분
2차(6.19)	11:01~11:15	14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88.9%)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27명	25	23	2	4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99. 6.14	1	1.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99. 7. 8~7. 16(9일간)
기획행정 위 원 회	'99. 6.15	1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산업경제 위 원 회	'99. 6.17	1	1.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관광건설 위 원 회	'99. 6.15	1	1.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조례정비 특 위	'99. 7. 6	1	1. 충청북도조례중개정·폐지조례안 채택의 건 · 정비대상 : 개정 71건, 폐지 14건(85건) · 채택 : 개정 37건, 폐지 7건(44건) · 집행부촉구 : 23건(자구정리,관직정비 등) · 유보 : 24건(전문가의견수렴 필요사항 등)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5	5	4	1			
의회운영 위 원 회	1	1	1				
기획행정 위 원 회	1	1	1				
산업경제 위 원 회	1	1		1			
관광건설 위 원 회	1	1	1				
조례정비 특 위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61회 임시회 기간을 '99. 6. 14일부터 6. 19일까지 6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일반안건	1	1	1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상품권의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의 일부 업무가 시군출장소에 기위임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취급자 교육업무도 위임

○ 지하수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신규위임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관리업무 14개 사무

○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방법 변경

○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사무 민간위탁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명칭변경

· 농촌진흥원 → 농업기술원

· 농촌진흥원장 → 농업기술원장

· 진흥원 → 기술원

○ 불합리한 사항 개선 보완

· "검정"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삭제

· 분석 및 검정 → 분석

· 농업기술, 작물, 원예, 축산 → 농작물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작물 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의뢰에 대하여 수시로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 불합리한 시험거부 조항 삭제

○ 주요골자

· 제4조 제2항 : 시험의 의뢰는 시험목적, 처리기간 및 작물재배시기 등을 감안하여 여름작물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겨울작물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 까지 신청한다. 다만 작물재배시기와 관련 없는 시험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 : 제목 "거절"을 "거부"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며 내지 제4호를 내지 제3호로 한다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 주요골자 〕

○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적용범위는 대중교통지원사업에 한정함

○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재원 및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

○ 대중교통지원사업중 보조대상사업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매년 7월말까지 선정하여 다음연도 1월부터 지원

○ 운행결손 보상방법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第 14 節 第162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57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6월 22일 집회공고 하였고, 상반기 도정 주요추진상황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상황보고, 조례안 심의, 예결위 구성 등을 위하여 7월 8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9. 7. 8 ~ 7. 16 (9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48건
○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44건 정비)
○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진로쿠어스맥주 입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채택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주백 의원, 한현태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54건	48	1	1	1	3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9. 7. 8(목)**

○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9. 7. 8~7. 16(9일간)
○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위원장 : 신대식 의원　　· 간 사 : 구본선 의원
  · 위 원 : 이광종, 이완영, 유주열, 김대호, 한현태,
  김주백, 이근성, 이길하, 신택수 의원
○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44건)
○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행정서사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제2차 본회의 - '99. 7. 16(금)**

○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진로쿠어스맥주 입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채택의 건(원안가결)

○ 5분 자유발언

·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의원

- 대형유통업체 도내진출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

·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의원

- 각종 기금운용상황 관련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9. 7. 8(목) 14:00~14:07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3시간 18분(1시간 39분)	
1차(7. 8)	14:08~16:50	2시간 42분
2차(7.16)	10:03~10:39	36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6.3%)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27명	27	25	-	2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99. 7. 8	1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99. 8. 23~8. 25(3일간)
기획행정위원회	'99. 7.12	1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자치행정국 라. 소방본부
	'99. 7.13	2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증평출장소 나. 기획조정실 다. 청주·충주의료원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99. 7.12	1	1.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교육청
	'99. 7.13	2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보건환경연구원
	'99. 7.15	3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옥천전문대학 나. 공무원교육원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산업경제 위 원 회	'99. 7.12	1	1. 진로쿠어스맥주 입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채택의 건 2.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통상국
	'99. 7.13	2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계속) 가. 농정국 나. 농업기술원
관광건설 위 원 회	'99. 7.12	1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문화진흥국
	'99. 7.13	2	1. 199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계속) 가. 건설교통국
예산결산 특 위	'99. 7. 8	1	1.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신대식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2. 간사선임의 건 · 구본선 의원을 선임
	'99. 7.14	2	1.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2.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6	16	14	2			
의회운영 위 원 회	4	4	4				
기획행정 위 원 회	4	4	4				
교육사회 위 원 회	3	3	2	1			
산업경제 위 원 회	2	2	2				
관광건설 위 원 회	1	1	1				
예산결산 특 위	3	3	2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62회 임시회 기간을 '99. 7. 8일부터 7. 16일까지 9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 **주요골자** 〕

○ 지역, 상임위원회 고려 안배
○ 존속기간 : 의결일로부터 2000년 6월 30일 까지
○ 위원선임 : 의장에 일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9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주요내용

〔 **의회사무처 소관** 〕

○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회운영
○ 의정활동 적극 추진
○ 발전적인 도정수행 선도
○ 의정활동 홍보강화
○ 의정지원업무 정보화 추진
○ 의정자료관리 내실 추진
○ 의정지원 능력제고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2					
일반안건	2	2	2					

□ 기획행정위원회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의료원의 정관변경 인가권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

○ 의료원의 원장후보 추천권을 이사회에서 지방공사의 장 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

○ 감사 임명권을 의료원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의료원장의 임기보장 규정 신설

○ 의료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있어 도지사 승인사항을 사후보고로 변경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

·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지방공사의 장 임명대상 지방공사의 감사 1인

○ 위원의 임기 : 지방공사의 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해지

○ 회 의 :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후보의 추천 : 지방공사의 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지방공사의 장 후보로 추천,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재 추천요구 가능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관장의 업무를 총무과장에서 기획실장이 겸직함
○ 영화 상영시 대강당 사용료 징수
 · 오전 25,000원 · 오후 40,000원 · 야간 50,000원
○ 영사기 사용료 징수 : 1회 20,000원
○ 직접 영화관람료 징수
 · 청소년 2,000원(단체 1,500원)
 · 군 인 2,500원(단체 2,000원)
 · 일 반 3,000원(단체 2,500원)
○ 대강당을 사용하는 자에게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으로 총사용료의 100분의 10~20을 사용료로 징수함
○ 유료관람권 발행자에게 총수입금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징수함
○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출장소장이 직접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 리 내 용					비고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조 례 안	3	3	3					

⊙ '99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주요내용

〔 **공보관실 소관** 〕

○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적극적 도정홍보
○ 능동적 도정홍보활동 전개
○ 도민 여론의 도정반영 촉진
○ 기자실과의 돈독한 유대강화
○ 영상홍보시설 기능강화

〔 감사관실 소관 〕

○ 정기 행정감사 강화
○ 민생분야의 감사강화
○ 변화에 대응한 공직자세 확립
○ 진정 및 생활민원의 신속·공정 처리
○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의 내실화

〔 기획조정실 소관 〕

○ 도정의 정책기획 기능강화
○ 경영행정체제로의 개편
○ 21C 지식정보화 시대 대응
○ 신뢰받는 열린행정 실현

〔 소방본부 소관 〕

○ 소방청사 신축보수
○ 소방장비 현대화 및 조작능력의 향상
○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 소방공무원 친절봉사운동 전개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 화재 피해복구 안내서비스 내실화
○ 재래시장 소방 안전관리 강화
○ 범 도민 소방안전의식 고취
○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행정 강화
○ 구조구급대 서비스 실현
○ 소방정보의 신속한 투입 및 지휘체제 확립

〔 자치행정국 소관 〕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강화
○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시스템 구축
○ 공직자 친절운동 전개
○ 자치행정의 생산성 향상
○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 실효성 있는 민방위태세 확립

〔 증평출장소 소관 〕

○ 신뢰받는 열린행정의 실현
○ 밝고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건설
○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 기업을 도와주는 행정구현
○ 계속 살고 돌아오고 싶은 농촌건설
○ 전국 제일의 인삼타운 조성
○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
○ 지역 문화창달과 체육의 진흥

〔 청주의료원 소관 〕

○ 의료장비의 현대화
○ 병원의 개방화
○ 시설방문 진료 및 이동진료
○ 소방공무원 친절봉사운동 전개
○ 친절한 의료원상 확립

〔 충주의료원 소관 〕

○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
○ 중환자실 개설 및 병원 환경정비
○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 친절운동 전개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본교폐지 : 3교
○ 분교장 폐지 : 14교
○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 : 9교
○ 교명변경 : 1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 '99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주요내용

〔 교육청 소관 〕

○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 질 높은 교육으로 경쟁력 신장
○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

〔 여성정책관실 소관 〕

○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지속추진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
○ 여성조직의 육성과 자율능력 배양
○ 여성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 합리적 소비문화 조성

〔 복지환경국 소관 〕

○ 저소득층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
○ 노인복지 확충
○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 아동의 건전육성 및 안전보육
○ 사회복지시설의 내실운영
○ 민간의 복지참여 확대
○ 도민의 건강증진
○ 청정환경의 보전 및 관리
○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공급

〔 옥천전문대학 소관 〕

○ 자립기반 구축
○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확보 추진
○ 21C 대비 전문기술인 양성
○ 창업 동아리 활성화

〔 공무원교육원 소관 〕

○ 다양한 전문교육과정 신설
○ 새 시대 공직관 확립을 위한 의식개혁교육 강화
○ 친절봉사교육 실시
○ 시책교육의 강화
○ 21C 정보화 세계화에 대비한 전산 외국어 교육실시
○ 실습 체험위주의 참여교육 운영
○ 교수요원의 자질향상 및 열린교육원 운영
○ 도민교육 훈련계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 보건부문의 시험검사 사업
○ 대기환경 개선 검사사업
○ 수질검사 사업
○ 창의적 조사·연구로 선제행정 추진
○ 산학 공동연구사업

□ 산업경제위원회

⊙ 진로쿠어스맥주입찰에대한 우리의입장 채택

〔 제안이유 〕

○ 충북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LG반도체, 충북은행, 옥천조폐창이 통합 또는 폐쇄됨
○ IMF이후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진로쿠어스맥주의 합병은 지역경제 악화요인이 됨
○ 지방자치시대에 기업의 사명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함
○ 입찰과정은 투명하고 충북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함

〔 심사결과 〕 원안채택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일반안건	1	1	1					

⊙ '99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주요내용

〔 농정국 소관 〕

○ 식량작물의 안정생산
○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
○ 지역특화작목 지속적 육성
○ 농산물유통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 축·수산업의 안정적 발전
○ 농촌 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 산림자원 증식 및 임업경영 기반 확충
○ 농정 특수시책

〔 경제통상국 소관 〕

○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경쟁력 강화
○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 미래 선도의 공격적 국제통상 전개
○ 주요 현안사업

〔 농촌진흥원 소관 〕

○ 장려품종 선발시험 실시
○ 청정채소 안전다수 재배기술 개발
○ 시설채소 재배법 및 환경개선
○ 수출유망 과수의 경쟁력 제고
○ 화훼기술 개발 및 조직배양 활용화
○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

○ 선진 농업형 농산물 품질인증제 도입
○ 농작물 병해충 방제체제 확립
○ 지역여건을 감안한 농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 첨단기술 협력 공동연구 체제 강화
○ 쌀의 안전생산기술 보급
○ 환경농업 기술조성 지도
○ 수출지향 화훼산업 육성
○ 가축사육 기반확충 및 경쟁력 강화
○ 새해 영농기술교육 계획

□ 관광건설위원회

⊙ '99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주요내용

〔 문화진흥국 소관 〕

○ 21C 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의 특성개발
○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여건조성
○ 도민의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
○ 국악인구의 저변확대
○ 옛 문화의 발굴계승문화예술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
○ 건축문화의 새로운 변화 모색
○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 활기 넘치는 충북체육 및 청소년 육성
○ 지역특성에 부합된 관광 개발
○ 화합의 스포츠 문화축제 개최

〔 건설교통국 소관 〕

○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역발전
○ 재해 사전 대비
○ 효율과 안전이 조화된 도로망 구축
○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주거문화 향상
○ 대중교통 기반 구축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적행정 구현
○ 주요 현안사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 주요내용 〕

○ 교육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99 제2회추경예산(안)조정내역		
		요 구 액	증	감
합 계	795,819,481	795,819,481	23,200	23,200
교육위원회	693,485	693,485	-	-
본 청	623,064,475	623,087,675	-	23,200
청주교육청	59,665,009	59,665,009	-	-
충주교육청	22,449,687	22,449,687	-	-
제천교육청	13,076,546	13,076,546	-	-
청원교육청	15,575,067	15,575,067	-	-
보은교육청	6,316,728	6,316,728	-	-
옥천교육청	6,961,709	6,961,709	-	-
영동교육청	10,123,390	10,123,390	-	-
진천교육청	6,827,187	6,827,187	-	-
괴산교육청	10,310,030	10,310,030	-	-
음성교육청	12,021,329	12,021,329	-	-
단양교육청	5,467,769	5,467,769	-	-
예 비 비	3,267,070	3,243,870	23,200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요구액 7,958억 1,948만1천원 중 2,320만원 삭감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 리 내 용					비고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예산결산안	1	1		1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조문개정

· 다른 조례나 규칙에 → 다른 조례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직제개편에 따라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제1조(목적)의 문구 수정보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제3조 제2항을 조문의 취지에 맞게 제2조로 정비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로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현재 대상수상 부문 8개 부문을 11개 부문으로 세분화

○ 제3조 제2호의 문·예부문을 문학부문, 예술부문으로 동조 제4호의 교육·체육부문을 교육부문, 체육부문으로 동조 제8호의 산업·근로부문을 산업부문, 근로부문으로 분리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조문개정(도지사가 따로 → 규칙으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로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제3조 제2항 제4호의 "국가안전기획부충북지부장"을 "국가정보원 충북지부장"으로 변경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장학금지급대상을 "새마을지도자"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그 자녀"로 변경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제7조 제1항중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까지 포함시켜 개정하고자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제6조 장학금액을 현실에 맞게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최근 개정 공포한 소방법에 따라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시설에 쓰이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10배미만에서 20배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 화재위험 경보발령중 불의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위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폐지함

○ 조례로 정하여 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사항과 법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주방설비, 보일러 등 10개 조문을 폐지하여 종전의 제6장 26개조문을 제5장 16개 조문으로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제2조중 "산55-24번지" 를 "산751-1번지"로 개정

○ 별표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준함"을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준함"으로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제2조중 "554-6번지"를 "554-58번지"로 개정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이용대상 연령 개정(65세 이상 → 60세 이상)

○ 직영과 위탁운영 규정의 내용 및 용어정리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노인복지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문구수정 보완(내용 중 "노인"을 삽입)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제30조 삭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자구수정

· 도지사 → 충청북도지사

· 도의회의원 → 충청북도의회의원

○ 제8조 제3항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기구개편에 따른 관직명칭 개정 (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 통상산업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행정부지사→경제통상국장)

○ 정의중 "연쇄화사업"을 "체인사업"으로 하고 "연쇄화사업자"를 "체인사업자"로 하며, "도·소매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

○ 사후관리중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조사할 수 있다"로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제명 변경

·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 법령 용어·정비 및 규제완화(면제할 수 있다 → 면제한다)

○ 민원인의 출장공무원의 여비부담 조항 삭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관직명칭 개정(산림청장 → 환경부장관)
○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제조항 삭제
○ 법 개정으로 신고 의무기간 완화(3일 → 7일)
○ 자구수정(포획승인증 → 포획승인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 종전의 22개 조문을 18개 조문으로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자구수정 (국민학교 → 초등학교, 방위병 → 공익근무요원)
○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휴양림내의 숲속의집 또는 임간수련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
○ 시설사용 요금표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자구 수정(진흥을 위한 사업 또한 활동이나 →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 관직 정리(문화관광국장 → 문화진흥국장)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부위원장의 직명 개정
· 문화진흥국장 → 건설교통국장
· 문화체육과장 → 지역개발과장
○ 자구 수정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 1의"로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상위법의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제28호, 제37호 삭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관직 및 자구수정(부지사 → 행정부지사, 다음 각호의 → 다음 각호의 1의)

○ 단서조항 삭제(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체육시설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제2조 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 주민편의를 위한 도달주의 채택(제4조 제1항)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자구 수정(각호의 → 각호의 1의)

○ 직명 변경(중등교육장 → 교육국장)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 : 제19조 제3항 →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자구 수정(도 심의회 → 심의회)

○ 중복된 조문 수정(제7조의2 제3호, 동조 제4호)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직명개정(부지사 → 행정부지사)

○ 자구수정(위원장의 명을 → 위원장 및 관계국장의 명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제6조 제2항중 "위원장을 포함하여"를 삭제

○ 모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내용적용 자구수정 (제10조 제3호, 제4호)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정비

·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설치기준 관련조문 정비

- 건축법 제4조 제2항 및 영 제5조 제3항 → 건축법 제4조 제5항 및 영 제5조 제4항

· 건축분쟁 제외대상 관련조문 정비

- 건설업법 제3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일부 불합리한 내용 개선 · 보완**

·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법령 용어 사용

· "재적위원 관련조문" 정비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정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중앙도서관 휴관일 개정 (주1회 월요일 →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중 ·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용어정비(교육감이 정한다 →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용어 정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용어정비(교육감이 정한다 →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세칙 → 시행규칙)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 '92년 이후 고용직공무원의 정·현원이 한명도 없고 앞으로도 신규채용 발생의 여지가 없으므로 동조례 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 상위법인 행정사법의 전문개정과 수수료 관련조항 폐지로 행정사의 수수료 자율화에 따라 동 조례 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96. 6. 28일 제정 조례로서 공업단지 지정해제 및 실시계획 승인취소로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동조례 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기 위하여 '62. 8. 7일 제정된 조례로서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동조례 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91. 10. 26일 제정된 조례로 협의회 설치이후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동조례 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 이 조례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가격등의 표시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5. 8. 11일 제정되었으나 '99. 1. 15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 시·군에 위임되었으므로 동조례 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4	44	44					
조례안	44	44	44					

第 15 節 第163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6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임시회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99. 8. 13 의장이 집회공고 하고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8월 23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9. 8. 23 ~ 8. 25 (3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5건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소정 의원, 유주열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6건	5	-	-	-	1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9. 8. 23(월)

○ 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9. 8. 23~8. 25(3일간)

□ **제2차 본회의 - '99. 8. 25(수)**

○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수정가결)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9. 8. 23(월) 14:01~14:10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21분(10.5분)	
1차(8.23)	14:11~14:17	6분
2차(8.25)	11:02~11:17	15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6.3%)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27명	26	26	1	1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99. 8.23	1	1.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행정 위 원 회	'99. 8.24	1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5	5	4	1			
의회운영 위 원 회	2	2	2				
기획행정 위 원 회	3	3	2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63회 임시회 기간을 '99. 8. 23일부터 8. 25일까지 3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 주요골자 〕

○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 관련 사무를 처리함

○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함

○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충청북도의회의 공인중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충청북도의회의장, 위원회위원장, 사무처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토록 사용구분을 명확히 하고 충청북도의회 직인 종류중 "특별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하여 사용근거를 명시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일반안건	1	1	1					
조 례 안	2	2	2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조례의 구성체계를 표준화하고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

·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로 개칭

· 의회사무처기구를 별도 조례제정 운영 등 구성체계 및 조문정비

○ 유사기능 통폐합 및 업무조정

·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을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로 이관

· 「자치행정국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직속, 총무과」로 이관

· 「건설교통국 주택과」를 「문화진흥국 건축문화과」로 이관

· 「재난관리과」와 「재해대책과」를 통합하여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로 이관

○ 충북개발사업소(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 2002년 12월 31일까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연도별 정원조정 내용

구 분	개편전 정 원	1999년		2000년		2001년	
계	2,455명	2,409	△46	2,359	△50	2,280	△79
집행기관의 정원	1,537명	1,492	△45	1,443	△49	1,367	△76
소방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820명	820	-	820	-	820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1명	41	-	41	-	41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7명	56	△1	55	△1	52	△3

○ 충북개발사업소의 한시정원 존속기한(3년) 연장
○ 연차별 정원 적용규정 및 초과현원에 대한 신분보장 명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조문정비(출장소장 및 지소장 직급 삭제 → 규칙으로)
○ 불합리한 사항 정비
· 도지사가 따로 정함(직급·정원) →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안 제6조 "출장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출장소장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출장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소장 및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조문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안 제6조(공무원)중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소장 및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한다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2	1				
조례안	3	3	2	1				

第 16 節 第165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65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99. 8. 27 소집공고 하고 충청북도의회회수(回數)변경안과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도정질문,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 8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으나 회수(回數)변경 의결에 따라 제165회로 운영되었다.

2. 會　　期 : 1999. 9. 8 ~ 9. 20 (13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5건

○ 충청북도의회 횟수변경안

※ '91. 7. 8 제4대의회 최초집회를 68회→69회로 변경하면서 순차적으로 한회씩 변경하여 제164회를 165회로 변경

○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 도정질문(9.13~9.14, 4명)

-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의원
- 교육사회위원회 김진호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김주백의원

※ 회의록 서명의원 : 이광종 의원, 이완영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10건	5	1	-	-	4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9. 9. 8(수)

○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9. 9. 8~9. 20(13일간)

○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가결)

○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제2차 본회의 - '99. 9. 13(월)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의원

질문요지 1

○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국가산업단지, 충북선전철화사업,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대단위 국책사업 및 각종사업의 추진전략과 대응방향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관련하여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정부기관 이전사업비 38억원과 정수장건설분담금 50억원 등 총 88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해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외의 요로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중앙 경제일간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충북선전철화사업은 우리지역 산업체 물류비 절감과 북부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청주국제공항은 단기대책인 항공로선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활주로 확장, 오근장역의 공항쪽 이전, 계류장 및 진입로 확장 등 장기적인 대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부내륙화물기지의 건설은 상시 고용인원만도 2,500명정도가 취업이 가능하고 30억원의 지방세수가 전망됨.

○ 대단위 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혜가 결집되어야만 계획 기간내에 완수될 수 있을 것임.

질문요지 2

○ 조직활성화 및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 시·군간 인사교류 및 공정한 인사를 위한 대책은?

【 답변 : 행정부지사 한대수 】

○ 국·도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군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인사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 공정한 인사를 위해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업무실적과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을 발탁하는 한편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우대함으로서 조직의 능률을 높여 나가겠음.

질문요지 3

○ 충북CHANGE 21계획의 실현기능성 확보를 위한 해외자본과 민간자본 확보방안과 과거 10년 동안의 사업비 내역, 부족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 답변 :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

○ 충북CHANGE 21에 계획된 민자와 외자유치대상액 19조원 보다 무려 12조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계획의 실천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중앙의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방재정 확충과 민간자본을 확대토록 노력하겠음.

○ 과거 10년동안의 사업비 내역은 별도 서면답변서 제출

질문요지 4

○ BUS TOUR 대화방을 통하여 수렴된 도민의견을 도정에 반영시킨 정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실적은?

○ 마을선정 기준은 도민의 자발적인 요구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일방적인 선정인지와 집행된 예산은?

○ BUS TOUR 대화방을 운영하지 않아도 여론수렴 및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의 대책은?

【 답변 :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

○ 수렴된 의견 23건 대부분이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역개발건의 13건, 정책건의 7건, 소규모 생활민원 3건이며 11건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고 12건은 추진중 임.

○ 대화대상지역 선정은 도계마을, 산간오지, 취약지역 등 소외되기 쉬운 지역중에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가급적 전 시·군을 고르게 순회하고 있음.

○ BUS TOUR 대화방외에 도민의소리 직소창구, 전화, 팩스, PC 통신, 일반서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72건을 접수 도정에 반영 조치하고 있음.

질문요지 5

○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은?

○ 문예진흥기금을 대폭 확대 조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할 용의는?

○ 청소년수련시설 52개소의 안전대책에는 이상이 없는지와 이상이 있을시 대책은?

【 답변 :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

○ 문예진흥기금은 당초 10개년간 50억원조성을 목표로 '84년부터 '95년말까지 중앙 기금보조 9억 7,500만원, 도비출연 6억 2,300만원, 시·군비출연 9억2천만원, 성금 1,200만원, 이자수입 30억 5,470만원 등 "95년말 현재 55억 8,470만원이 조성됨으로서 목표액 초과 달성

○ 기금액이 80억원이 될 때까지는 이자수입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재적립하며 80억원이상 조성시부터 이자수입금의 80%를 지원하고 20%를 재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년도에 14개 분야에 총 515건에 19억 5,300만원의 문예진흥기금 신청이 있었으나 212건에 5억 400만원을 지원하여 지난해의 127건보다 80%가 늘어났음.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대책과 여름철 안전에 대비하여 6월 도내 전 수련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7월에 도내 52개 전 시설에 대하여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

질문요지 6

○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및 지도교사의 사기앙양 대책은?
○ 참가학생 위주의 실습으로 인하여 타 학생들의 실습기회가 주는 문제점은 없는지와 있다면 개선방안은?
○ 참가선수의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는 없는지?
○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선발은 학생의 신청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학교측의 임의지정인지 선수의 선정기준은?

【 답변 : 교육감 김영세 】

○ 지도교사에게는 기능경기대회 입상등급에 따라 연구 실적점을 부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가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과 취업추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
○ 지방경기대회 이전에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시간에 기초기능훈련을 하고 방학중에 강화훈련을 있어 일반학생의 학습환경에 큰 피해는 없다고 봄.
○ 기능훈련에 소요되는 재료는 도교육청과 산업안력공단의 예산지원으로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참가선수 선정기준은 학부모의 희망과 관련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1차 선발하고 직종별 기초소양과 기능을 평가하여 2차선발하여 지도교사의 면담을 통하여 최종선발 하고 있음.
○ 직업훈련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협력을 통하여 직업교육의 현정 적합성을 높이고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

질문요지 1

○ 증평출장소와 관련하여 신도시 개발사업추진, 신도시개발에 따른 계획수립 등 고유업무를 할 수 있게끔 충청북도에서 어떠한 특별한 개발지원책을 갖고 있는지와
○ 출장소 인력 감축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은?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기간도로망 사업 2,798억원 투자, 14만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237억원 투입, 국립청주과학대학 이전, 도시기반정비사업 5개분야 17건에 391억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증평지역의 도시발전을 위해 충북선 전철화사업과 증평인터체인지와 연결되는 교통망의 구축, 관광도로망의 구축, 인삼유통센터 건립,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의 조기 마무리, 청주 국제공항과 연관되는 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 할 것임.

질문요지 2

○ 증평출장소 인력 감축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은?

○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면허 등 자료를 Data-Base하여 명확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건설업체 구조조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격심사 항목중 신규업체가 0점 처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안은?

○ 100억이상 대형공사는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0%이상으로 의무화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답변 :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

○ 증평출장소의 인력감축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자치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당초 감축목표 76명에서 26명이 줄어든 56명을 감축하는 선에서 최종 결정됨으로써 출장소 정원을 140명으로 유지하게 되었음

○ 행정자치부에서 적격심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시달한바 있어 관계공무원의 재량여지를 줄이고 객관화하였음. 따라서 우리도만이 별도의 세부준칙을 새로 마련하여 시행함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됨.

○ 공사입찰 공고를 할 때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현재 40%이상으로 조건을 달아서 공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능한한 40%이상이 공동수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문요지 3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장을 공해 배출업소가 인수하여 무분별하게 공장등록 승인되는 탁상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충청북도에서 알고 있는지와 감사한 사례는 있는지?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최근 3년간 휴업중에 있거나 도산된 창업공장을 인수하여 새로 창립된 공장은 62개로 일반공장이 이를 인수할 경우 공업배치및고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고 공장설립 승인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환경관련법 등에 의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후 승인토록 되어있음.

○ 따라서 62개 업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밀심사조사단을 편성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개선 보완토록 하겠음.

질문요지 4

○ 의약품 구입시 지방재정법상 5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지역제한하여 입찰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충청북도의 업체를 보호 육성할 용의는?

【 답변 :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

○ 금년도 시·군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한 경우를 보면 11개 보건소중 지역제한 입찰이 4개소, 전국입찰이 7개소 임.

○ 입찰방법을 정하는 것은 당해기관 경리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시·군 관계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중지가 모아지면 지역제한입찰 방식을 권고하겠음.

질문요지 5

○ 우수 시공업체에 부과하는 가산점을 공종별로 제한 특화시켜야만 우수업체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 현행 적격심사제 위주로 시행하는 입찰제도에서는 도내 업체끼리 경쟁될 경우 한·두업체가 관급공사를 독점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업체간 갈등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킬 수도 있으며 우수 시공업체가 특혜를 받아 자기가 평가받은 부서와 관계없는 분야를 시공할 경우 기술력 부족이 요인이 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음.

□ 제3차 본회의 - '99. 9. 14(화)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교육사회위원회 김진호 의원

질문요지 1

○ 청내 국·과와 중복된 충북국제통상센터 서울사무소는 활성화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 지역생산업체와 공사, 관이 함께하는 정례모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함.

○ 목표액 대비 16%수준인 충북여성발전기금은 전국최하위 인데 이는 여성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관심과 의지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국제통상과에서는 통상업무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통상센터에서는 지역생산품의 마케팅과 바이어상담, 투자유치홍보, 투자발굴 등 국제통상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업무중복이 아니고 국제통상업무 발전을 위해 설립된 것임.

○ 국제통상실무협의회에 기업체대표를 참여시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고 충북 사이버트레이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수출기반을 조성하겠음.

○ 여성발전기금은 작년부터 총 30억원의 적립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음. 2002년까지 목표액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문요지 2

○ 구조조정으로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부부표창 시책을 재개할 의향과 또는 달리 구상하고 있는 사기진작 대책은?

【 답변 : 행정부지사 한대수 】

○ 금년 10월경 모범공직자 43명을 선발표창하고 부부동반 3박4일간 제주도일원을 견학시킬 계획 추진중임.

○ 도 자체로 모범공무원 포상제도의 개선, 새마을금고 대출제도의 개선, 자유로운 토론문화정착을 위한 캔미팅 운영, 주택구입 등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알선 등 과제를 발굴 시행중임.

질문요지 3

○ 재정 및 인력문제를 해결하며 경로당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한노인회충북지부가 노인강사 풀제도를 두어 노인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파견하여 노인여가 프로그램 뱅크를 만들어 지역의 경로당에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 자원봉사 인력 및 민간 복지재원을 불우계층에 체계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시책마련에 대한 견해는?

○ 충청북도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반려한 사유 및 민원처리는?

【 답변 :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

○ 경로당을 중심으로 전통예절을 전승하고 청소년선도와 자연보호활동, 재활용품수집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경로당운영 선진화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 임.

○ 청주지역이 환경부에서 "96년 12월 21일자로 청정연료사용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황왁스유를 사용하겠다는 동 신고서를 반려하였으며 월동기 이전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기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음.

질문요지 4

○ 과소학급 통폐합에 따른 자금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추구하는 정부의 농업정책과 학교 통폐합은 모순되는 것으로 농촌인구의 절감과 이농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은?

【 답변 : 교육감 김영세 】

○ 행정예고제를 통한 지역여론을 수렴, 반영하였으며, 통·폐합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되도록 행·재정적 지원, 1면 1학교 유지, 시설 및 기자재가 현대화된 적정규모의 지역중심학교 육성에 노력하였으며 초·중학교 통합학교를 전국최초로 설치 운영하였음.

○ 폐교학생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정에 따라 하루에 몇 차례씩 운행하고 있음.

○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통·폐합을 추진할 것이며 농촌아동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산업경제위원회 김주백 의원

질문요지 1

○ 문화관광부에서는 태권도인의 수련장 및 관광명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태권도성전 조성계획 사업에 세계태권도대회를 개최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에서 대상지역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하여 유치위원회를 두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일완 홍범식 및 벽초 홍명희 생가복원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생가복원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 예산확보방안,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조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현재로서는 사업추진결정의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유치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상황의 전개 과정을 주시하면서 충북발전에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

○ 생가는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현 소유주는 가옥을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고 보존자체를 반대하는 실정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예술분야에서부터 애국자의 유적지나 생가 또는 발자취들을 광범위하게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동감 함.

질문요지 2

○ 어려운 때일수록 연구분야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며 최소한 국제통상, 농업경제분야 전문연구원을 확보하고 출연금도 100억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발연구원 육성방향과 의지는?

【 답변 : 행정부지사 한대수 】

○ 현재 연구원이 없는 복지·농업분야에 대하여는 우리지역 유명대학교수 또는 외부연구원 등을 적극 활용 보완하고 있으며 국제통상 분야는 지난 6월 초빙연구원을 채용해서 국제통상센터에 파견 근무하면서 해외정보수집과 국제통상 관련 연구를 병행하고 있음.

○ 앞으로 기금의 조기확보와 예산의 증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분야별로 연구원을 채용하는 등 발전적이고 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하겠음.

질문요지 3

○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특색 있는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 추진일정은 물론 예산조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 LPG판매소의 상당수가 자격증을 대여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발 실적은?

○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관리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 '99년 8월현재 주거지역 39개소, 상업지역 12개소 등 주택가에 위치한 곳의 개선대책은?

○ LPG판매소가 주거지역에 신규로 허가되는데 대한 사유는?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우리 도에서는 충북CHANGE 21을 기본으로 지난 2월 8일 제정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산업진흥계획을 마련중에 있음.

○ 현재 구상중인 계획수립의 내실화, 중앙정부 지원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새로운 21세기 유망산업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음.

○ 규제완화에 따른 가스판매업소의 안전관리대책으로는 자율경쟁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 수급측면의 규제는 완화하되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강화하도록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시설별 책임관리제를 도입 운영중에 있음.

○ 주거지역에 설치된 LPG판매소의 관리개선 대책으로는 '98년도 부천 가스폭팔사고이후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해서 반영되었으며 이에따라 시·군건축조례를 개정중에 있음.

○ 주거지역의 신규시설의 허가는 '99년 1월 1일 이후 1건도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허가하지 않을 것임.

질문요지 4

○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우리도의 수혜대상자 및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 음성, 진천, 경기도 죽산을 흐르는 미호천 상류지역의 오염원 대책은?

【 답변 :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

○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검토단계에 있어 정확한 수급대상자나 예산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현재 우리도의 경우 생계비수급자가 약 2.7배정도 그리고 예산액은 약 10%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산 됨.

○ 가동중인 만승공단폐수처리장에서 2001년부터 광혜원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도 함께 처리하게 되며 진천지역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1일 8천톤 규모의 진천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천지역 수질오염원인 축산폐처리를 위해 1일 처리용량 100톤규모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금년도에 착공하여 2001년도에 준공예정임. 앞으로 미호천상류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문요지 5

○ 유아교육은 전반적으로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청에서 일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원화된 유아교육의 통일성을 위하여 취한 노력은 무엇이며 향후 교육감의 소신은?
○ 도 교육청 직할로 운영되는 학생야영장의 예산낭비 현장에 대한 감사 등 지도결과는?
○ 이용자 없이 방치되고 있는 야영장이 있는데 새로이 서해수련원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목적은?

【 답변 : 교육감 김영세 】

○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각기 특성 있는 시설로 교육수요자에 의해 선택되는 현 체제의 유지가 불가피하며 교육의 측면에서 필요한 장학지도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보급 등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의 요청시 적극 지원토록 하겠음.

○ 1988년 5월 개장할 당시에는 수질이 양호하였으나 인근의 축산 및 공장폐수로 수질오염이 심해지면서 진천학생종합야영장의 활용실적이 저조하나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 5월에 완공되면 2급수정도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서해수련원은 우리도에는 종합교육시설이 전무하여 다양한 인성교육과 현장 체험학습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어 해변가에 수련원을 건립하게 되면 학생수련활동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설 수련시설 이용에 따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경감시켜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건립을 추진중에 있음.

□ 제4차 본회의 - '99. 9. 20(월)

○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회수변경안(원안가결)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9. 9. 8(수) 14:02~14:10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9시간 57분(2시간 29분)	
1차(9. 8)	14:11~14:36	25분
2차(9.13)	10:50~15:20	4시간 30분
3차(9.14)	11:00~15:36	4시간 36분
4차(9.20)	11:00~11:26	26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8.2%)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3	4	1	2	3	4
27명	25	27	27	27	2	-	-	-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99. 9. 8	1	1.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99. 9. 8~9. 20(13일간)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충청북도의회 회수변경안 · '91. 7. 8 제4대의회 최초집회를 68회→69회로 변경 · 순차적으로 한 회씩 변경 · 제164회→제165회로 변경
	'99. 9.20	2	1. 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99. 10. 12~10. 16(5일간)
기획행정위원회	'99. 9. 9	1	1.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 9.15	2	1.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소방본부 다. 총무과
	'99. 9.16	3	1.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기획조정실 나. 증평출장소
교육사회위원회	'99. 9.15	1	1.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옥천전문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2.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
	'99. 9.16	2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산업경제 위 원 회	'99. 9.15	1	1.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99. 9.16	2	1.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관광건설 위 원 회	'99. 9. 9	1	1.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 9.16	2	1.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문화진흥국 나. 건설교통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 건 ※ 건설교통국(원안가결)
예산결산 특 위	'99. 9.17	1	1.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가. 관광건설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2.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소위원장 : 구본선 의원 ·위 원 : 신택수 의원, 한현태 의원, 이길하 의원, 이완영 의원 ※ 계수조정결과 : 수정가결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5	14	9	5		1	
의회운영 위 원 회	4	4	4				
기획행정 위 원 회	3	3	1	2			
교육사회 위 원 회	4	3	2	1		1	
산업경제 위 원 회	1	1	1				
관광건설 위 원 회	2	2	1	1			
예산결산 특 위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64회 임시회 기간을 '99. 9. 8일부터 9.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 주요골자 〕

○ 출석일시 : '99. 9. 13 ~ 9. 14(2일간)

○ 출석장소 :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

○ 출석대상 :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 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회수변경

〔 주요골자 〕

○ 충청북도의회 회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1991년 7월 8일 제4대의회 최초집회를 위하여 부여된 제68회 임시회를 제69회로 하고 순차적으로 한회씩을 변경하여 금번 1999년 9월 8일 개회된 제164회를 제165회로 한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일반안건	3	3	3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수입증지판매인의 지정제를 신고제로 변경

○ 명의·위치변경·판매폐지, 판매인의 승계신청은 사유발생 10일 전에서 5일전으로 완화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일부 완화

○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대상 조정

○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조정

○ 공유재산대부료 및 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범위 확대

○ 잡종재산 신탁제도 도입에 따른 신탁의 종류를 정함

○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범위 확대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개정조례안 일부조문의 근거규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개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수정

○ 주요골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삭제에 따른 관련조문 수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안 제22조 제3항 제5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로 수정

·금융감독위원회 신탁업 감독규정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수정

- "금융감독위원회 신탁업 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안 제31조의 2) 문구삭제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1	1				
조 례 안	2	2	1	1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대학의 운영을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의 이념과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정함

○ 대학운영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장학기금의 설치 및 기금조성, 기금운용, 기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대학 우수졸업생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추천 및 임용계획 수립시 반영사항을 정함

○ 대학운영의 감독과 학과설치 및 폐지, 학생정원의 증감 등 도지사 승인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안 제15조 제3항의 수업료를 학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감안해 볼 때 회소한 안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입학금·수업료의 경우와 같이 학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방안이 타당

· 직명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정비

○ 주요골자

· 안 제15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중 "입학금, 수업료의"를 "입학금, 수업료, 수험료의"로 함

· 안 제9조중 "대학담당 업무과장이"를 "대학업무 담당과장이"로 하고, "대학담당 업무담당이"를 "대학업무 담당주사가"로 하며, 안 제23조중 "학생업무 담당으로"를 "학생업무 담당주사로" 함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 주요골자 〕

○ 수수료의 종류를 배정수수료, 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로 정함

○ 수수료 징수금액을 정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토록 함

○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2	1	1		1		
조 례 안	3	2	1	1		1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제안이유 〕

○ 도로법시행령 별표2 비고란 제5호 및 제7호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신설 및 일부 삭제

○ 재해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 도로법 제44조 제4호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 신설

○ 도로법 제8조의2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 도로법 시행령 별표2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9년도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 주요내용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역	
		계	증	감
합 계	**769,175,543**	**769,175,543**	**160,000**	**160,000**
기획행정위원회	**201,417,275**	**201,387,275**	**160,000**	**130,000**
공 보 관 실	702,500	702,500	-	-
감 사 관 실	141,300	141,300	-	-
총 무 과	17,158,772	17,158,772	-	-
기 획 조 정 실	43,708,937	43,678,937	160,000	130,000
자 치 행 정 국	78,521,683	78,521,683	-	-
소 방 본 부	28,323,051	28,323,051	-	-
증 평 출 장 소	32,861,032	32,861,032	-	-
교육사회위원회	**147,897,079**	**147,897,079**	-	-
여 성 정 책 관 실	15,016,485	15,016,485	-	-
복 지 환 경 국	127,347,537	127,347,537	-	-
옥 천 전 문 대	864,840	864,840	-	-
지방공무원교육원	2,507,333	2,507,333	-	-
보건환경연구원	2,160,884	2,160,884	-	-
산업경제위원회	**204,408,724**	**204,408,724**	-	-
경 제 통 상 국	59,819,659	59,819,659	-	-
농 정 국	132,885,033	132,885,033	-	-
농 업 기 술 원	11,704,032	11,704,032	-	-
관광건설위원회	**212,004,406**	**212,034,406**	-	**30,000**
문 화 진 흥 국	31,070,924	31,100,924	-	30,000
건 설 교 통 국	180,933,482	180,933,482	-	-
의회운영위원회	**3,448,059**	**3,448,059**	-	-
의 회 사 무 처	3,448,059	3,448,059	-	-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역	
		계	증	감
합 계	**273,339,058**	**273,339,058**	-	-
공기업특별회계	**221,549,312**	**221,549,312**	-	-
지역개발기금	169,457,423	169,457,423	-	-
공영개발사업	52,091,889	52,091,889	-	-
기타특별회계	**51,789,746**	**51,789,746**	-	-
도립옥천전문대운영	2,679,511	2,679,511	-	-
의료보호기금	36,903,065	36,903,065	-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8,033,625	8,033,625	-	-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운영관리	2,150,232	2,150,232	-	-
증평출장소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2,023,313	2,023,313	-	-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요구액 7,691억7,554만3천원 중 160,000천원 삭감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 리 내 용					비고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예 산 안	1	1		1				

第 17 節 第166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66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9. 27 소집공고 하였고 '98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월 12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9. 10. 12 ~ 10. 16 (5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1건

○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도, 교육청)

○ 19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교육청)

○ 국제도시간 자매교류 추진계획 보고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진호 의원, 신택수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7건	1	4	-	-	2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9. 10. 12(화)**

○ 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9. 10. 12~10. 16(5일간)

□ **제2차 본회의 - '99. 10. 16(토)**

○ 199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원안가결)

○ 1998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원안가결)

○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국제도시간 자매교류 추진계획 보고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9. 10. 12(화) 14:00~14:07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30분(15분)	
1차(10.12)	14:08~14:12	4분
2차(10.16)	11:02~11:28	26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0.8%)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27명	24	25	3	2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99.10.12	1	1. 1998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제1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99. 11. 1~11. 4(4일간)
기획행정위원회	'99.10.12	1	1. 1998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1998년도 충청북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교육사회위원회	'99.10.12	1	1. 1998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옥천전문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2.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3.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9.10.13	2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계속)
산업경제위원회	'99.10.12	1	1. 1998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관광건설위원회	'99.10.12	1	1. 1998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철회요구
예산결산특위	'99.10.13		1. 1998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1998년도 충청북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5	14	14				1
의회운영위원회	2	2	2				
기획행정위원회	2	2	2				
교육사회위원회	4	4	4				
산업경제위원회	1	1	1				
관광건설위원회	2	1	1				1
예산결산특위	4	4	4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66회 임시회 기간을 '99. 10. 12일부터 10. 16일까지 5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 리 내 용					비고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일반안건	1	1	1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실험·실습·집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

○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토록 하고 학원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

○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

○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수평거리가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학원의 설립제한 규정을 폐지함

○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완화하고 해임통보 기한을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

○ 학원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은 폐지함

○ 우수학원 지정·육성조항 신설

○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진흥 조항 신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

〔 주요내용 〕

○ 결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1,283,008,955**	**1,271,342,982**	**1,046,228,751**	**225,114,231**
일 반 회 계	**1,004,832,787**	**991,145,332**	**892,748,106**	**98,397,226**
특 별 회 계	**278,176,168**	**280,197,650**	**153,480,645**	**126,717,005**
공 영 개 발 사 업	69,676,326	69,797,155	26,062,252	43,734,903
지 역 개 발 기 금	146,519,262	146,632,792	66,602,135	80,030,657
옥천전문대학운영	1,984,304	2,006,909	1,485,422	521,487
의 료 보 호 기 금	30,780,837	30,772,584	30,618,432	154,152
농어촌소득개발기금	8,926,291	9,327,665	8,926,000	401,665
대 청 호 대 책	2,164,084	2,164,787	2,164,084	703
증평공업단지조성	18,125,064	19,495,758	17,622,320	1,873,438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283,008,955**	**1,296,456,774**	**1,271,342,982**	**12,527,630**	**25,113,792**
일 반 회 계	**1,004,832,787**	**1,015,872,351**	**991,145,332**	**1,244,555**	**24,727,019**
특 별 회 계	**278,176,168**	**280,584,423**	**280,197,650**	**11,283,075**	**386,773**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16,195,588	216,816,720	216,429,947	11,281,102	386,773
공 영 개 발 사 업	69,676,326	70,183,928	69,797,155	11,281,102	386,773
지 역 개 발 기 금	146,519,262	146,632,792	146,632,792	0	0
기 타 특 별 회 계	61,980,580	63,767,703	63,767,703	1,973	0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	1,984,304	2,006,909	2,006,909	1,973	0
의 료 보 호 기 금	30,780,837	30,772,584	30,772,584	0	0
농어촌소득개발기금	8,926,291	9,327,665	9,327,665	0	0
대청호대책	2,164,084	2,164,787	2,164,787	0	0
증 평 공 업 단 지 조 성	18,125,064	19,495,758	19,495,758	0	0

○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283,008,955**	**1,090,233,966**	**1,046,228,752**	**108,293,082**	**128,487,121**
일 반 회 계	**1,004,832,787**	**931,672,694**	**892,748,107**	**96,555,535**	**15,529,146**
특 별 회 계	**278,176,168**	**158,561,272**	**153,480,645**	**11,737,547**	**112,957,975**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16,195,588	97,745,014	92,644,387	11,737,547	111,793,654
공 영 개 발 사 업	69,676,326	31,142,879	26,062,252	11,737,547	31,786,527
지 역 개 발 기 금	146,519,262	66,602,135	66,602,135	0	79,917,127
기타특별회계	61,980,580	60,816,258	60,816,258	0	1,164,322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	1,984,304	1,485,422	1,485,422	0	498,882
의 료 보 호 기 금	30,780,837	30,618,432	30,618,432	0	162,405
농어촌소득개발기금	8,926,291	8,926,000	8,926,000	0	291
대청호대책	2,164,084	2,164,084	2,164,084	0	0
중 평 공 업 단 지 조 성	18,125,064	17,622,320	17,622,320	0	502,744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1998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

〔 주요내용 〕

○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단위 : 천원)

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 비 비 지 출 사 유
세항	세세항	사업명				
일반회계(23건)			4,552,991	3,840,098	712,893	
본 청(16건)			4,246,976	3,534,115	71,861	
자 치 행 정	경상적경비	대통령취임행사	5,720	5,207	513	제15대 대통령취임행사 초청인사에 대한 경비의 일부부담
재 해 대 책	국고보조사업	폭설피해복구	138,033	102,134	35,889	'98. 1. 8 폭설피해 복구에 따른 도비 부담금
농 산 관 리	자 체 사 업	벼병충해공동방제	329,366	329,366	0	벼물바구미가 전년대비 1.7배 발생되어 초기방제 농약대 지원
소방행정관리	인 건 비	명예퇴직수당	67,263	67,263	0	소방직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
농 축 산 사 업 소 운 영	경상적경비	민간인축산기술해 외 연 수	6,122	5,454	668	가축조사료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는 중국연수

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지출사유
세항	세세항	사업명				
농산관리	자체사업	벼멸구공동방제	228,100	228,100	0	고온 지속으로 벼멸구발생이 급속히 증가하여 긴급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재해대책	국고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	842,602	842,602	0	'98. 7~8월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재해대책	자체사업	보은수해응급복구	200,000	200,000	0	집중호우로 농경지 및 각종시설물 피해가 많은 보은군의 수해 응급복구비
소방행정관리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294,891	294,891	160	소방직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
도시개발	경상적경비	구상금청구소송비용	5,000	4,955	45	'92년 대선당시 김옥천후보 현수막 관련 손해배상 판결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비용
재해대책	국고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실시설계비	1,858,698	1,183,657	675,041	'98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조기발주를 위해 도로 및 하천의 실시설계비 집행
도로관리사업소운영	국고보조사업	〃	30,757	30,063	694	〃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음향장비 임차	8,870	8,870	0	'98년 지방행사 음향장비 임차경비
농산관리	자체사업	쓰러진 벼베기 유류대 지원	37,500	37,500	0	쓰러진 벼베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콤바인작업 유류대 지원
서무관리(공무원교육원)	경상적경비	손해배상금지급	5,150	5,150	0	'97. 7. 10 집중호우로 인한 공무원교육원 대강당옆 산사태로 파손된 차량에 대한 제일화재보험의 구상금 지급
재해대책	국고보조사업	태풍(예니)피해복구공동방제	183,063	183,063	0	'98. 9. 29~10. 1기간중 발생한 태풍 예니피해 복구를 위한 도비부담금
도로관리사업소운영	경상적경비	손해배상금지급	5,841	5,841	0	'96. 11. 26 보은군 회북면 신문리 지방도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LG화재해상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금을 청구하여 배상함
증빙출장소(7건)			306,015	305,983	32	
재해대책	국고보조사업	폭설피해복구	1,901	1,901	0	'98. 1. 8폭설피해복구에 따른 도비부담금
예산운영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37,207	37,207	0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 부족
농산관리	자체사업	벼병충해공동방제	14,447	14,446	1	벼물바구미가 전년대비 1.7배 발생되어 초기방제 농약지원
농산관리	자체사업	벼멸구공동방제	7,600	7,600	0	고온 지속으로 벼멸구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여 긴급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재해대책	국고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	31	0	31	'98. 7~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예산운영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239,829	239,829	0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 부족
농산관리	자체사업	쓰러진 벼베기 유류대 지원	5,000	5,000	0	쓰러진 벼베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콤바인 작업 유류대 지원

⊙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

〔 주요내용 〕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미징수액
합 계	**742,536,572**	**802,315,670**	**802,204,004**	**29,695**	**81,9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4,055,498	475,475,439	475,475,439	0	0
지 방 교 육 양 여 금	143,888,833	140,492,120	140,492,120	0	0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0,316,000	30,316,000	30,316,000	0	0
국 고 지 원 금	8,366,884	8,282,400	8,282,400	0	0
법 정 전 입 금	3,772,860	3,712,000	3,712,000	0	0
비 법 정 전 입 금	878,073	374,651	374,651	0	0
지 원 금	68,555	51,168	51,168	0	0
재 산 수 입	5,918,532	6,237,605	6,237,605	0	9,109
입학금및수수료수입	37,237,957	38,536,989	38,438,554	28,105	70,33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407,020	362,790	362,790	0	0
잡 수 입	8,460,771	9,375,833	9,371,711	1,590	2,532
이 월 금	29,165,586	89,100,675	89,100,675	0	0
지 방 교 부 세	1	0	0	0	0
주 민 부 담 금	1	0	0	0	0
기 타 지 원 금	1	0	0	0	0

○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불용율%)
합 계	**802,471,662**	**679,826,075**	**65,461,237**	**57,184,350(7.1%)**
교육위원회비	705,717	644,402	0	61,315(8.7%)
급 여 관 리	456,327,541	435,987,586	0	20,339,955(4.5%)
교 육 행 정 비	17,653,503	16,104,835	110,477	1,438,191(8.1%)
교 육 사 업 비	8,919,699	7,307,456	464,026	1,148,217(12.9%)
학 교 비	76,422,269	66,419,256	4,991,198	5,011,815(6.6%)
사 학 지 원 비	51,453,199	45,455,894	4,070,869	1,926,436(3.7%)
시 설 비	178,722,573	107,906,646	55,824,667	14,991,260(8.4%)
제 지 출 경 비	0	0	0	3(100%)
예 비 비	12,267,158	0	0	12,267,158(100%)

⊙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

(단위 : 천원)

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지출사유
세항	세세항	목				
계			**865,105**	**806,634**	**58,471**	
중등교육국운영	기관운영비	민간경상이전	188,152	188,152	0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
고등학교	학교운영비	학교교육비	100,000	51,795	48,205	실직자 재취업교육과정운영
고등학교	경상교육사업비	민간경상이전	20,000	9,781	10,219	〃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	민간경상이전	446,485	446,485	0	사망조의금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	민간경상이전	51,833	51,833	0	공무상재해보상금여
초등학교	투자교육사업비	시설비	20,000	19,953	47	수해복구지원비
중학교	투자교육사업비	시설비	12,000	12,000	0	수해복구지원비
행정관리담당관실	기관운영비	배상금	26,635	26,635	0	손해배상금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	4	2	2				
결산안	2	2		2				
승인안	2	2	2					

第 18 節 第167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67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10. 20 소집공고 하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충청북도중기투자및 재정계획보고 청취,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1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9. 11. 1 ~ 11. 4 (4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2건

○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충청북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보고

※ 회의록 서명의원 : 이길하 의원, 신대식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5건	2	-	-	-	3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9. 11. 1(월)

○ 제1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9. 11. 1~11. 4(4일간)

□ **제2차 본회의 - '99. 11. 4(목)**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안가결)
○ 충청북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9. 11. 1(월) 14:01~14:08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32분(16분)	
1차(11. 1)	14:08~14:13	5분
2차(11. 4)	11:02~11:29	27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6.3%)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27명	27	25	-	2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99.11. 1	1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가. 의회사무처 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4.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99. 11. 20~12. 29(40일간) 5.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9.11. 4	2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종합)
기획행정위원회	'99.11. 3	1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교육사회위원회	'99.11. 2	1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산업경제위원회	'99. 11. 2	1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관광건설위원회	'99.11. 2	1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조례정비특위	'99.11. 4	1	1.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 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7.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 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11.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 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 1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 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6.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 조례안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리결과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0	30	30				
의회운영 위 원 회	6	6	6				
기획행정 위 원 회	3	3	3				
교육사회 위 원 회	1	1	1				
산업경제 위 원 회	2	2	2				
관광건설 위 원 회	2	2	2				
조례정비 특 위	16	16	16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67회 임시회 기간을 '99. 11. 1일부터 11. 4일까지 4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소관) 제2항 제2호의 기획행정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개정

· 비서실 → 삭제 · 총무과 → 삽입 · 감사실 → 감사관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1999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주요골자** 〕

○ 감사기간 : 1999. 11. 22 ~ 12. 1(10일간)

○ 감사방법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

○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된 기관 및 사무

○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조 례 안	1	1	1					
일반안건	2	2	2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280명에서 2,281명으로 조정하고

· 집행기관의 정원을 1,367명에서 1,368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그 외의 공무원정원은 변동이 없음

· 또한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매년 7월 31일까지」를「매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第 19 節 第168回 定期會

1. 開會背景

제168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공고 하였고 2000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정질문, 조례안 심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1999. 11. 20 ~ 12. 29 (40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23건
○ 2000년도 예산안(도, 교육청)
○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교육청)
○ 1999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11. 21~12. 1, 10일간)
○ 도정질문(12. 2~12. 3, 4명)
-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의원
- 교육사회위원회 이길하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
-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16건)
○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를 위한 건의안
※ 회의록 서명의원 : 박노철 의원, 구본선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36건	23	5	-	1	7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99. 11. 20(토)

○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1999. 11. 20~12. 29(40일간)

○ 200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제안설명 포함)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 연설(제안설명 포함)

○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가결)

□ 제2차 본회의 - '99. 11. 24(수)

○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를 위한 건의안(원안가결)

□ 제3차 본회의 - '99. 12. 2(목)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의원

질문요지 1

○ 비교 우위산업인 생명공학의 메카조성 전략

○ 중소기업 물류비용 절감과 판로개척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 방안

○ 재래시장 지원책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충북CHANGE 2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오송~오창~진천~음성~제천을 연결하는 첨단지식산업벨트 중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및 소프트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 21C 지식정보사회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지칭되는 서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구청주의료원에 656평규모의 건물을 확보하였으며 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예산을 지원받아 공모를 통하여 14개 업체를 선정하고 12월 15일 개원 예정임.

○ 보건의료과학단지의 조기조성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책기관이 이전되도록 하고 산재되어 있는 의약품, 식품 등의 제조업체와 연구시설을 보다 많이 유치되도록 다각적인 유치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97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39개소를 거점화하여 단계별 추진에 있으며 우리도에서는 정부계획에 따라 1단계로 2001년까지 중·남·북부3개 거점에 40만평 규모의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2단계로 2002년 이후 북동부지역에 1개 거점의 단지를 개발하는 등 유통단지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 청부·청원의 중부지역 10만평, 보은·옥천·영동의 남부지역10만평 등 20만평 규모의 지역거점 유통단지를 개발 권역별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가가겠음.

○ 중소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창고 건립과 공동집·배송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유통구조개선 자금을 확대지원하고 지역제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상인조합의 결성, 체인사업화, 상인상호간 협동조합결성 등을 권장해서 조직화 협업화를 유도하고 공동구매 사업자금과 물류시스템 규격화를 통한 시설 및 운전자금도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를 강화하겠음.

○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자생력확보를 위하여
- 재래시장 상인들의 자구노력의 촉진
- 상가별 자생조직의 활성화
- 시장의 전문화와 차별화
- 편의시설 등 유통환경개선
- 시장의 현대화 추진
- 도민 재래시장 살리기운동을 전개하고

○ 소규모 점포시설의 개선, 공동창고의 건립, 시장 재개발·재건축 등 유통구조개선 사업비를 확대지원하는 행·재정적지원노력을 강화하겠음.

질문요지 2

○ 자원봉사자 의식실태조사 및 특별대책 수립 용의는
○ 공무원 채용시 자원봉사자 활동실적 혜택부여 관련
○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와 시·군 자원봉사 중복에 대한 개선책
○ 자원봉사자단체협의회 설립 용의는?
○ 개발연구원과 지역개발회 통합 운영방안
○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대책

【 답변 :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

○ 자원봉사자들의 의견과 실태를 설문조사 후 도·시·군 통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설립, 자원봉사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과홈페이지의 구축, 자원봉사 사례집 발간,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교육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봉사활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립할 계획임.

○ 충북개발연구원과 지역개발회의 통합은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어느 것이 진정으로 우리 도를 위하는 길인지 각계각층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연구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기획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주요 지적사항 등을 나름대로 종합수집, 보고 또는 전파를 하였고 앞으로 속기록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재확인한 후 사안별로 조치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되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고 제도개선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등 조치에 일정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치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연 2회 이상 점검 보고토록 하겠음.

교육사회위원회 이길하 의원

질문요지 1

○ 정책실명제 및 1인 1제안제도를 통해 도정에 반영된 정책이도민복지증진과 도정발전 그리고 예산절감, 생활민원 해소 등의 효과분석

○ 도지사공약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직소창구에서 접수한 내용과 해결 또는 도정에 반영한 사항, 홍보한 사례는?

○ 도민감사청구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도민의 소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자동응답전화기 2대, FAX 2대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충북도에 바란다라는 코너 등 5개를 신설하여 24시간 여과없이 접수하고 있으며 그동안 접수된 민원은 444건으로 56%인 250건은 즉시 해결되었고 이첩처리가 127건 그리고 시행중인사항이 44건이며 현재의 여건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도 13건 정도가 있음.

○ 도민감사청구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관련조례를 이에 맞게 제정하여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음.

○ 2000년 사업을 위한 제안발굴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62%가 업무계획에 반영된 것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전직원의 매우 크다고 생각 함. 앞으로 과감한 인센티브 즉 승진, 근무평정에 반영을 하고 포상 등의 혜택으로 도정혁신을 이루어 가는 주체가 모두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키워나가겠음.

질문요지 2

○ 공·사설묘지 확충방안과 사용료 징수관련
○ 청주시 월오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도에서 하여야 할 역할은?
○ 사회복지법인 운영과 시설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지원금, 후원금의 관리실태와 예산배정이 늦어진 이유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
○ 보육·아동시설 운영과 관련 지도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
○ 미등록,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의 육성방안과 지도점검계획, 화재, 도난,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방안
○ 보건소 통폐합방안 재 검토와 의약분업에 따른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대처방안

【 답변 :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

○ 매장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묘지제도는 많은 국토가 잠식되는 등 문제가 있어 국가차원에서도 화장과 납골당 운영을 권장하고 있고 우리 도에는 현재 화장장 2개소와 납골당 3개소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사설공원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95년도에 고시한 기준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에서는 사설묘지 사용료의 최고 한도액을 고시제에서 신고제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어 법안이 의결되면 현실화 될 것이며 일부 사설묘지에서 사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는 것은 기존 사용료 이외에 고가의 표석이나 석물 등 부대시설물을 포함 징수하는 사례가 있어 시·군으로 하여금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과다징수한 7건에 대하여 고발조치 한 바 있음.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시설관리사항은 현양복지재단에 대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청주시의 관련서류와 그간의 수사서류를 넘겨받아 조사가 진행중에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계획이며 충북재활원의 부채는 86억원으로 그중 은행차입금이 79억5천만원, 공사비와 장비구입비 미지급액이 6억 5천만원임.

○ 사회복지법인에서 과다하게 시설과 의원을 운영하는 문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시설을 개방해 나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음.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시설별 취약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고유형별 대응체계를 마련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음.

○ 보건기관의 통폐합문제는 진료소운영 중단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재검토 해 나가겠음.

○ 의약분업에 따른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대처방안으로는 의료시혜를 받는데 불편이 있거나 소외될 수 있는 주민을 위해 방문가정간호사업의 확대, 오지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암검진차량을 이용한 순회검진, 골다공증 검진사업 등 다양한 보건사업 확대로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문요지 3

○ 교원 명예퇴직 및 퇴직수당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의 구체적인 상환계획

○ 시설비 낙찰차액의 사용

【 답변 : 교육감 김영세 】

○ 750억원의 차입승인을 받았으나 현재 차입금은 232억 5천만원이며 12월중에 200억, 2000년 2월중 317억 2,800만원을 추가로 차입할 계획으로 상환계획은 상환조건에 따라 금년부터 2007년까지 이자 및 원금을 균등상환할 계획으로 1차 지방채 승인분 400억원은 증액교부금으로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받은바 있고 2차승인 부터는 자체재원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지만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국가가 부담해 주도록 해야 할 것임.

○ 시설비 낙찰차액 대부분은 환특시설비로 잔액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환특시설비로 전액 투자하여야 하며 차입금 상환재원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질문요지 4

○ 초등학교 독서생활화 및 영어교육 개선 방안
○ 교원의 컴퓨터 연수·수업연구 발표회 운영
○ 제7차 교육과정 운영

【 답변 : 교육청 교육국장 이주원 】

○ 교과시간과 관련하여 학습독서를 권장하고 있고 독후감 발표대회, 다독자 시상 등의 독서계기를 조성하고 독서시범학교 지정 전국 최초로 사이버 독서실운영 등을 연구하고 있음.

○ 초등학교 영어담당교사에 대하여 방학기간을 이용한 영어회화 연수와 미국 현지 어학연수를 실시하여 영어회화능력 배양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99년 겨울방학중 초등교사 영어심화연수를 실시할 예정임.

○ 계속 컴퓨터동호회를 지원하여 교원들의 정보활용 능력과 교육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방과후 적성교육과 학교내 특별활동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유료 및 무료 연수에 적극 참여토록 21세기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7차교육과정 시행대비를 위해 초등학교 각 지역교육청별로 66명, 중학교 121명, 고등학교 87명의 교육과정 요원연수를 실시 직무연수 강사로 활용토록 추진하고 학교별 개인별 자체연수 활동을 강화하여 자기연찬에 노력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음.

□ 제4차 본회의 - '98. 12. 3(금)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

질문요지 1

○ 실과장이 담당을 정하는 권한이 있는데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공무원 인사시 담당의 직위까지 도지사가 인사발령한 이유는?
○ 우리도가 살기좋은 농업도로 발전할 수 있는 구상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조직이 안정을 찾고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도 조직이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는 최소화 하는 등 보완발전시켜 빠른 시간내 정착되도록 시행하겠음.

○ 농정의 기본방향과 소신을 말씀드리면

- 우리 입맛에 맞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 농업인과 소비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물류체계 구축과 유통의 혁신
- 농업과 관광, 농업과 문화의 접목을 통하여 지역농업을 특화시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가고
-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의료와 주택 등 복지증진 부분의 획기적인 개선
- 농업의 정보화와 첨단농법의 개발 등을 위해 농업인의 경영마인드에 대한 D/B화, 민·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는 열린농정 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임.

질문요지 2

○ 지방 계약직공무원제 운영의 성과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였을 때 소요되는 경비와 성과의 분석은?

○ 국제통상의 인력관리를 위해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원의 외국어훈련 실시와 계약직공무원의 운영방안을 개선할 용의는?

【 답변 : 행정부지사 유의재 】

○ 계약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였을 때 소요되는 경비와 성과에 대하여는 분석해 보지 못했으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2000년도 민간위탁계획으로 추진중인 자연학습원과 함께 적극 개선해 나가겠음.

○ 21C국제통상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과 타 시·도의 벤쳐마킹을 통하여 인력과 예산 등 취약한 여건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하여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외국어교육과정 활용과 공무원교육원의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민간전문인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음.

질문요지 3

○ 충북개발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 전임 한대수 행정부지사 퇴임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 정기회의를 11월에 개최하지 않는 이유
- 새로 임용된 초빙연구원은 임용목적에 타당한지?
- 개발연구원 사무실은 행정재산인지 잡종재산인지와 사무실의 사용료 내역 및 사용근거
- 법인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개선을 하지 못하는 이유

【 답변 :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

○ 한대수 전 원장은 11월 27일자로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로 빠른 시간내에 유능하고 지도력 있는 인사를 선발 원장으로 임명토록 준비중에 있음.

○ 정기 이사회개최 문제에 대하여는 신임원장이 선정되면 바로 개최하도록 하겠음.

○ 초빙연구원의 업무실적으로는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 중국 대련시 바이어 구매상담회 개최지원 등 10여건의 업무를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충북유망수출상품, 충청북도산업지도 제작 등 통상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있음.

○ 개발연구원사무실은 농협에서 건축하여 도에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및 제88조 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무상사용 허가 하였음.

○ 후임원장이 빠른 시일내에 임명되도록 준비하고 다각적인 재정강화방안도 마련하여 선진화된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자율적인 책임과 역할, 권한을 갖고 운영되도록 최선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음.

질문요지 4

○ 임도 보수비를 국·도비에서 증액 지원할 용의는?
○ 임도개설 사업비 단가가 낮아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이 어려운데 개선책은?
○ 밭 기반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에서 지도·점검한 실적과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 원예특작 지원용 대형 암반관정과 소형관정 설치 현황 및 활용실적, 사후관리 상황

【 답변 : 농정국장 박경국 】

○ 내년부터는 시설임도의 구조개량사업으로 시설임도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임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공사구간의 특성에 관계없이 ㎞당 6,284만원의 일률적인 표준단비를 적용하자가 발생하였지만 지난해부터 ㎞당 표준단비 20% 범위내에서 난공사구간에 탄력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친환경적인 임도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음.

○ 밭기반정비사업이 실시된 전 지구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 문제가 있는 지구는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보완시공토록 조치하겠으며 흔히 발생하기 쉬운 하자를 유형별로 정리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점검 실시 등으로 농가의 불편사항과 하자를 신속히 조치하겠음.

○ 암반관정 개발현황은 대형관정이 46공, 소형관정이 2,647공으로 대부분 정상활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원개발한 관정에 대하여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활용도제고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질문요지 1

○ 주민 거주지역에 대한 국립공원 제척방안
○ 충북 관광 이미지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
○ 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 방안
○ 도 자체지원 현황 및 향우 주민숙원사업 해결의지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개선대책을 중앙에 건의하여 2000년 3월 8일자로 특정다목적댐법이 폐지되었으며 한강수계 수질관리비용 수혜자부담원칙을 관철시켜 한강 상류지역 주민에게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 혜택을 받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부담하도록 되었음.

○ 공원구역의 일부해제를 건의하고 국립공원 관리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수차례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단위공원별 총면적을 유지하는 총량제원칙 폐지, 공청회 개최 및 국립공원 관리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건의하였음

○ 21C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단양권은 국·도비 2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충주호권은 2003년까지 7개지구를 체험형 관광지로 조성키로 하였음.

질문요지 2

○ 충북신용보증조합과 시중의 보증기관과의 차이점, 보증기간 연장 이행시 문제점 및 담보능력 향상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

【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

○ 내년 3월 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는 중소기업과 별도로 중소상공인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신보 정관도 소상공인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임.

○ 담보능력 확충을 위하여 2001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청의 국비보조계획에 따라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계상 하였음.

○ 지역신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보증한도액을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제조업체를 위한 보증지원체제를 강화하겠음.

질문요지 3

○ 경로당에 일거리를 제공하여 소득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

○ 경로시설 난방연료 부족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 시민단체의 능동적 참여유도와 선진화된 교육계획 마련에 대한 대책

【 답변 :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

○ 경로당운영의 선진화계획을 수립 모범경노당 운영,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음.

○ 경로당 난방비 부족액 지원대책으로는 노인자녀들의 모이에서 부담하든가 독지가 또는 마을공동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리고 청주방송에서 유류보내기운동 성금모금 등으로 지원하게 되어 금년겨울에는 크게 도움이 되겠음.

질문요지 4

○ 내륙순환 관광도로의 명소화사업을 '99년도에 추진하지 않는 이유와 CHANGE 21사업과 연계 추진방법

○ 택시기사, 음식점종사자 등 전 도민을 관광요원화 할 수 있는 분야별 교육계획이 있는지?

○ 국제자문관을 관광대사로 활용할 의향과 해외나 타 시·도에 거주하는 충북 향우회원들을「관광홍보요원」화 할 의향이 있는지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 답변 :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

○ 투자된 사업을 기반으로 분야별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상호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패키지상품을 개발,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체계화되고 특색 있는 거점개발이 되도록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임.

○ 관광요원화를 위한 교육계획에 대하여는 정직, 질서, 청결, 진절 등 4대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관광지별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공중화장실 청결을 위한 전담요원배치 및 확충 등을 추진하겠음.

○ 국제자문관은 현재 82명이 위촉되어 각종홍보자료 송부, 국제관광박람회 명예 판촉 통역요원으로 위촉 등을 추진하고 있음.

질문요지 5

○ 도로관리사업소 부근에 청주 북부터미널을 설치할 의향은?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 청주·청원지역의 도시확장,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됨

질문요지 6

○ 도서·벽지근무시 교육감 부과 가산점폐지에 관한 대책과 교원확보 방안

【 답변 : 교육감 김영세 】

○ 벽지지역에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 도서지역 보다 농촌지역 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6개 시도가 반대하는 사항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노력하겠으며

- 벽지·농촌지역 교원의 질적인 저하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2000년 하반기를 고비로 2001년에는 교원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쓰고 있는 기간제교사는 늦어도 2002년에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제5차 본회의 - '99. 12. 16(목)

○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수정가결)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수정가결)
○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
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원안가결)
○ 2000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제6차 본회의 - '99. 12. 24(금)

○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원안가결)

□ **제7차 본회의 - '99. 12. 29(수)**

○ 1999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 1999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 1999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99. 11. 20(토) 11:01~11:10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4시간 46분(2시간 7분)	
1차(11.20)	11:11~12:41	1시간 30분
2차(11.24)	09:32~09:44	12분
3차(12. 2)	11:03~16:23	5시간 20분
4차(12. 3)	11:02~16:21	5시간 19분
5차(12.16)	14:01~15:06	1시간 5분
6차(12.24)	16:02~16:28	26분
7차(12.29)	11:00~11:54	54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3.7%)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3	4	5	6	7	1	2	3	4	5	6	7
27명	26	23	27	27	27	21	26	1	4	-	-	-	6	1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99.12. 8	1	1.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 가. 의회사무처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9.12.20	2	1.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1999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99.12.29	3	1.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2000. 1. 27~2. 1(6일간)
기획행정위원회	'98.12. 4	1	1.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감사관실
	'99.12. 6	2	1.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자치행정국
	'99.12. 7	3	1.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증평출장소 나. 공보관실 다. 소방본부
	'98.12. 8	4	1.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기획조정실 2. 200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기획조정실
	'99.12. 9	5	1. 200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9.12.15	6	1. 2000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9.12.17	7	1.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99.12.21	8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3.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교육사회위원회	'99.12. 4	1	1.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 가. 옥천전문대학 나. 공무원교육원
	'99.12. 6	2	1.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복지환경국
	'99.12. 7	3	1. 200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2. 200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99.12. 8	4	1. 200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옥천전문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바. 교육비특별회계 ※ 가. 나. 다. 라. 마. 바 (원안가결).
	'99.12.20	5	1.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9.12.21	6	1.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
	'99.12.22	7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경제위원회	'99.12. 6	1	1.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제통상국
	'99.12. 7	2	1.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농정국
	'99.12. 8	3	1.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농업기술원
	'99.12. 9	4	1. 200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9.12.16	5	1.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제통상국
	'99.12.17	6	1.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농업기술원 나. 농정국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9.12.24	7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관광건설위원회	'99.11.24	1	1.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99.12. 6	2	1.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 가. 문화진흥국
	'99.12. 7	3	1.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건설교통국
	'99.12. 8	4	1. 200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문화진흥국 나. 건설교통국
	'99.12. 9	5	1.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9.12.17	6	1.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 등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99.12.21	7	1.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건설교통국 나. 문화진흥국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99.12.10	1	1.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종합심사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의회운영위원회
	'99.12.13	2	1.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 2.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종합심사(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
	'99.12.14	3	1.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종합심사(계속) 가. 산업경제위원회 나. 관광건설위원회 2.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전체 위원이 참여하기로 결정
	'99.12.16	4	1.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종합심사(계속) 2.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계속)
	'99.12.22	5	1.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2.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3.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전체위원이 참여하기로 결정
	'99.12.29	6	1. 1999년도 제4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조례정비특위	'99.12.27	1	1. 1999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3	33	24	9			
의회운영위원회	4	4	3	1			
기획행정위원회	6	6	5	1			
교육사회위원회	6	6	3	3			
산업경제위원회	3	3	2	1			
관광건설위원회	8	8	7	1			
예산결산특위	5	5	3	2			
조례정비특위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68회 정기회 기간을 '99. 11. 20일부터 12. 29일까지 40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 **주요골자** 〕

○ 출석일시 : '99. 12. 2~12. 3(2일간)

○ 출석장소 :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

○ 출석대상 :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 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 간부공무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9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 주요골자 〕

위 원 회 별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계	165건	56건	57건	52건
의회운영위원회	10	5	-	5
기획행정위원회	43	5	38	-
교육사회위원회	44	18	19	7
산업경제위원회	35	15	-	20
관광건설위원회	33	13	-	20

〔 심사결과 〕 원안채택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일반안건	3	3	3					

□ 기획행정위원회

⊙ 2000년도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

〔 주요골자 〕

○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벤처기업임대공단 조성부지 매입

- 위 치 :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내
- 규 모 : 부지 99,174㎡(공장용지)
- 사업기간 : 2000년 - 2001년
- 사 업 비 : 12,810,000천원(5년간 분할매입)
- 회계구분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도민 종합레포츠타운 조성 부지 매입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일대(구 종축장 주변)

· 규　　모 : 부지 403,306㎡(전, 답, 임야 등)

· 사업기간 : 2000년 - 2004년

· 사 업 비 : 160억원(부지매입비)

· 회계구분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청주 서부소방서부지매입 및 청사신축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가경3택지개발지구 내

· 규　　모 : 부지(대지) 6,610.20㎡, 청사신축 3,316㎡

· 사업기간 : 2000년 - 2001년

· 사 업 비 : 5,453,596천원(부지 2,754,372, 청사 2,699,224)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완화

· 임대사업자가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감면토록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경제과

· 직업안정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자원관리과

· 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석탄사업법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방법 변경

○ 보건위생과

· 결핵예방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축 산 과

· 축산법, 가축전염예방법, 어선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안전관리과

·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신규위임

·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총 무 과

· 별표4의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 임용권한 중 일부사무 환수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조 례 안	3	3	3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

〔 **주요골자** 〕

○ 여성회관에서 수강·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교육수강과 시설사용을 신청할 때에는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교육 수강 및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강료 또는 사용료 면제 규정

○ 교육수강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시설장비를 훼손·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 〕 **원안채택**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관광건설위원회

⊙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

〔 주요골자 〕

○ 전철화되는 충북선·태백선을 활용한 동서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철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천안기점보다 3,350억원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충북권·대전권·강원도 중부권 300만 교통인구의 절실한 의지인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을 오송에 설치하여 줄 것을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중앙부처장관에게 건의

〔 심사결과 〕 원안채택

⊙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부동산문화재, 동산문화재 및 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관리상황보고제 및 관리방법 등 지시규제를 폐지

○ 개인소유 문화재를 매각할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도에 우선적으로 매도하도록 하는 의무 등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정비

○ 도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할 의무와 수리시 도의 수리지시 및 전문가의 기술지도를 수용하도록 의무화하던 규제를 폐지

○ 도지정 문화재의 수리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소유자에게 하는 수리정지 또는 재수리 명령을 폐지

○ 전문분야별로 심도있는 문화재의 연구·조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정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

○ 심의 의결시 과반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서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민주원칙에 반하므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개정

○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모두 사망시에도 무형문화재의 전수·보존을 위하여 종목의 지정은 존속토록 개선하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사망시 신고의무 폐지

○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만이 소유자·관리자 등에 대한 행정명령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시장·군수도 도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권한의 일부를 부여

○ 문화재 보존·관리의 원형유지 기본원칙 신설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신설

○ 도지사, 시장, 군수는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 취소시 청문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비상시 도지사가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매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심사결과 〕 원안채택

⊙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제4조(변소), 제5조(지하층의 설치), 제7조(건축재료의 품질), 제12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15조(대지안의 공지)를 삭제

○ 건축물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하며 단서조항의 용적률을 300%에서 400%로 완화

○ 토지의 매각규모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삭제

○ 부칙조항의 시한규정을 법에서 규정한 시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조문정리

○ 관련조항 삭제에 따른 조항 정리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허가대상 광고물 중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 또는 도로표시·옥상간판, 공중에 띄우거나 높이 4m미만 지면표시 애드벌룬·선전탑, 비행선 이용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수막, 벽보, 전단의 경우에는 검인·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으로 연막, 연기 등 기체를 이용하거나 광선 등을 벽면, 공중 또는 물체에 투시하여 표시하는 방법 금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 연면적 3천㎡ 이상의 건물 벽면에 설치한 게시시설에는 현수막을 4개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업소는 업소당 1개에 한하여 최대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연립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업소는 업소당 1개에 한하여 최대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창문이용 광고물은 건물5층 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전화번호, 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창문면적의 1/2 이내로 함

○ 전광류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을 25% 이상으로 함

○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

○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함

○ 옥외광고종사자의 종류별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기준을 폐지하며, 광고업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빙서류를 첨부,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을 명시

○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하자보증금 예치 및 운용방법을 규정

○ 자동차폐차영업소의 업무범위 및 시설기준을 명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5	5	5					
조 례 안	4	4	4					
일반안건	1	1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

〔 주요내용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역	
			증	감
합 계	**755,959,348**	**755,959,348**	**3,281,689**	**3,281,689**
기획행정위원회	**193,293,603**	**191,381,873**	**3,281,689**	**1,369,959**
공 보 관 실	743,353	936,713	-	193,360
감 사 관 실	121,420	121,780	-	360
총 무 과	12,462,178	12,526,538	-	64,360
기 획 조 정 실	49,891,638	47,067,949	3,281,689	458,000
자 치 행 정 국	69,914,187	70,490,066	-	575,879
소 방 본 부	32,019,351	32,019,351	-	-
증 평 출 장 소	28,141,476	28,219,476	-	78,000
교육사회위원회	**175,559,529**	**175,735,269**	-	**175,740**
여 성 정 책 관 실	18,123,519	18,123,519	-	-
복 지 환 경 국	151,741,972	151,838,772	-	96,800
옥 천 전 문 대	900,000	900,000	-	-
지방공무원교육원	2,613,366	2,692,306	-	78,940
보건환경연구원	2,180,672	2,180,672	-	-
산업경제위원회	**173,075,196**	**173,681,186**	-	**605,990**
경 제 통 상 국	45,299,097	45,848,267	-	549,170
농 정 국	114,967,872	115,024,332	-	56,460
농 업 기 술 원	12,808,227	12,808,587	-	360
관광건설위원회	**210,509,598**	**211,422,318**	-	**912,720**
문 화 진 흥 국	36,223,403	36,425,403	-	202,000
건 설 교 통 국	174,286,195	174,996,915	-	710,720
의회운영위원회	**3,521,422**	**3,738,702**	-	**217,280**
의 회 사 무 처	3,521,422	3,738,702	-	217,280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역	
			증	감
합 계	**254,322,393**	**273,339,058**	-	-
공기업특별회계	**201,402,804**	**221,549,312**	-	-
지역개발기금	178,136,479	169,457,423	-	-
공영개발사업	23,266,325	52,091,889	-	-
기타특별회계	**52,919,589**	**51,789,746**	-	-
도립옥천전문대운영	2,759,956	2,679,511	-	-
의료보호기금	40,591,076	36,903,065	-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7,082,557	8,033,625	-	-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운영관리	2,486,000	2,150,232	-	-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2000년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요구액 7,559억5,934만8천원 중 32억8,168만9천원 삭감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 주요내용 〕

○ 교육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예 산 (안) 조 정 내 역		
		요구액	증	감
합 계	**752,743,363**	**752,743,363**	**1,446,520**	**1,446,520**
유 치 원	693,485	693,485	-	-
초 등 학 교	623,064,475	623,064,475	-	-
중 학 교	59,665,009	59,665,009	-	-
고 등 학 교	22,449,687	22,449,687	-	459,000
특 수 학 교	13,076,546	13,076,546	-	-
기 타 학 교	15,575,067	15,575,067	-	-
평 생 교 육	6,316,728	6,316,728	-	-
급 여 관 리	6,961,709	6,961,709	-	-
복지 · 후생	10,123,390	10,123,390	-	200,000
교육위원회	6,827,187	6,827,187	-	-
교 육 청	10,310,030	10,310,030	-	387,520
지역교육청	12,021,329	12,021,329	-	-
교육지원기관	5,467,769	5,467,769	-	-
지방채상환	6,521,850	6,521,850		400,000
예 비 비	24,004,780	24,004,780	1,446,320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요구액 7,527억4,336만3천원 중 14억 4,652만원 삭감

⊙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 주요내용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역	
		계	증	감
합 계	**795,775,714**	**795,775,714**	-	-
기획행정위원회	**201,865,020**	**201,865,020**	-	-
공 보 관 실	688,400	688,400	-	-
감 사 관 실	139,500	139,500	-	-
총 무 과	15,692,874	15,692,874	-	-
기 획 조 정 실	44,729,814	44,729,814	-	-
자 치 행 정 국	79,617,981	79,617,981	-	-
소 방 본 부	27,927,773	27,927,773	-	-
증 평 출 장 소	33,068,678	33,068,678	-	-
교육사회위원회	**153,007,047**	**153,007,047**	-	-
여 성 정 책 관 실	15,566,240	15,566,240	-	-
복 지 환 경 국	132,100,227	132,100,227	-	-
옥 천 전 문 대	864,840	864,840	-	-
지방공무원교육원	2,456,029	2,456,029	-	-
보건환경연구원	2,019,711	2,019,711	-	-
산업경제위원회	**215,600,765**	**215,600,765**	-	-
경 제 통 상 국	69,412,777	69,412,777	-	-
농 정 국	134,783,342	134,783,342	-	-
농 업 기 술 원	11,404,646	11,404,646	-	-
관광건설위원회	**221,958,589**	**221,958,589**	-	-
문 화 진 흥 국	31,617,270	31,617,270	-	-
건 설 교 통 국	190,341,319	190,341,319	-	-
의회운영위원회	**3,344,293**	**3,344,293**	-	-
의 회 사 무 처	3,344,293	3,344,293	-	-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역	
		계	증	감
합 계	**259,796,810**	**259,796,810**	-	-
공기업특별회계	**207,668,614**	**207,668,614**	-	-
지역개발기금	174,147,450	174,147,450	-	-
공영개발사업	33,521,164	33,521,164	-	-
기타특별회계	**52,128,196**	**52,128,196**	-	-
도립옥천전문대운영	2,679,511	2,679,511	-	-
의료보호기금	37,235,495	37,235,495	-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8,039,645	8,039,645	-	-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운영관리	2,150,232	2,150,232	-	-
증평출장소지방산업 단지조성사업	2,023,313	2,023,313	-	-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 주요내용 〕

○ 교육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99 제3회추경예산(안)조정내역		
		요 구 액	증	감
합 계	**842,447,423**	**842,447,423**	-	-
교육위원회	730,414	730,414	-	-
본 청	633,886,302	633,886,302	-	-
청주교육청	65,051,704	65,051,704	-	-
충주교육청	24,975,771	24,975,771	-	-
제천교육청	14,415,720	14,415,720	-	-
청원교육청	16,195,291	16,195,291	-	-
보은교육청	6,543,603	6,543,603	-	-
옥천교육청	7,294,644	7,294,644	-	-
영동교육청	11,011,600	11,011,600	-	-
진천교육청	7,998,862	7,998,862	-	-
괴산교육청	10,864,743	10,864,743	-	-
음성교육청	12,677,582	12,677,582	-	-
단양교육청	6,085,644	6,085,644	-	-
예 비 비	24,715,543	24,715,543	-	-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1999년도제4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 주요내용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역	
		계	증	감
합 계	**798,775,714**	**795,775,714**	**3,000,000**	-
기획행정위원회	**201,865,020**	**201,865,020**	-	-
공 보 관 실	688,400	688,400	-	-
감 사 관 실	139,500	139,500	-	-
총 무 과	15,692,874	15,692,874	-	-
기 획 조 정 실	44,729,814	44,729,814	-	-
자 치 행 정 국	79,617,981	79,617,981	-	-
소 방 본 부	27,927,773	27,927,773	-	-
증 평 출 장 소	33,068,678	33,068,678	-	-
교육사회위원회	**153,007,047**	**153,007,047**	-	-
여성정책관실	15,566,240	15,566,240	-	-
복 지 환 경 국	132,100,227	132,100,227	-	-
옥 천 전 문 대	864,840	864,840	-	-
지방공무원교육원	2,456,029	2,456,029	-	-
보건환경연구원	2,019,711	2,019,711	-	-
산업경제위원회	**218,600,765**	**215,600,765**	**3,000,000**	-
경 제 통 상 국	69,412,777	69,412,777	-	-
농 정 국	134,783,342	134,783,342	-	-
농 업 기 술 원	11,404,646	11,404,646	-	-
관광건설위원회	**221,958,589**	**221,958,589**	-	-
문 화 진 흥 국	31,617,270	31,617,270	-	-
건 설 교 통 국	190,341,319	190,341,319	-	-
의회운영위원회	**3,344,293**	**3,344,293**	-	-
의 회 사 무 처	3,344,293	3,344,293	-	-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 리 내 용					비고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5	5	3	2				
예 산 안	5	5	3	2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도지사가 당선자로 된 소송사건 수행을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 수행"으로 조례의 목적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채무보증 발급신청시 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확보 공증서류" 제출 의무화

○ 보증채무현황 보고기간 명시

○ 애매모호한 자구 정비 등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출장소장의 직급규정 삭제

○ 출장소의 하부조직에 관한 규정 삭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담당관, 계장 등의 명칭을 직제에 맞는 명칭으로 수정

○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 등을 수정

· 농지개혁법을 → 농지법으로

·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을 → 가정의례에관한법률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내무국장 → 도세 담당국장

○ 업무 주관과장 → 도세 담당과장

○ 업무 주관계장 → 도세 담당사무관으로 수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5종의 검사 처리기간 단축

· 식품류검사 : 20일 → 18일

· 목욕수검사 : 14일 → 8일

· 농수축산물의 잔류농약검사 : 30일 → 18일

· 폐기물검사 : 14일 → 10일

· 먹는물(샘물)검사 : 14일 → 12일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기금 수혜대상자로서 어업인 및 임업인후계자를 포함시킴

○ 개발기금운영실무위원회제도와 사업대상자 추천제 폐지

○ 보조 또는 융자지원방식을 융자지원으로 통일하고 운영자금 지원제 신설(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

○ 자금의 용도별로 상환기간 및 융자이율 차등구분

· 시설자금 : 년 3%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 운영자금 : 년 5%에 1년만기 일시상환

○ 상환연기 제도신설(천재지변 등 재해발생 시)

○ 회계연도 개시전 기금관련 서류 의회제출 규정신설 : 기금운용계획은 50일전, 결산보고서는 120일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농특산물, 민·공예품, 향토전통음식을 종전에는 명품으로 하였으나 향토전통음식은 제외

○ 명품에 대한 육성기금 융자 한도액을 개소당(사업장) 1억원에서 2억원 이내로 확대

○ 2000년 1월 1일부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현재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조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 삭제(규칙에 위임)

○ 권한의 위임(10건의 사무)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로 통합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수정

○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헌법 제49조에 위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부적절한 자구수정

· 통괄 → 통할, 연구원·보조원 → 연구관·연구원

○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정

· 위원장(행정부지사) → 도지사로 수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간사 1인과 서기 → 간사와 서기 각 1인

○ 문화관광국장, 문화체육과장을 →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로 자구 수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조례상의 상위법령의 근거조문 정리

○ 공유수면관리사항 삭제 및 조례제명 변경

○ 소액점용료의 부징수기준 상향조정(600 → 5,000원)

○ 애매모호한 점용기간 산정방식 수정

○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규정

○ 알기쉬운 용어 및 자구로 정비(사력 → 모래·자갈 등)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현행조례상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의 이율을 연리 6.5퍼센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리"로 변경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

〔 주요골자 〕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

〔 주요골자 〕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 주요골자 〕

○ 특위구성 시 조례('99. 2. 1) 총 189건

· 도청소관 : 154건

· 교육청소관 : 35건

※ 정 비 : 60건(상반기 44, 하반기 16)

○ 상반기 정비 : 44건(개정 37, 폐지 7)

· 도청소관 : 40건(개정 33, 폐지 7)

· 교육청소관 : 4건(개정 4)

○ 하반기 정비 : 16건(개정 14, 폐지 2)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5	45	45					
조 례 안	44	44	45					
일반안건	1	1	1					

第 20 節 第169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69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2000. 1. 6 소집공고 하였고 2000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청취,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 27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2000. 1. 27 ~ 2. 1 (6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9건

○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 2000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

※ 회의록 서명의원 : 이근성 의원, 유동찬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12건	9	-	-	-	3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2000. 1. 27(목)

○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회 기 : 2000. 1. 27~2. 1(6일간)

○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김진호의원)

- 오송기점역 유치 적극적 대처 등

□ **제2차 본회의 - 2000. 2. 1(화)**

○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 (원안가결)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원안가결)

○ 5분 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박재수 의원)

-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등 종합적인 검토 시행촉구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0. 1. 27(목) 14:01~14:10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시간 44분(52분)	
1차(1. 27)	14:10~15:24	1시간 14분
2차(2. 1)	11:01~11:31	30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88.9%)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27명	23	25	4	2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00. 1.27	1	1.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2000. 2. 16~2. 19(4일간) 2. 200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00. 1.28	1	1. 200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실 나. 기획조정실 다. 소방본부 라. 충주의료원 2.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00. 1.29	2	1. 200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국 2.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00. 1.31	3	1. 200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총무과, 감사관실 나. 증평 출장소 다. 청주의료원 2.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00. 1.28	1	1. 200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여성정책관실(여성회관 포함) 나. 복지환경국 다. 옥천전문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00. 1.31	2	1. 2000년도 충청북도 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00. 1.28	1	1. 200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00. 1.31	2	1. 200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나. 농업기술원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관광건설 위 원 회	'00. 1.28	1	1. 200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건설교통국 2.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 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00. 1.31	2	1. 200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문화진흥국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8	17	17			1	
의회운영 위 원 회	2	2	2				
기획행정 위 원 회	8	7	7			1	
교육사회 위 원 회	3	3	3				
산업경제 위 원 회	1	1	1				
관광건설 위 원 회	4	4	4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69회 임시회 기간을 2000. 1. 27일부터 2. 1일까지 6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일반안건	1	1	1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

〔 **주요골자** 〕

○ 상징물의 종류 및 관리
○ 상징물 관련사업 : 사업의 예시 및 민간위탁 근거
○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면제
○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
○ 상징물사용 위반시 조치사항
 · 상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
○ 충청북도도기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부칙) 등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보건사회 위생분야 관련수수료 신설
○ 문화공보분야 관련 수수료 신설
○ 농수산관련 수수료 신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조직개편으로 인한 물품관리부서 및 관직지정을 변경
 · 총무과 → 재무과, 총무과장 → 재무과장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 관서당경비 →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 **주요골자** 〕

○ 문화의집 기능

· 다양한 생활정보, 정보습득 및 교류기회, 문화예술공간, 휴게공간 제공

○ 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 선정

· 문화의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 수탁자는 출장소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위탁운영경비 지원

·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공유재산 무상임대

○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의 해지

· 문화의집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이행

· 규정위반, 운영능력부족, 운영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계약해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지방세심의위원회 정비

○ 차량 등 취득물건 이전시 취득세 이중 신고규정 삭제

○ 자가용자동차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

○ 지역개발세의 세율 조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0년도전국지방자치복권발행계획

〔 **주요골자** 〕

○ 발행주체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 판매지역 : 전국

○ 발행규모 : 210억원(즉석식)

○ 당첨금액 : 5,000만원(연식 1억원)

○ 액면금액 : 500원 / 1매당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6	6	6					
조 례 안	5	5	5					
승 인 안	1	1	1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학교신설 : 1교

○ 학교이전 : 1교

○ 분교장폐지 : 6분교장

○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 : 2교

○ 초등 통합운영학교 설치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 : 1교

○ 교명변경 : 1교

○ 지적정리 등에 따른 위치변경 : 16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이 조례에 의한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은 마을·주유소·휴게소 등과 통하는 연결로 등을 지방도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밖의 연결의 경우에는 교통안전·도로구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

○ 지방도에 다른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연결계획서,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의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무분별한 연결을 방지함

○ 일정기준 이상의 곡선구간·경사구간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은 교통안정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함

○ 연결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방법, 시설별 가·감속차로 등의 설치기준, 연결로 등의 포장방법·분리대·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조직개편으로 기금관리자 명칭 변경

· 기금운용관을 자치행정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 기금분임운용관을 재난관리과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

· 기금출납원을 재난총괄담당에서 안전관리담당으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건설기계관리법의 전문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 조례 제명 및 각 조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

○ 장비반납 의무 이행담보제도 완화

· 반납비용 예치 의무화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로 변경

○ 조종사 인건비 적용기준 변경

· 정부 노임단가 → 건설협회 등 공인된 기관의 노임단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조례안	3	3	3					

第 21 節 第170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70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2000. 2. 1 소집공고 하였고 기획행정 및 교육사회위원장 보궐선거와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하여 2월 16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2000. 2. 16 ~ 2. 19 (4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17건

○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 2월 12일자 김춘식 의원, 윤병태 의원 사직서 제출

· 기획행정위원회 : 한현태 의원 선출

· 교육사회위원회 : 박노철 의원 선출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주백 의원, 김영태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19건	17	-	-	-	2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2000. 2. 16(수)

○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0. 2. 16~2. 19(4일간)

○ 5분 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 지역개발회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강구

□ **제2차 본회의 - 2000. 2. 19(토)**

○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상임위원장(기획행정, 교육사회) 보궐선거
  · 기획행정위원장 : 한현태 의원
  · 교육사회위원장 : 박노철 의원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0. 2. 16(수) 11:01~11:08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시간 3분(31.5분)	
1차(2. 16)	11:09~11:20	11분
2차(2. 19)	11:01~11:53	5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100%)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25명	25	25	-	-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00. 2.29	1	1.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2000. 3. 13~3. 18(6일간) → 2000. 3. 13~3. 17(5일간)으로 수정 2.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회	'00. 2.18	1	1.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5.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00. 2.18	1	1.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 정조례안 4.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6.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 례안
산업경제위원회	'00. 2.28	1	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 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9	19	17	2			
의회운영 위 원 회	4	4	3	1			
기획행정 위 원 회	7	7	7				
교육사회 위 원 회	6	6	6				
산업경제 위 원 회	2	2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70회 임시회 기간을 2000. 2. 16일부터 2. 19일까지 4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 리 내 용					비고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일반안건	1	1	1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권한위임의 확대

○ 별정직공무원 전보규정 보완

○ 근무상한연령의 예외규정 신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공인의 신조, 개각 승인제도를 등록·재등록제도로 바꾸고 전자관인의 등록·관리규정 신설

○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새김을 원칙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를 3㎝이하(종전 2.7㎝)로 하고 도지사가 직급에 따라 차등을 할 수 있게 규정

○ 전자관인은 정보통신과장이 관리하고 전자문서 관인날인은 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하도록 규정

○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직 변경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 임신중 출산전후 60일간 특별휴가를 허용하도록 강제 규정

· 출산후 1년간 1일 1시간 육아시간 허용(신설)

· 보건휴가를 생리기와 임신중 검진을 위해 매월 1회 허용

○ 20년간 이상 장기근속 및 퇴직준비 휴가제도 개선

· 1회에 한하여 10일간 → 재직기간중 10일간으로 개정

· 퇴직준비 휴가대상에 조기퇴직자 포함

○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삽입규정 명문화

· 30일이상 계속 및 경조사 휴가는 공휴일을 포함일수에 포함

· 그 외의 휴가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규칙 공포시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일 경우 그 뜻을 전문에 기재토록 한 단서조항 삭제

○ 용어정비 : 지방자치단체 → 도

○ 조례·규칙의 공포방법 조정과 예산의 고시를 신설하였으며, 고시 방법은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을 준용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개정에 따라 조례명칭 및 설치목적 변경

○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명칭을 변경

○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근거규정 마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조례제명 및 설립목적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정비

○ 의료원의 출자범위 확대 : 자본금 또는 현물

○ 의료원 정관 기재사항 추가 및 변경

○ 임직원의 비밀누설금지규정 신설

○ 의료원의 공인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비 상임이사의 수당, 여비 지급규정 신설

○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제규정을 제·개정, 폐지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라 정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소관 및 관직명칭 변경

· 업무소관 변경 : 기획조정실장 → 자치행정국장

· 관직명칭 변경 : 정보화담당관 → 정보통신과장

○ 지역정보화 본부 기능 보완

· 지역정보산업 육성 지원(신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7	7	7					
조 례 안	7	7	7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기금출납원의 직명변경

· 가정복지담당사무관 → 경로복지담당사무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위원회의 위원수를 12인에서 8인으로 함

○ 위원장 행정부지사를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위원장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함

○ 기금운용관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 사회복지과장을 재활복지담당사무관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명변경

· 보건과장 → 사회복지과장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

· 당연직위원 : 복지환경국장, 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 간 사 : 환경관리과장 → 환경과장

· 서 기 : 환경관리담당 → 환경기획담당사무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시상기금운영조례

〔 **주요골자** 〕

○ 시상대상자

· 모든 교육과정에서 실시한 교육훈련 평가결과 성적우수자

· 각 과정별 교육운영 유공자, 분임토의 평가 최우수 및 우수분임조

○ 기금의 설치·집행 및 재원

· 설 치 : 시상금 지급을 위하여 교육원에 기금설치

· 집 행 :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시상금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재 원 : 대통령특별지원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의 운용관리는 교육원장이 관리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함

○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을 인상함

· 의정활동비 : 월 600,000원 → 월 900,000원

· 회기수당 : 일 60,000원 → 일 80,000원

· 국외여비 :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6	6	6					
조 례 안	6	6	6					

□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샤워장 시설사용료 조항 삭제

· 샤워장시설 사용 1회시 : 어른 500원, 학생 300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수렵장 사용료의 적립금조항 신설

· 운영기금 조성

· 운영기금의 적립 및 관리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수렵장 사용료를 조수보호 관련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성격이 아닌 적립금으로 적립, 관리하기 위함

○ 수정주요골자 : 수렵장사용료등의 수입금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관리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1	1				
조 례 안	2	2	1	1				

第 22 節 第171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71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2000. 3. 2 소집공고 하였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3월 13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2000. 3. 13 ~ 3. 17 (5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9건

※ 회의록 서명의원 : 김대호 의원, 김소정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10건	9	-	-	-	1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2000. 3. 13(월)

○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0. 3. 13~3. 17(5일간)

□ 제2차 본회의 - 2000. 3. 17(금)

○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0. 3. 13(월) 14:01~14:08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30분(15분)	
1차(3. 13)	14:08~14:17	9분
2차(3. 17)	11:04~11:25	21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2.0%)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25명	24	22	1	3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00. 3.13	1	1.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2000. 4. 18~4. 25(8일간)
기획행정 위 원 회	'00. 3.15	1	1. 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 오장세 의원을 간사로 선임 2.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교육사회 위 원 회	'00. 3.13	1	1. 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 이근성 의원을 간사로 선임
산업경제 위 원 회	'00. 3.14	1	1.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00. 3.16	2	1.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계속)
관광건설 위 원 회	'00. 3.14	1	1.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2	12	8	3	1		
의회운영위원회	1	1	1				
기획행정위원회	5	5	2	3			
교육사회위원회	1	1	1				
산업경제위원회	3	3	3				
관광건설위원회	2	2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71회 임시회 기간을 2000. 3. 13일부터 3. 17일까지 5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의정활동비

·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 월 60만원 → 월 70만원

· 보조활동비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회의수당 1일 6만원 → 회기수당 1일 8만원

○ 국외여비지급기준표상의 일비, 숙박비, 식비의 등급

· 일 비 : 의장·부의장 30불→40불, 의원 25→35불

· 숙박비 : 의장·부의장 169불→186불, 의원 137→151불

○ 자구수정

· 일비, 숙박료 → 현지교통비, 숙박비

○ 조문배열정리

· 종전 10개조, 부칙, 별표 3 → 7개조, 부칙, 별표 3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행정사무감사시기 : 정기회 기간중 →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으로 수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조 례 안	2	2	2					
일반안건	1	1	1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변경 : 15인 이내 → 11인 이내

○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위촉방법 변경

· 당연직위원(5인) :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 외부인사(6인) : 도지사가 위원장 및 위원위촉

○ 위원의 임기변경 : 1년 → 3년

○ 회의 개의요건 변경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 부위원장이 대행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위원회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3인중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 수정 주요골자 : 생략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확대 또는 신설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확대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

· 중고 건설기계매매업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세제 지원 규정 폐지

· 주차장용 부동산과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 폐지

○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 등록제로 됨에 따라 조문정리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감면된 도세를 추진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하도록 관련 법규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을 → 임대주택법 제12조에 한하도록 조문을 정비

· 관련법령의 제목 및 관련조문 개정에 따른 정리 등

- 교육법을 → 교육기본법으로

- 자동차운수사업법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 외국인투자촉진법을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재정보전금조례

〔 주요골자 〕

○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공동시설세를 제외한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 시 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고 재정보전금 총액중 일반재정보전금은 90%, 시책추진보전금은 10%에 해당액을 재원으로 함

○ 일반재정보전금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60%, 징수실적에 따라 40%를 각각 분기별로 배분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의 지역개발 등 시책추진을 지원토록 함

○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재정보전금은 자치행정국장이, 시책추진보전금은 기획조정실장이 관장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2	1				
조례안	3	3	2	1				

□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직명변경

·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공업경제국장 → 경제통상국장

·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 위원 : 보건환경국장 →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국장 → 문화진흥국장

· 충청북도유통단심의위원회 서기 : 유통지원계장 → 업무담당사무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용어의 정의

·사업명 변경에 따라 용어정의 추가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기금의 관리·운용 등

·"중소기업시설개체(구조조정)지원자금, 중소기업 입지지원자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원금"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 지원자금"으로 통합관리 운용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 신설

·"중소유통구조개선지원자금"을 "시장재개발사업지원자금"으로 개정

○ 기금의 지원대상자

·"충청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충청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로 함

·"시장개발사업자"를 "시장재개발사업자"로 함

○ 기금의 사용 등

·시달된 지원대상사업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 주요골자 〕

○ 농업인단체의 육성과 단체간 협력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설치

○ 회관은 농업기술원장 책임하에 운영관리함

○ 회관의 용도는 농업관련 교육·행사 및 학술대회, 농업인단체 사무실, 농업인단체 사업지원,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함

○ 필요시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에 위탁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 다만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 단체가 사무실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함
○ 회관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의 멸실 또는 훼손시 원상복구의무를 규정함
○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가 회관의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위탁시 지도감독 및 수탁자의 보고의무를 규정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조 례 안	3	3	3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과징금 처분대상(안 제4조)
- 당 초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을
- 변 경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로 개정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第 23 節 第172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72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3. 24 소집공고 하였고 도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199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4월 18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2000. 4. 18 ~ 4. 25 (7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11건
○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충청북도와 아르헨티나 추붓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 1999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 유주열 의원, 이광종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16건	11	1	-	-	4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2000. 4. 18(화)

○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2000. 4. 18~4. 25(8일간)
○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분 자유발언
· 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
- 국립공원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강구
· 기획행정위원회 김형태 의원
- 칠장천 하천오염실태와 대책강구

□ **제2차 본회의 - 2000. 4. 25(화)**

○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와 아르헨티나 추붓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다음기회로 미룸-계류중)
○ 1999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외)
  · 기획행정위원회 : 유주열 의원
  · 교육사회위원회 : 이근성 의원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0. 4. 18(화) 13:59~14:07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2시간(1시간)	
1차(4. 18)	14:07~14:46	39분
2차(4. 25)	10:59~12:20	1시간 21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6%)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25명	25	23	-	2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00. 4.18	1	1.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2000. 5. 15~5. 25(11일간)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9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00. 4.19	1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00. 4.20	2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0. 4.24	3	1. 200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교육사회위원회	'00. 4.19	1	1.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0. 4.20	2	1.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산업경제위원회	'00. 4.19	1	1.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와 아르헨티나 추붓주와의 자매결연체결안
관광건설위원회	'00. 4.19	1	1.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결산특위	'00. 4.21	1	1.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8	18	14	3	1		
의회운영위원회	3	3	3				
기획행정위원회	6	6	5		1		
교육사회위원회	5	5	4	1			
산업경제위원회	2	2	1	1			
관광건설위원회	1	1	1				
예산결산특위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72회 임시회 기간을 2000. 4. 18일부터 4. 25일까지 8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 리 내 용					비고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일반안건	1	1	1					

□ 기획행정위원회

⊙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 **주요골자** 〕

○ 재산의 교환(도유 ↔ 군유재산)

· 도유재산 : 327필지(옥천, 진천군)

· 군유재산 : 6필지(옥천, 진천군)

〔 **심사결과** 〕 **부결**

⊙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 **주요골자** 〕

○ 감사청구 주민수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 이상

○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위촉(임명)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토록 하여 독립성 확보

○ 수정 주요골자

·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기능을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안 제3조 제1항 단서조항 삭제

· 충청북도공직자리위원회가 대행할 때 위원의 임기는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에 따르도록 한 안 제4조 제1항 단서조항 삭제

⊙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시험감시수당 조정

· 공휴일 : 20,000원을 30,000원으로

· 평 일 : 10,000원을 15,000원으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 조례 근거규정 및 용어정비

· 제46조 및 제47조를 → 제46조의 2로

· 제10조 내지 제13조중 일비를 → 수당으로

○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 제2조중 10인 이하를 → 10인 이내로

· 제3조중 별표 제1호서식을 → 별표 1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출장소장의 소관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출장소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조례 제명변경

·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

○ 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등 상위법 적용조항 추가

○ 불부합 조문정비 및 용어정비

· 하수처리장 → 하수·분뇨처리장

· 하수종말처리장 → 하수처리장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6	6	4	1	1			
조례안	6	6	4	1	1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기간 확대

○ 퇴직준비휴가의 범위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공무원"에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공무원"으로 확대

○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였으나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포함함

○ 경조사별 휴가대상 확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28명에서 5명을 감축하여 2,823명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비상계획업무 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과 근무상한연령을 명확히 규정함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담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던 조항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직권면직 조항 강화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있던 조항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정

○ 군 입대에 의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명시

○ 휴직의 효력조항 신설

·휴직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군 입대 휴직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체없이 복직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도 조례중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병설 및 통합학교의 위원정수 산정기준을 명시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법 및 시행령 조항 수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권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본항 삭제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조례안	3	3	3					

□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사항을 정함

○ 소비자의 생명·건강·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품의 조사 및 시험검사, 회수, 수거,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함

○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거래를 금지하고 물품 또는 용역의 표시·광고실태와 계량·규격의 실태를 조사하며 부당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피해구제창구를 설치운영 하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사례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하고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각종시험·검사시설의 설치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을 정함
○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물품·시설에 검사 및 자료제출 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와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금액 및 부과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
○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 불합리한 사항 조정

⊙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

〔 **주요골자** 〕

○ 체결예정 : 2000. 5월
○ 대상도시 : 아르헨티나 추붓주
○ 체결방법 : 추붓주 대표단 초청, 협정서 서명, 교환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1	1				
조례안	1	1		1				
승인안	1	1	1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운영조례

〔 주요골자 〕

○ 관광안내소의 위치 : 청주시에 설치

○ 관광안내소의 기능

· 관광안내 및 정보제공

·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 지역별·기능별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 관광안내소의 운영요원

· 임 명 : 도지사(외국어통역안내원 자격소지자 우선임용)

· 소 속 : 직영운영시 충청북도, 위탁운영시 수탁자 소속

· 복 무 :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함

○ 관광안내소의 위탁

· 직영 및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사업자단체에 위탁

·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판매대금은 해당업체에 반환

○ 근거규정 : 시·도종합관광안내관광안내소 위치운영지침

○ 예산사항

· 운영비 : 70백만원(국비 35, 도비 35)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 주요내용 〕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2000 제1회추경예산(안)조정내역		
		요구액	증	감
합 계	**811,541,146**	**58,797,783**	**480,500**	**480,500**
유 치 원	3,924,922	966,540	-	-
초 등 학 교	127,269,298	19,925,344	-	22,000
중 학 교	76,911,661	13,642,001	-	28,000
고 등 학 교	70,785,232	16,674,998	-	424,500
특 수 학 교	8,360,412	199,272	-	-
기 타 학 교	1,200	0	-	-
평 생 교 육	1,182,621	219,230	-	-
급 여 관 리	420,874,311	0	-	-
복 지 · 후 생	56,909,118	3,940,323	-	-
교 육 위 원 회	349,540	41,628	-	-
교 육 청	6,123,628	765,652	-	6,000
지 역 교 육 청	4,489,510	1,101,470	-	-
교 육 지 원 기 관	3,348,532	1,317,294	-	-
지 방 채 상 환	6,521,850	0	-	-
제 지 출 금	2,241	2,241	-	-
예 비 비	24,487,070	24,004,780	480,500	-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요구액 8,115억 4,114만 6천원 중 4억 8,050만원 삭감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 리 내 용					비고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예 산 안	1	1		1				

第 24 節 第173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73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4. 24 소집공고 하였고 도청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도정질문,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5월 15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2000. 5. 15 ~ 5. 25 (11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3건
○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 도정에 관한 질문(5. 22~5. 23, 4명)
· 교육사회위원회 이근성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기의원
·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오장세의원
○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 회의록 서명의원 : 이완영 의원, 김진호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10건	3	1	-	1	5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2000. 5. 15(월)

○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2000. 5. 15~5. 25(11일간)
○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가결)
· 일 시 : 2000. 5. 22~5. 23(2일간)
○ 5분 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
- 태권도공원 후보지 신청 관련

□ 제2차 본회의 - 2000. 5. 22(월)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이근성 의원

질문요지 1

○ 여성단체의 육성과 여성계의 결집 그리고 유능한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책
○ 충북여성발전기금 조성
○ 여성의 고충해결과 안전한 보호대책
○ 농촌여성의 문화교육강화와 환경개선 문제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여성지도자양성을 위한 여성지도자양성 교육과정 설치운영, 여성지도자 워크샵, 여성대회, 남녀 평등의 달 행사 그리고 전국 처음으로 구성운영중인「 충북여성포럼」,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율 제고,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등을 시행중에 있음.
○ 2002년도까지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IMF로 인하여 현재 3억원 정도 조성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전액 적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여성 1366」설치운영, 전문상담소12개소 설치운영 등 여성이 보호받는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교양, 문화, 정보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과 주부 정보화 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여성회관과 일하는 여성의 집을 통하여 교양교육과 기능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직업인의 능력배양에 힘써 나가고 있음. 또한 여성경제인연합회를 통한 여성기업인양성, 창업교육, 경영기법 등의 교육과 농촌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고학영농교육, 생활개선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질문요지 2

○ 도·시·군간 인사교류 침체에 따른 부작용
○ 도·시·군의 공동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용의는?

【 답변 : 행정부지사 유의재 】

○ '98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개발과 인력의 균형배치를 통한 도·시·군간 상호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인사교류 협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음.

질문요지 3

○ 민선2기 출범후 지방재정확충 추진실적과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대책

【 답변 :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

○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42건에 1조 6,586억원의 중앙지원 건의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정부예산 순기에 맞추어 중앙부처별로 국비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중에 있음.

질문요지 4

○ 대청댐 수질개선 및 지원대책 강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규제지역 지정확대에 대한 방침
○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저소득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등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책

【 답변 :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

○ 대청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하여 대청호를 포함한 금강유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및 수질예측 실험과 현지합동 실태조사 실시,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실시, 수변구역 지정, 오수 정화처리시설 설치, 오염총량제의 단계적 실시,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제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대청댐 상류지역 주민에게 가급적 최소한의 규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금년도 노인복지를 위해 35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미흡한 실정이나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운영이나 각종노인시설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 21세기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음.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활·자립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각종 복지시책을 수립 추진하겠음.

질문요지 5

○ 지역방재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보상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기앙양대책은?

【 답변 : 소방본부장 남상호 】

○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화재출동수당, 피복비, 자녀장학금 및 보상금 등 4종이 있음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는 의용소방대 시·군연합회 개최,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노후청사 및 소방차량의 교체, 포상확대실시, 선진지 견학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심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문요지 6

○ 교육재정 효율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자체수입 확충 방안

○ 과외금지 위헌판결에 따른 과외대책

【 답변 : 교육감 김영세 】

○ '98년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우수사례 심사에서 전국최우수, 재정분야 평가에서 '98년과 '99년도 2년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 2000년도 전국 시·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분석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음.

○ 인건비 절감을 위해 순회 검임교사제도 지속확대, 사립학교 교직원 정년 및 정원을 공립학교 기준으로 적용, 본청의 기능직 방호원을 감축하였고

○ 세출예산 절감획을 위해 경상경비의 절감, 출퇴근 버스운행 폐지, 교실 증개축비 단가 하향조정, 농업학교 목장의 통합운영을 추진하였으며

○ 재정효율화 추진계획으로 단가결정입찰제 정착 등 새로운 효율화 방안을 발굴·확산함으로서 신뢰받는 교육재정을 운영하겠음.

○ 공교육활성화 계획으로 고액과외 집중단속반 운영, 고액과외교습의 개연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 강화, 과외욕구의 근원적 해소,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내실화, 교육부의 구체적 계획에 따른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음.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기 의원

질문요지 1

○ 중평출장소 문제

○ 각종 행사와 축제 그리고 미신행위 근절대책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청주국제공항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첨단산업 및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면서 신시가지개발 등을 통해 인구유입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시 승격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봄.

○ 소모성 또는 불요불급한 행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행사의 필요성과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음.

○ 도민들이 보다 건전·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관계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권유·지도해 나가겠음.

질문요지 2

○ 주민 편익을 위하 도청청사내 주차장 확보대책
○ 외국인에 대한 편의대책과 구호로만 관광객 유치를 부르짖지 말고 실제적인 대책
○ 태권도 공원 유치

【 답변 : 행정부지사 유의재 】

○ 도청을 찾는 도민들의 주차부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면을 다소라도 증면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음.

○ 시·군에서 제작하는 각종 관광홍보물을 영어·일어·중국어로 제작하고 영어로만 표기되어 있는 관광지 표지판도 한자를 추가 표기하겠으며업소간판도 영어와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5억원을 투자 관광허브사이트를 구축 다양한 관광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음.

○ 태권도공원의 우리도 유치를 위해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한후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선정기준 등 중앙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보은군과 진천군간의 유치경쟁이 아니라 우리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역사성, 관광성, 교통의 편의성 등 유리한 면을 부각시키면서 신청지역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

질문요지 3

○ 과학영농특화지구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견해

【 답변 :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

○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농업종합발전계획에 체험농업 중심의 녹색관광, 지역특화품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수종합연구소의 설립, 과일가공산업의 육성, 포도주 제조기술연수 등을 포함한 추가 보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음.

질문요지 4

○ 미신행위 근절대책
○ 농촌지역에 있는 폐교의 관리대책
○ 폐교 기부토지에 대한 반환이나 무상대여와 관련한 의견

【 답변 : 부교육감 류선규 】

○ 가정과 지역사회에 미신 또는 무속행위의 비합리성과 사회적 문제성을 홍보하여 건전한 종교관리 형성과 성숙한 종교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임대가 안된 폐교에 대하여는 항상 철저히 관리함은 물론 임대가 더욱 촉진되도록 하되 미관상 좋지 않은 폐교가 방치되거나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지 않도록 노후가 심한 일부 폐교건물에 대하여는 철거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 현행법상 기부채납된 재산을 기부자에게 돌려주거나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시 토지기부자·동문·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폐교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제3차 본회의 - 2000. 5. 23(화)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질문요지 1

○ 댐주변 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인 수중보 설치에 대한 대책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수중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수중보가 건설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선박의 계속적인 운항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단양군과 충주호 관광선(주) 간에 수위가 129m이상만 되면 선박을 운항시킨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음. 조속한 시일내에 원하는 수중보 건설이 실현되어 단양군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문요지 2

○ 도행정 변화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무원들의 선진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시행에 관한 견해

【 답변 :행정부지사 유의재 】

○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공무원이 선진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행정을 경험하도록 하여 지식과 정보의 폭을 넓혀 국제화·세계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 해외연수와 해외배낭여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질문요지 3

○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주민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

【 답변 :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과 도민의 수혜가 높은 사업,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성사업 등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사업의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음.

질문요지 4

○ 댐주변지역 규제완화 및 피해보상과 국립공원 지역내 주민의 피해보상대책

【 답변 :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

○ 새로운 규제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차단하고 규제에 따른 피해보상과 주민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수질보전과 수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한강수계지역에 대하여는 물이용부담금을 계속 징수해서 청정산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하고 대청호, 충주호 주변 식품·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오수처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내년부터 전액 국비나 도비로 지원할 것임.

○ 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정과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심의과정 등을 통해 공원내 주민의 여망이 대한 반영되고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음.

질문요지 5

○ 천재지변에 의한 농업구조물과 농작물 피해보상기준이 비현실적이고 피해산출방식도 작목별, 시설별 피해정도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보완대책

【 답변 : 농정국장 김홍기 】

○ 그간 수차례에 걸쳐 보상차원의 직접적인 지원과 지원규모의 확대를 중앙에 건의한 결과 특별영농자금 55억원을 배정받았고 이재민구호 및 생계지원기준, 유실·매몰농경지 복구비지원 기준조정, 농어업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이 개정된바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인 농업재해보상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음.

질문요지 6

○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지 홍보를 위하여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된 교각에 지역특산품과 관광홍보판을 설치관련

【 답변 :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

○ 앞으로 고속도로와 국도의 교각을 활용하여 지역특산품이나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음.

질문요지 7

○ 수해복구시 항구복구를 위한 대책
○ 하천내 토사 퇴적이 수해의 원인이 되므로 골재채취 허가를 통한 예산절감과 세입증대 방안

【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해시 가능한 많은 복구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 개량복구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

○ 앞으로 수해복구나 퇴적된 토사를 제거할 경우 재해 사전예방과 안전사고방지, 안전을 우선으로 하되 지방세수증대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하천에 방치된 폐콘크리트 구조물 등 위험요인을 함께 제거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음.

질문요지 8

○ 교원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교원 수급대책
○ 충북소년체전 개최지에 대한 의견

【 답변 : 도지사 김영세 】

○ 우리도에는 총 560여명의 교원이 부족하게 되어 신규교사 116명을 임용하였고 중등교과 전담기간제교사 229명, 퇴직교원 기간제교사 220명을 채용하였으며 앞으로 초등교원의 부족사태는 2002년, 2003년에는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교원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분산개최에 따른 대회운영 및 선수관리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군지역의 공인 체육시설, 용구현황을 감안할 때 군지역의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설확충 등을 통하여 고려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 오장세 의원

질문요지 1

○ '99년도 도세감면 규모와 내용
○ 감면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지방세 보전을 위한 노력
○ 도세 감면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
○ 세무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 총 감면액은 421억원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이 129억원, 도세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이 158억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134억원으로 세목별로는 취득세 172억원, 등록세 246억원, 면허세 등이 3억원이며 이는 '99년도 도세 징수액 1,917억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임.

○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주행세의 신설,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에 흡수하는 방안 건의.

○ 지방세수증대를 위해 부동산과표의 현실화 추진, 탈루·은닉세원의 발굴노력 강화,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 징수 등을 추진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기관과 우수공무원을 선발 수시 표창하고 연찬을 통한 상호 유대강화 등도 추진하겠음.

질문요지 2

○ 미신고·미등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파악 결과와 조치사항, 법적시설로의 전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직·간접적 지원방안과 안전대책, 복지시설과 법인의 후원금 회계관리, 복무관리 등의 지도점검 대책

【 답변 : 행정부지사 유의재 】

○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수용자를 가급적 인근 사회복지시설로 이관·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여건이 갖추어진 미신고시설은 법적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보강을 유도하고 사회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 응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시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가스·소방 등의 시설을 점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시설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사회복지시설에 기탁된 후원금은 후원자의 고귀한 뜻에 따라 후원금이 성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후원금관리는 물론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복무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

질문요지 3

○ 농촌폐비닐과 농약빈병의 처리
○ 관광유원지 등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
○ 댐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문제
○ 쓰레기 불법투기근절, 쓰레기줄이기운동을 언론과 연계하여 추진할 용의는?

【 답변 :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

○ '99년도에 농약빈병 640톤을 수거하였으며 금년도 수거목표는 560톤으로 현재 23%인 131톤을 수거하였고 폐비닐은 '99년도에 4,493톤을 수거하였고 4월말 현재 약 30%인 1,774톤을 수거하였음.

○ '99년도에 총 8,152건을 단속하였으며 그중 1,40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한바 있고 쓰레기투기신고보상금제를 2000.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수자원공사와 당해 시·군간의 자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촉구하고 해당 시·군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도록 하겠음.

○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배출단계에서 철저한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비료화, 재생공장에 원료로 공급하고 시민의식고취 및 홍보활동, 환경지킴이의 활동확대 그리고 공익환경요원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질문요지 4

○ 학교급식 운영 실태
○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1·2학년학생의 급식 확대대책
○ 학생봉사활동 개선방안

【 답변 : 교육감 김영세 】

○ 급식소의 환경개선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위생점검실시, 시설개·보수와 노후급식기구의 교체, 새로운 위생기구의 확충 등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사명감고취와 영양지도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관계자의 연수와 보수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습득케하여 영양 및 식생활지도 및 위생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고있음.

○ 현재 247개 학교중 시지역에 위치한 18개학교가 1학년 또는 1·2학년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저학년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학교장에게 확대 실시토록 권장하겠음.

○ 학생봉사활동이 순수한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참여의 봉사활동이 되도록 지도강화하고 현장체험학습과 인성교육 측면에서 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

□ 제4차 본회의 - 2000. 5. 25(목)

○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원안가결)

○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건의안(원안가결)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0. 5. 15(월) 14:01~14:09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0시간 43분(1시간 41분)	
1차(5. 15)	14:09~14:37	28분
2차(5. 22)	11:02~15:42	4시간 40분
3차(5. 23)	11:00~15:09	4시간 9분
4차(5. 25)	11:00~12:26	1시간 26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8.9%)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3	4	1	2	3	4
25명	24	25	25	24	1	-	-	1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00. 5.15	1	1.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의회사무처 소관
	'00. 5.25	2	1.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2000. 6. 16~6. 22(7일간)
기획행정위원회	'00. 5.16	1	1.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치행정국 나. 기획조정실
	'00. 5.17	2	1.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총무과 나. 감사관실 다. 공보관실 라. 소방본부 마. 증평출장소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00. 5.19	3	1.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00. 5.16	1	1.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옥천전문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00. 5.17	2	1.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 복지환경국만 수정가결
산업경제위원회	'00. 5.16	1	1.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제통상국
	'00. 5.17	2	1.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농정국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 농업기술원 소관만 원안가결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관광건설 위 원 회	'00. 5.16	1	1.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문화진흥국
	'00. 5.17	2	1.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건설교통국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00. 5.25	3	1.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예산결산 특 위	'00. 5.18	1	1.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의회운영위원회
	'00. 5.19	2	1.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계속) 가. 관광건설위원회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1	11	5	6			
의회운영 위 원 회	2	2	2				
기획행정 위 원 회	4	4	2	2			
교육사회 위 원 회	1	1		1			
산업경제 위 원 회	1	1		1			
관광건설 위 원 회	2	2	1	1			
예산결산 특 위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73회 임시회 기간을 2000. 5. 15일부터 5.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 주요골자 〕

○ 출석일시 : 2000. 5. 22 ~ 5. 23(2일간)

○ 출석장소 :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

○ 출석대상 :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 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 간부공무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

〔 주요골자 〕

○ 의원의 청가허가 : 5일이내, 폐회중 의장허가, 5일이상 본회의 허가 ⇒ 의장허가

○ 5분자유발언제도 보완

○ 회의록 기재사항 보완 : 기명투표의 경우 찬반의원 성명기재

○ 회의질서유지 규정 보완 : 휴대폰 등 통신기기사용 및 작동행위, 의원품위손상 행위

○ 비공개회의장 출입제한 규정 신설

○ 방청허가 이원화 : 의장 ⇒ 의장(본회의), 상임위원장(상임위원회의)

○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와 도정질문 : 질문요지서 24시간전 → 4일전, 답변시간 2일전 답변

○ 방청제한규정 강화

○ 방청인 준수사항 강화 및 준수사항위반자 퇴장조치 조항 신설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3					
일반안건	3	3	3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 주요골자 〕

○ 자치단체 사무의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위탁

○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 검토, 적정기관을 선정

○ 수탁기관을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

○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

○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

○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이상 감사

○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금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국가유공자의 감면대상 범위 확대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도세를 면제하도록 함

○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 및 명칭변경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충북신용보증재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정보화 책임관 용어정의 및 설치근거 조항 신설

○ 정보화시행계획 수립시기 조정 : 매년 2월말까지 → 매년 11월말까지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명칭과 구성원 변경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 지역정보화협의회

·협의회장을 행정부지사 → 도지사

·회원중 부시장·부군수 → 시장·군수

○ 주민의 정보화교육 외부기관위탁규정 신설

○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칙 위임조항 신설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정보화책임관을 핵심간부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실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임명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수정 주요골자

· 정보화책임관 임명대상을 구체적 표현으로 수정 : 핵심간부공무원 →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 정보화책임관 용어정의 수정 : 핵심간부공무원 → 공무원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	3	2	1				
일반안건	3	3	2	1				

□ 관광건설위원회

⊙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건의

〔 주요골자 〕

○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중인 태권도공원을 태권도와 관련한 문화·역사적 배경을 갖추고 산세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태권도수련도장으로 적합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함은 물론 태권도공원 개발에 따른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충북지역에 태권도공원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

○ 건의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세계태권도연맹총재, 대한체육회장

〔 심사결과 〕 원안채택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건 의 안	1	1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 주요내용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관별	예산액	제출예산액	수정내역	
		계	증	감
합 계	**799,102,858**	**799,102,858**	**1,199,050**	**1,199,050**
기획행정위원회	**212,230,460**	**212,230,460**	**1,199,050**	**539,450**
공보관실	795,807	795,807	-	57,000
감사관실	123,280	123,280	-	-
총무과	12,802,981	12,802,981	-	-
기획조정실	49,154,392	49,154,392	1,199,050	304,500
자치행정국	89,245,135	89,245,135	-	108,850
소방본부	31,571,189	31,571,189	-	60,000
증평출장소	28,547,676	28,547,676	-	9,100
교육사회위원회	**179,189,288**	**179,189,288**	-	-
여성정책관실	18,973,407	18,973,407	-	-
복지환경국	154,372,853	154,372,853	-	-
옥천전문대	900,000	900,000	-	-
지방공무원교육원	2,762,356	2,762,356	-	-
보건환경연구원	2,180,672	2,180,672	-	-
산업경제위원회	**188,703,315**	**188,703,315**	-	**463,000**
경제통상국	42,080,65	42,080,65	-	433,000
농정국	132,529,304	132,529,304	-	30,000
농업기술원	14,093,356	14,093,356	-	-
관광건설위원회	**215,214,923**	**215,214,923**	-	**196,600**
문화진흥국	41,850,952	41,850,952	-	71,600
건설교통국	173,363,971	173,363,971	-	125,000
의회운영위원회	**3,764,872**	**3,764,872**	-	-
의회사무처	3,764,872	3,764,872	-	-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역	
		계	증	감
합 계	**289,550,135**	**289,550,135**	-	-
공기업특별회계	**234,997,855**	**234,997,855**	-	-
지역개발기금	199,478,719	199,478,719	-	-
공영개발사업	35,519,136	35,519,136	-	-
기타특별회계	**54,552,280**	**54,552,280**	-	-
도립옥천전문대운영	2,847,512	2,847,512	-	-
의료보호기금	40,661,931	40,661,931	-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8,556,837	8,556,837	-	-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운영관리	2,486,000	2,486,000	-	-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요지

·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요구액 7,991억 285만 8천원 중 11억 9,905만원 삭감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 리 내 용					비고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예 산 안	1	1		1				

第 25 節 第174回 定例會

1. 開會背景

제17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공고 하였고 도 및 교육청의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촌위기 타개를 위한 건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6월 16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2000. 6. 16 ~ 6. 22 (7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조례안 - 4건
○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 교육청)
○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교육청)
○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농촌위기 타개를 위한 건의안
○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 회의록 서명의원 : 이길하 의원, 구본선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12건	4	4	-	1	3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2000. 6. 16(금)

○ 의원선서 및 인사(황태모의원, 심홍섭의원)
○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 기획행정위원회 : 심홍섭의원
· 교육사회위원회 : 황태모의원

○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2000. 6. 16~6. 22(7일간)
○ 5분 자유발언
· 교육사회위원회 김진호 의원 : 도정시책 추진관련
·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의원 : 화학폐기물 처리시설 문제 관련

□ 제2차 본회의 - 2000. 6. 22(목)

○ 199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원안가결)
○ 1999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원안가결)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원안가결)
○ 농촌위기 타개를 위한 건의안(원안가결)
○ 5분 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신대식 의원)
·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의 문제점과 보건진료소, 농촌지도문제 관련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0. 6. 16(금) 14:00~14:08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시간 11분(35.5분)	
1차(6. 16)	14:09~14:38	29분
2차(6. 22)	11:00~11:42	4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2.6%)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27명	25	25	2	2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00. 6.16	1	1. 199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제1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회기 : 2000. 7. 6~7. 8(3일간)
기획행정위원회	'00. 6.19	1	1. 199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1999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00. 6.19	1	1.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3.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산업경제위원회	'00. 6.19	1	1.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1. 농촌위기 타개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관광건설위원회	'00. 6.19	1	1. 199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위	'00. 6.20	1	1.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1999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1999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0	19	19			1	
의회운영위원회	2	2	2				
기획행정위원회	4	4	4				
교육사회위원회	4	4	4				
산업경제위원회	4	3	3			1	
관광건설위원회	2	2	2				
예산결산특위	4	4	4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74회 정례회 기간을 2000. 6. 16일부터 6. 22일까지 7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 리 내 용					비고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일반안건	1	1	1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일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명칭변경

·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을 충북과학대학으로

·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을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로

· 음성시설채소시험장을 음성시설농업시험장으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 주요골자 〕

○ 교환대상 도유지 : 2필지 5,680㎡(진천)

○ 교환대상 진천군유지 : 2필지 4,618㎡(진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2					
조례안	1	1	1					
승인안	1	1	1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조례 제명변경

·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 →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 조례 조문정비

·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 → 충북과학대학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조례 제명변경

·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 →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

○ 일부 내용변경

· 농지개량계 → 수리계

·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노역제공 내용 삭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 례 안	1	1	1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

〔 주요골자 〕

○ 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하향조정

· 충청북도건축위원회 구성기준 관련조문 정비 : 행정부지사 → 문화진흥국장

○ 기구개편 관련 변경된 직제명칭 정비

· 충청북도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간사와 서기기준 관련조문 정비

- 간 사 : 주택과장 → 건축문화과장

- 서 기 : 주택과 소속 → 건축문화과 소속

○ 건축상 관련조항 신설

·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상 시상

· 건축상은 금상, 은상, 동상, 입선으로 구분하며 상장과 부상수여

· 건축상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조례안	1	1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

〔 주요내용 〕

○ 결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1,165,765,606**	**1,210,915,752**	**966,869,693**	**244,046,059**
일 반 회 계	**894,231,249**	**934,174,307**	**832,369,506**	**101,804,801**
특 별 회 계	**271,534,357**	**276,741,445**	**134,500,187**	**142,241,258**
공기업특별회계	**219,406,161**	**226,596,766**	**84,801,867**	**141,794,899**
공 영 개 발 사 업	45,258,711	45,531,249	22,032,579	23,498,670
지 역 개 발 기 금	174,147,450	181,065,517	62,769,288	118,296,229
기 타 특 별 회 계	**52,128,196**	**50,144,679**	**49,698,320**	**446,359**
옥천전문대학운영	2,679,511	2,675,919	2,492,577	183,342
의 료 보 호 기 금	37,235,495	37,243,366	37,022,511	220,855
농어촌소득개발기금	8,039,645	8,073,041	8,033,000	40,041
대 청 호 대 책	2,150,232	2,152,353	2,150,232	2,121
중평공업단지조성	2,023,313	0	0	0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합 계	**1,165,765,606**	**1,296,456,774**	**1,271,342,982**	**12,527,630**	**25,113,792**
일 반 회 계	**894,231,249**	**1,015,872,351**	**991,145,332**	**1,244,555**	**24,727,019**
특 별 회 계	**271,534,357**	**280,584,423**	**280,197,650**	**11,283,075**	**386,773**
공기업특별회계	219,406,161	216,816,720	216,429,947	11,281,102	386,773
기타특별회계	52,128,196	50,144,679	50,144,679	3,408	0

○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165,765,606**	**1,009,760,551**	**966,869,693**	**48,028,243**	**150,867,670**
일 반 회 계	**894,231,249**	**875,260,364**	**832,369,506**	**48,028,243**	**13,833,500**
특 별 회 계	**271,534,357**	**134,500,187**	**134,500,187**	**0**	**137,034,170**
공기업특별회계	219,406,161	84,801,867	84,801,867	0	134,604,294
기타특별회계	52,128,196	49,698,320	49,698,320	0	2,429,87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1999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승인

〔 주요내용 〕

○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단위 : 천원)

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지출사유
세항	세세항	사업명				
합 계 (9건)			2,052,968	2,032,737	5,191	
소방행정	인건비	소방직공무원명예퇴직수당	105,960	105,960	0	'99상반기 신청 소방공무원 3명
재해대책	기 타	미보상사유토지손실보상	57,259	57,259	0	지방하천 무심천에 편입된 미보상사유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공기업운영	자체사업	향토지적재산조사발굴	50,000	47,500	2,500	지역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지닌 향토지적재산의 조사발굴로 권리침해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재해대책	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	218,173	218,173	0	'98 수해복구 추가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도로건설	기 타	도로편입토지부당이득반환	37,991	34,303	3,688	도로 편입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하오심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도로건설	기 타	도로편입토지부당이득반환	13,505	13,502	3	도로 편입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하오심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재해대책	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	1,526,562	1,526,562	0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도비부담금
도로관리사업소운영	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	31,635	17,595	0	(이월액 14,040천원)
도로관리사업소충주지소운영	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	11,883	11,883	0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도비부담금

○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 없음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

〔 주요내용 〕

○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징수액
합 계	**908,767,015,000**	**907,379,402,270**	**907,310,167,210**	**22,051,730**	**47,183,3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3,072,147,000	463,174,146,000	463,174,146,000	0	0
지방교육양여금	147,795,426,000	147,729,164,000	147,729,164,000	0	0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0,292,000,000	30,292,000,000	30,292,000,000	0	0
국고지원금	9,498,045,000	9,266,599,660	9,266,599,660	0	0
법정전입금	4,458,187,000	4,458,186,000	4,458,186,000	0	0
비법정전입금	740,892,000	706,917,000	706,917,000	0	0
지원금	18,470,000	18,470,000	18,470,000	0	0
재산수입	6,291,348,000	6,592,174,050	6,580,994,970	0	11,179,080
입학금 및 수수료수입	40,123,411,000	40,391,490,540	40,370,057,370	21,433,170	0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473,028,000	472,912,860	472,912,860	0	0
잡수입	8,637,945,000	9,911,413,170	9,874,790,360	618,560	36,004,250
이월금	122,377,933,000	122,377,928,990	122,377,928,900	0	0
지방교육채	74,978,001,000	74,978,000,000	74,978,000,000	0	0
주민(기관등)부담금	10,001,000	10,000,000	10,000,000	0	0
기타지원금	1,000	0	0	0	0

○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843,305,773,000**	**799,583,988,860**	**43,212,316,640**	**65,970,709,500**
교육위원회비	301,212,000	264,946,600	0	36,265,400
급여관리	530,203,754,000	517,244,634,170	0	12,959,119,830
교육행정비	24,681,524,000	21,459,296,250	673,680,000	2,548,547,750
교육사업비	9,035,070,000	7,700,609,280	239,200,000	1,095,260,720
학교비	86,307,326,000	81,263,915,930	600,000,000	4,443,410,070
사학지원비	60,836,573,000	47,745,805,440	7,950,063,320	5,140,704,240
시설비	170,580,860,000	123,311,475,120	33,749,373,320	13,520,011,560
제지출경비	1,577,440,000	593,306,070	0	984,133,930
예비비	25,243,256,000	0	0	25,243,256,000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

(단위 : 천원)

건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지출사유	
손해배상 합의금	312,287	312,286	1	○기계공고 김선우학생 1심판결	145,460
				○제천중 민간인 사망사고	39,450
				○기계공고 김선우학생 2심확정	121,385
				○기계공고 김선우학생 치료비 공단부담금	5,991

◎ 안건처리결과

안건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	4	4					
결산안	2	2	2					
승인안	2	2	2					

第 26 節 第175回 臨時會

1. 開會背景

제175회 임시회는 장준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6. 23 소집공고 하였고 제6대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위하여 7월 6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2. 會 期 : 2000. 7. 6 ~ 7. 8 (3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6대의회 후반기 원구성
- 의 장 : 김진호 의원 당선
- 부의장 : 최영락 의원, 신대식 의원 당선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 상임위원장 선거

○ 후반기 의석 결정

※ 회의록 서명의원 : 신택수의원, 신대식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 례 안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기 타
4건	-	-	-	-	4

3) 의결내용

□ **제1차 본회의 - 2000. 7. 6(목)**

○ 제1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회 기 : 2000. 7. 6~7. 8(3일간)

○ 의장·부의장 선거
- 의 장 : 김진호 의원
- 부의장 : 최영락 의원, 신대식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0. 7. 8(토)**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상임위원장 선거
○ 의회운영위원 선임
○ 의석 결정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0. 7. 6(목) 13:58~14:09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4시간 45분(2시간 23분)	
1차(7. 6)	14:09~16:36	2시간 27분
2차(7. 8)	10:03~12:21	2시간 18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100%)

대상의원	출 석 (차수별)		불 참	
	1	2	1	2
27명	27	27	-	-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기획행정 위 원 회	'00. 7. 8	1	1. 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 이근성 의원을 간사로 선임
교육사회 위 원 회	'00. 7. 8	1	1. 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 황태모 의원을 간사로 선임 - 김형태 의원 : 의회운영위원 선임
산업경제 위 원 회	'00. 7. 8	1	1. 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 김주백 의원을 간사로 선임
관광건설 위 원 회	'00. 7. 8	1	1. 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 심홍섭 의원을 간사로 선임

2) 안건처리상황

안 건 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	4	4				
기획행정 위 원 회	1	1	1				
교육사회 위 원 회	1	1	1				
산업경제 위 원 회	1	1	1				
관광건설 위 원 회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1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골자 〕

○ 제175회 임시회 기간을 2000. 7. 6일부터 7. 8일까지 7일간으로 함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안건처리결과

안 건 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일반안건	1	1	1					

第３章　行政事務監査

第１節　行政事務監査 概要

第２節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第３節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第 1 節 行政事務監査 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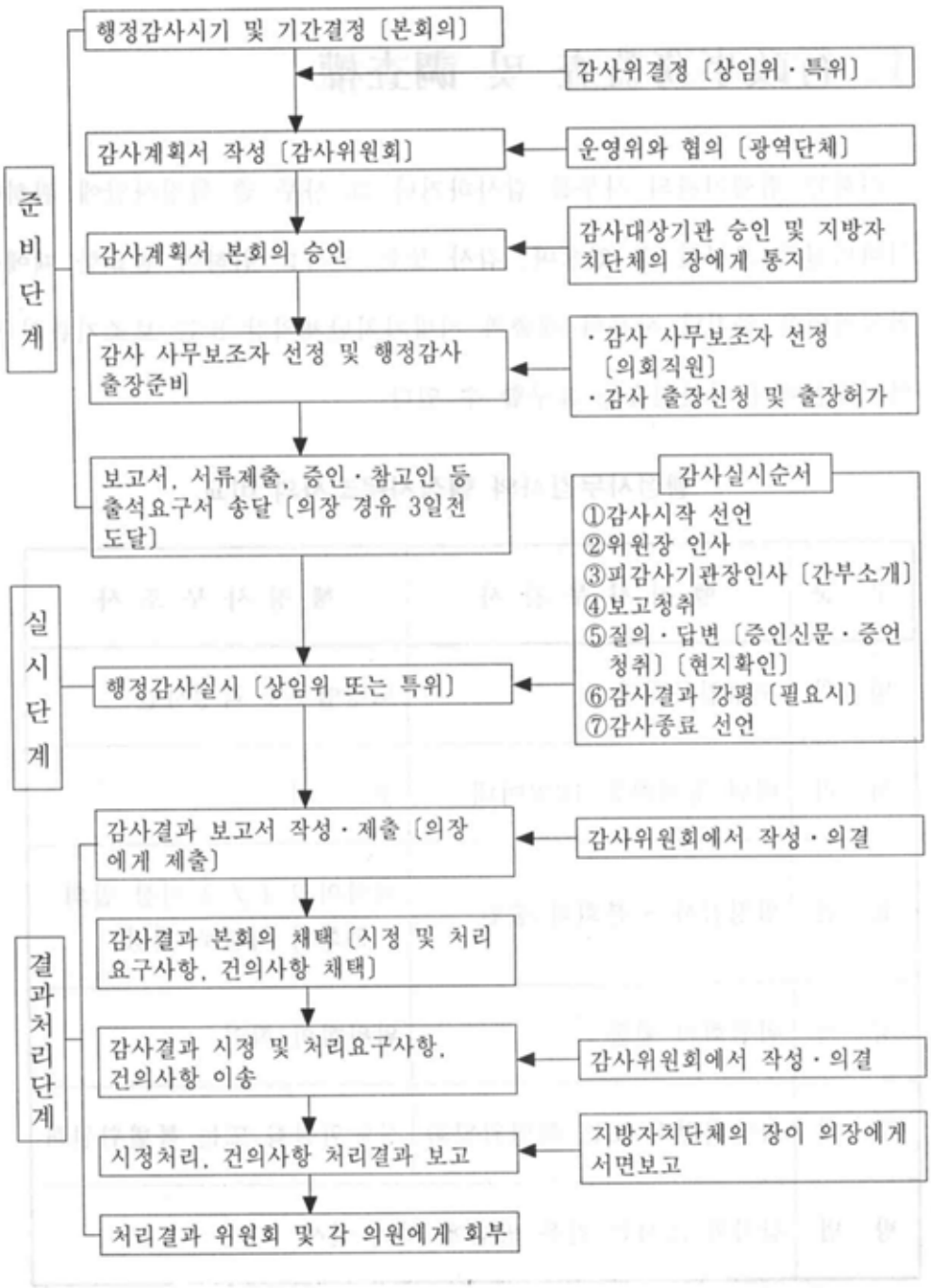
1.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의회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비교

구 분	행 정 사 무 감 사	행 정 사 무 조 사
범 위	도정업무전반	도정업무중 특정사안
시 기	매년 정례회중 10일이내	수 시
요 건	법정감사 - 본회의 승인	재적의원 1 / 3 이상 발의 - 본회의 의결로 결정
성 격	위원회의 활동	위원회의 회의
주 체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방 법	감사와 조사는 같은 방법에 의해 실시	

2. 監査過程 및 節次


준비단계
행정감사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감사위결정〔상임위·특위〕
감사계획서 작성〔감사위원회〕
운영위와 협의〔광역단체〕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 승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감사 사무보조자 선정 및 행정감사 출장준비
·감사 사무보조자 선정〔의회직원〕
·감사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보고서,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송달〔의장 경유 3일전 도달〕
감사실시순서
①감사시작 선언
②위원장 인사
③피감사기관장인사〔간부소개〕
④보고청취
⑤질의·답변〔증인신문·증언청취〕〔현지확인〕
⑥감사결과 강평〔필요시〕
⑦감사종료 선언
실시단계
행정감사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결과처리단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제출〔의장에게 제출〕
감사위원회에서 작성·의결
감사결과 본회의 채택〔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채택〕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이송
감사위원회에서 작성·의결
시정처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에게 서면보고
처리결과 위원회 및 각 의원에게 회부

第 2 節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1. 監査의 目的

199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자치입법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그리고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도출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심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監査期間

○ 1998. 11. 21 ~ 11. 30 (10일간)

※ 각 위원회와 같음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처

○ 기획행정위원회 :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 교육사회위원회 : 여성정책관실 (여성회관 포함),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 산업경제위원회 : 경제통상국, 농정국 (사업소 포함), 농업기술원 (사업소 포함)

○ 관광건설위원회 :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포함), 개발사업소

4. 監査班 編成

○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반장) 장준호

(감사반원) 이근성, 한현태, 오장세, 박노철, 유동찬, 김소정, 신택수

(전문위원) 김영만

○ 기획행정위원회

(감사반장) 김춘식

(감사반원)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전문위원) 김동웅

○ 교육사회위원회

(감사반장) 윤병태

(감사반원) 박노철, 김진호, 박학래, 이근성

(전문위원) 김문기

○ 산업경제위원회

(감사반장) 최영락

(감사반원)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전문위원) 정노환

○ 관광건설위원회

(감사반장) 정태정

(감사반원) 김소정, 신택수, 권영관, 구본선, 이광종, 김대호

(전문위원) 신익수

5. 監査日程 및 場所

위원회별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의회운영 위 원 회	11.28(토)	·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회 의 실
기획행정 위 원 회	11.21(토) 10:30	· 감사관실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11.23(월) 10:30	·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11.24(화) 10:30 ~ 11.25(수) 12:00	· 자치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11.25(수) 13:30	· 공보관실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11.25(수) 15:10	· 소방본부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11.26(목) 10:30	·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회의실
	11.27(금) 10:30	· 충주의료원	충주의료원회의실
	11.28(토) 10:30	·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회의실
	11.30(월)	· 감사사항 종합검토 및 보고서 작성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교육사회 위 원 회	11.21(토)	· 여성정책관실	교육사회위원회 회 의 실
	11.23(월)	· 복지환경국	교육사회위원회 회 의 실
	11.24(화)	· 옥천전문대학	옥천전문대학 회 의 실
	11.25(수)	·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 회 의 실
	11.25(수)	· 여성회관	여성회관회의실

위원회별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교육사회 위 원 회	11.26(목)	·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사회위원회 회 의 실
	11.27(금)	· 현지확인 및 종합검토	교육사회위원회 회 의 실
	11.28(토)	· 현지확인 및 종합검토	교육사회위원회 회 의 실
	11.30(월)	· 종합정리	교육사회위원회 회 의 실
산업경제 위 원 회	11.21(토)	· 경제통상국 · 농 정 국 · 농업기술원	산업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23(월) ~ 11.25(수)	· 경제통상국 · 농 정 국 · 농업기술원	현 지 확 인
	11.26(목)	· 경제통상국	산업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27(금)	· 농 정 국	산업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28(토)	· 농업기술원	산업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30(월)	· 감사사항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 작성	산업경제위원회 회 의 실
관광건설 위 원 회	11.21(토) 11:00	· 개발사업소	관광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23(월) 10:30	· 문화진흥국	관광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24(화) 10:30	· 건설교통국	관광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25(수) ~ 11.26(목)	· 문화진흥국 · 건설교통국 · 개발사업소	현 지 확 인
	11.27(금) 11:00	· 건설교통국 · 개발사업소	관광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 28 (토) 11:00	· 문화진흥국	관광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 30 (월) 11:00	·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결과 의견교환	관광건설위원회 회 의 실

6. 委員會別 指摘事項

구 분 / 위원회별	계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건 의 사 항
계	205건	115건	90건
의회운영위원회	10	5	5
기획행정위원회	71	46	25
교육사회위원회	29	28	1
산업경제위원회	48	28	20
관광건설위원회	47	8	39

7. 主要 指摘內容

1) 의회운영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의회사무처 〉

○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 의정홍보는 가급적 전의원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토록 하고, 왜곡보도가 없도록 홍보대책 강구

○ 의회수첩 제작시 의원들과 사전협의를 하고 신속히 제작 배부

○ 도정운영에 따른 중요사안 발생시 도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것을 정례화 하도록 유도

○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신속 정확하게 제공

□ 건의사항

〈 의회사무처 〉

○ 적극적인 홍보방안 및 예산확보에 노력

○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가능한 기술직 전문위원을 임용

○ 사법부나 법무, 검찰, 변협, 법무사협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과 통계자료 등을 의회자료실에 비치

○ 본회의시 방문한 도민들과 의장·도지사와의 대화창구로서 간담회 운영방안 검토 및 기념품, 홍보책자, 안내책자 등 제공

2) 기획행정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감사관실 〉

○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들의 요구자료는 국감자료 제출과 같이 즉시 제출되도록 요망

○ '98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 있어서 감사관실은 대형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 전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 '98예산 확보후 미발주공사 204건에 있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할 것

○ 각종 감사시 지적위주 감사보다는 제도개선 및 수범공무원 등을 발굴하여 공무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농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이 매우 잦은데 앞으로 농조감사 시 이 분야에 대하여 수의계약 등 공사집행과정에 대하여 중점감사 실시

〈 기획조정실 〉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정확한 자료가 작성되도록 조치하고 관계관 답변에 있어서도 정확·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

○ 21세기위원회 중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 도 총괄부서의 기능이 매우 미약한데 이에 대한 종합 검토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운영상황 파악관리에 철저

○ 각종기금을 고율상품에 예치하는 등 기금관리 및 운영 철저

○ 전자결재제도의 일환으로 간부공무원들의 책상에 컴퓨터를 설치하였는데 다룰줄을 몰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컴퓨터를 전수 파악하여 실무사용부서에 지급토록 할 것

○ 주무부서에 TF팀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팀의 경우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TF팀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 바람

○ 실업대책반 조직운영에 있어 프로그램 개발 소홀로 실업대책비가 현재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조직을 보강하여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도 행정심판 처리결과를 보면 인용이 21%나 되는데 앞으로 인용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사전업무교육 철저

○ 정액보조단체 지원에 있어서 사업계획 및 내용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형평성과 타당성있게 꼭 필요한 단체에 합리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여주기 바람

○ 도의 시군공무원 전입 및 부서간 이동등 조직관리부서와 인사부서간 유기적인 정·현원 관리 및 인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 도의 행정조직 개편후 부서간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 중복해서 추진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새충북」과 「도정소식지」 발간, 도정모니터 운영과 민원모니터 운영 등 일원화되어야 할 업무가 있으므로 앞으로 도의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통·폐합하여 한 부서에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자치행정국 〉

○ 도의 행정조직 개편 후 정원 외 현원이 남아 있는데 시·군공무원의 전입을 현원이 해소된 후에 전입시키는 방안으로 추진

○ 비위가 있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을 도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타 위원으로 교체하고 외부영향 배제 등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증평출장소장의 경우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관사가 없는데 이에 대해 도에서 관사마련 대책 검토

○ 도유재산 중 일부가 취득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용실태를 일제 파악하여 활용대책 강구

○ 충북학사 운영에 있어서 58.8%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정확한 운영실태를 진단하여 학사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

○ 일부 공직자 가운데 복무기강이 해이해져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기 바람

○ 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차원에서 노력해 주기 바람

○ 중앙부처 공무원이 도에 파견되어 있는데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을 시정하고 과장급중 장기간 직무대리 근무자가 있는데 이에 대한 모순도 시정조치

○ 공유재산의 매각을 지양하고 임대 또는 직영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도의 재정자립 향상에 만전

○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제대로 법정휴가 일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국장의 책임하에 휴가조치하기 바람

○ 청내 비상연락망의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일제정비 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 공보관실 〉

○ 현장홍보 추진에 있어 인근 청주·청원에 국한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하게 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

○ 「새충북」과「도정소식지」의 일원화방안 강구 및 「새충북」지가 홍보지로서의 제역할을 하도록 노력

○ 언론보도 내용의 신속한 분석 및 대응에 있어 보도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

〈 소방본부 〉

○ 소방파출소의 신·증축은 소방서와의 거리 등을 종합 판단하여 추진

○ 진천의 경우 굴절사다리차는 차고가 없어 노상에 주차시켜 놓고 있으므로 주차시설 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율량동 소방훈련장은 관리소홀로 훈련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내 훈련장 정비

○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주차선은 홍보가 미흡하여 주민차량이 주차하고 있으므로 각종 반상회 또는 교육시 주지시켜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 소방의날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 시정조치

〈 증평출장소 〉

○ 증평출장소의 경우 인구는 안 늘고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존폐의 기로에 있으므로 소장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모범 및 선도역할을 하여 반드시 증평이 존치가 되도록 노력

○ 증평출장소가 외부환경에 의해 인위적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이 추진되도록 할 것

○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증평출장소 폐지가 행자부의 방침인데 직무대리 발령을 낸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

○ 도의 실업대책반 인원을 10명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증평출장소 공무원 중 5명이 대책반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도와 잘 협의하여 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원이 차출되도록 하기 바람

〈 충주의료원 〉

○ 체납미수금이 8억6,700여만원이 되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미수금 징수에 만전

○ 40여명이 노조에 미가입하였는데 이들의 권리주장 또는 의견이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의사가 반영되도록 할 것

○ 매년 적자를 보고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영혁신팀은 미수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정상화되도록 할 것

○ 각종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일부 의약품의 경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의약품 구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청주의료원 〉

○ 의약품 구입시 의료원의 의약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의약품이 구입되는 방안 모색

○ 공기업으로서 수익에도 목적이 있지만 도민에게 최대 양질의 진료 및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하기 바람

○ 1일 환자가 600인원 약사정원 3명중 2명만 근무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약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보강 등 검토

□ 건의사항

〈 감사관실 〉

○ '98년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리건수가 57건중 12건이 인용되어 민원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행정심판 인용건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충주의료원에 있어서 언론공포 또는 타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 감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후부터는 도에서 먼저 감사를 실시하여 사태가 수습되도록 감사관들의 사정활동 강화

○ 각종 감사결과 처분지시는 객관성 있고 일관성 있는 처분이 되도록 양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연구검토하기 바람

○ 전문분야 감사요원이 부족하여 각종 감사 시 타부서의 인원을 차출하여 감사하고 있는데 전문분야 감사요원 확충에 노력

〈 기획조정실 〉

○ 충북 CHANGE21이 계획 성안중에 있으므로 21세기위원회에 상정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여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요망

○ 각종위원회를 일제 정비하여 도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충청북도명예연구소가 24개소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연구소의 활성화 또는 폐지 등을 종합검토 요망

○ 충주의료원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민영화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 요망

○ 지역현안사업에 있어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예산이 충북도에 반영되도록 노력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투융자사업 심사에 있어서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대상을 신규사업에 국한되도록 하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계획 또는 사업비가 변경되어 심사요청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도지사의 공약사업과 시장·군수의 추진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예산의 이중투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도와 시·군이 충분한 협조를 거쳐 하나의 단일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

〈 자치행정국 〉

○ 청렴의 의무,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분상 조치를 받은 일부 비위 공무원을 전문분야 최고의 자리에 인사발령 조치하였는데 이는 모든 공무원들의 인사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도정의 책임자는 향후 인사발령 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인사에 공정성과 각종 처분의 형평성을 기하여 타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분위기 쇄신 및 획기적인 사기앙양대책 강구

○ 증평출장소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지사는 출장소 존치에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공무원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강력하고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사고전환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 보건소에 약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일부 보건소밖에 없는데 약사의 처우문제를 개선해서라도 진료소에 약사가 반드시 배치되어 정상적인 진료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입찰자 수수료 징수방안에 대하여 검토

○ 각종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의 공사비에 부대공사비까지 포함하여 전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겠으며 조경공사 등 별도의 발주공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도 본청에 정원외 현원의 잉여인력을 활용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 및 체납액 결손처분도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과감히 결손처분 되도록 검토

〈 공보관실 〉

○ 도정 모니터제 운영에 있어 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생생한 의견이 모니터요원을 통해 적극 수렴되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소방본부 〉

○ 신속한 초기화재 진압태세를 확립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방장비 확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장비구입에 노력하기 바람

○ 영동 황간파출소 신축에 있어서 부지선정 및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으므로 현지방문을 실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파출소 신축장소의 이전등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추진

○ 각종 화재진압시 부상자에 대한 진료비등 의료수가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증평출장소 〉

○ 공무원 200명중 67명이 외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외지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증평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방안 강구

〈 충주의료원 〉

○ 전화 진료예약제를 실시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므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혁신팀이 도에서 파견되어 있는데 노사의 원활한 합의 등 경영전반에 걸쳐 특단의 조치 강구

〈 청주의료원 〉

○ IMF 상황에서 청주의료원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합의 등 제반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를 기할 것

3) 교육사회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여성정책관실 〉

○ 예산을 지원하는 14개 여성단체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지도감독과 투명성 있는 예산지원

○ 상담도우미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확대와 학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상담도우미, 1366,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종합상담센터」로 통합운영

○ 이혼율 급증에 따라 파생되는 자녀문제와 사회병리문제 해결 및 가정폭력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

○ 여성 불평등 자치조례 375건 개선시행

○ 푸드뱅크1377 지원비 확대, 병역특례자나 공공근로자 활용하고 외국이나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활성화 추진

〈 복지환경국 〉

○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의 과잉에 따른 제반 문제점 해결과 보육교사 수급조절대책 강구

○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선정기준, 관리방법, 소득 및 재산조사 소홀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 및 잘못선정 지원에 따른 지원금 회수방안 강구

○ 사회복지관련 기금중 적립액 미미, 기금운영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

○ 운영실태가 미비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민간위탁 추진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 강구와 회관을 청주시 흥덕구 노인회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시행

○ 식품진흥기금을 교육·연구사업에도 투자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며, 도금고로 이관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시행

○ 옥천 장애인자립작업장이 운영비 부족으로 건물만 있고 운영이 전무한 상태인데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시행

○ 수질오염 및 폐수배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체계 개선시행

○ 음식업협회의 일반음식점 자율지도 개선방안 강구와 자율지도시 시민단체나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 강구

○ 수질검사의 시·군별, 정수장별 기준항목 확대 등 개선시행

○ 보건소 순회진료 확대실시와 약품비 확보 철저

○ 상수도 부채가 매년 누적되고 있는데, 사용량에 따라 누진률을 적용하는 등 개선방안 강구
○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부담금 상향지원과 인구수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창변경찰제와 노인교통봉사대를 통합하여 지역노인봉사대로 운영하는데 따른 선발기준, 운영방법, 추진체계의 조례화 등 제도적 정비대책 시행

〈 옥천전문대학 〉

○ 학생정원 증원에 따른 교수, 강의실, 실험실습장비 확보 철저
○ 우수학생 유치방안과 장학제도 활성화 및 재정적 자생력 확보방안 강구

〈 지방공무원교육원 〉

○ 정확한 교육수요 예측과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철저 및 현장실무 활용방안 강구
○ 지역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교육체계 수립과 유능한 외래강사 활용방안 강구
○ 전산교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현실화하고 교육생 직급제한 폐지, 교육기간 확대 등 전산교육 강화
○ 도민교육의 경우 시·군에 출장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귀농인 영농교육을 실습위주로 시행

〈 보건환경연구원 〉

○ 시험검사에 따른 시재료와 장비구입을 단가입찰 방식으로 하는 등 약품선정 과정과 장비구입방법 개선시행

〈 여성회관 〉

○ 방치되어 있는 구 여성회관 건물의 활용대책 강구
○ 시·군여성회관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여성참여 극대화방안 및 자격증 취득과 취업알선 확대 실시
○ 여성실직자 및 도청여직원에 대한 경제·예절교육 확대 실시

□ 건의사항

〈 보건환경연구원 〉

○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복지자원 실태조사, 목욕탕영업시간 자율화, 유흥주점 청소년 출입금지 적색경고 등 제도의 내실 있는 추진

4) 산업경제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경제통상국 〉

○ 도금고은행 부동산담보비율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 지원강화
○ 각종 기금을 도금고로 일원화하려면(중앙지시) 도금고계약시 최고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상품개발 조항 신설
○ 중소기업지원자금 전산화 실시
○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정 마련하고 인센티브제도 도입
○ 사이판근로자 취업 제고
○ 이차보전자금 대출액 상향 및 대출기간 연장 조정
○ 고용촉진훈련은 취업실적이 많은 기관에 인센티브제도 도입
○ 공공근로사업으로 배정된 도비의 조속 집행
○ 한국노총과 소속근로자의 연수지역 조정
○ 고용촉진훈련기관 운영실태 분석대책 강구
○ 중소기업의 운영실태 분석지원 대책 강구

〈 농정국 〉

○ 신규조성 및 기존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원대책 분석과 충북체인지21 반영 검토
○ 복구가 전제되지 않은 토석채취장은 허가가 연장되지 않도록 조치
○ 산림법시행령 79조를 잘못 적용한 곳은 시정 조치
○ 임야내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 기준 마련
○ 소비자가 알기 쉬운 축산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 선택이 용이토록 시정
○ 개인명의로 된 농기계보관창고는 공동명의로 시정
○ 농기계보관창고에 소방시설 완비
○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행사 개선
○ 첨단원예기술개발센터 지원근거 마련 및 과제선택시 도에서 참여·업무 주관부서를 농정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검토
○ 농산물저온저장고, 집하장 등에 대한 화재, 도난 등 농민보호 대책 강구
○ 임도시설비중 자부담 10% 부담시킬 것

〈 농업기술원 〉

○ 4-H조직은 영농이 필요한 농촌지도자로써 소수정예로 양성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 농민후계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 몇 번씩 탈락한 농민을 조사하여 사유분석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여성농업인이 포함되도록 조치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 의회승인, 보고조항 삽입 요망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방안 강구

□ 건의사항

〈 경제통상국 〉

○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방안 강구

○ 광산공해방지사업 조기 집행

○ 국가,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소기업업무 일원화

○ 고용촉진훈련의 자격취득 및 취업율 제고

○ 신용보증조합 조기설립 추진

○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탈락되지 않도록 조치

○ 도금고 은행, 중소기업 적극 대출

〈 농정국 〉

○ 단양 어상천 대전지구의 배수개선을 조속히 실시하여 경작이 가능토록 조치

○ 민원이 발생한 곳은 허가기간 만료시 재허가 제한

○ 농산물물류센터에 도내 생산농산물 판매비율 제고

○ RPC 과잉투자 되지 않도록 조치

○ 충북인삼의 상표개발 및 홍보 촉구

○ 정주권개발면과 오지개발면 지원 불균형 해소

○ 귀농인 정착지원강화 방안 강구

○ 산림분야예산집행 시 수의계약 지양하고 공개경쟁 입찰 추진

〈 농업기술원 〉

○ 농촌여성인력개발 및 지원책 강구

○ 농민이 원하는 농산물 보급종 수급이 원활하도록 물량 확보

○ 5개 시험장 지역풍토에 맞는 작물연구 병행

○ 농업기술센터를 우리말로 개칭하여 사용토록 촉구

○ 시범사업은 중앙과 연계하여 농민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 선정 육성

5) 관광건설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문화진흥국 〉

○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에 있어 전례답습에서 탈피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

○ 실업자 고용 문화유적정화사업 추진 등 각종사업 추진시 정확한 지침의 시달로 사업효과 거양

○ 삼년산성 복원과 관련 자연석이 아닌 규격돌로 복원이 이루어졌는바 문화유적의 원형보존 원칙에 위배됨

〈 건설교통국 〉

○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에 있어 전례답습에서 탈피,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

○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 시·군 현지답사시 주무과장이 업무미숙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미흡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도로공사 시 지장물을 전부 이전하고 공사에 착수

○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부적정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의 해결방안 강구

○ 영농보상비 지급과 관련 관계규정에 위배되게 집행(3년 → 1년)된 부분에 대한 보상방안 강구

□ 건의사항

〈 문화진흥국 〉

○ 도비 보조에 있어 시·군간 형평성 유지

○ 문화재 복구에 있어 시일이 걸리더라도 전문가, 고증 등을 통해 원형 보존

○ 문화재 복원 및 보수공사시 비전문가의 참여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철저

○ 문화재 보수에 있어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시·군의 사업계획서 철저 검토

○ 향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을 할 경우 관련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例) 신채호사당 정비, 사당입구 도로정비

○ 관광과 문화체육행사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방안 강구

○ 금강산관광 허용으로 인한 우리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관광농원 조성사업과 관련 향후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 요망

○ 청소년수련원 운영과 관련 시설은 훌륭한데 이용하는 청소년이 너무 적음, 재정적인 지원 확충방안 마련

○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강구

○ 충북체육의 활성화 방안 강구

○ 초등학교 엘리트체육과 관련 예산 지원방안 강구

○ 문화재 보수와 관련 해마다 보수업체가 다른데 문화재의 특성상 전통성이 요구되는 바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 (진천 농다리 등)

○ 국가보물인 단양 향산리석탑 보존을 위한 국비지원 요구 등 대책 마련

○ 충주 미륵사지내불상 좌측 석축부분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붕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대비책 강구 및 조속한 복구

○ 단양 행·페러그라이더장까지 오르는 도로가 협소하고 미포장 상태인 바 중간중간에 교행할 수 있는 도로시설 등 추락 예방을 위한 시설 강구

○ 괴산 화양동소재 채운암 보수와 관련 서까래와 지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단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통사찰로서의 이미지 훼손 우려

○ 음성 청소년수련원 시설은 완공되었으나 내부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설 활용을 위한 예산지원방안 강구
○ 괴산 홍명희 선생 생가 복원방안 강구
○ 음성군 생극면 하곡리 관광지구 개발계획의 조기추진을 위한 방안 강구
○ 옥천 청소년수련관 건물의 균열이 심한 바 안전진단 등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

〈 건설교통국 〉

○ 충주시 앙성면 돈산온천 개발계획 승인신청 지연과 관련 지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
○ 완충녹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따른 도의 조치방안
○ 산업단지 개발의 추진이 미진한 상태인 바 정상화 방안 마련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 구성 조정
○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시기 조정
○ 운수연수원의 구조조정 방안
○ 등·하교시간에 맞춰 시내버스의 연장운행이나 시간조정 방안 강구
○ 대중교통버스회사의 파업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
○ 공영버스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 강구
○ 건축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의 감독 철저
○ 수해를 입은 주택의 조기 복구로 이재민 생활불편 최소
○ 심천-이월간 2차선 확장 포장공사와 관련 지도 감독 철저
○ 일부 공원지역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이의 해결방안 (정식품 뒤의 공원지역)

〈 개발사업소 〉

○ 공영개발사업의 목적은 이윤보다는 공공성, 공익성, 사회성이니 만큼 과다한 이윤 지양
○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분양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 방안 마련
○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련 완벽한 시공을 위한 감독 철저
○ 택지개발이후 미분양 및 미건축된 토지 처리대책

第 3 節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1. 監査의 目的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자치입법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그리고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도출 시정요구함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심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監査期間

○ 1999. 11. 22 ~ 12. 1 (10일간)

※ 각 위원회와 같음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처

○ 기획행정위원회 :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청주·충주의료원

○ 교육사회위원회 : 여성정책관실 (여성회관 포함),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북도교육청(특정사안)

○ 산업경제위원회 : 경제통상국, 농정국 (사업소 포함), 농업기술원 (사업소 포함)

○ 관광건설위원회 :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개발사업소 포함)

4. 監査班 編成

○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반장) 장준호

(감사반원) 이근성, 한현태, 오장세, 박노철, 유동찬, 김소정, 신택수

(전문위원) 김영만

○ 기획행정위원회

(감사반장) 김춘식

(감사반원)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전문위원) 김종만

○ 교육사회위원회

(감사반장) 윤병태

(감사반원) 박노철, 김진호, 박학래, 이근성, 이길하

(전문위원) 김동윤

○ 산업경제위원회

(감사반장) 최영락

(감사반원)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전문위원) 정노환

○ 관광건설위원회

(감사반장) 정태정

(감사반원) 김소정, 신택수, 권영관, 구본선, 이광종, 김대호

(전문위원) 신익수

5. 監査日程 및 場所

위원회별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의회운영 위 원 회	12.1(수)	·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회 의 실
기획행정 위 원 회	11.22(월) 10:30	· 총 무 과 · 감사관실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11.23(화) 10:30	·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11.24(수) 10:30	· 자치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11.25(목) 10:30	· 공보관실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 소방본부	소방본부회의실
	11.26(금) 10:30	·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회의실
	11.27(토) 10:30	·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회의실
	11.29(월) 10:30	· 충주의료원	충주의료원회의실
		· 자치행정국 · 증평출장소 · 청주의료원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11.30(화) 10:30	· 감사결과 특이사항 간담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12.1(수) 10:30	· 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보고서 작성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교육사회 위 원 회	11.22(월)	· 복지환경국	교육사회위원회 회 의 실
	11.23(화)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사회위원회 회 의 실
	11.24(수)	· 복지환경국 소관 현장검증	충주호댐 부유쓰레기
	11.25(목)	· 충청북도교육청소관 현장검증	진천중, 진천상산초, 괴산동인초, 제월분교
	11.26(금)	·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회의실
		· 복지환경국	교사위회의실
	11.27(토)	· 여성정책관실 ·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사회위원회 회 의 실

위원회별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교육사회 위 원 회	11.29(월)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사회위원회 회 의 실
	11.30(화)	· 옥천전문대학	옥천전문대학회의실
	12.1(수)	· 결과정리 간담회	교육사회위원회 회 의 실
산업경제 위 원 회	11.22(월) ~ 11.23(화)	· 경제통상국	산업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24(수) ~ 11.25(목)	· 농 정 국	산업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26(금)	· 농업기술원	산업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27(토)	· 농 정 국	현 지 확 인
	11.29(월)	· 경제통상국 · 농 정 국	현 지 확 인
	11.30(화)	· 경제통상국 · 농 정 국 · 농업기술원	산업경제위원회 회 의 실
	12.1(수)	· 감사결과종합보고서 작성	산업경제위원회 회 의 실
관광건설 위 원 회	11.22(월)	· 문화진흥국	관광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23(화)	· 건설교통국	관광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24(수) ~ 11.27(토)	· 문화진흥국 · 건설교통국 (사업소 포함)	현 지 확 인
	11.29(월)	· 문화진흥국	관광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30(화)	· 건설교통국	관광건설위원회 회 의 실
	12.1(수)	· 감사의견 교환	관광건설위원회 회 의 실

6. 委員會別 指摘事項

구 분 / 위원회별	계	감 사 결 과	
		시정·처리요구	건 의 사 항
계	165건	113건	52건
의회운영위원회	10	5	5
기획행정위원회	43	43	-
교육사회위원회	44	37	7
산업경제위원회	35	15	20
관광건설위원회	33	13	20

7. 主要 指摘內容

1) 의회운영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의회사무처 〉

○ 6대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로 개최한 대토론회, 시민단체와 간담회 결과 등을 분석·요약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제로 활용토록 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도정에 반영케 하는 한편 도민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조치

○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의장단 협의를 거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처리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본래의 위상이 정립되도록 할 것

○ 도정질문 시 본질문 의원과 보충질문 의원 모두가 언론 매체에 고루 방영되도록 언론사와 적극 협조 조치할 것

○ 의회개원 이래 채택한 대정부 건의나 탄원서를 별도로 대장 또는 카드로 관리하고 중앙의 처리결과를 제때에 통보하여 의회차원의 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각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이 정확, 신속하게 홍보되도록 모니터 할 것

□ 건의사항

〈 의회사무처 〉

○ 타 시·도 또는 외국의 우수한 의정사료를 수집해서 의원들에게 제공

○ 의회청사시설의 청결 및 보수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 충청북도의회사 발간은 책자보다 전문기술자의 자문이나 지원을 받아 CD로 제작하는 방안 연구

○ 도정질문 대상의원을 현재 위원회별 1명씩하고 있는데 증원시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의정회보의 디자인 개선과 수록내용을 다양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

2) 기획행정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공보관실 〉

○ 「공보행정모니터제」 운영성과를 분석·검토하여 개선방안 강구

○ 「중국방송」 운영의 호응도를 현지 설문조사 하여 계속성여부 등 종합검토

〈 총 무 과 〉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조속히 구성되도록 하고 활성화에 만전

○ 문정장학회 장학생 선정시 부모가 도내 10년 이상 거주자의 자녀로 한정하였는데 기회의 폭을 넓히도록 기준완화 요망

○ 공무원교육원 교관요원의 단기근무로 인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인사자제 등 우수공무원 발탁 배치

○ 이원화되어 있는 도청 행정자료실과 도의회 자료실의 통폐합을 적극 검토 조치

○ 충청북도정원관리등에관한규정(훈령 제1064, '98.9.16)상 위배되는 현행 도지사의 담당 보직임용을 지양하고, 향후 규정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감사관실 〉

○ 감사요원 차출에 의한 감사는 공정성, 형평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니, 전문요원(환경, 보건, 전산 등) 확보방안 강구

○ 지역별 명예감사관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청취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등 명예감사관제의 활성화방안 강구

○ 행정심판의 인용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처리 미숙 또는 해태 여부를 종합분석,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

○ '99년도 조기발주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

○ 증평출장소 광덕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의 부진사유를 규명하여 2000년도 계속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조치 강구

〈 기획조정실 〉

○ 충청북도 명예연구소의 관심 소홀로 인한 불평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 내실 있는 운영방안 강구

○ 고속철도오송역유치, 중장기발전계획 반영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국회, 도의회, 지역인사, 언론 등 전 도민이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 가시적인 성과 거양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주요 투융자사업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기능 강화방안 강구

○ 위원회의 운영실적 저조 등 비효율적이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리방안과 부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해당 실·국장으로 위원장을 조정하는 등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수립 추진

○ 기획행정위원회에서 '99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한 충청북도행정소송의 효율적 수행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

〈 자치행정국 〉

○ 도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설문조사결과 내용, 편집, 송달상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종합 검토하여 시정

○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의 저조와 체납액 과다 발생에 대한 분석 대책강구

○ 불량 방독면의 정화통 교체 등 민방위장비의 일제정비 및 부족장비 확보방안 강구

○ 국·공유재산 유·무상 임대의 경우 타 시·도 사례와 검토하여 형평성 확보 및 세수증대방안 강구
○ 하도급 직불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여 원도급자의 악용 소지의 최소화방안 강구
○ PC등 고가장비의 대량구입 시 조달청을 통하여 경쟁입찰 방식의 저가구입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절감 방안 강구
○ 문화재관련 공사의 경우 특정업체의 독점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부분입찰 등 공개경쟁입찰 방법 검토

〈 소방본부 〉

○ 구조적으로 취약한 재래시장, 농·축산농가, 오지마을 등의 화재예방 및 조기 진화 대책 강구
○ '99년도 예산으로 구입해야할 소방장비 조속히 구입, 화재진압에 만전
○ 타 시·군 소방서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음성·영동소방서의 과장직급 상향(소방경→소방령)조정 등 사기앙양책 강구
○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불시점검결과 미비점이 적출되어 철저한 소방행정 요망

〈 증평출장소 〉

○ 광덕쓰레기매립장 중지에 따른 대책강구
○ 복지환경과 직원의 잦은 업무분장 및 예방접종 관련 민원 발생의 대책강구
○ 지방세, 세외수입의 체납대책 강구
○ 증평보건소 설치의 적극적인 노력
○ 민원인 불편해소 차원에서 직원들의 차량은 보강천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출장소내 주차장 공간 확보방안 강구
○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도록 철저한 지도점검 요망
○ 출장소의 공사 발주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업체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 청주·충주의료원 〉

○ 의료원 운영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

○ 직원들의 불친절, 장례예식장 운영의 문제 등 의료원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에 따른 대책 강구

○ 마약 등 의약품 관리책임자가 정·부 지정으로 약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영안실 운영에 따른 각종 장부의 기록 및 관리 철저

○ 영안실 운영에 있어서 장의용품의 생산지 및 적정가격 표시로 신뢰성 확보방안 강구

○ 장비 및 물품구입시 회계질서 확립방안 강구

○ 정신요양병원 운영에 있어 시설의 낙후, 불결하는 등 부실운영에 대한 대책 강구(청주의료원)

○ 전국 의료원 경영평가시 33개 의료원중 '98년도 23위에서 '99년도 27위로 하향은 운영의 부실이므로 대책 강구(충주의료원)

3) 교육사회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여성정책관실 〉

○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 결함가정아동 보호사업은 지원액수가 자립정착 하기에는 절대 부족하므로 1인당 사업비를 현실성 있게 증액 조치

○ 보육시설 법인전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의혹해소

○ 여성발전기금 조성실적 미흡, 목표연도내 조성완료

○ 여성회관의 중장기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 복지환경국 〉

○ 충광농원(나환자정착촌) 축산폐수 처리시설 노후화 및 가동중단으로 수질환경 오염문제가 야기되는데 관련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지도단속에 철저

○ 아파트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발효기 설치 후 사장되고 있는데 따른 활용대책 강구

○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오염사고 방지대책이 미흡한데, 제도개선 등 지도점검 확행

○ 일반운전자가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도감독 이행 철저

○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실태파악이 부진하고 안전관리 점검에 소홀한데, 체계적인 관리 등 개선 시행

○ 의료보호비 대불제 이용실적 저조한데, 활성화방안 강구

○ 건설중단 된 미원면 쓰레기매립장 향후 활용방안 강구

○ 장애인수용시설 수용자에 대한 보험가입 검토

○ 자부담 수범적 운영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방치폐비닐 수거보상비 증액대책 강구

○ 아동복지업무의 사회복지과로 환원 검토

○ 「충북사회복지종합계획」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 진력

〈 옥천전문대학 〉

○ 공업계열에 걸맞는 실험실습장비 확보가 미흡한데 시설장비 확충에 노력

○ 장학금 수혜인원 확대방안 강구 및 대외장학금 확보대책 강구

○ 졸업생 취업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추진

〈 공무원교육원 〉

○ 이론식 강의보다는 현장체험, 분임토의 등 참여식 교육 확대

○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 농기계는 교체하거나 확충방안 검토

○ 2000년 4월 총선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리통반장 교육계획 수립에 신중

○ 타기관 요청시 교육원시설 개방 검토

〈 보건환경연구원 〉

○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보유기계 노후화로 검사의 정확성·신속성이 미흡한데, 첨단검사장비 확충방안 강구 시행

○ 주민건강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철저 및 시료채취 시 업무관련 공무원 및 환경단체 입회 조치로 공정성 확보

○ 다이옥신 등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약품 등에 대해 1일 섭취허용량 등 주민홍보 대책 강구

〈 충청북도교육청 〉

○ 식료품 납품업자 및 위탁급식업자 계약시 자격요건이나 선정기준을 별도 마련, 시행하여 민원소지 사전 해소

○ 양호교사 미배치 학교의 확보대책 및 양호교사의 보건, 예방, 성교육 전문 전담교사로 활용방안 강구

○ 일선학교 과학관의 내부시설 장비가 너무 부진한데 조속히 시설 확충으로 내실 있는 운영방안 강구, 학교정보실의 학습자료 자체개발 및 학부모 이용방안 강구, 일선교사들의 첨단기자재 활용방법 및 능력제고를 위한 연수강화 등 제반대책 강구 시행

○ 교육과학연구원과 일선 시군 과학관과의 연계활용 미흡한데, 개선대책 마련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기준은 1개면 1개교 유지원칙, 학생수 100명이하라도 복식학급이 없는 경우 제외, 시기는 학생의 학교적응을 감안 학년도 초에 추진, 지역여건과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는 등 탄력적 적용 조치

○ 교육과학연구원 초석 및 조형물 표식문안 수정방안 마련 시행

○ 과밀 학교에 대한 부족 급식시설 개선방안 강구

○ 결식학생 방학기간중 증액지원방안 강구

○ 경제사정 곤란자, 결식아동 중식비 확대지원 검토

○ 중도탈락학생 처리문제 대책 강구

○ 교육과학연구원의 첨단장비 조속배치 및 운영관리 내실화

□ 건의사항

〈 여성정책관실 〉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공간 마련

○ 고부간 갈등해소를 위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하는 교실" 운영

〈 복지환경국 〉

○ 「평생건강관리기록제」 시범실시 연구 검토

○ 「탁노소」 명칭을 노인공경 차원에서 개칭 검토

〈 충청북도교육청 〉

○ 수행평가는 교사잡무경감(행정요원 배치), 학급당 인원수 적정화(25-30명 유지), 평가대상 학급수 최소화, 교사에 대한 평가의 신뢰성 회복, 시행가능한 학교부터 점진적 실시

○ 학생지도 시 전체체벌 지양, 담임이 직접 지도, 학생의 인격존중, 반성의 기회제공, 타학생에게 가급적 비노출 처벌

○ 고교급식 석식제공 확대방안 강구 및 학교급식 물품중 지역 농산물 구매방안 강구

4) 산업경제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경제통상국 〉

○ 채용박람회 기능별로 분리 운영

○ 지역특성대학 육성지원에 있어서 도비지원의 의회 사전승인

○ 도에서 지원하는 특성화대학 사업이나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등의 연구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정산보고 (사업종료시 정산보고)

○ 기업이 원만히 운영되기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 충북경제포럼 운영 개선

○ 고용촉진훈련 교육기관 수시 점검하여 부실운영 방지대책 강구

○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개선

〈 농정국 〉

○ 농산물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공무원 교육, 포상 및 지원 제도 도입

○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의 행사추진 재검토

○ 공공근로사업이 끝난 지역에 팻말설치 부적정

○ 어려운 농업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표기

○ 해외세일즈 활동시 농정분야도 참여하여 농산물수출증대 방안 강구

〈 농업기술원 〉

○ 충북쌀 청결미 판매방법 개선

○ 벼 보급종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 개선

□ 건의사항

〈 경제통상국 〉

○ 으뜸기업에 대한 명예와 사기앙양대책의 종합적인 검토

○ 주유소의 가짜휘발유 판매 수시점검·단속 및 적발업소 광고

○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하여 저리로 실업자에게 대출 및 취업 후 자립하여 대출자금 상환방안 강구

○ 경영안정자금의 약정 대출제

· 업체가 약정범위 내에서 미리 서류제출

· 농촌환경정비사업에 활용 등 방안 강구

○ 공공근로사업

· 공공근로인력 증소기업 활용

· 농촌환경정비사업에 활용 등 방안 강구

○ 지역협력연구센터나 특성화대학사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제정

○ 소비자고발센터에 재정지원을 하여 소비자운동의 활성화 촉진

○ 내륙화물기지 내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시설물 유치 촉구

○ 해외무역박람회 및 해외바이어 초청시 인간관계 형성 지속적으로 추진

〈 농정국 〉

○ 개량마스크 공급사업 등을 도에서 일괄 발주하여 예산절감 방법 강구

○ 사과의 새로운 품종개발보다 후지사과의 재배법 개선

○ 농작물의 재해피해 보상시 작목별로 그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기준에 포함시키도록 개선

○ 퇴비신청 시 지원내역 등 정확한 내용이 농민들에게 숙지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첨단원예기술 등 연구된 기술을 농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체계 강구

○ 퇴비를 생산하는 우수공장 지원 및 농가에서 구매하는 퇴비에 대한 보조금 증액

○ 치어방류사업에 있어 희귀어종인 쏘가리 등을 금강상류지역에 방류

○ 도계 및 인근 시·군의 환경오염대책

〈 농업기술원 〉

○ 벼 병충해 발생 시 농약의 적재적소 공급방안 강구

○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벼종자 공급 시 지역별로 농민들이 희망하는 품종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5) 관광건설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문화진흥국 〉

○ 제천 자양영당의 경우 자연석을 교체하여 담장을 보수한 바, 정확한 고증과 역사자료를 분석 원형복구 요망

○ 문화재 보수업자가 해마다 바뀌는데 이럴 경우 업자간 기술력 차이 때문에 완벽한 보수가 어려울 것인 바 지속적인 보수가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청안 사마소의 경우 건물이 협소하고 원래 자리가 아닌 바 정확한 지표조사 실시가 이루어 져야 하겠음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해야 할 유물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학교에 방치되고 있는데 철저한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청주시 남문로 1가에 소재한 도 유형문화재 제110호인 망선루가 구체적인 복원계획 없이 철거되고 있는데 따른 문화재 손실 우려

〈 건설교통국 〉

○ 음성IC~대소간의 공사현장에 야간 안내표지판이 없는 관계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안전표지판 설치로 안전사고 미연방지

○ 가경2,3지구 미분양택지 및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장용 부지의 조속한 분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실농보상비 지급과 관련 지금까지 개선이 안된 시·군이 있는데 정확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 보상안 마련

○ 보은군 마로면 한중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일부구간에 선형개량이 안된 원형복구 구간과 복구가 제외된 구간의 항구적인 복구대책 마련

○ 청주시 가경동 장구봉 공원의 훼손과 관련 지도·감독 철저와 향후 사업승인 시 현장확인 병행방안 강구

○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에 반영

○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사업주체가 다른데 따라서 공사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사와 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특단의 방안 마련

○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잔여부지 4,000평의 매각 등 처리방안 조속 마련

□ 건의사항

〈 문화진흥국 〉

○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의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예가 있는데 이의 개선방안 (문화재 관련 등)

○ 도민체전과 관련 전국체전에 참가한 선수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의 해소방안

○ 청람재 운영과 관련 입소 학생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등 공간조성 확대

○ 구 종축장 부지의 활용에 있어 공공성, 수익성, 사회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도민에게 최적의 여가선용 공간 제공

○ 문화축제·관광축제행사 성과에 따른 예산지원의 차등화 방안

○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방안 마련

○ 우리 도내에는 현재 대규모 호텔이나 회의장 등 시설이 미약함. 국제회의나 국제대회 유치할 수 있는 호텔유치 등 방안 강구

○ 신채호기념관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모의길" 등 조성방안 강구

○ 충주 고구려비의 경우 도로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관람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음. 주변정비를 통한 통행불편 해소 방안 마련

○ 직지찾기와 관련 도민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홍보방안 마련

〈 건설교통국 〉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급적이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면 함

○ 5번국도 상 상진대교에서 단양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입체교차로 설치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 영동군 상촌면 관기리 내 소류지가 고속철도 공사로 인해 수원이 고갈되어 농업용수 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도 차원의 대책 마련

○ 벽지 오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면제제도 혜택금 등 제도 도입
○ 도로상 설치된 육교 및 지하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향후 설치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활용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공사실시 후 일부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예가 있는데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과 수렴으로 민원소지 해소
○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
○ 위험교량 안전진단결과 지역주민에게 알려서 불안해소방안 마련
○ 516지방도 공사와 관련 불정면 일부구간의 중앙선 분리의 부정확성으로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고조, 이의 해결방안 강구

第 4 章　請願 및 陳情處理

第 1 節　請　　願

第 2 節　陳　　情

第 1 節 請 願

1. 處理槪要

○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주소, 성명,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청원서와 의원소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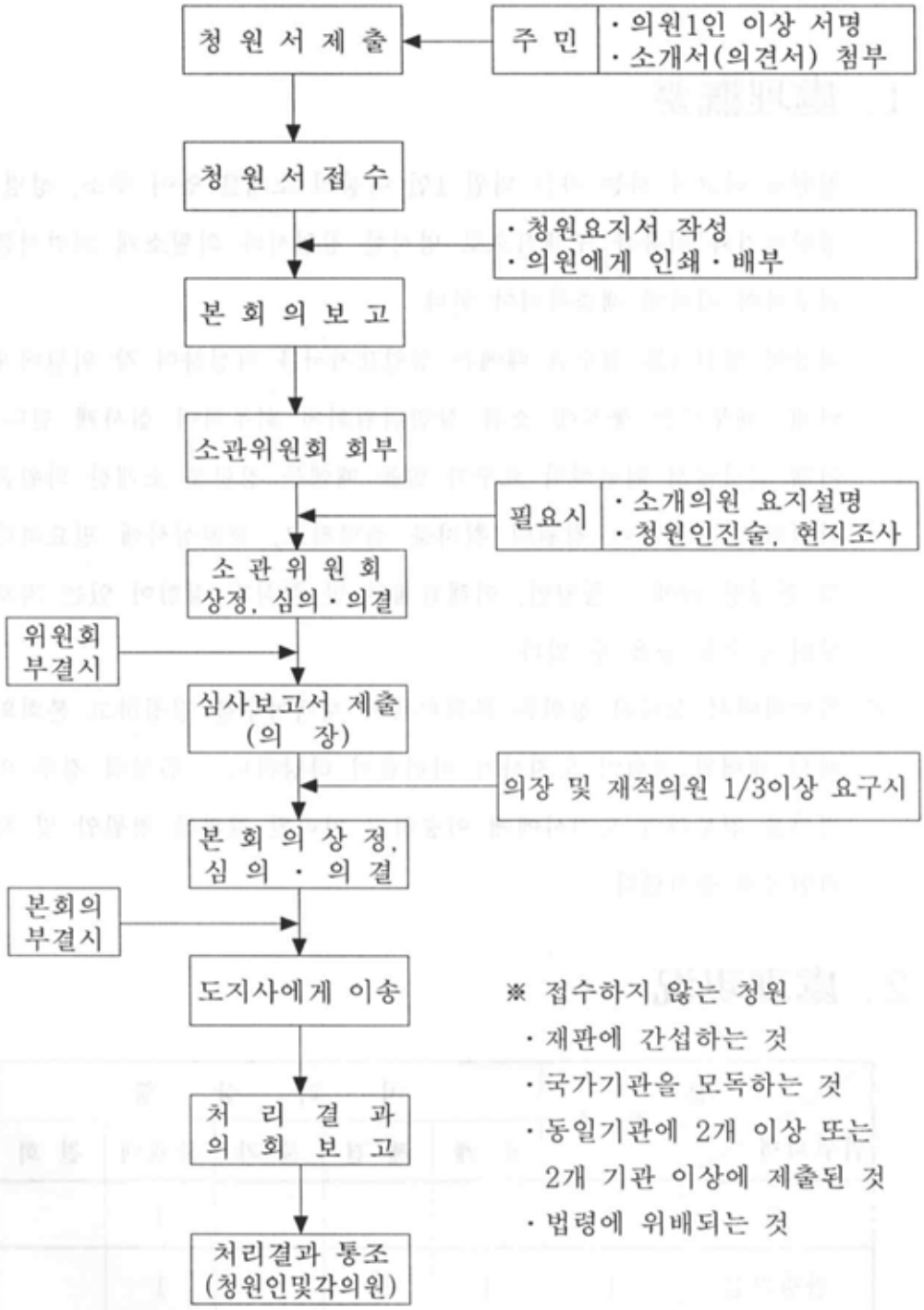
○ 의장이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한다. 이때 심사에서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위원회에서 심의된 청원은 본회의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처리된 결과를 청원인 및 각 의원에게 통지한다.

2. 處理現況

구분 / 위원회별	접수	처리상황				
		소계	해결	불가	불채택	철회
계	1	1			1	
관광건설	1	1			1	

3. 處理節次



※ 접수하지 않는 청원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4. 處理內容

1) 제 목 : 『사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관한 청원

□ 청원개요

○ 접수일자 : '99. 12. 29

○ 청 원 인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86 분평주공A 710-603 황 봉 길

○ 소개의원 : 최 영 락 의원

○ 소관위원회 : 관광건설위원회

○ 청원요지 : 청원군 오창면 창리에 소재한 청원인의 사유지(창리 56-4, 56-6, 56-23, 56-29번지)에 설정된 도시계획시설(소방도로)의 시설계획 해지요망

· 본 소방도로는 20여년 전에 계획 설정된 도시계획시설로
  - 오창면 구 중심지를 우회하는 2차선 도로가 10여년 지나면서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 '99년 도로확장(6차선)으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

· 현재는 오창면의 중심지역으로 발전, 교차로(사거리)에 위치한 본 토지내의 건물(주유소)이
  - 노후화된 위험물 저장시설의 개조나 이용객의 편의시설(화장실, 휴게소 등)의 증·개축을 전혀 할 수 없으며,
  - 인근 주민들이나 이용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음

· 또한, 동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을 해당 군에서 5년전 도시계획입안까지 하여 놓은 상태로
  - 주위 환경의 변화(오창테크노빌)때문인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 주위 토지소유자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됨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소방도로(일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피해구제를 요망함

○ 청원소개의견서

오창면 소재 본 사유지 도시계획시설(소방도로)이 해당군청의 당초 입안대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 본 소방도로는 20여년 전에 계획된 시설이었지만 오창면 구 중심지를 우회하는 2차선 도로가 10여년 전 지나면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으며 올해 도로확장(6차선)으로 소방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 지금은 오창면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한 교차로(사거리)에 위치한 본 토지내의 건물(주유소)이 노후화된 위험물 저장시설의 개조나 이용객의 편의시설(화장실 등)의 증·개축을 전혀 할 수 없어 주변 주민들이나 이용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고,

· 동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은 해당군에서 5년전 입안까지 하여 놓은 상태(첨부된 설계도)로 주위 토지 소유주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소방도로(일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처리결과 : 불채택

○ 처리결과접수일자 : 2000. 3. 16

○ 불채택사유 -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청원군수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계획에 대한 신청이 선행

第 2 節 陳 情

1. 處理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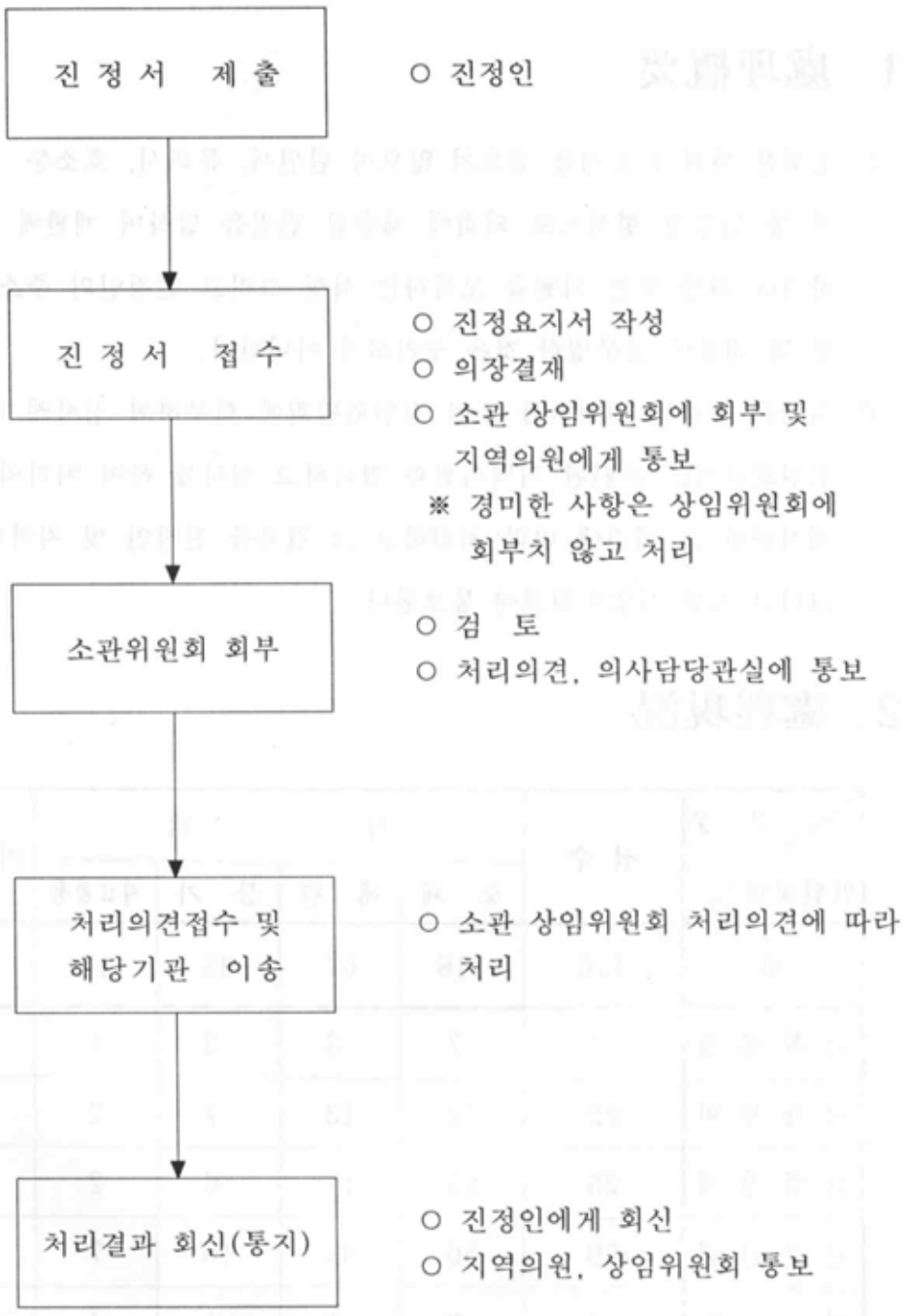
○ 진정은 의원의 소개를 필요치 않으며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된 민원을 말하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그리고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것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고, 위원회에서는 관련된 지역의원과 협의하고 심사를 하여 처리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 및 지역의원,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

2. 處理現況

구분 / 위원회별	접수	처리				비고
		소계	해결	불가	자료활용	
계	116	116	67	33	16	
기획행정	7	7	3	3	1	
교육사회	22	22	13	7	2	
산업경제	25	25	17	6	2	
관광건설	56	56	33	16	7	
기타	6	6	1	1	4	

3. 처리절차


진 정 서 제 출
○ 진정인
진 정 서 접 수
○ 진정요지서 작성
○ 의장결재
○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지역의원에게 통보
※ 경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 회부치 않고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
○ 검 토
○ 처리의견, 의사담당관실에 통보
처리의견접수 및 해당기관 이송
○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의견에 따라 처리
처리결과 회신(통지)
○ 진정인에게 회신
○ 지역의원, 상임위원회 통보

4. 處理內容

1) 기획행정위원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66-5 김기만 외 399명	송면출장소 폐지관련	작고 생산적인 행정이 요구되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인력 및 기구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기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잔류를 검토중에 있으며 민원사무 처리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충주시의회	농촌지역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존치건의	기획내무 및 교육사회위원회에 송부,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였음
괴산군 청천면 부흥출장소 리우회장 김소만 외 15명	부흥출장소 폐지관련	작고 생산적인 행정이 요구되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인력 및 기구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잔류를 검토중에 있으며 민원사무 처리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71-5 현대스치로폴(주) 오병철	소방직공무원 감원 관련 진정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시 소방행정부문의 정원을 동원하고, 도 소방본부로 하여금 소방직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음을 회신
괴산 연풍 647-3 황재옥	청주용암 건영아파트 재산세부과와 관련한 민원	재산세는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동 내용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주시에 통보
경기 성남 중원 금광 2685 전국대학지적학과교수협의회 회장	지방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건의	우리 도에서는 지방정부 조직개편시 지적과 폐지를 검토한 바 없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30-76 보은군리장 협의회장 허명구 외 10인	『지역일간지 구독』 관련 건의	시군실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적극적인 해결은 지난한 실정이나 보은군수와 보은군의회 의장에게 가능한 한 계속 구독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2) 교육사회위원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청원군 강내면 노인회 회장 정봉래 외 28명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반대	6회에 걸쳐 제출된 진정이기에 청주시, 청원군에서 기 회신된(98.5.16)내용(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협조함)으로 회신함
청원군 남일면 은행리 62 청원농장대표 이성규 외 23명	청원농장 이주지원 요청	행정여건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나 보건복지부, 청원군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을 회신
옥천군의회의장 및 의원 일동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관련 건의	환경부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환경부에 송부하고 피해지역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회신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 삼익비치아파트 206-802 이상만	매연흡입 세정장치에 대한 타당성여부 및 행정지도 안내요망	성능검사 및 정책결정은 환경부에서 검토할 사항이며, 충청북도에서 검토한 결과 실용화하기에 지난함을 회신함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43-1 이장 이병돈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반대 관련	7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된 사안으로 청주시, 청원군에서 타 진정인들에게 기 회신된 사항으로 회신하고 청주시와 청원군에 현지확인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협조하고 본 사업이 중요한 현안사업임을 이해하고 사업추진에 협조 당부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보은군의회 의장 및 의원 일동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대책 지역 등 규제 관련 건의	환경부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환경부에 송부하고 피해지역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회신함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 청주시민대책위원회 상임의장 최병준	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청주시민대책위 건의	'98.10.9. 서원학원 구성원과 간담회 개최결과 중재,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서원대학 지도감독권한을 맞고 있는 교육부를 방문, 적극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할 계획임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3반 박부용	충주호 수질보호관련 각종 제한에 대한 재수정 및 완화요망	제152회 임시회시 집행기관에 이첩, 충청북도에서 환경부로 관련 법률 개정건의(물관리과에서 처리)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문암쓰레기매립장 연장반대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박을순	문암쓰레기매립장 매립연한 연장반대	청주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첩
청원군 남이면 석실 237 이갑주	대형암반관정개발 철회	지하수 개발 및 입주승인권자인 청원군수에게 협조요청
대전시 중구 대흥동 32-5 김원호	지체장애인협회장 부도덕성과 관련한 진정	중간회신 공문 주소불명 반송으로 공람종결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5-1 대동빌딩 401호 김동휴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대한 건의	분뇨관련 영업허가 완화반대에 대한 사항으로 참고자료로 위원회 이송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통장협의회장 강호근	죽천초등학교 교명 변경	소관 부서인 충청북도교육청에 이첩 (주민의견 수렴하여 조례개정 추진중)
청원 강내 저산 19 사회원 외 주민일동	저산분교 학교부지 관련 진정	주민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나 관련기관 입장도 배제할 수 없음. 주민의견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청원군 강내 학천 이순구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중지	청주시장 및 청원군수에게 주민숙원사업 지원계획시 주민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알림
청원 옥산 가락4리 정준모 외 주민일동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불편사항 진정	청주시장 및 청원군수에게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의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촉구
충주 봉방동 341-3 충주환경운동연합	달래강보전관련 진정	우리 도의회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대안을 모색하여 대처해 나갈 것임을 통보
음성군 음성읍 삼생1리 273 남신초등학교덕생분교 학부모회 박노은	덕생분교 폐교조치 반대	진정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에 촉구 노력할 것임
청원 강내 저산 19 사회원 외 주민일동	저산분교 학교부지 관련 진정	주민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나 관련기관 입장도 배제할 수 없음. 주민의견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충주 봉방 341-13 충주환경운동연합	새한미디어 및 달래강 환경보전관련 진정	문장대 용화온천과 달래강 보전문제는 도의회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대안을 모색하여 대처하고, 새한미디어 공해문제는 환경오염방지대책 수립 추진 등 충청북도지사에게 촉구
청주 상당구 용암동 1539 김동수	『유흥업소 영업허가』 관련 민원	충북도지사에게 이첩하고 규제를 완화하도록 촉구하였음을 통보(보건복지부 고시 변경으로 제한업종 제외시)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623 지적박물관 이진호	『폐교학교 임대료』에 대한 진정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하였음을 통보

3) 산업경제위원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외 2개 여성관련단체	도 조직개편에 대한 여성농민단체연합회 건의	조직개편안건 심의시 검토해줄 것을 협조함을 알리고 농촌진흥원 생활개선과의 존속을 건의한 바 있으며, 여성농업관련 조직의 존속을 위해 의회차원의 활동을 지속하겠음을 회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47-4 삼보빌딩 303호 (사)한국여성농민연구소	여성농업인정책 시책화를 위한 각급단위 행정구조 개편방안 건의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등 3개 여성관련 단체에서도 여성농업인 담당부서 축소재고와 관련한 진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기 회신된 내용으로 회신함 - 농촌진흥원 생활개선과의 존속을 건의함 - 조직개편안 안건 심의시 심도있게 처리되도록 협조 - 존속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활동을 지속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62-5 유원형 외 11명	농지전용관련 진정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시 충청북도와 협의한 바 있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농지의 원활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을 회신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1-1 한국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윤한	농지전용 관련 진정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시 충청북도와 협의한 바 있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농지의 원활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을 회신
보은군 탄부면 고승리 김영구 외 20명	과학영농특화지구 시설피해에 대한 배려 요망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시 충청북도에 건의하고 농업시설 및 농작물의 피해보상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정유관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을 회신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청주시의회	청주연초제조창 및 청주잎담배원료공장 폐쇄반대 결의문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건의문채택 관련기관에 건의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27-2 청주시미용학원협의회 반기환	실직자 고용촉진기관 지정에 관한 건의	시장·군수가 전년도 운영실적 등을 고려 지정하는 사항으로 충북도에 협조요청
대전시 유성구 가정 35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조폐창 통합에 따른 탄원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조요청
서울시 중구 쌍림동 146-1 농지개량조합 구조조정추진위원회	농업관련 3개 기관 통합관련 건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조요청
충주시 문화동 2363 우홍식	참나무 종자림 해지 진정	충청북도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민원내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제천시 송학 오미 심재덕 외 주민일동	공군훈련장 설치반대	충청북도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협조요청
청원 옥산 덕촌 259 서주우유 체불유대수납대책위원회 황영욱	체불우유대금 관련	관련기관인 충청북도에 협조요청
옥천군의회 의장	옥천조폐창 폐쇄이전 관련	지역여건을 감안 처리토록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하였음을 회신
청주 상당 북문3가 89 청주시의회의장 외 의원일동	충북은행 합병에 따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건의	건의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71-9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 이국립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민원사항 회부	시행규칙과 관련된 사항으로 충청북도에 이첩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4-4 김학기	토지(대지)불하관련 진정	사사 소유권 관계로 의회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사항임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180-1 나남수	마늘생산 및 유통기반 붕괴방지를 위한 진정	우리도의회에서도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음을 통보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71-9 한미은행 3층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 이국립	재래시장 활성화 건의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에 협조하여 주도록 충청북도지사에게 이첩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180-1 나남수	마늘산업 붕괴 방지를 위한 진정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마늘산업기반의 붕괴방지대책 수립추진 및 마늘재배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협조요청 및 건의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4 농협중앙회장	마늘산업 보호를 위한 진정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마늘산업기반의 붕괴방지대책 수립추진 및 마늘재배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협조요청 및 건의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335-20 이주호	『주유소에 정부규격통 비치요망』건의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
영동군 영동읍 임계리 337-1 주민대표 김용문 외 23명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관련 진정	농지를 일반주택부지로 농지전용 승인한 것을 다시 종교시설 부지로 용도변경 승인한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도록 협조요청
보은군 보은읍 풍취리 이장 박홍태	『하천의 점용허가 등』 관련 환경개선 진정	집행기관에서 판단, 처리하여야 할 하천점용 허가사항으로 충청북도지사에게 이첩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98-2 충주지역구제역피해대책위원회 최병오	『구제역발생지역』지원대책 건의	집행부에 구제역 발생지역 지원대책 강구 지시
단양군 매포읍 평동3리 247-2 이규형	『씨감자 증배』요망 민원	충청북도지사(농업기술원장) 및 단양군수에게 증배될 수 있도록 촉구

4) 관광건설위원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지회 지회장 임해순 외	충청북도문화상 부활 건의	관련조례의 제·개정 없이는 충청북도민대상에서 분리 시행될 수 없으며, 도민대상을 폐지하고 문화상을 부활하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회신
청주시 내덕2동 404-19 정진호 외 377명	소방도로개설관련 진정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지적불·보합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후 추진할 계획임을 회신함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999 이명산 외 19명	도시계획 변경요청	청주시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같이 청주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2구 황구연 외 134명	하천원상태 복구요망 진정	개량복구의 타당성을 촉구한 바, 개량복구로 사업이 확립되었다고 하여 보은군에서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공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회신
보은군의회 의장 및 의원 일동	보은수해관련 의원 호소문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건의
보은군의회 의장 및 의원일동	보은수해관련 제도·정책개선 건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 제·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한이며, '98.9. 21 행정자치부에서 사안별 검토결과 회신문 참조 회신
충주시 주덕읍 신양1구 159-1 김창식 외 149인	도시계획도로공사 시공추진 관련 진정	사업시행관자인 충주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충주시장에게 협조통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16 태암수정A 101-608 신대휴	건물신축과 관련한 불법행위 진정	법적인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함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70-1 보은군 기독교연합회	전국 굿축제 반대	"'98 속리산 누리굿마당"은 순수 문화관광이벤트 행사이며, 보은군에 순수 문화관광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통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세원3차아파트 102-1104 고용원	자가용 승합차 유상운송허가요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충청북도에 협조통보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산28 원통암주지 현 장	사찰사업비 지원요망	집행부의 예산 등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협조요청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창2동 최태식 외 150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진정	도시계획변경이나 도로개설권자인 증평출장소장에게 협조요청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403-8 서재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관련 진정	도시계획변경계획은 없으며, 지적불부합 지역은 주민과의 공청회, 설명회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청에서 조치
제천시 백운면 평동1리 리장 김동길 외 주민일동	충주-제천 38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관련 진정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추진 되도록 협조요청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83 현대A 101-1502 한형우 외 19인	시설녹지관련 진정	청주시에서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을 검토하고 보상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건축허용은 불가함을 회신하고 청주시에 민원내용처리 협조요청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588 청주시용암용정방서동개발위원회 민응식 외 13인	청주용암(1)지구내 잔여 초·중학교 도시계획변경관련 진정	도시계획입안권자인 청주시장에게 협조요청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836 조성일	무심천 보 설치관련	도민제안 처리중 사안으로 참고자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영동군 상촌면 관기 김보용 외	양수시설 및 소류지 설치요망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주민의사가 반영되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단양 대강 장림 110-3 박영무	국유재산 상호교환 관련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민원내용이 반영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옥천 청성 산계 306-1 김긍련 외	제방도로 포장건의	옥천군에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중임을 통보
단양군 적성 하리 331 박종학 외	강변도로 포장건의	막대한 공사비소요(60억 내지 70억원)로 조기착공은 어려우며 도로관리주체인 단양군과 협의 해결할 것을 통보
청주시 흥덕구 서촌 79 오인규 외	소하천옹벽공사 및 농로포장 관련	청주시에서 추가경정예산 요구로 사업비를 확보하려 하고 있음을 통보(청주시의회의장에게 협조요청)
제천 장학 부강타운 105-109 김영근 외 3,245명	시외버스 연장운행 관련 진정	충청북도에서는 지역주민 요구대로 인가 철회하고 경기도에 철회 요청한 상태임
청원 현도 양지 84 양지2리장 이용한 외 주민일동	철도건널목 입체화 설치 관련 진정	철도청 및 청원군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예산 확보중에 있음
제천 신월 산21-1 세명대학교 총장	노선버스 연장운행 관련 진정	지역주민 및 농어촌버스업계의 반발로 인가된 노선연장 운행을 철회한 상태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61 용암1지구 상가번영회 대표 김동일	용암2지구 상업지역 실시계획 변경요망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장이 택지개발촉진법 및 청주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합하게 적용되었음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신촌마을 490-25 대표 전성식	신촌마을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요청	사업권자인 청주시장이 향후 경제의 회복전망 등을 고려, 면밀히 검토 추진한다 함을 통보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970-2 청주환경운동연합	싯계교건설 중지요망	사업시행청인 충주시에서 충주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향후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하여 철회하기 위하여 공사를 중단한 상태임
충주시 연수동 417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김정수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민원	사업추진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주시장에게 협조요청
청원 낭성 이목 173 낭성면리장단협의회장 한빈석	진입도로 확·포장 건의	건설교통부의 국고보조금 일부가 교부되지 않는 상태이나 2000년도에 예산이 교부되면 도로공사를 할 예정임을 알림
옥천군의회의장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건의	개발제한구역 관련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통보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 청원군의회의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	개발제한구역 관련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충주 앙성 돈산 89-2 (주)돈산개발 고목훈	돈산온천지구 관련 진정	'99.12.7일 『돈산온천지구 개발계획』은 승인되었음을 통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57 한솔빌딩 3층 용암용정방서개발위원회 위원장	용암1지구 내 잔여 초·중학교 용지관련 진정	청주시의회에서 의견서를 채택, 청주시에 이송한 바 있으며 청주시장에게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
음성 생극 송곡 53 김종호	준용하천내 사유지 보상관련	예산의 뒷받침이 어려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나 민원해결에 노력하여 줄 것을 충청북도에 촉구함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 한남대학교 영문과 강선구	고수동굴출입구 주변 환경 개선건의	출입구주변의 상가 등은 개인소유물로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나 건의사항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통보
괴산 증평 초풍 29-1 봉영근	증평 초중리 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진정	증평출장소장에게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주도록 촉구
청원 현도 중척 249 오경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건의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는 지난한 실정이나 도지사로 하여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협조요청
옥천 이원 건진 368-6 김진범	고속철도 공사와 관련한 진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요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소음과 진동대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협조요청
충주시 용산동 용산A 7동 401호 노봉규	『건축물관리대장 소유권등록』관련 민원	충청북도와 충주시에서 동 민원이 내부종결된 사안이지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후 민원인을 이해설득 시키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
음성군 금왕읍 무극4리 산5-2 대한불교 조계종 광명선원주지 권무애 합장 외 1인	『신규도로(지방도)개설공사』관련 건의	충청북도에서 방음벽 설치 등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는 상태이며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처리 촉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16 태암수정A 101- 608 신대휴	『건물신축과 관련한 불법행위』진정 (재회부)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으로 불수리 사항에 포함되며 민원상대자와 원만한 해결을 보도록 통보
보은군 보은읍 풍취리 리장 박홍태	『하천의 점용허가 등』 관련 환경개선 진정	집행기관에서 판단, 처리하여야 할 하천점용허가사항으로 충청북도지사에게 이첩
청원군 남이면 척북리 74-7 남이태암A 신축공사추진위원회 위원장 양진현	『남이태암아파트신축공사』관련 자금지원 요망 민원	충청북도와 청원군에 사업승인조건 재조정요청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자금지원에 대한 협조 촉구 및 주택은행 내덕동지점에 협조요청 통보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청원군 낭성명 귀래리 리장 신창우 외 주민일동	『농어촌도로공사』 관련 민원	사업주체인 청원군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을 통보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842(강변제방 및 도로복구추진위원회 131명의 대표) 위원장 박영규	『유실된 강변제방 및 도로복구』관련 민원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관리단에 적극 반영되도록 촉구하였음을 통보
음성군 금왕읍 대한불교조계종보현암주지 석현조합장 신도회장 이성복	음성IC-금왕간 2지구 4차선공사 설계변경 건의	충청북도지사에게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토록 촉구하였음을 통보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253-3 오천세 등 94명	『591번 지방도』일부 구간 인도설치요망 민원	충북도지사에게 장기도로계획에 인도설치추진 및 덧씌우기 공사시 갓길포장 우선 실시로 주민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촉구하였음을 통보
충북대학교 교수 김홍은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도로변 500년 버드나무 보전관련 민원	도로선형 변경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충청북도지사와 청원군수에게 촉구하였음을 통보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597 AID(아) 7-305 박만기	『중앙고속도로 일부 구간 사고예방대책』 관련 민원	한국도로공사에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음을 통보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 김학준 등 10명	『주소지와 지번의 일치』요청 민원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실태조사, 주민여론수렴 등을 통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음을 통보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158-1 조승재 등 24명	『501번 지방도 일부 구간』 인도설치 건의	도로확장에 대하여는 장기도로계획에 포함 추진토록 하고 갓길포장 가능부분 조속추진토록 촉구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28번지 정성엽	『사유지를 침해한 도로공사』 관련 민원	감정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한 보상과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이 직접 해명토록 촉구
일신여자고등학교장	학교내 소방도로개설 반대	충청북도지사와 청주시장에게 민원인과 협의추진토록 촉구
보은군 보은읍 죽전 1구 곽경일	보은읍 죽전리 복지회관 신축건의	충청북도지사와 보은군수에게 민원사항이 긍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805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이창근	『청주북부권 도서관 건립』 건의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청주북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음을 통보

5) 기 타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우태옥	현실인식 전환을 위한 시	각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함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박 주	청주지검 충주지청 이경훈 검사와 충주경찰서 목행파출소에 드리는 공개요구서	진정인 주소불명으로 공람종결
제천 하소 3차A 301-1101 소도열	도의원 품위유지 관련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이해바라며 더욱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당부
괴산 연풍 행정 황재옥	한글한자와의 병용 논의 관련	각 상임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청주지방 신학교 조우현	무속신앙 관련	공람처리
충주 봉방동 341-13 충주환경운동연합	『한흥광산 방문 및 허가 취소』요청 민원	허가기간 연장, 행정처분 및 배출업소 지도감독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와 괴산군수에게 촉구하였음을 통보

附　　錄

Ⅰ. 歷代 道議員 名單
1. 初　代
2. 第2代
3. 第3代
4. 第4代
5. 第5代
6. 第6代

Ⅱ. 議會日誌

Ⅲ. 演說文集
1. 開會辭
2. 就任辭, 新年辭

Ⅳ. 議政統計 및 資料
1. 會期運營
2. 議案處理 現況
3. 道政質問
4. 行政事務監査結果 指摘現況
5. 議員研鑽 活動
6. 委員會別 海外研修 現況
7. 議會關聯 法規
8. 議事堂 施設配置圖

Ⅰ. 歷代 道議員 名單

1. 初 代 : 28名(1952. 5. 10)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주시	田命植	1903.04.07	청주 사직2구 126	1954. 3. 25 보선
	崔東善	1900.10.25	북문로2가 137	제1대 의장
청원군	韓廷求	1910.10.08	청원 남이 양촌84	제1대 내무위원장
	張應斗	1903.05.04		제1대 징계자격위원장
	全炳壽	1898.09.26	청주 북문2가 114	제1대 문교사회위원장
	閔丙斗	1898.11.29	청원 북일 현동66	제1,2,4대 산업위원장
보은군	具然鴻	1915.10.20	보은 마로 관기386	제4대 내무위원장
	李殷濟	1915.06.08	보은 삼산	
옥천군	權福仁	1911.08.29	옥천 청산 지전34	제1대 부의장
	姜在仁	1905.07.26	옥천 금구113	제2대 문교사회위원장
영동군	朴貞鉉	1910.09.10	영동 학산 봉산481	제3대 문교사회위원장
	孫俊鉉	1901.12.04	영동 계산662	제3대 내무위원장
	柳性淵	1902.12.08	매곡 노천84	제1대 예산결산위원장
진천군	李再範	1905.08.17	진천 덕산 옥동209	제3대 징계자격위원장
	盧達先	1917.03.01	진천 읍내275	제2대 징계자격위원장
괴산군	金泳泰	1904.01.05	괴산 상모 온천376	
	金瑞應	1900.11.15	괴산 서부259	
	李錫圭	1912.01.20	괴산 동부623	
음성군	鄭用彦	1906.04.24	음성 금왕 무극126	
	李起浩	1912.07.20	음성 읍내307	
중원군	李孝承	1910.11.05	중원 엄정 미내47	제4대 징계자격위원장
	洪鍾漢	1901.12.15	충주 성서동129	제2대 내무위원장
	金興吉	1915.02.23	충주 용산동663	
	李元培	1918.04.19	중원 주덕 제내345	
제천군	韓源錫	1918.06.06	제천 수산 수산602	1954. 11. 24 보선
	盧意重	1909.02.20	제천 의림87	제3대 산업위원장
	柳浩烈	1910.02.10	청풍 읍리380	제4대 문교사회위원장
단양군	金重熙	1919.03.05	단양 단양 상방241	
청주시	洪元吉	1915.10.15	청주 수동2구441-9	1953. 11. 16 사퇴
제천군	金 鏡	1918.06.19	제천신백한마음A104-106	1954. 8. 6 사퇴

2. 第 2 代 : 30名(1956. 8. 13)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주시	安相烈	1915.01.20	청주 우암동104-2	제8대 징계자격위원장
	金元會	1898.10.03	영동103-5	1959. 4. 25 보선
충주시	李夏榮	1914.12.01	충주 용산동481	제7대 내무위원장
청원군	吳永鎭	1922.09.04	청원 문의 남계374	
	吳鎭世	1921.04.05	현도 죽전65	제7대 징계자격위원장
	韓相大	1909.08.24	송파구잠실주공A410-501	제6대문교사회위원장,60.7.2사퇴
	趙壽石	1916.12.09	청원 강내 신촌65-2	제5대 징계자격위원장
	李濟世	1911.01.17	청주 수동1295	제2, 4대 부의장
보은군	尹澄植	1915.10.30	보은 보은 삼산	1958. 6. 5 보선
	尹台勳	1924.02.15	청주 상당 용암 2068	제4대 예산결산위원장
옥천군	李仲茂	1916.12.05	옥천 이원 지정48-2	1958. 6. 5 보선
	姜冕會	1900.04.06	이원 강청39	1958. 6. 5 보선
영동군	金秉淵	1897.02.05	영동 영동 계산205	
	李鍾命	1905.08.02	황금 추풍령415	1959. 9. 22 보선
	韓秉洙	1911.10.18	영동 중앙185-1	제5대 예산결산위원장
진천군	柳義烈	1909.05.22	진천 진천 읍내328-1	제7대 산업위원장
	金振穆	1925.07.14	청주율량현대A402-704	제8대 내무위원장
괴산군	金振聲	1909.07.02	괴산 괴산 서부226	제8대 산업위원장
	金泳泰	1905.01.05	상모 온천376	제5대 문교사회위원장
	金瑞應	1900.11.15	괴산 서부259	제6대 내무위원장
음성군	李起浩	1912.07.20	음성 읍내307	제5대의장,3부의장,5산업위원장
	宋馨植	1904.04.01	대소 윤리178	
	趙春衡	1905.01.10	금왕 무극103	제8대 문교사회위원장
중원군	禹柄勳	1919.07.15	중원 엄정 신만416	제6대 징계자격위원장
	李元培	1918.04.19	주덕 제내345	제5대 내무위원장
	洪鍾漢	1899.12.15	앙성 본평382	제2대예결위원장,6대산업위원장
제천군	金容翼	1919.11.06	제천 제천 의림43	1958. 6. 5 보선
	朴永聲	1916.03.03	금성 구룡309	
	韓源錫	1918.06.06	수산 수산589	제3대 예산결산위원장
단양군	池德九	1915.11.06	단양 단양 하방142	1960. 7. 5 사퇴
청주시	崔東善	1900.10.25	청주 북문2구137	제4대 의장, 1959.2.10사퇴
보은군	具然鴻	1918.06.06	보은 보은 관리38-6	1959. 2. 24 사퇴
옥천군	郭楨觀	1896.02.24	옥천 옥천 금구258	1958. 1. 31 사퇴
	權福仁	1911.08.29	청산 명치179	1958. 2. 24 사퇴
영동군	金善行	1909.11.10	영동 영동 부용334	제7대문교사회위원,59.8.5사퇴
제천군	盧意重	1909.02.20	제천 제천 의림87	제3대 의장, 1958.2.24사퇴

3. 第 3 代 : 26名(1960. 12. 12)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주시	徐丙周	1918.01.03	청주 내덕174	제6대 의장
	朴魯精	1906.09.03	북문1가1-2	
충주시	申相玉	1925.02.29	경기 고양백석2동1349	
	閔昌基	1909.03.25	충주 성서85-5	
청원군	李長壽	1905.11.13	청원 문의 문산22	
	洪性來	1918.09.19	남이 척산638	
	朴鍾和	1930.10.11	경기이천증포 신안A108-403	
	金漢植	1918.01.11	청원 오창 백현52	
보은군	尹濼植	1915.10.30	보은 보은 삼산99-1	
	尹台勳	1924.02.15	청주 상당 용암 2068	제5대 부의장
옥천군	李熙昌	1920.01.20	옥천 옥천 하계32-1	제9대 산업위원장
	李龍熙	1931.06.10	서울 서초 방배809-27	
영동군	韓秉洙	1911.10.08	영동 학산 조산536	
	鄭喜澤	1922.08.30	대전동구가양1동옥수A706	
진천군	李仁澤	1912.07.24	진천 진천 읍내277	1961. 4. 보선
	李政儀	1914.05.15	덕산 옥동209	
괴산군	朴元植	1907.07.07	괴산 불정 탑평682	
	李圭弘	1909.02.25	증평 송산454	
음성군	朴魯昇	1927.04.22	음성 음성 평곡325	
	趙春衡	1905.01.10	금왕 삼봉103	제9대 문교사회위원장
중원군	李寂圭	1912.09.17	중원 신니 선당357	제9대 내무위원장
	崔勉昇	1925.06.13	동량 조동1284	제6대 예산결산위원장
제천군	元容轍	1900.06.09	제천 제천 명동169	
	嚴鳳翼	1914.06.04	청풍 읍리366	
단양군	趙東秀	1907.04.08	단양 대강 장림113	
	金鳳云	1914.03.15	영춘 상리414-1	
진천군	柳義烈	1909.05.22	진천 진천 읍내328-2	1961. 1. 25 사망

4. 第 4 代 : 38名(1991. 6. 20)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주시	韓章壎	1943.12.11	청주 우암동326-4	문교사회위원장
	金俊錫	1942.11.08	내덕2동신화A5-1003	
	尹泰漢	1947.01.01	영운동70-2	예산결산특별위원장
	吳運均	1950.06.23	봉명동1825	의회운영위원장, 부의장
	趙誠勳	1939.03.01	사직2동벨라맨션A-101	제8대 의장
	朴晩淳	1941.03.19	복대동548	
충주시	金仁植	1936.12.06	충주 안림578-1	
	朴鍾浣	1939.05.24	문화2987	
	金演權	1933.08.04	교현1동 185-3	내무위원장, 부의장
제천시	張寅基	1937.09.11	제천 남천56-31	
	李炳斗	1946.09.16	중앙로2가 76-30	
	權洧河	1929.01.07	연천2동 46-15	부의장
청원군	金孝天	1950.05.27	청원 미원 미원522-3	
	韓玹求	1939.04.19	남이 양촌290	제7대 의장
	車珠龍	1937.09.13	북일 마산164-3	
보은군	朴商浩	1936.11.26	보은 보은 죽전52-2	부의장
	朴鍾起	1939.11.29	삼승 우진348-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옥천군	鄭震澈	1940.08.30	옥천 옥천 금구5-70	의회운영위원장
	陸鳳鎬	1936.02.16	이원 강청39-1	
	安哲浩	1940.12.08	청산 지전37-2	산업위원장
영동군	鄭光洙	1953.01.10	영동 영동 계산695-6	
	李炳圭	1927.11.10	황간 마산42-12	
	李光浩	1933.04.01	양산 가곡468	내무위원장
진천군	金慶會	1952.06.15	진천 진천 교성 203-1	
	劉永勳	1955.04.30	초평 용정376-3	
괴산군	金基韓	1937.12.15	괴산 사리 방축306	기획경제위원장
	金奉三	1935.01.30	증평 교동60	건설위원장
음성군	車珠元	1929.12.11	음성 읍내299	
	成耆德	1957.06.20	금왕 무극134	
	奉夏勇	1946.07.09	대소 오산120-37	
중원군	金在根	1955.04.23	중원 주덕 신양186	
	李殷載	1938.12.01	노은 수룡757	
	禹范成	1938.12.09	엄정 용산387-1	
제천군	金鎭學	1949.02.19	제천 수산 수산578	
	朴起陽	1936.03.30	봉양 주포152-12	
단양군	申完燮	1940.11.16	단양 단성 북하96	예결, 댐특위위원장
	安載元	1950.02.03	매포 평동1182	
괴산군	柳明熙	1939.10.13	괴산 괴산 동부545	1993. 11. 12 사망

5. 第 5 代 : 39名(1995. 7. 12)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주시	朴用仁	1937.10.10	청주 북문로2가 116-29	기획경제위원장(후)
	金俊錫	1942.11.08	내덕2동 516	의회운영위원장(전)
	金春植	1958.09.02	분평우성A105-606	
	崔鍾哲	1954.10.03	운천동세원105-106	
	林憲用	1958.06.12	모충동 122-13	
	朴晩淳	1941.03.19	복대1동 548 25/1	
충주시	金仁植	1936.12.06	충주 안림 578-1	
	權寧觀	1947.01.09	칠금동 38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尹炳泰	1951.05.20	교현1동동아A806	
	金在根	1955.04.23	주덕 신양186	의회운영위원장(후)
	李善鎬	1958.09.27	신니 대화462-3	
	崔先煥	1945.03.25	동량 대전289	
제천시	李吉慶	1957.02.19	제천 청전동주공A9-106	
	李炳斗	1946.09.16	중앙로2가 76-30	부 의 장(후)
	李丙哲	1955.06.24	화신1동657공설빌라401	
	朴尙秀	1945.10.26	덕산 도전 799-9	
	崔英洛	1958.02.28	봉양 명암 122	
청원군	李敏熙	1950.04.13	청원 남일 고은 419-2	
	吳成鎭	1948.09.26	현도 양지 41-9	1998. 4. 3 사퇴
	車珠龍	1937.09.13	북일 마산 164-3	1998. 4. 3 사퇴
보은군	李香來	1950.10.16	보은 마로 기대 447	1998. 4. 4 사퇴
	劉載喆	1928.10.25	산외 장갑 404	교육사회위원장(전)
옥천군	宋在周	1937.11.07	옥천 옥천 금구 104	1998. 5. 2 사퇴
	安哲浩	1940.12.08	청산 지전 32-7	부 의 장(후)
영동군	張準浩	1941.04.01	영동 영동 계산 688	
	鄭泰禎	1946.04.29	황간 송원 350	
진천군	韓相文	1934.10.05	진천 교성신양빌라가-304	건설교통위원장(전)
	劉永勳	1955.04.30	초평 용정376-3	1998. 4. 3 사퇴
괴산군	金大鎬	1952.02.21	괴산 동부 441	
	朴蘊燮	1940.12.13	청천 송면 32	
	柳明昊	1942.02.28	증평 중동 62	1998. 4. 3 사퇴
음성군	車珠元	1929.12.21	음성 음성 읍내 299	제9대 의장
	成耆德	1957.06.20	금왕 부극 134	내무위원장(전)
	朴濟國	1938.08.18	삼성 덕정765-10	교육사회위원장(후)
단양군	安載元	1950.02.03	단양 매포 평동 1182	1998. 4. 4 사퇴
비례대표	宋玉順	1942.04.02	청주 대성동우성A107-1103	
	金東鎭	1936.10.02	석교동 120-4	제10대 의장
	李鍾國	1929.06.06	청주 내덕2동신라A2-203	
	崔準九	1944.09.04	보은 내속리 사내 283	1998. 5. 8 의석승계
제천시	金元植	1956.12.30	제천 서부 97-4	1996.10.15 자격상실
	金鎭學	1949.02.19	제천 수산 수산578	1996. 4.12 자격상실
옥천군	李喜福	1954.11.18	옥천 청산 백운578	1996. 4.12 자격상실
단양군	申完燮	1957.10.13	단양 단성 북하96	1997. 5.19 사퇴
비례대표	朴鶴來	1923.03.11	청주 석교동 34-10	1998. 4.25 사퇴

6. 第 6 代 : 27名(1998. 7. 9)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주시	金俊錫	1942.11.08	청주 율량동 34	의 장
	黃太模	1940.06.03	탑동 현대A107-303	
	金珍鎬	1948.12.22	사창 현대A101-1302	
	申澤秀	1945.10.11	복대1동 82-15	
충주시	權寧觀	1947.01.09	충주 칠금동 381	부 의 장
	沈興燮	1962.04.14	칠금 부영A103-1109	
제천시	崔英洛	1958.02.28	제천 봉양 명암 122	산업경제위원장
	李吉廈	1957.02.19	고암동 고암A104-406	
청원군	申大植	1939.03.25	청원 남일 두산 349-2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朴魯喆	1948.11.03	오창 원리 213-1	교육사회위원장
보은군	具本善	1949.03.25	보은 보은교사그린A4-201	
	朴鍾起	1939.11.29	삼승 우진 348-1	부 의 장
옥천군	李根成	1949.09.26	옥천 옥천 삼양 220-6	
	庾東燦	1939.10.25	옥천 장야 271-2	
영동군	張準浩	1941.04.01	영동 영동 계산 688	의회운영위원장
	鄭泰禎	1946.04.29	황간 서송원 350	관광건설위원장
진천군	金柱泊	1940.04.05	진천 진천 가산 185	
	金炯泰	1937.02.13	광혜원 광혜원 266-1	
괴산군	金大鎬	1952.02.21	괴산 괴산 동부 441	
	韓賢泰	1958.09.25	증평 증평 삼일A108-104	기획행정위원장
음성군	金昭政	1943.06.29	음성 음성 읍내 478-1	
	柳周烈	1952.01.25	감곡 주천 380	
단양군	李光鍾	1944.02.26	단양 단양 상진 536	
	李完永	1953.05.13	매포 평동3 272-14	
비례대표	朴在秀	1955.05.12	청주 탑동 308-1	
	吳長世	1955.05.12	청주 분평 우성A 202-505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朴鶴來	1923.03.11	석교 43-10	
청주시	金春植	1958.09.02	청주 사직2 한진빌라트 702	2000. 2.12.사퇴
충주시	尹炳泰	1951.05.20	충주 교현1동 동아A 1-806	2000. 2.12.사퇴

Ⅱ. 議會日誌

1. 1998년도 (7. 1 ~ 12. 31)

월 일	내 용	비 고
7. 4	○ 제6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상견례 및 간담회	의원휴게실
7. 9	○ 제149회 임시회 개최 · 회기 : 7. 9 ~ 7. 11 · 주요활동 - 제6대 의회 원구성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협의 - 기타 부의안건 처리 ○ 제6대 의회 개원식	
7. 13	○ 의원 기관 단체 방문 인사 · 기간 : 7. 13 ~ 7. 14	
7. 14	○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의 장 실
7. 21	○ 제150회 임시회 개최 · 회기 : 7. 21 ~ 7. 25 · 주요활동 - 의안심사 - 현안 및 주요사업현장 확인 - 당면업무협의 - 의원연찬회 -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처리	
8. 11	○ 도정질문 의원 간담회	의 장 실
8. 14	○ 수해지역 위문(보은군, 옥천군) · 의장단, 상임위원장	
8. 20	○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 ○ 전체 의원 을지연습 참관	의 장 실
8. 21	○ 사무처 직원 노력 봉사(보은군)	

월 일	내 용	비 고
8. 25	○ 제151회 임시회 개최 · 회기 : 8. 25 ~ 8. 29 · 주요활동 - 의안심사 -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 시찰 - 당면업무협의 - 의원연찬회 -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처리	
8. 28	○ 전체 의원 연찬회 ·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안 / 강형기 교수	2층 회의실
9. 10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의 장 실
9. 18	○ 제152회 임시회 개최 · 회기: 9. 18 ~ 9. 30 · 주요의사일정 - 도정질문(교육청 포함) -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 처리	
9. 19	○「충북체인지21」 보고회 (11:00)	2층 회의실
9. 25	○ 전국체전개막식 및 선수단 격려	제주종합경기장
10. 1	○ 의회사무처 직원조회	2층 회의실
10. 8	○ 제153회 임시회 개최 · 회기 : 10. 8 ~ 10. 20 · 주요의사일정 -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 주요사업현장확인 - 의원연찬회 -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 처리	
10. 15	○ 제37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	제천종합운동장
10. 20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10. 23	○ 중국관광국장일행 환영만찬	썬프라자
10. 29	○ 도정질문 의원 간담회	의 장 실

월 일	내 용	비 고
11. 3	○ 제154회 임시회 개최 · 회 기 : 11. 3 ~ 11. 10 · 주요활동상황 -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 현안 및 주요사업현장 확인 - 의원연찬회 -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 처리 ○ 의원연찬회(13:00 - 18:00) · 연찬내용 : 예산결산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2층 회의실
11. 5	○ 의원 정보화교육 (14:00 ~ 17:00) · 내용 : 정보화 사회와 도의원의 역할, 컴퓨터 기초 및 일반적 이해, 인터넷 기본 사용법 등	한국통신 충북본부
11. 7	○ 의원연찬회 (10:00 ~ 12:00) · 지방자치시대 도의원의 역할 / 충청일보 김춘길 주필	2층 회의실
11. 10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의 장 실
11. 20	○ 제155회 정기회 개최 · 회기 : 11. 20 ~ 12. 29 · 주요의사일정 - 행정사무감사 - 도정질문 - 1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심사 -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처리 ○ 민주평통지역대표위원연찬회 (14:00)	도청회의실
12. 14	○ MBC 의정결산 인터뷰 (11:00)	집 무 실
12. 16	○ 전·현직 도의원 간담회 (12:00)	도청간부식당
12. 29	○ 제155회 정기회 폐회 오찬 (12:00)	구 내 식 당
12. 31	○ 종무식 (16:00)	2층 회의실

2. 1999년도 (1. 1 ~ 12. 31)

월 일	내 용	비 고
1. 1	○ 충혼탑 참배 (09:00)	
1. 2	○ 시무식 (09:30)	2층 회의실
1. 11	○ 시·군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보은, 영동, 옥천)	
1. 12	○ 시·군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진천, 음성, 괴산)	
1. 13	○ 시·군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충주, 단양, 제천)	
1. 19	○ 제156회 임시회 개최 ·회기 : 1. 19 ~ 1. 23 ·주요활동내역 - '99년도 주요업무 보고 - 의원연찬회 - 조례정비특위구성 등	
1. 22	○ 의원연찬회 (14:00) ·21세기 지방자치와 교육방향 / 한국교원대 우종옥 총장 ·지방의원과 내조자의 역할 / 태평양시대위원회 김동길 박사	수안보 상록호텔
1. 29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의원휴게실
2. 1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담회	부의장실
2. 4	○ 제157회 임시회 개최 ·회기 : 2. 4 ~ 2. 8 ·주요활동내역 -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 의원연찬회(상임위원별) -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 처리	
2. 8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현판식 ·위원장 : 박종기 의원	신관 4층
3. 3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의원휴게실

월 일	내 용	비 고
3. 11	○ 제158회 임시회 개최 ·회기 : 3. 11 ~ 3. 18 ·주요활동내역 -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 시찰 - 의원연찬회 -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처리	
3. 25	○ 행정자치부 장관 의회 방문	의 장 실
4. 2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의원휴게실
4. 5	○ 식목 행사	미원, 쌍이
4. 6	○ 제주 4.3사건 홍보단 의회 방문	의 장 실
4. 8	○ 제159회 임시회 개회 (14:00) ·회 기: 99. 4. 8 - 99. 4. 17 ·주요활동내역 - '9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심사 - 안건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 처리 ○ 의원연찬회 (16:00 ~ 18:00) · 충북의 역사와 문화 / 중부매일 논설실장 임병무 ○ 도의원 및 집행부 간부와의 간담회 (18:30)	 2층 회의실 조선면옥
4. 16	○ 충청권 시·도의회의장 간담회 (11:00)	금 수 장
4. 26	○ 영월댐 건설 반대 충북·강원도의회의장 공동선언문 발표	영월군의회
5. 3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의원휴게실
5. 10	○ 제160회 임시회 개최 ·회 기 : 5. 10 ~ 5. 21 ·주요활동내역 - '99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 - 도정질문 - 안건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 '9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 처리	

월 일	내 용	비 고
5. 27	○ 의정동우회 회원 초청 간담회 (11:00)	의원휴게실
6. 3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의원휴게실
6. 4	○ 농촌 일손 돕기	제천 봉양
6. 14	○ 제161회 임시회 개최 ·회기 : 6. 14 ~ 6. 19 ·주요활동내역 - 안건심사 및 당면업무협의 -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확인 - 조례정비활동 -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처리 ○ 전체 의원 간담회	의원휴게실
6. 21	○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의 장 실
6. 22	○ 의정발전토론회	명 가
7. 2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의원휴게실
7. 5	○ 의회사무처 직원조회	2층 회의실
7. 8	○ 제162회 임시회 개최 ·회기 : 7. 8 ~ 7. 16 ·주요활동내역 - 도정보고 및 안건심사 -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조례정비활동 -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 처리	
7. 9	○ 제6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 대토론회 ·주제: 바람직한 충청북도의회의 발전방향 ·주관: 충청북도의회, KBS청주방송총국	대 회 의 실
7. 16	○ 전국 시·도의회의원 합동세미나 (14:00)	국회대회의실
7. 26	○ 도의회 고문 변호사 위촉장 수여 ·고문변호사 : 김병철 변호사	의 장 실
8. 11	○ 도정질문 의원 간담회	의 장 실
8. 18	○ 전체 의원간담회	의원휴게실

월 일	내 용	비 고
8. 23	○ 제163회 임시회 개최 ·회 기 : 8. 23 ~ 8. 25 ·주요활동내역 -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 - 주요사업 현장확인 -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 처리 - 충청북도의회 회수(回數)변경(안) ○ 의회 홈페이지 전산망 시연회 ·의회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 8월 21일	전산교육장
9. 8	○ 제165회 임시회 개최 ·회기 : 99. 9. 8 - 9. 20 ·주요활동내역 - 도정질문 및 당면업무 협의 - '99년도 제2차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 및 조례정비활동 - 현지확인 활동 -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 처리	
9. 20	○ 의원간담회	의원휴게실
10. 2	○ 의회사무처 직원조회	2층 회의실
10. 4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의원휴게실
10. 12	○ 제166회 임시회 개최 ·회기 : 10. 12 ~ 10. 16 ·주요활동내역 -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 1998년도 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 -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처리	
10. 13	○ 중국 대련시 대표단 래방 (10:40) ○ 시민 단체 대표외의 간담회	의 장 실 2층 회의실
10. 14	○ 전체의원 연찬회 (10.14 ~ 10.15)	무주리조트
10. 22	○ 멕시코 꼴리마주 대표단 접견	의 장 실

월 일	내 용	비 고
10. 28	○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 회의 (10:00) ○ 시민 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11:00)	의원휴게실 2층 회의실
11. 1	○ 제167회 임시회 개최 · 회기 : 11. 1 ~ 11. 4 · 주요활동내역 -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 및 승인 - 상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 - 의원연찬회 -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처리 ○ 도정질문 의원 간담회	 의 장 실
11. 2	○ 의원연찬회 (10:00 ~ 12:00)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 국회 부이사관 최민수	2층 회의실
11. 1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 · 예산 심의 기법 / 박남규 전 청원부군수	특별위원회 회 의 실
11. 20	○ 제168회 정기회 개최 · 회기 : 11. 20 ~ 12. 29 · 주요활동내역 -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 2000년도 예산(안) 심사 -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의안처리 및 당면사항 협의 -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처리	
12. 29	○ 전체 의원간담회 (09:40) ○ 제168회 정기회 폐회 (11:00) ○ 1999년도 도의회 폐회연 (11:40) · 참석: 도의원, 도 및 교육청 간부공무원, 의회 및 도청 출입기자	의원휴게실 본 회 의 장 대 회 의 실
12. 31	○ 종무식 (15:00) · 참석: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장상 시상:7명)	2층 회의실

3. 2000년도 (1. 1 ~ 6. 30)

월 일	내 용	비 고
1. 1	○ 충혼탑 참배 (09:00)	
1. 3	○ 시무식 (10:00) ○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오송유치를 위한 간담회 · 참석 : 김준석 의장, 시·군의회 박연석 협의회장, YWCA 이도영 사무총장,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한장훈 회장	2층 회의실 의 장 실
1. 5	○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점역 유치촉구 결의대회 · 주관 : 도·시·군의회 의원 · 결의문 채택 · 가두행진	대회의실 시내일원
1. 11	○ 의원 해외연수 · 기간 : 1. 11 ~ 1. 25(15일간) · 방문국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 · 연수내용 : 선진국의회 비교시찰 - 경제, 농업, 환경, 복지, 교육제도 견학	
1. 27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11:00) ○ 제169회 임시회 개최 · 회기: 1. 27 ~ 2. 1 · 주요활동내역 -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 처리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11:00) ○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15:00) · 의회사무처주요업무	의원휴게실 의원휴게실 의회운영 위원회실
2. 2	○ 의회사무처 직원조회 · 참석 : 의회사무처 전 직원 · 내용 : 처장 훈시, 복무쇄신지침 시달 등	2층 회의실
2. 12	○ 총선입후보 도의원 2명 사퇴 (2.11~2.12) · 사퇴의원 : 김춘식(청주), 윤병태(충주)	

월 일	내 용	비 고
2. 16	○ 제170회 임시회 개최 · 회기: 2. 16 ~ 2. 19 · 주요활동내역 -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협의 - 의원연찬회 - 기타 안건처리	
2. 24	○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점 유치 추진위원회 간담회	청 마 루
2. 29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의원휴게실
3. 1	○ 3.1절 기념행사 참석 · 사무처 직원	예술의전당
3. 6	○ 의회사무처장 취임식 · 의회사무처장 : 김승기	2층 회의실
3. 9	○ 행정자치부장관 의회래방 (11:50) · 참석 :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사무처장	의 장 실
3. 13	○ 제171회 임시회 개최 · 회기: 3. 13 ~ 3. 17 · 주요활동내역 -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 의원 연찬회 - 기타 안건처리 ○ 전체 의원간담회	 의원휴게실
3. 23	○ 제1회 학생 모의의회 개최 (14:00) · 연출 : 40명 · 방청 : 140명 (학생 및 본회의장) · 내용 : 의원등록, 환영사, 원구성, 개회식, 질문·답변	본 회 의 장
4. 3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11:00)	의원휴게실
4. 5	○ 식목일 행사 ·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산 림 환 경 연 구 소
4. 13	○ 제16대 총선일	

월 일	내 용	비 고
4. 18	○ 제172회 임시회 개최 · 회기 : 4. 18 ~ 4. 25 · 주요활동내역 -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 -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처리	
	○서울시 의정회원 래방 · 인원 : 50여명 ·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논의	의 장 실
4. 24	○ 제16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발전 간담회 참석 · 참석 :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대 회 의 실
	○ 도정질문 의원 간담회	의 장 실
4. 25	○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 위촉위원 : 6명 - 도의원 : 이근성, 유주열 - 전문가(회계사): 김동완, 김창섭 - 유경험자: 주영관, 이덕호	의 장 실
4. 27	○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 · 기간 : 4. 27 ~ 4. 28 · 내용 : 당면사항 협의	수 안 보 상 록 호 텔
5. 3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의원휴게실
5. 15	○ 제173회 임시회 개최 · 회기 : 5. 15 ~ 5. 25 · 주요활동내역 - 도정질문 -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 기타 안건처리	

월 일	내 용	비 고
5. 24	○의원연찬회 (10:00 ~ 11:30) · 지방의원의 자세와 역할 / 이기옥 교수 ○ 의원간담회	2층 회의실 의원휴게실
5. 29	○ 의정전시관 개관 (11:00) · 시간 : 11:00 ~ 11:15 · 내용 : 테이프 컷팅, 전시관설명 및 안내 ○ 기념촬영 · 시간 : 11:20 ~ 11:25 · 대상 : 기념행사 참석자 전원 ○ 충청북도의회 개원 제48주년 기념식 (11:30) · 시간 : 11:30 ~ 12:00 · 내용 : 기념식, 감사패 전달 및 표창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13:00)	본회의장 앞 로비 의회청사 현 관 대회의실 의 장 실
6. 1	○ 의회사무처 직원조회	2층 회의실
6. 3	○직원체육대회 (의회사무처 전직원)	문의 불당골
6. 6	○ 충혼탑 참배 (10:00) · 의장 및 청주·청원 거주 의원	
6. 8	○ 도의원 보궐선거 · 선거구 : 진천1, 진천2, 영동2	
6. 16	○ 제174회 임시회 개최 · 회기 : 6. 16 ~ 6. 22 · 주요활동내역 - 1999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안) 승인 -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시찰 - 안건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6. 21	○ 집행부 간부와의 만찬 · 사유 : 제6대 전반기 의회 결산 · 참석 : 전체 의원 및 도·교육청 간부	북일회관
6. 22	○ 폐회오찬 ○ 기자회견 · 내용 : 제6대 도의회 2년 성과 · 배석 : 부의장, 사무처장, 총무·의사담당관	구내식당 의회기자실

Ⅲ. 演說文集

1. 開 會 辭

□ 제149회 임시회 개회사 (1998. 7. 9)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가슴에 안고 제6대 충청북도의회 개회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의원들을 민의의 전당으로 보내주신 도민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울러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를 불과 7년만에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고, 도약의 단계로 이끌어 주신 선배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새로 출범하는 제6대 의회는 천년의 새 장을 여는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성숙한 지방시대의 대장정에 오르는 의회로서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4대와 5대 의회가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려 정착시켜온 단계라고 한다면 제6대 의회는 이를 기초로 도약단계의 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도민의 귀중한 선택에 따라 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었고 생활의 현장을 발로 뛰면서 보다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 여러가지 구상도 하며 최선을 다하여 실천할 것을 도민 앞에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 모두는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의 기수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공장이 문을 닫고 부도가 속출하며 실업자가 대량으로 늘고 있는 6.25 전쟁 이후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 모두는 도민과 더불어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의회가 먼저 절약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제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 개선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회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둘째,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지역주민 여러분께 한표 한표 지지를 호소하던 그 자세를 앞으로 4년 동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긴장하고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도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민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시는 다수당의 독선이나 횡포, 지역이기주의를 과감히 타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으로부터 진정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집행부에 최대한 협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 도울 것입니다.

도민의 진정한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도록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짐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도정 집행과정을 늘 감시하고 비판하며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기능도 끊임없이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과 집행부와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존중하며 이 시대의 동반자로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여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참여 없이는 발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각종 의견의 개진, 토론, 여론의 수렴, 잘못되는 정책의 비판과 질책을 새롭게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각종 시민단체, 주민 모두에게 우리의 의회를 항상 열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열린 의회를 통해서 우리의 활동사항을 직접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은 언제나 주민들로 가득 메워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우리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의회 민주주의를 가르쳐 주는 일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민주정치를 가르치고 그들의 꿈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참여정치를 통하여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으며, 참여와 화합 속에 주민의 입장에서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의 공동목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거구가 다르고 정치이념이 다르겠으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너와 내가 아닌 우리요, 네 지역 내 지역이 아닌 우리지역으로 서로 타협하고 존중하며 양보하여 이 시대의 주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양 어깨에 메고 서로 굳게 손잡고 일하는 의회, 앞서가는 충청북도의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의정을 책임진 공인으로서 우리의 주인인 150만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창조자로서의 각오를 새로이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도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도민들을 위하여 땀과 눈물로 어우러진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면 우리를 뽑아준 도민들의 성원에 미력이나마 보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충북발전의 견인차로서 공무원들이 창조적 역량을 가지고 도정에 임할 때 비로소 도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지역이 발전하게 됩니다.

도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먼저 찾아 해결하는 진취적인 자세로 21세기에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세와 경제조류 속에서는 더 이상의 지체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려울수록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꾸어 나아가 자랑스런 충북, 복된 터전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도민들의 애향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의기투합하여 충북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시다.

끝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해 나아갈 것을 제의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도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150회 임시회 개회사 (1998. 7. 21)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10여일전 150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천년의 역사의 장을 펼치는 제6대 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오늘 또 다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우리의 주변정세는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사건의 계기로 남북한 관계가 예의주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IMF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의원들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우리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는 우리 6대의회 의원들이 도민의 대변자로서 등원 이후 하루라도 빨리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명실상부한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로서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첫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는 도정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세금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한 장마 이후 농가의 피해는 없는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 질병예방 등 도정시책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문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 주민의 가려운 곳을 먼저 발견하여 해소해 주는 의정,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하고 도민을 위하는 의정이 되도록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6대 의회는 지난 4, 5대 의회보다 의원수가 대폭 조정됨으로써 종전 의원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좀더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회로서 또한 도민을 위한 공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봉사자로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기일전의 각오를 가지고 봉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51회 임시회 개회사 (1998. 8. 25)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더위와 장마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한대수 부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이웃 중국에서는 양자강의 대범람, 또 이란 북부지역의 대홍수가 있었는가 하면 지구 저쪽에 있는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북극 침엽수림지대의 계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산불 등 엘니뇨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재해가 극심하고,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 대사관의 폭탄테러에 대한 응징 등으로 전세계의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올해로 광복 53주년,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경향각지에서는 경축하는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아·태 국제관광학술제와 '98 대청호 국제환경미술제, 세계청소년태권도문화관광축제 등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세계속의 충북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8월에 뜻하지 않은 기습폭우로 전국이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우리 보은, 옥천지역을 비롯한 도내 각지역에서 지난 12일 새벽 짧은 시간에 400㎜가 넘는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인명피해와 가옥침수, 농작물 피해 등 수해를 입은 많은 도민들이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이재민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시설물 등을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98 을지연습기간중에도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참여와 본연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수해복구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지역주민과 군인,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내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비회기중임에도 관광건설위원회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해복구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걱정을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복구에 여념이 없는 지역주민들과 군인, 공무원들을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획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이번 회기중 주요안건으로 상정될 조직개편과 관련,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자료의 수집, 분석, 간담회 개최 등 열성적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비록 5일밖에 안 되는 짧은 일정이지만 상정될 안건이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우리의 의결사항이 도민 모두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방안, 교육자치와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소양을 넓히기 위한 특강 등을 주제로 의원연찬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52회 임시회 개회사 (1998. 9. 18)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것 말고도 농작물, 특히 벼 작황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맑은 날씨에 높은 기온까지 더하여져서 벼의 결실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평년작은 된다고 하니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연의 은총에 감사하며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가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파란 하늘이 우리를 눈부시게 만들며 온갖 풀벌레소리가 귓전을 메우는 이 가을의 중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원종 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도정질문, 지역 현안문제 토의 등 실로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돼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중에는 제79회 전국체육대회, 민주평통 전국회의 등 여러 가지 행사와도 겹쳐서 매우 바쁜 일정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관련 추경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이 시기를 다투는 것인 만큼 우리는 도민의 대표로서 수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야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는 집행기준에 적합한지 등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6대의회 의원으로서는 처음 하는 것인 만큼 국회의 국정질문과 과거의 도정질문의 차원을 벗어나 어느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 도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해소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도정질문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는 도 및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함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53회 임시회 개회사 (1998. 10. 8)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일주일 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또 다시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금년도 계획된 의사운영계획들을 알차게 마무리를 하고 다가올 정기회를 성급하지 않고 빈틈없이 차근차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바로 추석명절이 되어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 돌아가시어 쉴 겨를도 없이 사회복지시설과 경노당, 그리고 따뜻한 정을 그리워 하는 불우이웃을 찾아 위로 격려하고, 국토방위와 관내 치안에 힘쓰고 있는 군경을 위문하시어 훈훈한 인정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향을 찾은 출향인사들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지역현안사업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 및 교육청의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의하고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비롯하여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확인을 통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기회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회기가 될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채택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6대 의회 의원으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지난 4대와 5대의회의 사례를 반복하지 말고 "일하는 의회·열린의회" 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도정시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보다 바람직한 방

향은 없는지, 지역활동중이나 각급 유관기관, 단체 등에서 수렴한 각종 의견, 자료들을 심도 있게 집중분석 수집하는 등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연구로 그 어느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도민들로부터 도정시책과 관련하여 민원사항,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자 행정사무감사자료 접수창구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준비된 감사로서 도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아픈 데를 쓰다듬어 주며 보다 나은 미래를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등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간·계층간·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때 우리 의회는 도민들로부터 "일하는 의회·열린의회"로 신뢰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텅빈 방청석을 바라볼 때 허전한 감을 느끼곤 합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와 같이 방청객이 가득한 방청석을 보면 의회의 열기가 더욱 고조되는 것 같아 가슴 뿌듯한 가운데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의원 여러분!

10月은 문화의 달로서 도민체전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어 바쁜 일정속에서도 동분서주하며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등 우리 의원들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우리를 뽑아 주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 만큼, 이번 회기중에 더욱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1월초에 정기회를 대비하는 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40일간의 정기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54회 임시회 개회사 (1998. 11. 3)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10여일만에 또다시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농촌의 들녘은 가을걷이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지난번 지나간 수해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기계화, 과학영농으로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해 모든 국민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11월 20일부터 개회되는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찬회도 준비되어 있으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이번 의원연찬회에서는 우리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예산안 심사기법은 물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기법 등 정보화 교육과 북한정세 설명회 그리고 언론인을 초청하여 언론인의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8일중에는 3일이 연찬회로 되어 있습니다.

꽉 짜여진 일정에 심신이 피로하더라도 우리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하여, 도민이 바라는 때에, 도민이 원하는 곳에, 도민의 여망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하겠다는 자긍심과 결연한 의지를 갖고 부단히 연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의 일원으로서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과는 도정의 운영에 동반자적 체제로 도민의 생활안정을 우선시하고 도민의 이익을 위하여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도민은 우리 의회를 신뢰하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55회 정기회 개회사 (1998. 11. 20)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6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기 위한 정기회를 개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10여일만에 다시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한대수 행정부지사님과 조영창 정무부지사님, 그리고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6대 의회 들어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도민의 대표자로서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도 밑거름의 역할을 다하는 의원상을 보여주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55회 정기회는 '99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1년중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IMF 체제하의 어려운 시기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지적이고 현실중심의 지역개발의 성향을 지양하고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오직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알뜰하고 보람있는 도정살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도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올바르게 수집 분석한 후 참다운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도민이 반드시 알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심의시 우리 의원들의 합리적인 정책의 대안제시나 건의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수레의 양 바퀴처럼 더함도 덜함도 없이 균형과 조화된 모습으로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는 40일간으로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생업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의원여러분께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이번 정기회를 위하여 애써 준비하신 대로 유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 건설을 위하여 온 힘을 다 쏟고 계시는 도지사님과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56회 임시회 개회사 (1999. 1. 19)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99년도 첫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도민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받는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 의정활동 방향은 첫째,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매 회기별로 전체의원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를 개최하여 도정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중심의 확인의정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해 나가는 도정 현장확인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진정, 건의, 청원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는 언제든지 비회기중에도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열린의회의 구현을 위하여 지역주민, 직능단체 등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도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심도있게 분석 대처토록 함은 물론, 우리의 의정활동 상황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의정회보의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상황을 홍보하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이며, 도민 개개인은 물론 사회단체, 직능단체, 각급 학교에 우리 의회일정을 보내주어 본회의 및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며,

또 필요한 때에는 우리 의회 회의시설 등을 사용토록 개방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행동으로 옮겨 주민의 의사를 한데 모으고 주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새로운 충북인의 기질을 새롭게 정립하므로써 우리도 남들처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화합과 결집,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도 및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시책 등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의시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하여 사업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도정보고를 통하여 금년 또는 우리 충북의 미래 설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등 각종 시책이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일하는 의회·열린 의회」의 본격적인 시동을 위한 의원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것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공적인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이번 회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150만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57회 임시회 개회사 (1999. 2. 4)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10여일만에 제157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은행을 살리고자 도의회에서는 그 동안 건의문도 채택하여 중앙관계기관에 전달하였으며 충북은행의 합병반대 결의대회와 증자에 직접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호소하는 등 시·군의회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러한 뜻이 중앙부처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하여 참으로 허탈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우리는 도민의 대표자입니다.

도민의 뜻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된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의 뜻을 심층 분석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도민들에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지마는 결과적으로 합병결정을 받게 된데 대하여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탈해 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어려운 사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 모두 이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혹시라도 경험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라든가 자기지역만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이기주의 의식, 또한 지나친 과신에서 오는 방임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의식을 전환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를 가지고 다함께 발전하고 번영하는 전통을 세워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관행이나 이익에 연연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21세기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형태로 적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변화와 대응력이 있어야만 지구촌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은 철저한 자기성찰과 함께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우리는 도 및 교육청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음으로써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많은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주요시책의 추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의 처리 그리고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연찬회 등과 지난 회기에 구성된 조례정비특위를 비롯하여 각 위원회별로 금년도 연간 주요활동계획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일정이 되어야 하겠으며 이 계획에 따라 빈틈없이 활동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5일밖에 안 되는 짧은 일정이지만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58회 임시회 개회사 (1999. 3. 11)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달 여만에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여러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사회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개혁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감각과 자질, 사회변화의 추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서 국제사회의 흐름과 보편적인 관행, 각 국의 법규, 제도, 문화 등 국가마인드를 이해하고 우리의 사고, 가치관 등을 하루속히 국제표준치에 접근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지니고 있는 패러다임, 경쟁전략과 요소 등은 과감히 버리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환경과 상황에 적합한 신지식과 신기술, 신정보 등은 하루속히 도입하여서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도록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주민에게는 생활의 안정을 되찾고 지역사회에는 지역경제 활력화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재도약의 기틀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능력과 생산성을 키우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의 주역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한다면 어떠한 도전과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8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심의와 주요사업의 현장확인 그리고 당면사항을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하는 주요사업 현장확인은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난 임시회때 주요업무계획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받고 준비한 사항에 대한 현장방문인 만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관방문의 차원을 탈피하여서 주요사업 시책 하나하나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확인하여 명실상부한 「일하는 의회」 의원으로 찬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3~4월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조례 등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여 5월부터 본격 가동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비회기 중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전후하여 고향을 찾은 출향인사들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상황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비회기 중에도 의원연찬회를 개최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자료의 수집 분석 등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연수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여서 오늘 제158회 임시회에 함께 참여하여 주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59회 임시회 개회사 (1999. 4. 8)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주요시책이 추진되는 4월의 문턱에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어 농민들의 일손이 한층 바빠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도내 곳곳에서는 많은 도민들이 정성들여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겨진 나무를 더욱 정성껏 가꿔서 푸른 산, 맑은 물이 흐르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벌거벗은 산을 푸르게 만들기 위하여 국민 모두 동참하여 노력한 결과 이제 우리의 산은 푸르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예라고 합니다.

그 동안 비회기중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화교육을 받았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당면 현안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여론수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저 왕성한 지역활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심의와 조례정비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의 문제를 챙겨보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 제출된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정현안에 대하여 그동안 의견수렴한 것을 토대로 깊이있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하면서 끝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60회 임시회 개회사 (1999. 5. 10)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60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4개월이 지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1년중 행사가 많은 계절입니다.

요즈음 세계는 새로운 세기를 목전에 두고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세계기준에 맞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구조를 탈피하여 새로운 제도와 구조로의 변화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세계의 보편적 기준과 원칙에 적합한 시책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비회기중에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지역별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음은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全 위원이 참여하여 도청민원실을 비롯한 도내 각 소방관서에서 「민원행정현장 1일체험」 근무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를 위한 활동을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일본 세일즈계획과 추경예산안 등 당면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별 재해위험지구를 확인한 바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지역의 특색이벤트 행사관련 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의시 영월댐 건설을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채택함과 아울러, 지난달 26일 우리 의회가 강원도의회와 함께 영월댐 반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 부당성을 확실하게 표명하였습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는 도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금년 들어 처음 도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에게 도정시책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질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 도정질문과 답변내용이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제출된 도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도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의정활동은 합리적이고 자주적이면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주적인 의원상을 확립토록 하는 가운데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도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이며, 우리 의회는 어느 의회보다 앞서가는 일하는 의회·열린 의회로 정착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61회 임시회 개회사 (1999. 6. 14)

오늘 제161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재해예방의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초개 같이 바치신 순국선열들과 상이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겨보면서 그들의 큰 뜻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자성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이 없는가 살펴보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마다 무더운 여름철만 되면 심히 우려되는 것은 풍수해와 각종 안전사고,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등 각종 질환의 발생 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반복되는 각종 재해로부터 아까운 인명과 많은 재산의 손실을 겪으면서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고 그때마다 천재로만 치부하며 지내온 것이 어제 오늘의 현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심한 천재라 할지라도 대비만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수해지구와 수해상습지, 재해취약지구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마를 대비한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확인은 물론, 여름철 전염병의 예방대책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른 문제점과 제2차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우리 의회가 개원 1주년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7명 모두는 「일하는 의회·열린 의회」의 슬로건 아래 공부하고 연구하며 항상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소신을 갖고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도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는지, 또는 전개하고 있는지 재조명하여 겸허한 자세로 평가받아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도 가져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비회기중 의원님들께서는 각자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전개해 왔으며, 특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정비대상 조례의 처리방안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협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는 당면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현장확인과 업무협의, 조례정비 대상조례의 검토 등이 계획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질병의 예방과 영농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한 확인 등으로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명실상부한 「일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차원 높은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정비 대상조례의 검토에 있어서도 집행부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62회 임시회 개회사 (1999. 7. 8)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8년 그리고 6대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임시회에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우리 6대 의회가 개원한 것 같은데 벌써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산안심사, 결산승인, 지역현안사항의 해결방안 강구와 대정부 건의 등 심혈을 기울여 왔음은 물론 특히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의 조례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례로 제도개선이 요망되는 44건을 정비대상 조례로 선정하는 등 지역발전과 도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우리 의정활동을 겸허한 마음으로 평가받기 위하여 제6대 의회 개원 1주년기념 대토론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 등원할 때의 심정으로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는지 되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1년후 우리 의회의 중간평가시 오늘보다 더욱 발전된 성과를 거양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형식적인 보고청취가 아닌 도민의 대변자로서 주요현안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9월중에 있을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도민들과의 대화, 현장방문 등으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로 수준 높은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항상 도민 여러분의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탄 없는 의견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에 반영함은 물론 그 결과를 반드시 알려드릴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과 언론관계관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63회 임시회 개회사 (1999. 8. 23)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한달여만에 제163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번 제162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혹서기를 피하여 8월중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자치단체의 제2단계 구조조정을 이유로 도지사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회의 말에 앞서 지난 8월 2, 3일에 있었던 태풍 및 폭우로 재해를 입으신 도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6대 의회 의원들은 지난 7월 9일 1년동안 활동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도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우리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을 지난번 토론회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보다 많은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면 지난 어느 의회보다 더욱 성숙되고 발전된 민주적인 의회로 정착될 것입니다.

이제 6대 의회 1년을 보내고 2차년도를 출발하는 첫 임시회에서 보다 질적으로 성숙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속에서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라도 예의 주시하면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도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년후 우리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다 많이 발전되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우리가 부여받은 새로운 변혁의 과제는 보편적인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민의 여론을 수렴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법에 각급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방안이 가미된다면, 보다 많은 여론이 집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의회가 추진한 의정전산화가 완료되어 도민들로부터 많은 정보의 제공과 자료의 요구 등이 쇄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도민들께서 항상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짧은 회기이지만 충청북도의 구조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만큼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이 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원만하게 처리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65회 임시회 개회사 (1998. 9. 8)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64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4회 임시회는 도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충청북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현지확인 등으로 도정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번의 도정질문은 우리 6대 의회 의정활동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한 정기회를 앞두고 실시하는 것인만큼 어느때보다도 더욱 활력있고 성숙된 의회상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6대 의회 개원1주년 대토론회에서도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정책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귀향활동중에 수렴된 주민의 의견이나 각급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부터 제기되는 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있게 분석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도정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고 살기 좋은 희망찬 충북건설을 앞당김으로써 도민

모두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활기 넘치는 의정과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받는 의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도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12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비록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개선이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많이 개선, 보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의원들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발굴, 입안할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노력하여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 제166회 임시회 개회사 (1999. 10. 12)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20여일만에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곽창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6회 임시회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에 도민의 대변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자세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소양 함양과 내년도의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의원연찬회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작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정기회의 기간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감사계획수립을 위하여 소집한 회기이니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20세기를 마무리할 마지막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수렴도 각급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매체와 정보이용시설 등 다양한 수단으로 폭넓게 수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의원들은 수렴된 의견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들이 직접 참관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상황을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하여 자세히 보도가 되도록 홍보대책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의 관심사항이 되는 도정의 현안시책을 중심으로 자료의 수집·분석 등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일단 문제 제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시정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67회 임시회 개회사 (1999. 11. 1)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보름만에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우리는 정기회 회기동안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2000년도의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의원연찬을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에서 일년동안 추진한 도정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연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하여야 함은 물론 정기회의시 도정질문,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 등 매우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의회·열린 의회」를 표방하는 우리 6대 의회는 금년도 정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지난 10월 28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도민들은 금년도 정기회 회기중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보다 세밀하게 지켜보면서 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찬사를 보낼 것이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추궁과 함께 적극적

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내지는 개선을 촉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원하는 곳은 어딘지 또 지역발전과의 관계는 어떤지 등 도민의 여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야겠다는 자긍심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부단한 연구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일하는 의회·열린 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하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집행기관과는 도정운영의 동반자적 자세로 도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도민들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면서 우리 의원들을 신뢰하고 따를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68회 정기회 개회사 (1999. 11. 22)

지난 임시회 이후 보름만에 다시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도의 새 출발을 위한 정기회를 개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의원들은 지나온 의정활동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은 우리의 본연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일하는 의회·열린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우리 6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도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지는 못하더라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2000년은 우리 인류가 세 번째로 맞이하는 밀레니엄으로서 시간적 대전환이며 과거 1천년간 인류가 추구해온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도전의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전 도민이 화합하고 결집하여 21세기 세계속의 충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의정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도민속에 가까이 하는 일하는 의회·열린 의회상을 정착시킴은 물론 지방화시대에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올바로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되는 정기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내 지역의 이익보다는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판단과 이해를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 판단과 목표를 지향하는 확고한 신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과를 신중히 검토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고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참다운 지역의 대변자로서 도정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도민이 반드시 알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의시 우리 의원들의 합리적인 정책의 대안제시나 건의에 대하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과 조화된 모습으로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는 40일간으로 생업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정기회를 대비하여 애써 준비하신 대로 유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열린미래·희망찬 충북」건설을 위하여 온 힘을 다 쏟고 계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충북여성민우회와 시민참여연대에서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69회 임시회 개회사 (2000. 1. 17)

새 천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도민 모두가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축복받는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87년부터 끈질기게 노력하여온 우리 도민의 여망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18일 중앙정부에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오송역이 배제된 고시사항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고 분연히 일어서 지난 1월 5일 도·시·군의원 합동궐기대회 등의 단합된 의지를 나타내는 활동에 끝까지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도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비록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으나 앞으로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논리를 펼치면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6대 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은「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지난 1년반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의정활동 방향중에서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제정 개정 폐지와 감사청구 제도의 설치로 주민이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바가 날로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 세기를 달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해의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21세기에는 우리 사회도 성숙화된 사회가 될 것이며 우리 도민들은 소득증대와 더불어 높은 생활의 질, 품격있는 문화생활을 바랄 것입니다. 행정서비스에 거는 기대도 중앙정부보다는 더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가 중심이 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의회는 도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한봉사의 자세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의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시대적인 요청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회, 과거보다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시각을 달리하는 생산성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도 및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시책 및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의시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도정보고를 통하여 새로운 밀레니엄시대 충북의 미래설계에 대하여 심도있게 파악하는 등 각종 시책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중 해외연수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이번 회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15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70회 임시회 개회사 (2000. 2. 16)

입춘이 지나고 정월대보름이 몇일 남지 않았는데도 매서운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특히 이번 겨울의 감기는 유난히도 지독하다고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기쁘고 그리고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전국 제일의 교육시책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니 모든 일들이 잘 돼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비회기중에도 의원여러분은 지역활동에 바쁘신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최대명절인 설을 전후하여 불우한 이웃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였음은 물론 고향을 찾은 출향인사들과 지역의 관심사 등 지역발전에 많은 협조를 당부하는 등 열심히 지역활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총선정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혼미와 혼미를 거듭한 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철하고 차분하게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의 제시, 그 비전에 알맞는 시책개발, 그리고 지연현안 문제 해결에 부단히 노력하고 주민 속에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고 이웃과 함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인간미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로부터 진정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짧은 일정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문제점에 대한 토의 등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모색하면서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져 금년도 의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하고자 소집하였습니다.

전체의원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의원여러분께서도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하여 알고 계시듯이 우리와 같이 6대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다 금년도 4월 13일 제16대 총선에 뜻을 두고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과 교육사회위원회 윤병태 위원장이 의원직을 사직하였습니다.

임기를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중앙무대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 활동하려는 큰 뜻에 우리 의원 모두는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71회 임시회 개회사 (2000. 3. 13)

춥고 움츠렸던 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새 봄이 활짝 열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뵈니 대단히 반갑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사님, 교육감님도 대단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아주 바쁜 때가 되었습니다. 농사는 때를 놓치면 안되게 되어 있으므로 때를 놓치지 않도록 특히 유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3월은 나무를 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4월 5일을 전후해서 식목을 하였는데 지금은 땅이 풀리자마자 식목을 하면 활착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산에 나무를 심는데 앞장서야 되겠고 그리고 집 주위에 꽃나무, 과일나무 등을 많이 심어서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도 산을 녹화·경제림화 하기 위하여 지금 이제 곧 조림이 시작될 것입니다.

조림에 종사하는 산림 관계관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해서 푸른 산 맑은 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5일밖에 안 되는 짧은 일정이지만 금년도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등 상임위원회별로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1세기 지방화·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보화교육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의원 모두가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의 수집, 분석, 대안제시가 가능한 명실상부한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십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72회 임시회 개회사 (2000. 4. 18)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한달만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4월에 2천년 새시대의 첫 선거인 제16대 국회의원선거가 온국민과 시민 사회단체의 첨예한 관심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온갖 어려운 역경을 딛고 마지막 승리의 월계관을 쓴 당선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고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4월은 나무를 심는 계절임에도 극심한 봄가뭄으로 인하여 우리 도와 인접한 강원도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여 애써 가꾸어온 산림자원과 가재도구까지 소실하는 등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며 지난 11일 내륙지방에서는 경기도 용인과 충남 홍성에 이어 충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농가는 물론 우리 도민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의약분업과 구제역 관련 대책을 마련하느라 애써주신 교육사회위원회 및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2회 임시회는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당면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선거를 위하여 흐트러진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 도민의 힘을 한곳으로 모으는 슬기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보았듯이 21세기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 최고위급 정상회담이 개최되는가 하면 시민단체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앞으로는 이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의원들은 우리 의원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도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한 후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당면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확인 대상사업의 선정, 문제점, 지역여론 등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검토·시행함으로써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73회 임시회 개회사 (2000. 5. 15)

금년도 벌써 4월이 지나가고 신록이 우거지는 5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오늘 제173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자리를 같이 하신 의원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해외세일즈 활동을 마치시자마자 휴식할 시간도 없이 참석하여 주신 이원종 지사님과 류선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도내 곳곳에서 행사가 많이 있어 우리 의원들은 매우 바쁜 한 달이면서 또한 우리 6대 의회가 개원되어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을 돌이켜 볼 때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을 위하고 도민들이 원한다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갔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진정한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고 또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끝까지 관철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난 9일, 우리 광역시·도의회 의장단은 행정자치부장관을 방문하여 작년말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부당성을 제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시정하

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광역의회 의장단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중에 실시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힘이 약하지만 힘을 합하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여 오면서 도정에 대하여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속 시원히 풀어주기 위한 도정질문과 도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비롯한 안건처리, 당면 주요사업 현지확인 등을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도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수렴된 주민의 의견이나 지역현안 등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여 지엽적이거나 국부적인 사안을 지양하고 도정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도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 모두 알려질 수 있는 현실적인 도정질문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합리적인 정책건의는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기관이 도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재정립되는 자리가 되도록 진솔한 답변과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74회 정례회 개회사 (2000. 6. 16)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선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지난 6월 8일 충청북도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처음 등원하신 두분 의원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

오늘 우리는 지난 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하는 뜻 깊고 의미있는 제17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해 집행부의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하고 승인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결산의 심사는 예산편성 못지 않게 그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 집행이 적법·타당한 것인지 철저한 확인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도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이근성 의원과 유주열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낮의 기온은 30도를 오르내리고 각종 질병발생이 예상되며, 이달 하순부터는 장마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점에 관심 있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 국내 정치상황은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제16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원만히 개원되었고, 남북분단 55년만에 전 지구촌의 관심속에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참으로 큰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고 많은 기대와 각오를 새롭게 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여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오늘 개회하는 제174회 제1차 정례회는 『일하는 의회 열린의회』의 슬로건을 내걸고 활동한 제6대의회의 전반기를 마감하는 매우 의미있는 회기로서 한 단계의 마무리는 다음 단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초석을 다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동안 다 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의정활동은 없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되돌아 보는 뜻 깊은 기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에는 보다 발전된 의회,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의원으로서, 도민들로 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6대의회 의원으로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기대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 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各種 記念行事

□ 취임사(1998. 7. 9)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가슴에 안고 제6대 충청북도의회 개회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의원들을 민의의 전당으로 보내주신 도민들에게 충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울러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를 불과 7년만에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고, 도약의 단계로 이끌어 주신 선배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새로 출범하는 제6대 의회는 천년의 새 장을 여는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성숙한 지방시대의 대장정에 오르는 의회로서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4대와 5대 의회가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려 정착시켜온 단계라고 한다면 제6대 의회는 이를 기초로 도약단계의 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도민의 귀중한 선택에 따라 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었고 생활의 현장을 발로 뛰면서 보다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 여러 가지 구상도 하며 최선을 다하여 실천할 것을 도민 앞에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 모두는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의 기수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공장이 문을 닫고 부도가 속출하며 실업자가 대량으로 늘고 있는 6.25 전쟁 이후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 모두는 도민과 더불어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의회가 먼저 절약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제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 개선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회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둘째,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지역주민 여러분께 한표 한표 지지를 호소하던 그 자세를 앞으로 4년 동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긴장하고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도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민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시는 다수당의 독선이나 횡포, 지역이기주의를 과감히 타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으로부터 진정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집행부에 최대한 협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 도울 것입니다.

도민의 진정한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도록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짐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도정 집행과정을 늘 감시하고 비판하며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기능도 끊임없이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과 집행부와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존중하며 이 시대의 동반자로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여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참여 없이는 발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각종 의견의 개진, 토론, 여론의 수렴, 잘못되는 정책의 비판과 질책을 새롭게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각종 시민단체, 주민 모두에게 우리의 의회를 항상 열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열린 의회를 통해서 우리의 활동사항을 직접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은 언제나 주민들로 가득 메워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우리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의회 민주주의를 가르쳐 주는 일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민주정치를 가르치고 그들의 꿈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참여정치를 통하여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으며, 참여와 화합 속에 주민의 입장에서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의 공동목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거구가 다르고 정치이념이 다르겠으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너와 내가 아닌 우리요, 네 지역 내 지역이 아닌 우리지역으로 서로 타협하고 존중하며 양보하여 이 시대의 주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양 어깨에 메고 서로 굳게 손잡고 일하는 의회, 앞서가는 충청북도의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의정을 책임진 공인으로서 우리의 주인인 150만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창조자로서의 각오를 새로이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도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도민들을 위하여 땀과 눈물로 어우러진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면 우리를 뽑아준 도민들의 성원에 미력이나마 보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충북발전의 견인차로서 공무원들이 창조적 역량을 가지고 도정에 임할 때 비로소 도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지역이 발전하게 됩니다.

도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먼저 찾아 해결하는 진취적인 자세로 21세기에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세와 경제조류 속에서는 더 이상의 지체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려울수록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꾸어 나아가 자랑스런 충북, 복된 터전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도민들의 애향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의기투합하여 충북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시다.

끝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해 나아갈 것을 제의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도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신년사(1999. 1. 1)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희망찬 기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 아침을 맞아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 하시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충청북도의회가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IMF지원 금융으로 경제 및 사회전반에 걸쳐 엄청난 시련과 변혁의 소용돌이가 친 한 해였습니다. 경제성장률이 80년 이후 18년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기업들의 대량 도산과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여 대합실, 공원 등 공공장소에는 실직자들로 가득 메워지기도 했습니다.

다행이 최근 들어 연일 치솟기만 하던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와 환율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어 위기상황은 넘긴 상태이기는 하지만 국제시장의 불안과 과중한 외채 등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해 7월 민선2기의 출범과 함께 제6대 충청북도의회가 도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염원을 가슴에 안고 지방시대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제5대보다 13명이 줄어든 27명의 도의원들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한표 지지를 호소하던 그자세로 언제나 긴장하고 옷깃을 여미며 혼신을 다 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찬 21세기를 열어가는 문턱에서 전의원들은 열심히 일하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권위와 형식에서 벗어나 365일 쉬지 않고 의정활동에 온갖 정열을 쏟고 있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며 도정의 시시비비를 가려 가면서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조조정과 관련한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 등 총119건의 조례·예산안을 비롯하여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건의·청원·진정 등을 심도 있게 처리하였고 3회에 걸쳐 15명의 의원들이 도정발전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소들은 시정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도의회가 항상 도민들과 함께 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회생에 의회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지역의 현안해결에도 도의회가 앞장서 왔고, 특히 충북은행의 독자생존 건의를 비롯한 수해복구비 국고지원확대, 청주연초제조창과 충주·옥천 담배원료공장 존치, 팔당호 수질보전특별 대책안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등을 중앙요로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사상 유례없는 보은군 등 남부지방의 수해의 시련 속에서 고통이 따랐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땀흘려 극복 하였고, 특히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중소기업자금지원, 벤처기업육성, 지역물가안정 추진 등 경제 위기에 총력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의 공감대를 얻은 한 해였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하여 도의 조직을 작으면서도 생산적으로 개편하고 도립옥천전문대학을 개교하여 지식정보화사회 기반을 굳게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환경을 크게 오염시킬 문장대. 용화 온천개발이 도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저지가 가시화 되어가고 있으며 제44회 부산~서울대역전경주대회에서 우리 충북이 35년만에 종합 우승하는 쾌거를 거두어 자긍심을 심어준 바 있습니다.

도민여러분!

이제 20세기가 저물어가고 천년의 새 장을 여는 21세기의 문턱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1년전의 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되어 가고 밝은 소식이 하나 둘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시련이 다시는 있을 수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기존질서가 재편되어야 하고 더욱더 피나는 노력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다소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주민을 위한 자치의정을 전개해 나갈 시기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기수로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새해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화와 「일하는 의회·열린 의회」를 실현하여 도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꿈과 희망에 가득찬 21세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여 다음과 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활동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의 실상과 IMF 여파로 가는 곳마다 문을 닫은 공장 등 오늘의 경제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절약하여 씀씀이를 줄여 나가는데 솔선하여야 하겠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고통을 함께 함으로써 오늘의 난국을 하루속히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지역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특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으며, 충북은행 독자생존에도 적극 동참하여 지역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경제를 활력화 하는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의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보다 질 높은 의정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인하는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수준 높은 의정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4대와 5대를 거치면서 의안심의 능력향상을 위해 부단한 연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매월 또는 매회기 마다 정례적인

의원연찬회를 개최하여 의원들이 각종 법규를 비롯하여 감사요령, 예산 및 의안심의기법 등을 익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의정관련 정보지 등 전문기관의 연구자료를 수집 활용하여 항상 연구하고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감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자치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도의원들은 민원현지나 주요사업장 등 도민들이 생활하시는 마을과 현장을 찾아 도정시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철저한 현장확인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문제해결을 도모해 나가면서 잘못 시행되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개선토록 하고, 지역현안이 있으면 의회가 앞장서서 풀어 나감으로써 진정한 생활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도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도민들의 결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도의회의 각종 시설은 물론 의회의 모든 기능을 개방하여 도민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의회의 방청석은 주민들로 가득차길 바라며 도민들과 수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의회를 모두 열어놓을 것입니다.

민원 현장이든 도의회 어디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가칭 '대화의 방' 을 마련하여 주민들과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사회 각계각층을 비롯한 직능단체와의 정례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의정에 반영하고, 회의록을 비롯한 각종 의회정보를 도민들과 함께 공유토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와 화합속에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주민 본위의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도민여러분!

새해 1999년은 지방자치에 있어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의정을 본격화 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단순한 역할보다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한층 고급화 추세에 있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은 있겠으나 다소 회복될 전망이며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건설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내륙첨단산업벨트가 구축되는 등 지역현안사업의 본격적 추진으로 역동적인 지역발전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 힘차게 일어나 활기찬 모습으로 얼마 남지 않은 21세기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개인의 주장보다는 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지역의 고유한 전통윤리와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는 선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정착 시켜 나감으로써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는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고장,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가 뽑은 도의원들이 바르게 일하고 있는가를 살펴 주시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신년사(2000. 1. 1)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새천년, 새출발 대망의 경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150만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음에도 「일하는 의회 열린의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새 천년을 선도해 갈 의회상을 확립하는 진일보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민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세기는 우리 한민족에게는 영욕(榮辱)이 교차했던 격동의 시기였다고 봅니다.

국권을 상실하는 민족적 치욕을 치렀고 설상가상으로 동족상잔의 고통을 겪어야 했으면서도 국토가 분단되는 역사를 남겨 남북통일의 숙원은 새시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IMF지원 금융체제로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했으며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1952년 지방의회가 이땅에서 처음으로 출발했다가 군사정권에 의해 정지되고, 그후 30년만에 다시 부활되는 질곡된 지방자치를 경험하면서 아직은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흡한 면이 없지 않겠으나 채 9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순조롭게 지방자치가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의회도 지난해에는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된 정부의「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인접 광역의회와 적극 공조하여 철회 시켰으며 타 지역으로 입지가 굳혀진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를 공동유치하고,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 설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지역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주민불편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도의회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해 의회정보를 도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 못지 않게 주민을 의식하고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였으며 무엇보다도 도민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여 집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1C는 우리민족에게 새 도약의 기회이며 우리가 함께 열어가야할 변혁의 시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화·개방화·정보화사회는 이미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단일 의사소통권으로 형성되고 있어 새로 맞이하는 한세기는 단순히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대전환·대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과 격변의 시대에 있어서는 미래변화를 예상하여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미래에 발빠른 적응이 발전의 변수로 등장하게 되어 우리 모두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없이는 도도하게 흐르는 변화의 소용돌이를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사고의 영역을 확대하고 자율성, 분권성, 다원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21C의 지방자치의 과제는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해야 하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가치관과 공통된 규범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1C에는 도민들의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여 도민의 자존심과 변화된 충북의 위상을 한 차원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토중심의 신산업 거점지대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통하여 지역의 내부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북도가 발전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하여 새로운 21세기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배출하는데도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세계적 수준의 희망과 비전이 있는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천년의『희망과 번영의 땅 충북』실현을 위한 동반자적 역할을 다할 것이며 민주와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의회운영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아직은 일천하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주와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된 의회 운영으로 새천년을 향한 희망과 번영의 땅 충북실현에 도민들과 함께 동반자적 관계를 갖고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도정이 올바로 수행되고 있는지 의사당내에서 뿐만 아니라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해 감시·견제하여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미리 헤아려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매 회기마다 의원연찬을 갖고 전문성과 능률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사안별로 문제가 있으면 현장확인에 나서 탁상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은 아닌지, 도정이 전개되고 있는 곳곳을 찾아나서 철저히 점검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현안사업장과 민원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도 나누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기본행동 지침으로 삼겠으며 획일적인 의원 연찬방식을 탈피하여 교양함양·전문성제고 위주의 연찬기회를 자주 가져 의원 자질향상 도모는 물론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민들의 의사를 적극 수렴해 의정에 반영하는 주민참여 자치문화를 창조해 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이룩될 수 없으며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은 도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의정에 접목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6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의 지표를 좀더 적극적인 도민의사를 의정에 반영하는데 두고 지역주민, 사회단체대표, 대학교수 및 지역언론인들과 수시로 토론회, 좌담회, 간담회 등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나누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왔으며, 각종 언로와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도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민여론수렴창구」를 개설해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 보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도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여론수렴이 아니라 설문조사, 지역순회 의정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집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안별로 도민들의 의견과 대처방안을 의정에 반영해 나가는 주민참여 자치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의회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도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열린의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정성이 모여지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식정보화시대의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모든 정보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여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열린의회를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착수한 의정전산 시스템을 올해안으로 완료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확대 보완하여 모든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의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도의회의 시설 등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의사일정, 회의내용 등 소프트웨어의 기능까지 모두 개방하여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욕구 증가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어린이, 학생,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의 의회방청을 확대하고 청소년 의회학교를 개설 운영하여 현장학습을 통한 의회민주주의를 배우게 할 것이며 실전(失傳)위기에 처했던 역대 의정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의회역사를 재정립하고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지방자치의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경제를 활력화하여 살기좋은 고장 실현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예정보다 지체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비롯하여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 등 현안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현안에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한 차원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산업생산이나 공장가동율도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돼 가고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경기호황으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씀씀이를 줄이고 절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데 솔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의회에서는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의회차원의 역할과 함께 활력을 되찾을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찬 미래는 우리가 꿈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위대한 역사를 만들려면 그만큼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속에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주민들과 함께 땀과 노력으로 착실히 가꾸어 나갈 때 비로소 민주화의 터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회가 아직은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새천년을 도민과 함께 가꾸어 나감으로써 진정한 자치의 진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희망찬 새해에는 도민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Ⅳ. 議政統計 및 資料

1. 會期運營

□ 총 괄

'98. 7. 1 ~ 2000. 7. 8

회 수 별	회 기	일 수	회 의 운 영 (회)			
			계	본회의	상임위	특 위
총 계	26회	251	367	70	266	31
소계('98년)	7회	87	131	21	97	13
제149회 임시회	7.9~7.11	3	9	3	6	-
제150회 임시회	7.21~7.25	5	16	2	14	-
제151회 임시회	8.25~8.29	5	8	2	6	-
제152회 임시회	9.18~9.30	13	18	4	12	2
제153회 임시회	10.8~10.20	13	20	2	13	5
제154회 임시회	11.3~11.10	8	10	2	8	-
제155회 정기회	11.20~12.29	40	50	6	38	6
소계('99년)	12회	120	169	33	119	17
제156회 임시회	1.19~1.23	5	14	2	12	-
제157회 임시회	2.4~2.8	5	6	2	4	-
제158회 임시회	3.11~3.18	8	10	2	8	-
제159회 임시회	4.8~4.17	10	15	2	11	2
제160회 임시회	5.10~5.21	12	19	4	13	2
제161회 임시회	6.14~6.19	6	7	2	4	1
제162회 임시회	7.8~7.16	9	14	2	10	2
제163회 임시회	8.23~8.25	3	4	2	2	-
제165회 임시회	9.8~9.20	13	16	4	11	1
제166회 임시회	10.12~10.16	5	9	2	6	1
제167회 임시회	11.1~11.4	4	9	2	6	1
제168회 정기회	11.20~12.29	40	46	7	32	7
소계(2000년)	7회	44	67	16	50	1
제169회 임시회	1.27~2.1	6	12	2	10	-
제170회 임시회	2.16~2.19	4	6	2	4	-
제171회 임시회	3.13~3.17	5	8	2	6	-
제172회 임시회	4.18~4.25	8	11	2	8	1
제173회 임시회	5.15~5.25	11	16	4	12	-
제174회 정례회	6.16~6.22	7	8	2	6	-
제175회 임시회	7.6~7.8	3	6	2	4	-

2. 議案處理現況

'98. 7. 1 ~ 2000. 6. 30

구분			계	조례안				예산안			동의·승인	건의·결의	규칙	기타 일반안건
				소계	의원발의	도지사제출	교육감제출	소계	도지사제출	교육감제출				
접수		계	305	210	69	113	28	28	15	13	12	12	4	39
		2000	64	45	2	34	9	6	3	3	3	2	1	7
		'99	169	125	65	51	9	13	7	6	6	4	2	19
		'98	72	40	2	28	10	9	5	4	3	6	1	13
처리	원안가결	계	255	176	69	84	23	16	8	8	11	11	4	37
		2000	51	35	2	27	6	4	2	2	2	2	1	7
		'99	148	110	65	37	8	7	4	3	6	4	2	19
		'98	56	31	2	20	9	5	2	3	3	5	1	11
	수정가결	계	37	24	-	22	2	12	7	5	-	-	-	1
		2000	6	4	-	4	-	2	1	1	-	-	-	-
		'99	18	12	-	11	1	6	3	3	-	-	-	-
		'98	13	8	-	7	1	4	3	1	-	-	-	1
	부결	계	-	-	-	-	-	-	-	-	-	-	-	-
		2000	-	-	-	-	-	-	-	-	-	-	-	-
		'99	-	-	-	-	-	-	-	-	-	-	-	-
		'98	-	-	-	-	-	-	-	-	-	-	-	-
	기타(폐기, 보류 등)	계	13	10	-	7	3	-	-	-	1	1	-	1
		2000	7	6	-	3	3	-	-	-	1	-	-	-
		'99	3	3	-	3	-	-	-	-	-	-	-	-
		'98	3	1	-	1	-	-	-	-	-	1	-	1

3. 道政質問

□ 총 괄

구 분		질문 의원수	질문건수			비고
			계	충청북도 소관	교육청 소관	
총 계		24명	301건	258건	43건	
'98년	소 계	8명	135건	119건	16건	
	제152회 임시회	4명	76건	72건	4건	
	제155회 정기회	4명	59건	47건	12건	
'99년	소 계	12명	123건	106건	17건	
	제160회 임시회	4명	34건	32건	2건	
	제164회 임시회	4명	43건	34건	9건	
	제168회 정기회	4명	46건	40건	6건	
2000년	소 계	4명	43건	33건	10건	
	제173회 임시회	4명	43건	33건	10건	

□ 분야별

구 분	계	내무	복지환경	농정	공업경제	문화관광	건설교통	민방소방	교육행정	기타
계	301건	79	42	31	45	23	30	8	43	
제152회	76	16	3	21	16	7	9		4	
제155회	59	13	5	1	11	1	12	4	12	
제160회	34	5	9	4	6	2	3	3	2	
제164회	43	16	6		6	5	1		9	
제168회	46	13	11	4	6	4	2		6	
제173회	43	16	8	1		4	3	1	10	

□ 의원별

의원별	질문회수			질문건수		
	계	'98	2000	계	충청북도 소관	교육청 소관
합 계	24명	20명	4명	301건	258건	43건
신대식	1	1		10	10	
박재수	1	1		13	13	
이근성	2	1	1	24	18	6
최영락	1	1		41	41	
박노철	1	1		12	9	3
이완영	1	1		13	10	3
김소정	1	1		18	12	6
유주열	1	1		16	16	
유동찬	1	1		11	11	
김형태	1	1		10	10	
윤병태	1	1		7	5	2
구본선	1	1		6	6	
신택수	1	1		13	9	4
한현태	1	1		8	8	
김진호	1	1		9	7	2
김주백	1	1		13	10	3
김춘식	1	1		9	9	
이길하	1	1		15	10	5
장준호	1	1		9	9	
이광종	2	1	1	23	20	3
박종기	1		1	9	6	3
오장세	1		1	12	9	3

4. 行政事務監査結果 指摘現況

□ 1998년도

구분 / 위원회별	계	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계	205건	115건	90건
의회운영위원회	10	5	5
기획행정위원회	71	46	25
교육사회위원회	29	28	1
산업경제위원회	48	28	20
관광건설위원회	47	8	39

□ 1999년도

구분 / 위원회별	계	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계	165건	113건	52건
의회운영위원회	10	5	5
기획행정위원회	43	43	
교육사회위원회	44	37	7
산업경제위원회	35	15	20
관광건설위원회	33	13	20

5. 議員硏鑽活動

□ 전체의원 연수(13회)

○ '98년도 - 5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7. 4 11:00~12:00	의원휴게실 (6층)	○ 지방의회 의원편람해설	의회사무처 김종록 의사담당관
8.28 10:00~17:00	소회의실 (2층)	○ 효율적인 의정활동방안 ○ 교육자치와 지방의회 ○ 특강(正心/正道/正治)	충북대학교 강형기 교수 교원대학교 김주성 교수 주성대학 유성종 학장
11. 3 13:00~18:00	소회의실 (2층)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 예산결산심사기법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 국회예산정책심의관 신해룡
11. 5 14:00~17:00	한국통신 충북본부 (율량동소재)	○ 정보화사회와 도의원의 역할 ○ 인터넷 기본사용법	한국통신충북본부 전산관리센터요원
11. 7 10:00~12:00	소회의실 (2층)	○ 지방자치시대의 도의원의 역할	충북일보 김춘길 주필

○ '99년도 - 4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1.22~1.23	수안보 상록호텔	○ 21세기 지방자치와 교육방향 ○ 의회의원과 내조자의 역할	한국교원대학교 우종옥 총장 태평양시대위원회 김동길 박사
4. 8 16:00~18:00	소회의실 (2층)	○ 충북의 역사와 문화	중부매일 임병무 논설실장
10.14~10.15	무주리조트 (호텔 티롤)	○ 21세기 도의원과 도의원 내조자로서의 자세와 역할 ○ 예산·결산심사기법	배재대학교 박강수 총장 국회법제예산실 신해룡 예산정책심의관
11. 2 10:00~12:00	소회의실 (2층)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국회사무처 최민수 부이사관

○ 2000년도 - 4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2.16~2.17	제주 그랜드호텔	○ 지방의회관련 지방자치법 해설	의회사무처 박만순 처장
5. 24	소회의실 (2층)	○ 지방의회의원의 자세와 역할	한양대학교 이기옥 지방자치연구소장
8. 30	자연학습원	○ 충북의회의 활성화방안 (의식개혁) ○ 건강관리	시민의신문사 이형모 사장 (사)한국사회체육 진흥회 장매화
11. 9	소회의실 (2층)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 예산·결산 심사기법	국회사무처 윤진훈 서기관 국회연수국 김인철 교수

□ 위원회별 연수(8회)

○ '98년도 - 2회

위원회별	일 시	장 소	과 목 및 강 사
기획내무 위 원 회	7. 15 10:00	소회의실	○ 과 목 ·지방의회에 관한 일반적 논의 ·지방자치의 정착, 활성화 ○ 강 사 : 충청대학 남기헌교수 ·기획내무위원 7명, 청주·청원 출신 의원 3명, 사무처직원 등 14명
기획행정 위 원 회	11.17 11:00~ 12:30	명암파크 관광호텔	○ 과목 : '98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수행방안 ○ 강사 : 감사원 김영수 심의관

○ '99년도 - 5회

위원회별	일 시	장 소	과 목 및 강 사
기획행정 위원회	3. 13	기획행정 위원실	○ 과목 : 의안심사 착안사항에 대하여 ○ 참석인원 : 9명 ・기획행정위원 7명, 사무처직원 2명
	4. 15	기획행정 위원실	○ 과목 : 소방운영 실태 ○ 참석인원 : 10명 ・기획행정위원 7명, 사무처직원 2명, 소방본부관계자 1명
교육사회 위원회	4. 12	교육사회 위원실	○ 과목 : 음성 생극초등학교 분교폐지 관련 ○ 참석인원 : 교육사회위원 4명
	4. 16	〃	○ 과목 : 조례정비 연찬 ○ 참석인원 : 교육사회위원 6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1.11	예결특위 위원실	○ 과목 : 예산결산시 착안사항 등 ○ 강사 : 옥천군수 박남규

○ 2000년도 - 1회

위원회별	일 시	장 소	과 목 및 강 사
공 통	3. 14 ~3. 15	정보화 교육장	○ 의원 정보화교육

6. 委員會別 海外硏修現況

위원회별	기 간	인원	여 행 지 역	비 고
계		20(8)		
기획행정	1999.1.4~ 1.16 (13일)	6 (2)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관광건설	1999.2.23~ 3.7 (13일)	7 (2)	미국, 캐나다	
산업경제	2000.1.11~ 1.25 (15일)	7 (4)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이집트	

7. 議會關聯 法規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 〔1991. 03. 29 규칙 제1760호〕

개정 1995.04.28 조례 제2188호
1999.09.07 조례 제25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공인은 충청북도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충청북도의회 의장 및 위원회위원장, 사무처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개정 99. 9. 7)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개정 99. 9. 7)
3.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제②호의 직인은 충청북도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충청북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 4. 28)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 4. 28)

제6조(관리) 공인은 총무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 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간사)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

부 칙 (1995.04.28 조례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07 조례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 인 의 규 격

1. 충청북도의회의 인 : 3.6센티미터
2. 충청북도의회의장의 직인 : 2.7센티미터
3. 충청북도의회상임위원장의 직인 : 2.4센티미터
4.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의 직인 : 사무관리규정 별표1 관인의 규격준용 (개정 95.4.28)

(별지서식)

공 인 대 장

<table>
<tr><td>인 명</td><td></td><td>서 체 규 격</td><td></td></tr>
<tr><td>폐 기</td><td>년 월 일</td><td>사 용 개 시</td><td></td></tr>
<tr><td>이 유</td><td>마멸, 직제변경, 기타</td><td>각 인 근 거</td><td></td></tr>
<tr><td>용 도</td><td></td><td rowspan="4">인

영</td><td rowspan="4"></td></tr>
<tr><td rowspan="3">보
관
책
임
자</td><td>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비 고</td><td colspan="3"></td></tr>
</table>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1991. 04. 06 조례 제1907호〕

개정 1991.06.28 조례 제1921호
1992.01.31 조례 제1975호
1992.10.23 조례 제2000호
1993.07.02 조례 제2067호
1994.02.18 조례 제2114호
1994.07.22 조례 제2134호
1995.04.28 조례 제2189호
1995.06.23 조례 제2206호
개정 1996.03.11 조례 제2255호
1997.01.17 조례 제2305호
1998.03.06 조례 제2373호
1998.04.03 조례 제2382호
1998.06.26 조례 제2393호
1998.10.16 조례 제2414호
1999.04.02 조례 제2445호
1999.11.23 조례 제25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06.23, 98.06.26, 98.10.16)

1. 의회운영위원회 8인
2. 기획행정위원회 7인
3. 교육사회위원회 6인
4. 산업경제위원회 6인
5. 관광건설위원회 7인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심사와 청원 및 진정서 처리 등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95.06.23)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07.02, 98.06.26, 98.10.16)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98.03.06)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95.04.28, 96.03.11, 98.03.06, 98.06.26, 98.10.16, 99.11.23)

나. 증평출장소,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98.06.26, 98.10.16)

3. 교육사회위원회

가. 교육청,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98.06.26, 98.10.16)

나. 옥천전문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96.03.1, 98.03.06, 98.06.26, 98.10.16)

4. 산업경제위원회(98.06.26)

가. 경제통상국, 농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94.07.22, 98.03.06, 98.06.26, 98.10.16)

나. 농업기술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94.07.22, 96.03.11, 98.06.26, 98.10.16)

5. 관광건설위원회(98.06.26, 98.10.16)

가.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95.04.28, 97.01.17, 98.03.06, 98.06.26, 98.10.16)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 또는 개선(개선(改選))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8.03.06)

제6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98.03.06)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3.07.02)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改選)) ①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94.02.18, 98.03.06)

②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임기중 개선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 (신설 94.02.18, 개정 98.03.06)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98.04.03)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의2(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99.04.02)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1952. 6. 3 조례 제11호)는 폐지한다.

부 칙 (1991.06.28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1.31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23 조례 제2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7.02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2.18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7.22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4.28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6.23 조례 제22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부 칙 (1996.03.11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7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3.06 조례 제23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부 칙 (1998.04.03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6.26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16 조례 제2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4.02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23 조례 제2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 범위에관한조례 〔1991. 04. 06 조례 제19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감
2. 부지사·부교육감
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4.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장 (교육장)
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
7. 충청북도 및 교육청의 외청 또는 사업소 소속공무원중 도본청 및 교육위원회의 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1. 04. 12 조례 제1909호〕

개정 1994.10.14 조례 제2158호
1997.11.28 조례 제2353호
2000.04.08 조례 제25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 (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의회는 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10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개정 94.10.14, 97.11.28, 2000. 04. 08)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청북도 (개정 97.11.28)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3.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97.11.28)
4. 충청북도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94.10.14)
5.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충청북도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충청북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94.10.14)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94.10.14)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의 출석증언 및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1.28)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11.28)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3항~제6항 94.10.14)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11.28)

⑤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1 선서서와 같이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가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는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97.11.28)

②법 제3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1.28)

제12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7.11.28)

제13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4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를 제척할 수 있다. (개정 97.11.28)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도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97.11.28)

제20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0.14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28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4.08 조례 제2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신설 94.10.14)

가.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설명문안)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피감사 공무원 선서서

선 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 년 월 일

기관명 :

선서인 : (인)

다.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서

선 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증 인 : (인)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1994. 10. 14 조례 제21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①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청원인
3.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충청북도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1991. 04. 12 조례 제1910호〕

개정 1992.01.31 조례 제1976호
1992.09.25 조례 제1999호
1994.01.07 조례 제2107호
1994.10.14 조례 제2157호
1995.09.06 조례 제2212호
1996.03.11 조례 제2254호
1997.02.21 조례 제2308호
1997.05.30 조례 제2328호
2000.04.08 조례 제25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700,000원으로 하고 그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하며, 매월 충청북도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회기수당) ①의원의 회기수당은 1일 80,000원으로 한다.

②의원의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자급하되, 회기중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4조(원격지회의출석비지급) ①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도의회 소재지로부터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원격지 회의출석비는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 숙박비 및 식비(3분의1)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

③제2항의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 대상지역은 별표3과 같다.

제5조(여비지급기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의원의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고,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여비지급) ①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의원의 출장여비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충청북도의회사무실이 있는 청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1952. 6. 3 조례 제1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2. 1. 31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9. 25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 7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 10. 14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9. 6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3. 11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21 조례 제2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5. 30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8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92.09.25, 94.01.07, 94.10.14, 95.09.06, 96.03.11, 97.02.21, 2000.04.08)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료(1야당)	식비(1일당)
의장·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비 고 : 1.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

3.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94.10.14, 95.09.06, 97.05.30, 2000.04.08)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제82조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지급기준 / 구 분	항공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 장 부의장	1등정액	40	186	133	150	180	210
의 원	1등정액	35	151	107	140	170	195

비 고 :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 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

(단위 : ㎞)

시·군별	대 상 지 역
충 주 시	동일원(71.0), 상모면(80.7), 살미면(71.7), 소태면(94.8), 엄정면(85.8), 산척면(85.8), 동량면(81.8), 금가면(83.8), 가금면(81.8), 앙성면(77.8), 노은면(69.8), 신니면(63.8)
제 천 시	동일원(118.9), 봉양읍(109.2), 백운면(120.9), 송학면(129.0), 청풍면(129.7), 금성면(130.2), 수산면(116.0), 한수면(124.7), 덕산면(109.4)
보 은 군	산외면(63.4), 외속리면(63.2), 내속리면(66.1), 삼승면(66.1), 탄부면(67.2), 마로면(70.1)
옥 천 군	동이면(64.3), 안남면(74.2), 안내면(72.1), 청성면(75.8), 청산면(77.5), 이원면(64.6), 군서면(60.6)
영 동 군	영동읍(83.4), 용산면(87.2), 황간면(100.0), 추풍령면(108.0), 매곡면(104.9), 상촌면(110.7), 양강면(87.4), 용화면(113.4), 학산면(97.7), 양산면(100.9), 심천면(74.0)
괴 산 군	장연면(65.6), 연풍면(70.4), 불정면(62.2)
음 성 군	생극면(60.5), 감곡면(71.6)
단 양 군	단양읍(143.5), 매포읍(155.6), 단성면(154.7), 대강면(155.4), 가곡면(150.7), 영춘면(164.4), 어상천면(164.8), 적성면(168.6)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 〔1994. 10. 14 조례 제2149호〕

개정 1995.09.22 조례 제22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 (개정 95. 9. 22)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 9. 22)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개정 95. 9. 22)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 9. 22)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충청북도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 중 1인은 도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5. 9. 22)

1. 의회의원중 1인
2. 의무직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장중 1인
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도 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95. 9. 22)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9. 22 조례 제2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table>
<tr><td rowspan="2">접
수</td><td>제 호</td><td colspan="4" rowspan="2">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td><td>처리기간</td></tr>
<tr><td></td><td>15일</td></tr>
<tr><td colspan="2">보상대상의원</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청 구 자</td><td colspan="2">성 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r>
<tr><td colspan="2">청 구 내 용</td><td colspan="4">□ 사망 □ 장애 □ 상해</td></tr>
<tr><td colspan="2">보상금수령
금 융 기 관</td><td>은행
지점</td><td>구좌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상 병 장 소</td><td colspan="2"></td><td>상병년월일시</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td></tr>
<tr><td colspan="7">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경위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장애·상해 공통)</td></tr>
<tr><td colspan="7">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의장 직인
충청북도지사 귀하</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상금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보상금 심의결과	〈결 정〉 〈결정사유〉 〈심의위원 서명〉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 〔1993. 05. 10 조례 제2056호〕

개정 1994.05.27 조례 제212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의회의장은 도의회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도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각종 의안심의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도의회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시에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 5. 27)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 일때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5. 27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충청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1998. 01. 23 조례 제23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충청북도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충청북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의정회는 충청북도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상업을 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건의
3. 사회복지문제 연구 및 홍보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①충청북도는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의정회의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1999. 09. 07 조례 제25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의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처장) ①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처장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1991. 02. 18 의회규칙 제1호〕

개정 1993.06.23 의회규칙 제 7호
1994.09.14 의회규칙 제 8호
1995.01.25 의회규칙 제 9호
1998.03.06 조례 제2373호(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2000.06.02 의회규칙 제1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3. 6. 23)

제3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93. 6. 23)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의 청가는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00.06.02)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2조(의장·부의장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 3 장 회 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3조(회기) ①의회의 회기와 회기연장은 의결로 정한다.(개정 2000. 06.02)

②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본회의는 의장이, 위원회 회의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휴회) ①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휴회중이라도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1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의원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93. 6. 23)

④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3. 6. 23)

⑤소관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4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신설 93. 6. 23)

제22조(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장이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동의)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6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7조(의안·동의의 철회) 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제로 상정하기 전에 수정안을 제출한 때는 이미 제출한 의안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된 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0. 6. 2)

제28조(번안) 본회의의 번안은 의안을 발의한 의원과 그 의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하고, 위원회의 번안은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도지사 도는 교육감에게 이송한 안건은 번안 할 수 없으며 본회의의 의제가 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00. 6. 2)

제29조(안건심의) ①본회의의 안건 심의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0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 언

제33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4조(발언의 장소) ①본회의에서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의장이 허가한 때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6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회의장 안에서는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 6. 2)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7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 개회중에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도정시책, 제도개선, 주민복지 등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 (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여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③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는 의장이 정하며 발언순서는 5분 자유발언 접수부의 접수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0. 6. 2)

⑤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 신청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00. 6. 2)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발언시간 제한으로 의원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9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1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때는 의원석에서 하여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앉을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때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의원 2인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 결

제43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한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5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6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7조(투표절차) 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의 수를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감표위원은 다른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9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언자의 발언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 (개정 93. 6. 23)

②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기 인쇄된 부수내에서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94. 9. 14)

제 4 장 위 원 회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5조(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교육·학예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학예 사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이나 대안 등은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3. 6. 23)

③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59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0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2조(연석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3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65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6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94. 9. 14)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6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7조의2(준용규정) 제33조, 제35조, 제36조의2항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와 제46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준용하되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간사로 본다. (신설 2000. 6. 2)

제 5 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8조(예산안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93. 6. 23)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9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0조(예산안의 의결) 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분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케 한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 6 장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73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한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일 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답변시간 2일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

제74조(서면질문) ①의원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개정 93. 6. 2)

②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 6. 23)

③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5조(도지사 등의 발언)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

제76조(사직) ①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의 사직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 전까지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

제77조(자격심사 청구서의 회부 및 답변) ①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자격심사대상 의원에게 답변기일을 정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자격심사 대상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답변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등) ①의장은 의원자격 심사대상 의원으로부터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자격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한다.

④본회의에서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의 의결을 한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원자격심사청구의원과 피청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9조(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의원자격심사청구의원과 피청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의원자격심사청구의원과 피청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청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의원자격심사피청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 8 장 질 서

제80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외부와 통화 또는 통신을 하거나 통신기기를 작동케 하는 행위
7. 폭력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8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회에서 출입 또는 방청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00. 6. 2)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키로 한 회의장안에는 의원 및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신설 2000. 6. 2)

제83조(방청의 허가)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0. 6. 2)

제84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단체방청권·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교부하고,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소관 위원회에서 교부한다. (개정 2000. 6. 2)

②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려는 자
5.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청과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 또는 반입하는 자
6. 기타 회의장 내외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석이 부족하거나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마이크 등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
2. 모자·외투, 슬리퍼를 착용하는 행위
3. 통신기기를 휴대하여 통화 또는 통신을 하거나 통신기기를 작동케 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끽연 및 껌을 씹는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읽거나 방송 및 음악청취 행위
6.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녹음·녹화·촬영 및 자료를 배포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소란행위 등 기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청인에 대하여 즉시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 (신설 2000. 6. 2)

제88조(녹음·녹화 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장 징 계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1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2조(심문 및 변명)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94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3. 6. 23)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23 의회규칙 제 7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9.14 의회규칙 제 8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1.25 의회규칙 제 9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6.02 의회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1991. 07. 09 의회규칙 제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 ①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의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

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도지사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는 때
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 개 의 원				인
소 개 년 월 일				
소 개 의 견				

(별지 제2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청 원 철 회 요 구 서</td></tr>
<tr><td>청 원 건 명</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청 원 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성 명</td><td>인</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소 개 의 원</td><td colspan="4">인</td></tr>
<tr><td>청원제출일자</td><td colspan="2"></td><td>청원철회일자</td><td></td></tr>
<tr><td colspan="5">철회요구사유</td></tr>
</table>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1991. 07. 09 의회규칙 제3호〕

개정 1991.11.08 의회규칙 제 5호
1999. 5.28 의회규칙 제1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신분증용지의 색상은 백색에 의한 연한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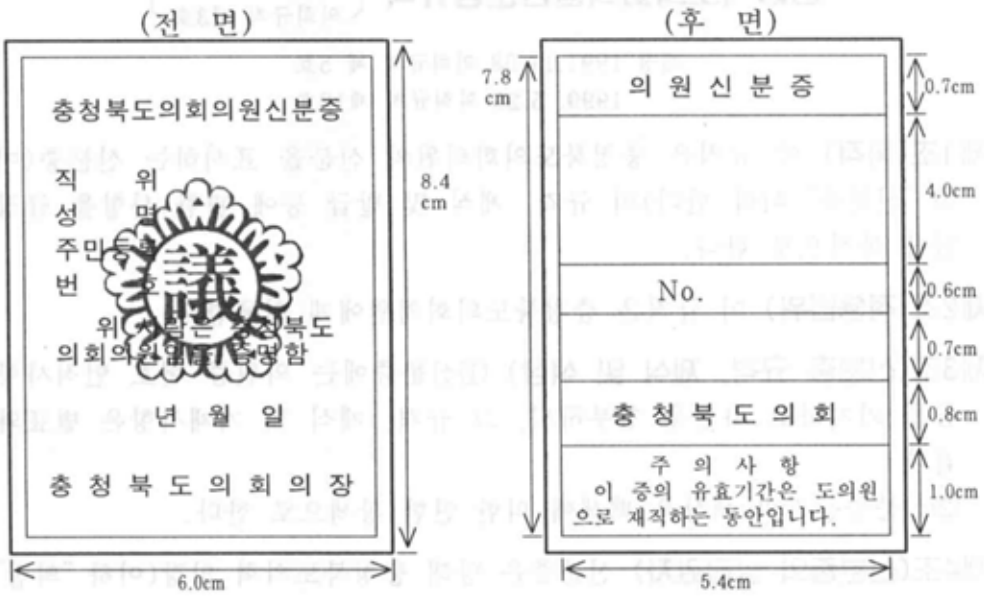
부 칙 (1991.11.08 의회규칙 제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5.28 의회규칙 제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가로×세로=5.0×3.0㎝)
   나. 성명(흑색 모필로 기입할 것)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	14포인트	고 딕 체
발급기관장	16포인트	고 딕 체
의원신분증	16포인트	고 딕 체
발급기관	16포인트	고 딕 체
위사람은…증명함	10.5포인트	고 딕 체
주의사항	6포인트	명 조 체
기 타	8포인트	명 조 체

3. 신분증 전면에 충청북도의회 휘장을 연한 하늘색으로 표시한다.
4. 지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5.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6.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에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1991. 11. 08 의회규칙 제4호〕

개정 1992.06.10 의회규칙 제 6호
1998.12.31 의회규칙 제10호
1999.04.30 의회규칙 제1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원배지의 모형, 제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 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는 무궁화를 무궁화 속의 원내에는 "議"자료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충청북도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한다.
3. 무궁화 모형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되 색채는 무궁화 동형과 "議자는 금색으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게양) ①도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도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제제식) ①도의회의원 배지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7조(배지교부) ①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교부한다.

②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배지패용요령) 의원배지는 상의좌측 옷깃에 착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교부한 배지는 이 규칙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992.06.10 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1 의회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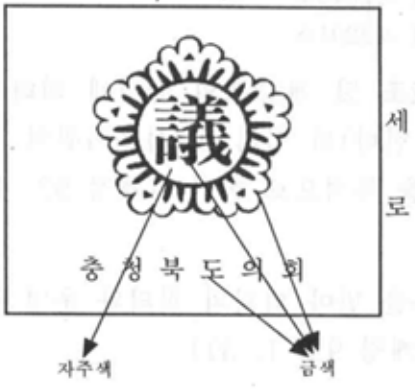
부 칙 (1999.04.30 의회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

모 형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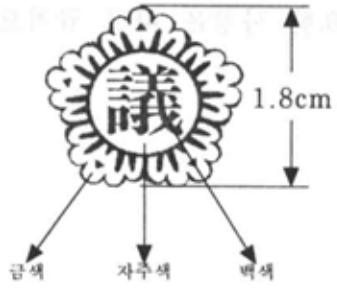
규 격

○ 가로 : 세로 = 3 : 2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세로의 3/5
○ 무궁화 모형 가운데 "議"자의 직경 : 무궁화 모형의 직경의 1/1.8
○ "충청북도의회"각 자의 크기 : 세로의 1/2
○ "충청북도의회"자 전체의 폭 : 가로의 1/2
○ 하늘색 바탕은 청렴, 결백, 신선함을 뜻하고 무궁화는 나라를 상징하며 무궁화 원내의 "議"자는 의회를 상징한다.

(별표 1)

의원배지 모형도 및 규격

모 형 도



규 격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1.8㎝
○ 무궁화 모형 가운데 원의 직경 : 1.0cm
○ "議"자의 직경 : 0.8cm(개정 92.6.10)
○ 바탕색 : 자주색(개정 98. 12. 31)
○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색으로 도금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1991. 06. 14 조례 제1917호〕

개정 1991.10.26 조례 제1935호
1992.01.31 조례 제1972호
1992.10.23 조례 제2004호
1993.07.23 조례 제2072호
1994.05.13 조례 제2123호
1995.09.22 조례 제2213호
1997.01.01 조례 제22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 1. 31)

제2조(직무)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회의와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2. 1. 31)

제3조(조직) ①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2. 1. 31)

②사무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92. 1. 31)

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64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한다. (개정 92. 1. 31, 92. 10. 23, 93. 7. 23, 94. 5. 13, 95. 9. 22, 96. 2. 13, 97. 1. 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구성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10.26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1.31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23 조례 제2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7.23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5.13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9.22 조례 제2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01 조례 제2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1999. 09. 07 조례 제232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제4조(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원등록 및 신분증 발급
3. 각종 행사,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4. 의원 및 직원 후생복지
5. 직원 인사, 복무, 포상업무
6. 예산편성, 서무, 문서, 보안, 관인 및 공인관리
7. 의사당 경비, 방청, 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의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접수
9. 의회소관 국·도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10. 회계심사 및 지출원 업무
11. 계약 및 용도사무
12. 국·도비 전도자금 지출관련 업무
1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보관
14.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15. 차량 및 물품관리
16.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
17.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8. 의정회보 발간
19. 의정활동 사진촬영·보관 및 기자재 관리
20. 음향, 방송시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21. 기타 처내에 다른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본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좌
3.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4. 본회의장 관리 및 회의실 사용조정
5. 각종 의안의 관리(접수, 분류, 인쇄, 회·배부, 이송 등)
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업무 처리
7.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8. 도정질문, 서면질문 관련업무 처리
9. 의안문서의 보존관리
10.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및 보관관리
11. 의회사 편찬 및 의정자료발간
12. 의회 자료실 운영관리
13. 각종 회의상황 기록정리 및 보관
14. 각종 회의록의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5. 속기사 및 기록장비의 운용관리
16.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
17. 의원 인터넷홈페이지 자료 및 웹서버 운용관리

제6조(전문위원) ①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2.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3. 위원회 회부 안건의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
4. 위원회 관련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운영
6. 위원회 사무실 및 회의장 관리
7. 위원회 소관 예산 집행품의 및 물품관리
8. 위원회 소관 관인 관리
9.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업무 처리

②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소관 분장사무외에 각 전문위원소관의 일반행정사무를 총괄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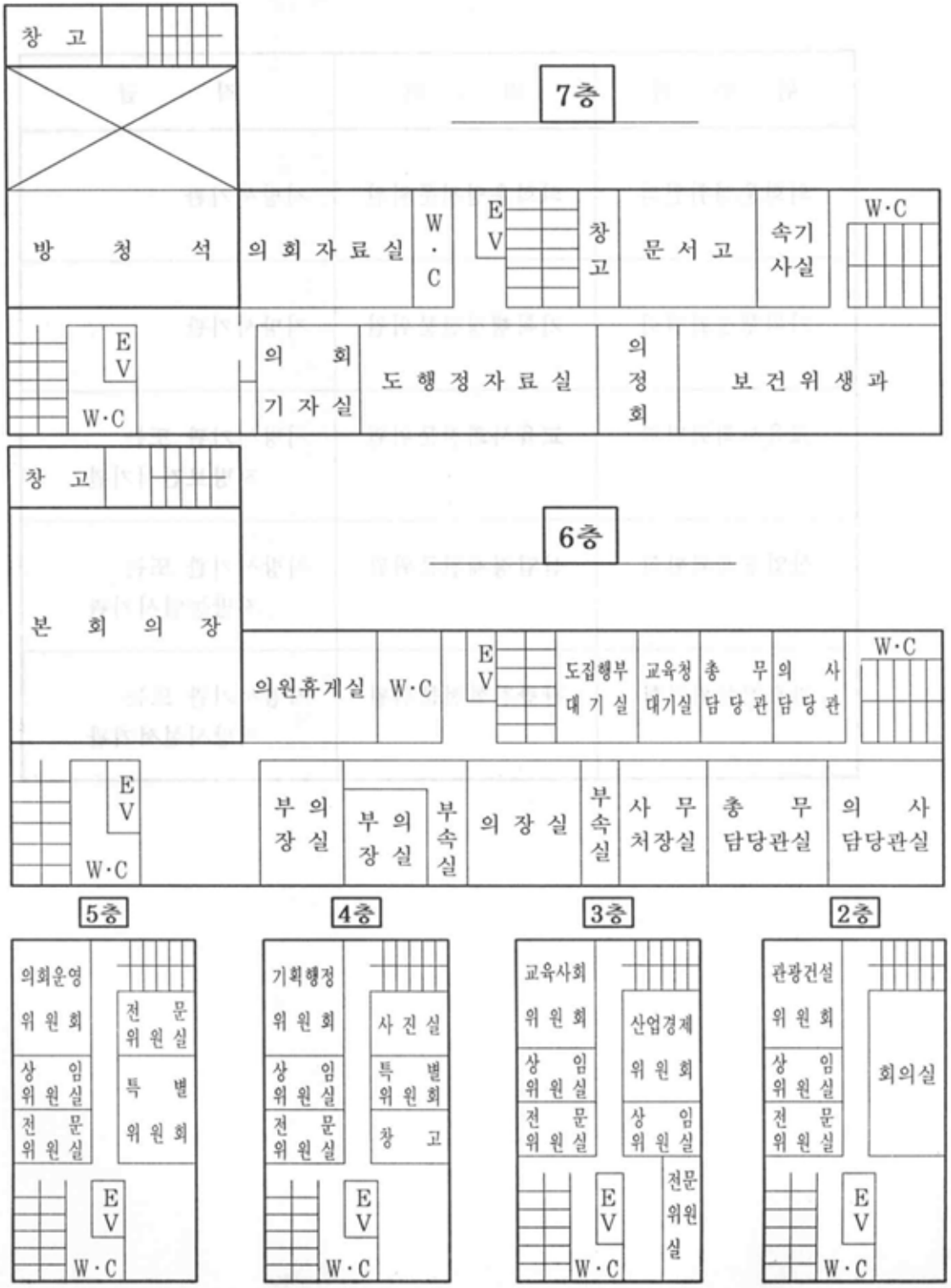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지방공무원은 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문위원중 1명은 4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 정원이 당해 현원 해소시까지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위 원 회	직 위	직 급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사회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
관광건설위원회	관광건설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

8. 議事堂 施設配置圖


7층
창 고
방 청 석
의회자료실
W·C
EV
창고
문서고
속기사실
W·C
EV
W·C
의회기자실
도행정자료실
의정회
보건위생과
6층
창 고
본 회 의 장
의원휴게실
W·C
EV
도집행부대기실
교육청대기실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W·C
EV
W·C
부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
의장실
부속실
사무처장실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5층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상임위원실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EV
W·C
4층
기획행정위원회
사진실
상임위원실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창고
EV
W·C
3층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실
상임위원실
전문위원실
EV
전문위원실
W·C
2층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상임위원실
전문위원실
EV
W·C

議政白書

印　刷	2000年　12月
發　行	2000年　12月
發行處	忠淸北道議會事務處
印刷社	文化孔版社
	256－4534, 259－5574

題　字　　東林　吳　國　鎭